

2008 남북협력기금 백서

| 발간사 |

그 동안 남북관계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진전되어 왔습니다.

1991년 연간 1억 달러에 불과했던 남북교역은 2007년에는 17억 9,8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남북간 인적 교류도 1991년 연간 400명에서 2007년에는 16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03년 6월 착공된 개성공단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경의선 그리고 동해선 철도·도로가 연결되었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식량난을 해결하는데도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온 데는 무엇보다도 1990년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설치·운영되어 온 남북협력기금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 250억원으로 출발했던 남북협력기금은 2008년 10월말 현재 총 9조 3,225억원(남북협력계정 4조 9,531억원, 경수로계정 4조 3,694억원)이 조성되어 8조 2,267억원(남북협력계정 3조 8,862억원, 경수로계정 4조 3,40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설치 이후 17년간 운용되어 온 남북협력기금의 조성 및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백서 발간을 계기로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 과정에서 있었던 부족했던 점과 남북협력기금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MINISTRY OF UNIFICATION

이미 정부는 지난 3월 남북협력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는 금번 남북협력기금 백서 발간을 계기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기금이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통일부장관 김 하 중



| 차 례 |

제1장 남북협력기금의 설치와 운용	1
제1절 설치 배경 및 경과	3
제2절 운용체계	5
1. 법령체계	5
2. 운용관리체계	9
3. 계정체계	12
제3절 조성 및 사용	14
1. 기금조성	14
2. 기금사용	17
제4절 지원제도	21
1. 지원자금 종류	21
2. 자금별 지원조건	24
3. 지원 절차	25
제2장 인도적 지원	27
제1절 개관	29
제2절 당국차원의 지원	30
1. 식량 지원	30
2. 비료 지원	36
3. 긴급구호 지원	41



제3절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51
1. 개별사업	51
2. 합동사업	59
3. 정책사업	61
4.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64
제4절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69
1. 추진배경 및 경과	69
2. 연도별 집행실적	70
제5절 평가	85
제3장 이산가족교류 지원	89
제1절 개관	91
제2절 상봉행사 지원	93
1. 추진배경 및 경과	93
2. 연도별 집행실적	94
제3절 화상상봉 지원	115
1. 추진배경 및 경과	115
2. 연도별 집행실적	115
제4절 민간차원 이산가족교류 지원	119
1. 추진배경 및 경과	119
2. 연도별 집행실적	121
제5절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123
1. 추진배경 및 경과	123
2. 연도별 집행실적	124



제6절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운영	126
1. 추진배경 및 경과	126
2. 연도별 집행실적	127
제7절 평가	129
제4장 남북경제협력 지원	133
제1절 개 관	135
제2절 남북 철도·도로 연결	136
1. 추진배경 및 경과	136
2. 연도별 집행실적	141
제3절 개성공단 조성	144
1. 추진배경 및 경과	144
2. 사업별 집행실적	147
제4절 분야별 협력사업	164
1. 남북 관광협력	164
2.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173
3. 남북 농업협력	177
4.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181
5. 통행·통신체계 구축지원	184
6. 중재사무처리기관 운영	188
7.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현지조사단 비용 지원	189
제5절 민간기업 대출 및 교역·경협 보험	192
1. 교역업체 자금대출	192
2. 경제협력 기업 자금대출	194
3. 교역·경협 보험(손실보조)	199
제6절 평가	201



제5장 사회문화교류 지원	207
제1절 개 관	209
제2절 인적왕래 지원	212
1. 추진배경 및 경과	212
2. 6.15 / 8.15 남북공동행사	213
3. 부문별 교류	218
4. 북한 체험학습	232
제3절 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지원	237
1. 문화·학술 교류분야	237
2. 체육·종교 등 교류분야	251
제4절 평가	264
 제6장 북한 핵문제 해결 지원	 267
제1절 경수로 사업 추진	269
1. 사업 추진경과	269
2. 기금 집행실적	271
3. 향후 과제	278
제2절 「2.13 합의」 이행 지원	279
1. 추진배경 및 경과	279
2. 연도별 집행실적	281
제3절 평가	284



제7장 기금 관리 및 여유자금 운용	287
제1절 기금관리비	289
1. 위탁사업비	290
2. 관리사업비	291
제2절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	292
1.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 현황	292
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293
제3절 여유자금 운용(자산운용)	295
1. 여유자금 운용(자산운용)의 목적 및 체계	295
2. 여유자금 운용(자산운용) 현황	296
제4절 평가	298
제8장 향후 발전방향	301
부 록	311
1. 남북협력기금 관련법령	313
2. 남북협력기금 연혁	351
3. 남북협력기금 제도개선 내용	352
4. 남북협력기금 관련통계	356
5. 2007년 기금지원계획 대비 실적	403
6. 요약 재무제표	404



제 1 장

남북협력기금의 설치와 운용

제1절 | 설치 배경 및 경과

제2절 | 운용체계

제3절 | 조성 및 사용

제4절 | 지원제도



제1절 | 설치 배경 및 경과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분단이후 1960년대까지 사실상 단절되어 왔다. 정부는 1971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된 이래 북한에 대해 교류확대를 촉구해 왔다. 1984년 10월 북한적십자사의 수재물자 지원을 계기로 5차례에 걸쳐 남북경제회담('84.11.15~20)이 열렸으나, 남북교류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정도에 그쳤다.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하 「7.7 선언」)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구조에서 신뢰와 협력구조로 바꾸어 가기 위해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어서 1988년 10월에는 남북간 교역을 허용하는 「대북경제개방조치」를 취하고,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1989년 7월 21일에는 「남북교류협력 세부시행지침」을 제정·시행하는 등 남북간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 나갔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마련 및 분위기 조성과 함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남북협력기금」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1989년 11월 15일 통일원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주재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회의에서 남북간 획기적 관계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3,000억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

하기로 하였다. 같은해 11월 28일 통일원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기금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1990년 2월 5일 통일원 연두업무보고시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협력기금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법(안)」을 의결하고 3월 5일 제148회 임시국회에 「남북협력기금법(안)」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8월 1일 「남북협력기금법」(법률 제4240호)을 공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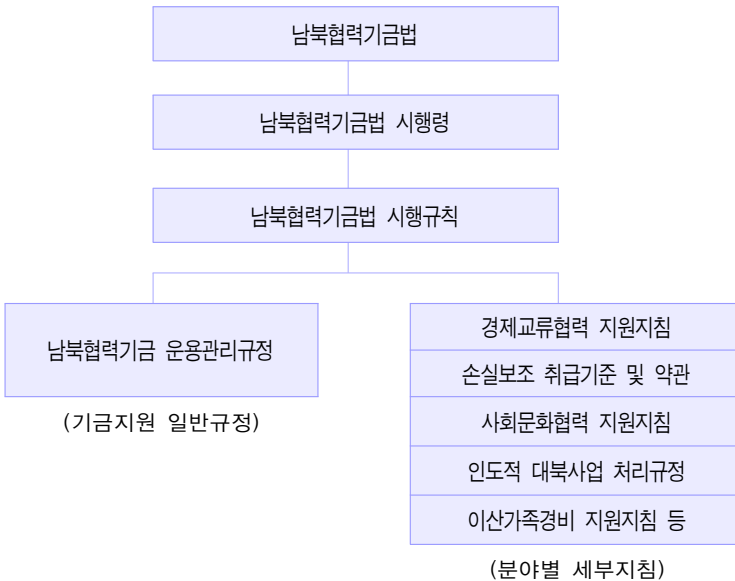
정부는 1990년 12월 31일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237호)을 제정하고, 1991년 3월 27일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총리령 384호), 4월 17일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통일원고시 1991-1호) 등 하위법령 체계를 마련하였다.

한편, 1991년 1월 4일 통일원은 한국수출입은행에 기금업무를 위탁하였고, 2월 1일 한국수출입은행은 남북기금부를 발족하여 3월 20일 정부출연금 계획액 250억원 중 2억 6,000만원을 최초로 납입 받아 기금업무를 시작하였다.

제2절 | 운용체계

1. 법령체계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관리규정(통일부 고시) 외에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등 분야별 세부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은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40호로 제정되었다. 동 법률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조직개편 및 다른 법률 제·개정에 따른 자구 변경 이외의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에서는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기금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제1조 및 제3조).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 장관이 운용·관리하되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제7조)를 받도록 하였다.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남북간 제반교류와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용자 및 기금관리에 필요한 경비(제8조)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은 1990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237호로 제정되었다. 동 시행령은 총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재정운용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일부항목 조정 등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¹⁾

시행령에서는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제7조), 요건(제8조), 방법(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기금투명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사업’ 구체화, ‘손실보조’ 명칭을 ‘보협’으로 변경, ‘북한비핵화계정’ 신설 근거 마련 등 시행령을 개정(2008.10.10) 하였다.

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은 1991년 3월 27일 총리령 제384호로 제정되었으며, 1998년 2월 28일 통일원에서 통일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1998년 6월 1일 통일부령 제3호로 개정된 이후 2002년 2월 6일, 2004년 5월 14일 등 2차례에 걸쳐 추가로 개정된 바 있다.

동 시행규칙은 총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제2조)과 통일부장관이 결정하는 경미한 사항(제3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라.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은 1991년 4월 17일 통일원 고시 제1991-1호로 제정된 후, 그 동안 총 10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동 규정에서는 기금 관리(제2장), 인적왕래 및 사회문화교류 지원(제4장), 손실보조(제5장), 교역·경협자금 대출(제6장), 채무보증(제7장), 금융기관 지원(제8장), 민족공동체 회복지원(제9장) 등 기금지원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분야별 세부규정

남북관계 개선으로 기금지원의 규모가 확대되고 방식도 다양화됨에 따라 기금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모두 규정하기가 어려워졌다. 1998년 이후 분야별 세부 지원지침을 제정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게 되었다.

세부지침으로는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98.12.25 제정),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99.10.27 제정),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99.10.27 제정),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01.12.31 제정), 「교역 손실보조 취급기준」(’04.5.14 제정),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취급기준」(’04.9.23 제정),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05.7.27 제정) 등이 있다.

2. 운용관리체계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체계는 기금운용관리 주체인 통일부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주요정책 심의기구)와 한국수출입은행(기금수탁관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심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결산보고사항 심의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 기금운용관리의 주체 >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결정(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기금지원업무의 실무 담당 >	
한수출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의 관리(기금계정 관리, 회계사무 처리, 여유자금 운용)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상담 및 심사 지원자금의 집행 지원사업 및 지원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가.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에 따라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을

결정하고,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을 담당하며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통일부내에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금관리심의위원회는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실·국장 및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사업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위원회는 기금지원에 대한 사전 심사, 기금사용결과 점검·평가, 기금운용계획과 지원제도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기금운용계획, 결산 보고사항, 기타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위원장인 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 위촉은 통일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3인 이상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개 부처 14명의 정부위원과 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기금투명성 강화를 위해 2008년 4월 정부위원을 13명으로 조정하고 민간위원은 5명으로 확대하였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1989년 이후 2007년말까지 총 197회 개최되어 417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8년 들어서는 9월말까지 11회 개최되어 3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처리안건은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 심의, 결산보고, 제도개선 심의, 주요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결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심의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주로 서면회의로 운영²⁾됨으로써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회의 실질적 심의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의 대리참석 허용³⁾을 추진하는 한편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처

2) 2008년 9월말까지 총 208회 회의 중 서면회의가 159회로 76.4%를 차지하였다.

3)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의 대리참석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08.10.28)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리하는 금융기관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기관으로서 기금의 관리, 지원신청사업에 대한 상담 및 심사, 지원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1990년 12월 31일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1991년 1월 4일자로 통일부가 기금업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은 1991년 2월 1일 남북기금부를 발족시키고 3월 20일 최초로 정부출연금을 납입받아 남북협력기금 업무를 개시하였다.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본부에서 남북협력기금 관련 상담, 심사,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유자금 운용은 자금운용을 전담하는 자금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3. 계정체계

남북협력기금은 조성 및 운용 구조에 따라 ‘남북협력계정’과 ‘경수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⁴⁾하고 있다.

가. 남북협력계정

남북협력계정은 남북간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사용하는 계정으로 주로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되어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 및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4) 이러한 계정분리는 법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조성방식의 차이 및 사용내역의 성격에 따른 관리계정을 의미한다.

나. 경수로계정⁵⁾

1994년 10월 체결된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에 따라 경수로 건설비용 분담을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이하 KEDO)와 우리정부는 차관공여협정을 체결('99.7)하였다. 정부가 차관공여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99년 12월부터 경수로계정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하게 되었다.

경수로계정은 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구성되어 KEDO에 대한 대출금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2006년 경수로 건설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계속 유지되고 있다.

5) 기금법 시행령 개정(2008.10.10)을 통해 향후 북한 비핵화 진전에 대비하여 소요재원 확보 및 운용관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북한비핵화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북한 핵문제 진전 추이에 따라 경수로계정을 북한비핵화계정에 포함시켜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제3절 | 조성 및 사용

1. 기금조성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재원은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①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②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③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④ 기금의 운용수입금, ⑤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⑥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8년 9월말까지 남북협력기금으로 총 9조 2,702억원을 조성하였다. 남북협력계정으로 4조 9,007억원, 경수로계정으로 4조 3,694억원을 조성하였다.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통상 '정부출연금' 및 '민간출연금'으로 구분된다. 정부출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민간출연금은 민간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다. 2008년 9월말까지 정부출연금으로 4조 3,464억원, 민간출연금으로 24억원이 조성되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국채를 발행하여 기금수입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8년 9월말까지 남북협력계정 1,130억원, 경수로계정 4조 3,373억원 등 총 4조

4,503억원이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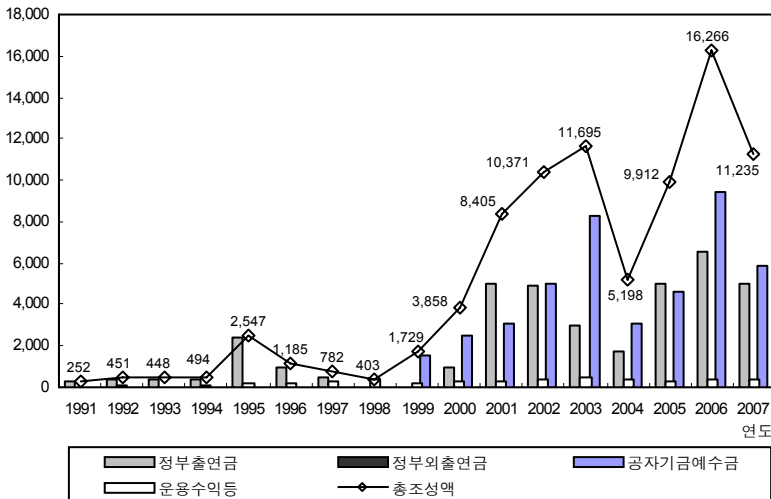
기금의 운용수입금은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으로 2008년 9월 말까지 남북협력계정 4,026억원, 경수로계정 322억원 등 총 4,348억원이 조성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은 용자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사업집행시 발생한 예금이자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경상이전수입, 보험 약정체결시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등을 말한다. 2008년 9월말까지 남북협력계정으로 363억원이 조성되었다.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은 국가재정운용 상황 및 남북관계 여건상 현재까지 기금 조성실적이 없다.

〈남북협력기금 조성〉

금액(단위: 억 원)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남북협력	정부출연	250	400	400	400	2,400	1,000	500	-	-	1,000
	민간출연	-	0	0.03	0.01	1.19	1.32	2.88	-	0.03	5.42
	운용수익	2	51	48	94	146	184	279	403	230	262
	기타수입	-	-	-	-	-	0.71	-	0.08	0.01	2.83
	소 계	252	451	448	494	2,547	1,185	782	403	230	1,271
경수로	공자예수	-	-	-	-	-	-	-	-	1,498	2,549
	운용수익	-	-	-	-	-	-	-	-	-	39
	소 계	-	-	-	-	-	-	-	-	1,498	2,587
합 계		252	451	448	494	2,547	1,185	782	403	1,728	3,858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9	합계
남북협력	정부출연	5,000	4,900	3,000	1,714	5,000	6,500	5,000	6,000	43,464
	민간출연	10.8	0.78	0.01	0.01	0.33	0.15	0.75	1.62	24
	공자예수	-	-	-	-	500	-	630	-	1,130
	운용수익	253	362	436	315	214	231	288	228	4,026
	기타수입	1	10	2	39	76	79	61	92	363
	소 계	5,265	5,273	3,439	2,068	5,790	6,811	5,980	6,320	49,007
경수로	공자예수	3,100	5,050	8,230	3,100	4,100	9,400	5,216	1,130	43,373
	운용수익	40	48	27	30	22	56	39	21	322
	소 계	3,140	5,098	8,257	3,130	4,122	9,456	5,255	1,151	43,694
합 계 ^{주)}		8,405	10,371	11,695	5,198	9,912	16,266	11,235	7,471	92,702

주)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사사오입하여 억원 단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합계액과 현황표상의 '합계'와는 차이가 날 수 있음.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정부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조성되고 있어서 사실상 정부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역할 및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기금조성 방식으로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간출연 확대 등 다양한 수입원 창출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 기금사용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 남북협력기금법에서는 기금의 용도로 다음 7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① 남북한 주민왕래 지원
- ②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 지원
- ③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의 지원 또는 용자
- ④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용자해주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원
- ⑤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 ⑥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⑦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991년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한 이래 2008년 9월말까지 남북협력계정 3조 8,618억원, 경수로계정 4조 3,405억원 등 총 8조 2,023억 원을 집행하였다.

“주민왕래 지원”은 남북한 주민(법인·단체 포함)의 남북간 왕래

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9월말까지 총 399억원을 집행하였다.

“문화·학술·체육협력 지원”은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9월말까지 총 312억원을 집행하였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의 지원 또는 용자”는 교역·경협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보험, 자금대출 및 채무보증 사업으로 2008년 9월말까지 교역경협보험 13억원, 자금대출 2,957억원을 집행하였다. 채무보증 제도는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용자해주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는 금융기관 손실보전, 북한원화의 매각 및 인수, 미결제채권 인수에 대한 지원 등이 있으나, 남북간 제도적 기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크게 이산가족교류 지원, 인도적 지원(유·무상 포함), 남북경제협력지원(유·무상 포함), 경수로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이산가족교류 지원”은 남북한 이산가족의 직·간접적인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 9월말까지 대면상봉·화상상봉·제3국을 통한 상봉 및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등에 대하여 총 781억원이 집행되었다.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 등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비료 및 식량 등 당국간 합의에 의한 지원, WFP·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으로 구분된다. 2008년 9월말까지 무상지원 1조 5,109억원, 유상대출

7,842억원 등 총 2조 2,951억원을 집행하였다.

“남북경제협력 지원사업”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성공단 조성, 남북 철도도로 연결, 농업·경공업 등 분야별 협력사업 등에 사용되었다. 2008년 9월말까지 무상지원 8,907억원, 유상대출 1,919억원 등 총 1조 826억원을 집행하였다.

“경수로 대출”은 2000년부터 KEDO의 경수로 건설 사업에 대한 우리측 분담분을 차관으로 지원한 것으로 2007년 5월 사업종료선언 시까지 1조 3,744억원을 사용하였다.

〈연도별 기금사용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주민왕래지원	-	-	-	-	-	-	-	-	-	3
문화·학술·체육협력	10	-	-	-	-	-	-	0,3	-	21
교역·경협 지원	13	-	-	-	-	-	-	-	-	-
-보험	13	-	-	-	-	-	-	-	-	-
-자금대출	-	-	-	-	-	-	-	-	-	-
민족공동체회복지원	-	6	-	-	1,824	104	191	199	344	5,277
-이산가족	-	6	-	-	-	-	-	0,13	4	28
-인도적지원(무상)	-	-	-	-	1,824	55	191	199	339	977
-인도적지원(유상)	-	-	-	-	-	-	-	-	-	867
-남북경제협력(무상)	-	-	-	-	-	49	-	-	-	146
-남북경제협력(유상)	-	-	-	-	-	-	-	-	-	-
-경수로 대출	-	-	-	-	-	-	-	-	-	3,259
공자기금예수 원리금상환	-	-	-	-	-	-	-	-	-	190
-공자기금원금상환	-	-	-	-	-	-	-	-	-	-
-공자기금이자상환	-	-	-	-	-	-	-	-	-	190
기관관리비 등	3	3	3	3	2	2	2	2	2	169
합 계	25	8	3	3	1,826	106	193	201	346	5,661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9	합 계
주민왕래지원	3	237	11	11	38	53	17	27	399
문화·학술·체육협력	1	-	7	32	75	74	69	25	312
교역·경협 지원	461	358	162	298	171	389	1,101	17	2,970
-보험	-	-	-	-	-	-	-	-	13
-자금대출	461	358	162	298	171	389	1,101	17	2,957
민족공동체회복지원	5,080	5,896	7,502	4,347	6,339	4,104	5,856	1,232	48,302
-이산가족	13	20	30	32	133	99	269	147	781
-인도적지원(무상)	976	1,226	1,501	1,225	1,866	2,125	2,272	331	15,109
-인도적지원(유상)	190	967	1,561	1,020	1,793	39	1,405	-	7,842
-남북경제협력(무상)	898	368	763	760	2,045	1,521	1,725	631	8,907
-남북경제협력(유상)	-	306	360	440	275	231	185	123	1,919
-경수로 대출	3,003	3,009	3,287	870	227	89	-	-	13,744
공자기금예수 원리금상환	391	2,124	3,250	3,895	3,658	8,713	6,337	1,191	29,749
-공자기금원금상환	-	1,498	2,549	3,100	2,820	7,730	5,330	500	23,527
-공자기금이자상환	391	626	701	795	838	983	1,007	691	6,222
기금관리비 등	5	6	8	12	16	18	19	15	291
합 계 ^{주)}	5,940	8,621	10,940	8,594	10,296	13,351	13,400	2,509	82,023

주) 「연도별 기금사용 현황」은 사사오입하여 억원 단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합계액과 현황표상의 '합계'와는 차이가 날 수 있음.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은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외부 차입 또는 국채발행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외부차입 실적은 없었다. 2008년 9월말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해 총 2조 9,749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다.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은 기금관리비를 말하는 것으로 2008년 9월말까지 총 291억원을 사용하였다.

제4절 | 지원제도

1. 지원자금 종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자금은 무상지원, 자금용자, 교역·경협 보험, 금융기관 지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가. 무상지원

무상지원은 ① 주민왕래 지원자금⁶⁾, ② 문화·학술·체육협력 지원자금⁷⁾ ③ 민족공동체회복 지원자금 중 이산가족교류지원, 비료 등 인도적 지원사업,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 등 경제교류협력기반 조성 지원사업 중 일부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나. 자금용자

자금용자는 크게 남북경협사업자에 대한 대출과 민족공동체 회복

6) 남북한 주민의 남북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7)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을 위한 대출로 구분된다.

남북경제교류사업을 시행하는 우리주민에 대한 대출은 ① 북한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경제협력사업 자금 대출) ②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인 교역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민족공동체회복 지원을 위한 대출은 ① 식량차관 등 인도적 지원 ② 자재·장비 차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대출 등 경제협력사업 ③ 경수로 대출 등 용자지원으로 구분된다.

다. 교역·경험보험

교역·경험보험은 남북간 교역이나 경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 등으로 인해 우리측 기업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일종의 수출보험제도이다.

2003년 8월 4대 경험합의서 발효 이후 민간경험 활성화 및 남북간 거래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북 수출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신용도 및 수입자 신용조사·사고조사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일반 수출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교역·경험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004년 제도도입 당시에는 「손실보조」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손실보조라는 용어가 제도의 취지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8년 10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험·교역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교역·경협보험 제도

- 북한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출보험의 일종
- 민간손해보험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위험을 담보하는 비영리 정책보험
 - 수용·전쟁·송금불능·약정불이행·불가항력 등 기업에 귀책 되지 않는 비상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

구분	담보위험	보험비율	보험요금	기업당 약정한도
교역보험	비상·신용	50%(비상+신용) 70%(비상)	0.4%~0.8%	10억원
경협보험	비상	개성공단 : 90% 기타지역 : 70%	연 0.5% (중소기업 25% 할인)	50억원

- 비상위험 : 북한의 수용·전쟁·송금불능·약정불이행·불가항력
- 신용위험 : 북측 계약상대방의 대금지급능력 부재나 지급지연 등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위험

라. 금융기관 지원

금융기관 지원은 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용자, 환전 및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및 환손실을 보전 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금융기관 손실보전 ②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해 용자취급금액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용자자금 지원 ③ 남북한간에 설치된 대금결제구조좌(청산계정)의 미결제채권을 인수하는 미결제채권 인수 ④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인수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이 있다.

다만, 금융기관 지원은 북측과의 청산결제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

2. 자금별 지원조건

구 분		업무종류	지원한도	지원조건
무상 지원	무상지원	주민왕래 지원자금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경비 범위내	-
		문화·학술·체육 협력지원자금	소요금액 범위내 (예상수익금 제외)	-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이산가족 지원 인도적 사업 지원 경제교류협력 기반조성 지원	남북 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결정	좌 동
융 자	교역·경협 대출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	소요자금의 80% 범위내 (우선지원 대상은 90% 범위내)	이 자 율 : 국고채 기간물 유통수익률 기 간 :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채권보전 : 신용 또는 담보
	교역·경협 대출	반출·반입 자금대출	소요자금의 80% 범위내 (우선지원 대상은 90% 범위내)	이 자 율 : 국고채 기간물 유통수익률 기 간 : 2년 이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은 1년 이내,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은 5년 이내) 채권보전 : 신용 또는 담보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경수로 사업 식량 차관 자재·장비 차관	남북 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결정	좌 동
교역·경협보험	교역보험	10억원 (손실액의 50% 범위내)	보험요율 : 0.4%~0.8%	
	경협보험	50억원 (손실액의 90% 범위내)	보험요율 : 0.5%	

구분	업무종류	지원한도	지원조건
금융기관 지원	금융기관 손실보전	손실금액 범위내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미시행)
	금융기관용자 자금지원	용자취금액 범위내	
	미결제채권 인수	대금결제계좌의 미결제 채권액 범위내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별도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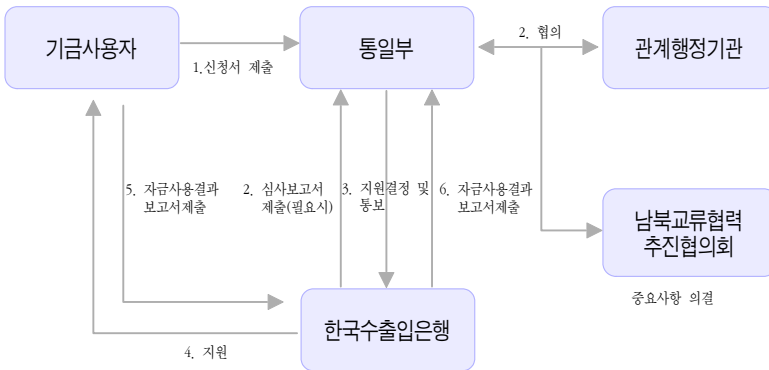
3. 지원 절차

남북협력기금 지원절차는 우선 기금사용자가 통일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일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심사보고서를 받아 통일부 자체 심의기구인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회 사전보고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지원을 결정한다.

다만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에서는 지원규모 및 성격에 따라 중요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을 구분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왕래·사회문화협력 : 5억원 이상 ○ 교역대출 : 30억원 이상, 경험대출 50억원 이상 ○ 교역손실보조 : 5억원 이상, 경험손실보조 : 20억원 이상 ○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용도 전부
경미한 사항 (시행규칙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왕래·사회문화협력 : 3억원 미만 ○ 교역대출 : 30억원 미만, 경험대출 50억원 미만 ○ 교역손실보조 : 5억원 미만, 경험손실보조 : 20억원 미만

통일부의 기금지원 결정통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기금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기금을 지원하고, 기금지원이 완료된 후 기금사용자로부터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사용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기금지원절차가 완료된다.



8) 정부는 기금투명성 제고차원에서 현행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기 위해 남북협력 기금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2장

인도적 지원

제1절 | 개 관

제2절 | 당국차원의 지원

제3절 |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제4절 |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제5절 | 평 가



제1절 | 개 관

인도적 대북지원 문제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와 식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남북관계, 북한의 인도적 상황, 재정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해 왔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당국차원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당국차원의 직접지원 방식을 통해서는 식량 및 비료 지원, 긴급 구호 지원을 하였다. 민간단체를 통해서는 농업환경,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기본적인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제기구를 통해서는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량, 의약품, 영양식 등을 지원하였다.

1995년부터 2008년 9월말까지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해 집행된 남북협력기금은 총 2조 2,679⁹⁾억원으로, 당국차원의 지원에 1조 9,839억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에 906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에 1,934억원이 사용되었다.

9) 인도적 대북지원 집행액 2조 2,679억원은 사업 익년도 부가세 환급액을 제외한 금액임.



제2절 | 당국차원의 지원

정부는 1995년부터 당국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수해 및 재해피해 복구, 전염병 및 산림 병해충 방제 등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식량, 비료, 긴급구호 지원에 남북협력기금 1조 9,839억원을 집행하였다.

1. 식량 지원

가. 추진배경 및 경과

북한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소련 등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대외 경제환경 악화로 외부 식량 도입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비료 및 농약의 부족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수해와 가뭄으로 인해 식량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5년 5월 일본을 방문중이던 북한 고위인사는 지속되는 식량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일본에 쌀 지원을 요청하면서 남측의 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정부는 5월 26일 통일원장관 명의의 대북성명을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고 철차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의하였다. 1995년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쌍방은 1차적으로 쌀 15만톤을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국내산 쌀을 지원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간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북한은 우리정부에 식량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되, 북한에 상환책임을 부과하는 차관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식량차관의 조건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민족간 거래이고 북한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은 차관 제공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하기로 하였다. 매년 식량차관 단가는 국제시세를 반영하여 북한 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조정되었다.

2000년에 시작된 차관방식의 식량 지원은 남북대화가 중단되었던 2001년과¹⁰⁾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었던 2006년을¹¹⁾ 제외하고 2007년까지 6차례에 걸쳐 지속되어 왔으며, 매년 지원 품목과 규모는 국내의 식량수급상황, 북한의 식량 부족량,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당국차원의 식량 지원은 먼저 북한의 지원요청에 따라 남북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합의하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차관 조건과 인도인수 절차, 수송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남북

10)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2001년 11월 9일~11월 14일, 금강산)이 대내외 정세의 영향으로 결렬된 이후 2002년 4월 특사 방북시까지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었다

11) 정부는 2006년 7월, 북한의 수해피해에 대해 긴급구호 차원에서 식량 10만톤을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간 식량차관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순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정부는 대북식량 지원시 국내산 쌀의 수급상황 조절을 위해 국내산 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으며, 국내의 높은 쌀 시세에 따라 국제가격과의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¹²⁾에서 보전을 받아 집행하였다.

정부는 2008년 9월말까지 총 285만톤의 식량을 지원하였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무상으로 2,248억원(25만톤), 차관으로 8,728억원(260만톤) 등 총 1조976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하였다.

나. 연도별 집행실적

정부의 대북식량 지원 규모는 북한의 식량수급사정과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매년 40~50만톤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1995년에 시작된 대북식량지원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에 따라 정부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하여 추진되었다. 1995년에 무상으로 지원된 국내산 쌀 15만톤은 해로를 통해 북한의 5개 항구로 전달되었다. 이러한 무상지원을 위해 1,854억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

2000년 정부는 외국산 쌀 30만톤과 옥수수 20만톤을 지원하였으며, 남북협력기금 1,057억원을 집행하였다. 톤당 차관단가는 남북당국간 합의에 따라 외국산 쌀 220달러, 옥수수 109달러로 결정되었다. 조달청을 통해 태국산 쌀과 중국산 옥수수를 구매하여 모두

12) 양곡관리법에 의거 정부가 양곡의 수급조절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양곡관리특별회계로부터 자산, 수입한 외국산 양곡 또는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었다.

해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다. 당국간 차관계약은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당국의 위임을 받은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었다.

2001년에는 남북 당국간 대화중단으로 식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2년부터 차관방식의 대북 식량지원이 재개되었다. 우리 측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인도회사로, 북측은 조선청길무역회사를 인수회사로 지정하여 식량차관의 인수인계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2002년과 2003년에 지원된 식량차관은 각각 국내산 쌀 40만톤으로, 톤당 단가는 265달러로 결정되었다. 이에 남북협력기금은 각각 1,510억원이 소요되었다.

2004년부터 육로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성과 고성지역 등 내륙지방에는 육로를 통해 지원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이후부터는 해로와 함께 육로가 활용되었다. 2004년과 2005년 차관단가는 톤당 300달러 수준으로 합의되었으며, 집행된 남북협력기금은 2004년이 1,359억원, 2005년이 1,787억원이었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발사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에서도 북한에 수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쌀 10만톤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쌀지원이 진행중이었던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함에 따라 지원이 유보되었다. 이러한 북한 수해로 인한 식량지원은 이듬해 2007년 3월 재개되었고 이에 총 394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되었다.

2007년에는 국내산 쌀 15만톤과 태국산 쌀 25만톤이 북한에 지원되었다. 차관단가는 국제곡물시세 등을 반영하여 톤당 380달러가 적용되었다. 2007년 식량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1,505억원이 집행되었다.

〈연도별 대북식량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지원내용	지원방식	운송경로 및 전달기간	지원금액
1995	국내산 쌀 15만톤	무상	해로 '95.6.25~10.10	185,435
2000	외국산 쌀 30만톤 중국산 옥수수 20만톤	차관	해로 '00.10~'01.3	105,695
2002	국내산 쌀 40만톤	차관	해로 '02.9~03.1	151,010
2003	국내산 쌀 40만톤	차관	해로 '03.7~'03.12	150,989
2004	국내산 쌀 10만톤 외국산 쌀 30만톤	차관	육로 '04.7~'04.10 해로 '04.9~'05.2	135,875
2005	국내산 쌀 40만톤 외국산 쌀 10만톤	차관	육로 '05.7~'05.10 해로 '05.7~'06.1	178,740
2006	국내산 쌀 10만톤	무상	해로 '06.8~'06.10 해로 '07.6.19~6.20	39,382
2007	국내산 쌀 15만톤 외국산 쌀 25만톤	차관	육로 '07.7~'07.8 해로 '07.7~'07.12	150,457
합계		-	-	1,097,583

한편, 정부는 분배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0년 식량차관 제공시부터 물품포장 겉면에 제공자를 표시하였다. 또한 우리측 인원이 직접 분배현장을 방문하여 북한의 양정사업소와 식량공급소 관계자 및 북한주민과 인터뷰하고 분배장면을 촬영하는 등 현장 참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분배결과서를 문건으로 통보받고 있다.

〈식량차관의 분배결과 확인 현황〉

구 분	제공자 표기	합의내용	분배결과 통보·확인	방문 지역	확인 인원 (1회)
2000년	쌀, 40kg Republic of Korea	분배투명성 보장	2차경협실무 접촉시(1회, '00.11)	평양	대표단 13)
2002년	쌀, 40kg 대한민국	○ 분배결과 통보: 4회 매10만톤당 30일 이내 통보 ○ 분배현장확인: 분배 결과 문건통보시점	○ 분배결과 통보 4회 ○ 분배현장 확인 2회('03.1)	남포	4명
2003년	쌀, 40kg 대한민국	○ 분배결과 통보: 4회 매10만톤당 30일 이내 통보 ○ 분배현장 확인: 매10만톤당 동서해지역 각각 1곳 이상	○ 분배결과 통보 4회 ○ 분배현장 확인 6지역 12회	청진 남포 흥남 해주 원산 평양	5명
2004년	쌀, 40kg 대한민국	○ 분배결과 통보: 4회 매10만톤당 30일 이내 통보 ○ 분배현장 확인: 매10만톤당 동서해, 내륙지역 각각 1곳 이상	○ 분배결과 통보 4회 ○ 분배현장 확인 6지역 10회	고성 개성 송림 남포 함흥 청진	5명
2005년	쌀, 40kg 대한민국	○ 분배결과 통보: 5회 매10만톤당 30일 이내 통보 ○ 분배현장 확인: 매10만톤당 동서해, 지역 각각 2곳	○ 분배결과 통보 5회 ○ 분배현장 확인 6지역 20회	개성 고성 남포 원산 청진 흥남	5명
2007년	쌀, 40kg 대한민국	○ 분배결과 통보:4회 매10만톤당 30일 이내 통보 ○ 분배현장 확인: 매10만톤당 동해지역 3곳, 서해지역 2곳	○ 분배결과 통보 4회 ○ 분배현장 확인 7지역 20회	개성 고성 해주 흥남 청진 남포 원산	5명

13) 남북경협실무접촉 회담대표단

2. 비료 지원

가. 추진배경 및 경과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전반적인 산업기반의 악화는 비료, 농약 등 농자재의 부족으로 이어져 곡물 생산량의 급격한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북한에 대해 정부는 곡물 생산을 증대시켜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한 비료지원을 해오고 있다.

1998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차관급 회담에서 쌍방은 이산가족과 비료지원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상호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로 회담은 결렬되었다. 그러나 1999년 북경에서 다시 접촉을 가진 남북 당국은 비료 20만톤 지원에 합의하고 그 중 10만톤이 전달되었으나,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잔여 10만톤은 전달되지 못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매년 30~40만톤 규모의 비료를 지원하였다. 비료지원은 남북장관급회담 등 당국간 회담을 통해 합의되었으며 지원 규모는 남북관계, 재정부담 능력, 북한의 비료수요,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비료전달은 사무위탁협약을 체결한 대한적십자사에 의해 대체로 봄철과 가을철 2차례 이루어졌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는 총 255만 5,000톤의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에 지출된 남북협력기금은 총 7,982억원이었다.

나. 연도별 집행실적

1999년 3월 1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대북 비료지원 국민모금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국민모금분에 대한 수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정부 지원분과 함께 남북협력기금에서 340억원을 집행하였다. 63명의 인도인원이 비료 15만 5,000톤을 21항차에 걸쳐 해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다.

2000년에는 봄철과 가을철로 나뉘어 각각 20만톤과 10만톤 등 총 30만톤의 비료가 지원되었다. 정부는 5월 6일 비료 20만톤 대북지원계획을 발표하였고 7월 13일에는 앞서 지원한 비료의 식량증산 효과 극대화과 정상회담 후 개선된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여 비료 10만톤 추가지원을 결정하였다. 30만톤의 비료는 42항차에 걸쳐 전달되었으며 126명의 인도인원이 참여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은 944억원이 소요되었다.

2001년 4월 3일 UNDP는 북한의 영농개시를 위해 시급히 비료가 필요하다고 발표하고 우리 정부에 지원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어 북한은 4월 19일자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비료 20만톤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4월 26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식량증산을 위해 비료 20만톤 지원을 결정하였다. 72명의 인도인원이 24항차로 나누어 참여하였으며 남북협력기금 639억원이 집행되었다.

2002년 4월 3일부터 4월 6일간 대통령특사 방북시 북한은 우리의 식량 및 비료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비료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2001년 수준인 20만톤의 비료지원을 추진키로 지원방침을 정하였고 8월 27일부터 열린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가을철 비료 10만톤 추가 지원에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2002년에는 총 30만톤의 비료가 지원되었으며, 비료전달에는 37항차 148명의 인도인원이 참여하였다. 20만톤 지원에 564억원, 10만톤 지원에 269억원 등 총 833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되었다.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비료 30만톤이 지원되었는데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의 지원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사전 보고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되었다. 봄철 비료 20만톤과 가을철 비료 10만톤이 울산·군산·여수·포항에서 해주·남포·원산·홍남·청진 등으로 전달되었다. 2003년 비료 지원을 위해 836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되고, 2004년 비료 지원을 위해 972억원이 집행되었다.

북한은 2005년 1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측에 비료지원을 지속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5월 16일 개최된 남북차관급회담에서 북한의 요청을 수용하여 비료 20만톤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북한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05.6.21~6.24)에서 가을철 비료 15만톤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만성적인 비료부족에 따른 식량난 완화를 위해 이를 수용하였다. 한편, 2005년 비료수송에는 경의선이 처음으로 이용되어 3만톤의 비료가 경의선을 통해 개성 봉동역으로 수송되었으며, 해로를 통한 비료 수송에 북한 선박이 참여하였다. 비료 20만톤 지원에 692억원, 15만톤 지원에 566억원 등 총 1,258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되었다.

2006년에는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봄철비료 15만톤(2.28~4.10)과 가을철 비료 20만톤(5.15~7.10)이 지원되었다. 정부는 북한이 시비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함에 따라 북한 선박을 11개 항차에 투입하였다. 2006년의 비료전달을 위해 52항차에 거쳐 187명의 인도인원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비료 15만톤 지원에 517억원, 20만톤 지원에 683억원 등 총 1,2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소요되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06.7.5)로 유보되었던 당국 차원의 비료 지

원 논의가 2007년 2월 13일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2.13 합의」가 도출된 이후 재개되어 남북은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07.2.27~3.2)에서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북한은 2007년 3월 21일 우리측에 비료 지원을 요청해 왔으며,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와 국회 사전보고 후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비료 30만톤의 지원을 결정하였다. 이는 북한 미사일 발사('06.7.5) 이후 재개된 첫 번째 당국차원의 지원이었다. 이러한 비료지원을 위해 39항차에 156명의 인도인원이 참여하였으며, 962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되었다.

〈대북 비료지원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지원규모	승인액	집행액
1999	15,5만톤	5,5만톤	18,000
		10만톤	70,000
2000	30만톤	20만톤	66,000
		10만톤	33,000
2001	20만톤	70,000	63,863
2002	30만톤	20만톤	66,000
		10만톤	33,000
2003	30만톤	20만톤	65,000
		10만톤	30,600
2004	30만톤	20만톤	69,800
		10만톤	39,838
2005	35만톤	20만톤	90,154
		15만톤	61,650
2006	35만톤	15만톤	58,706
		20만톤	76,594
2007	30만톤	108,000	96,160
합계	255,5만톤		798,195

북한은 비료지원을 요청하면서 주로 질소질 함유량이 높은 비종을 요구하였다. 비료 지원 규모와 비종 선정은 정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유안, 요소, 복합비료가 1:2:7의 비율로 지원되었다.

〈대북 비료지원 비종별 규모〉

(단위 : 만톤)

연도	복합	요소	유안	이삭	용성	합계
1999	9.5	3.2	1.5	-	1.3	15.5
2000	10	6	1	3	-	20
	3.6	4	0.5	1.9	-	10
2001	11	8	1	-	-	20
2002	12	7	1	-	-	20
	5.5	1.5	0.5	2.5	-	10
2003	16	2.8	1.2	-	-	20
	8.1	1.4	0.5	-	-	10
2004	16	2.8	1.2	-	-	20
	8.1	1.4	0.5	-	-	10
2005	16	3	1	-	-	20
	8.95	1.4	0.75	3.9	-	15
2006	12.2	1.5	1.3	-	-	15
	16	2	2	-	-	20
2007	24.1	2.3	3.6	-	-	30
계 (비율)	177.05 (69.3%)	48.3 (18.9%)	17.55 (6.9%)	11.3 (4.4%)	1.3 (0.5%)	255.5

3. 긴급구호 지원

가. 추진배경 및 경과

정부는 자연재해, 전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북한이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인도적·동포애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지원해 오고 있다.

정부의 긴급구호 지원은 2001년과 2002년의 동내의 지원을 시작으로 2004년 4월 22일 평안북도 용천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사고 지원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산림 황폐화 등으로 여름철 홍수에 의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2005년부터 수해복구를 위한 물자와 장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북한지역에서 2005년 조류인플루엔자, 2007년 성홍열 및 구제역, 산림병충해 등 발생시 각종 약품과 장비를 긴급구호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긴급구호 지원을 위해서 총 993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나. 연도별 집행실적

(1) 2001년·2002년 동내의 지원

2000년말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북녘동포 내복보내기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동절기 에너지난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북한주민의 어려움과 북한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동내의 지원운동

을 전개하였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2001년 2월 14일 국민과 대북 지원 단체의 참여를 요청하였고, 국회도 정부의 적극적 대책장구를 요구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동내의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동내의 지원은 제7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1.3.12)와 제10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2.12.4)에서 의결되어 2001년과 2002년에 추진되었다.

2001년에는 아동용 2만벌 등 총 152만벌의 동내의 지원을 위하여 45억 9,4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되었다.

〈2001년 대북 동내의 지원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승인액	집행액	비고
내의구입 및 수송비	4,600	4,594	
예비비	200		
계	4,800	4,594	

2002년에는 총 188만 3천벌이 지원되었으며,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43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02년 대북 동내의 지원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승인액	집행액	비고
내의 구입	4,600	4,181	
수송비 등 부대비용	280	198	
계	4,880	4,379	

(2) 2004년 용천재해 지원¹⁴⁾

북한은 용천에서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사고 사실과 원인 및 규모를 발표하는 한편, 유엔인도지원국(UNOCHA) 평양지부, 중국 및 평양 주재 외교공관에 사고내용을 설명하고 수습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정부에도 당시 방북 중이던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성금과 물품 기탁 등 일반국민은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북한을 돕는데 의견이 일치되어 4월 28일 의약품, 라면, 생수와 모포 등의 긴급구호품을 실은 첫배가 출항하였다. 한편, 4월 27일 개성에서 열린 용천재해 구호회담에서 북한은 철근, 시멘트, 건설장비 등 복구용 자재장비 13개 품목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당국차원에서는 긴급구호보다 복구에 비중을 두고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 정부는 제12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4.4.28)에서 긴급구호사업으로 구호품 지원 14억 9,100만원, 의료진 및 병원선 파견 경비 6억 5,400만원, 예비비 1억 8,600만원 등 총 23억 3,100만원의 지원을 결정하였다. 이중 집행된 남북협력기금은 14억 6,000만원이었다.

〈2004년 북측 용천재해 긴급구호 지원사업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승인금액	집행금액	비고
구호품지원	1,491	1,460	긴급구호품 472, 의약품 472, 수송 및 부대경비 236
의료진 및 병원선 파견 경비	654	-	의료진 체재비 및 부대경비 300, 병원선 운영 및 부대경비 354
예비비	186	-	민간기증 구호물품 수송지원 등
계	2,331	1,460	

※ UNICEF에 공여한 20만달러는 국제기구편에서 기술

14) 용천재해 지원의 상세한 내용은 「용천재해 지원백서」(2004년, 대한적십자사)를 참조

5월 7일부터 용천재해에 대한 구호물자 수송이 판문점과 개성간 육로를 통해 8톤 덤프트럭 20대와 책·결상 1,500조 등 교구비품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재해물자의 수송은 사고지역인 용천까지의 전달을 위해 인천에서 단동까지는 해로를 통해 단동에서 신의주를 거쳐 사고지역인 용천까지 이루어졌다. 8월 18일, 인천과 단동간 해로를 이용한 고무방수판 5만㎡와 아스팔트 피치 1,000톤의 전달을 마지막으로 17개 품목의 물자가 용천지역 복구를 위해 긴급 지원됨으로서 약 3개월 반만에 전달이 완료되었다.

한편, 정부는 4월 29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북측에서 요청한 구호복구용 자재·장비 15종의 구매와 전달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성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을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13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4.11.9)를 개최하여 국민성금 모금액과 지원에 소요된 비용 차액에 대해 15억 7,3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 중 15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04년 용천재해 복구용 자재·장비에 정산 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수입	금액	지출	금액
국민모금분	17,028	자재장비 구매	19,205
부가세 환급	744	상황실 운영비 등	20
		인도경비 및 부대비용	112
소계	17,772	소계	19,337
차액(기금지원분)			1,565

(3) 2005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원

정부는 2005년 3월 27일 조선중앙통신 발표를 통해 북한에서 조

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북한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측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14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5.4.15)를 개최하여 긴급지원 7억원, 추가지원 12억원 및 예비비 2억원 등 총 22억 3,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북측이 제기한 46개 품목과 우리측이 추가 제공의사를 밝힌 66개 품목이 지원되었으며, 남북협력기금 12억 3,200만원이 집행되었다. 지원 물자는 인천과 남포간 정기선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전달되었다.

〈2005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지원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승인금액	집행금액	비고
방역약품 및 장비	730	730	아외진단키트(동물용 2만마리) 복합산성제제(3종염, 18천개) 소독방제차량(2대), 분무기(220대)
기술지원협의회후 품목 추가	1,273.6	474	신속진단키트 등 진단·방역 품목
해상운송료·행정비	40	28	
예비비	186.7	-	
계	2,230	1,232	

(4) 2005년 · 2006년 · 2007년 수해복구 지원

북한은 산림황폐화 등으로 인해 2005년부터 매년 수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5년, 2006년, 2007년에 북한의 수해피해에 대해 긴급 구호물자와 복구 자재장비를 지원하였다.

2005년의 경우 정부는 대북 수해지원과 관련 제15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5.7.29)에서 북한의 수해복구를 위해 2억 1,500만원 상당의 응급구호품, 담요, 비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응급

구호품 등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1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05년 북한 수해이재민 응급구호품 지원 자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승인금액	집행금액	비고
물품구입비	210	189.6	소독약, 소혈청 일부민, 등 18종
수송비 및 기타경비	3.8	3.9	수송비 3,000천원, 상·하차비 600천원, 통관비 200천원
예비비	1.2	-	
계	215	193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정부의 쌀·비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7월초 북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민간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수해지원을 촉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제17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6.8.25)를 개최하여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00억원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쌀(10만 톤) 400억원, 긴급구호물품 20억원, 복구자재장비 313억원 및 예비비 30억원 등 총 863억원의 지원을 의결하였다.

긴급구호 및 복구장비로 구호세트 1만개와 시멘트 10만톤, 철근 5만톤 등을 전달하던 중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달이 중단 되었으나, '07년 3월 28일부터 지원이 재개되어 잔여물자(시멘트 70,415톤, 철근 1,200톤, 트럭 50대와 모포 6만장) 전달이 6월 25일에 완료되었으며, 남북협력기금은 총406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06년 북한 수해이재민 응급구호품 지원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승인금액	집행금액	비 고
민간단체지원	10,000	10,000	구호식량(밀가루·옥수수·라면 등), 기초의약품, 생필품, 긴급구호품 등
복구자재장비	25,200	23,241	트럭100대, 굴삭기 50대, 페이로더 60대, 시멘트 10만톤, 철근 5만톤
긴급구호물품	700	452	모포 8만장, 긴급구호세트 1만개, 의약품 등
부대경비	7,400	6,955	자재장비 수송비 등
예비비	3,000	-	
계	46,300	40,648	

* 국내산 쌀 10만톤(394억원)은 식량지원 금액에 포함

2007년 8월 북한에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제192차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07.8.22)를 개최하여 당국차원에서 75억원 상당의 비상식량, 취사도구 및 연료, 생활용품, 응급 구호세트, 의약품 등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지원물품은 8월 23일에서 8월 30일간 인천-남포 정기선을 이용하여 수송되었으며 남북협력기금 68억 6,7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07년 대북 수해피해 지원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승인금액	집행금액	비 고
긴급구호물품	6,500	3,483	
부대경비	1,000	384	
민간단체	3,000	3,000	
계	10,500	6,867	

또한, 정부는 같은해 8월 21일 북한이 유실된 도로 및 주택 등의 복구를 위한 자재장비 지원을 추가로 요청해 옴에 따라 제193차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07.9.3)를 개최하여 시멘트(10만톤), 철근(5만

톤), 피치(2만톤), 경유(500톤), 트럭(80대) 등 총 474억 4,000만원 상당의 자재장비를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2007년 9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지원물자를 전달하였으며, 총 335억 2,9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2007년 대북 수해복구 및 긴급구호 지원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승인금액	집행금액	비 고
복구자재	30,400	21,228	시멘트 10만톤, 철근 5천톤, 피치2만톤, 경유 500톤
복구장비	7,000	4,606	트럭8톤 20대, 트럭5톤 60대, 평토 다짐기 등 중장비 20대
수송비 및 부대경비	10,000	7,695	
총계	47,400	33,529	

※ WHO, UNICEF에 공여한 2,000만달러는 국제기구편에서 기술

(5) 2007년 성홍열 지원

2006년 10월 북한의 북부내륙 지역에서부터 발생한 성홍열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2007년 2월 9일 제18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2.12)를 개최하여 민간단체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4억원 상당의 완제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중 3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07년 성홍열 지원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승인금액	집행금액	비 고
물품대(원료, 완제의약품)	390	394	아목사실린, 유당 등 2,500Kg, 치료 항생제·종합비타민 세트 등 1,587,300/cap
수송비	10	5	해상운송료 등
계	400	399	

(6) 2007년 구제역 방역지원

정부는 국제기구(FAO, OIE)를 통해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년 3월 9일 지원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3월 14일 구제역 발생 경위와 피해상황을 알려오면서 구제역 방제에 필요한 약품과 장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측의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우리측 지역으로의 유입방지를 위해 제18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3.22)를 개최하여 약품 16억 2,000만원, 장비 14억 5,500만원, 수송 및 행정비 9,000만원, 예비비 1억 3,500만원 등 총 33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품 22종과 방제 장비 29종을 북한에 지원하였으며, 남북협력기금 26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07년 구제역방역 지원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승인금액	집행금액	비 고
약 품	1,620	1,145	소독약, 소혈청 일부민 등 18종
장 비	1,455	1,434	분무기, 멸균기 등 19종
수송비	30	29	해상운송료 등
행정비	60	33	인도인원 경비, 기술지원단 방북경비, 통관수수료 등
예비비	135	-	
계	3,300	2,641	

(7) 2007년 산림병충해 방제 지원

북한은 2007년 5월 8일 개성에서 개최된 산림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솔나방 등 산림병충해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방

제에 필요한 약품과 장비, 기술적 자료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정부는 북한 산림병충해 피해 확산 방지의 시급성과 남북간 산림병충해 공동방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1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5.15)를 개최하고, 방제약품 및 소모품 13억 7,000만원, 장비 3억 8,000만원, 수송비 및 행정비 1억원, 예비비 5,000만원 등 총 19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5월 30일 인천-남포간 정기선을 통해 연무소독기, 디프액제 등 방제 장비와 약품 16종이 전달되었으며, 8월 30일 소나무숨꼭지벌레 방제를 위한 약품과 장비 지원 등을 마지막으로 산림병충해 방제지원이 완료되었다. 한편, 우리 기술진이 6월 8일부터 평양 인근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기술지도, 공동방제 작업을 실시하였다. 산림병충해 방제 지원을 위해 17억 9,5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2007년 산림병충해 방제지원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승인금액	집행금액	비 고
약품 및 소모품	1,370	1,369	디프액제, 방제복 등
장 비	380	347	연무소독기, 동력천공기 등
수송비	32	32	해상운송료 등
행정비	68	47	인도인원 경비, 기술지원단 방복경비, 통관수수료 등
예비비	50	-	
계	1,900	1,795	



제3절 |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¹⁵⁾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성화 및 정책적 필요에 따라 2000년부터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사업들을 사업의 성격, 추진주체 및 방식 등에 따라 개별사업¹⁶⁾, 합동사업¹⁷⁾, 정책사업¹⁸⁾ 및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906억원¹⁹⁾을 지원하였다.

1. 개별사업

가. 추진배경 및 경과

1995년부터 시작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해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재정확보

15)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의 상세한 내용은 「대북지원 10년백서」(2005년,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를 참조

16) 1개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매칭펀드 형태로 기금 지원

17) 3개단체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북한의 자립·자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매칭펀드 형태로 기금지원

18)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파급효과가 큰 개발지원성 사업으로서 정부가 민간단체에게 전액 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

19)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제외한 금액임.

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1999년 10월 21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부터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지원사업의 시급성, 북한 수혜대상과 분배지역, 분배투명성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대북지원사업자가 추진하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2000년부터 2008년 9월까지 50개 민간단체 242개 개별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614억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개 단체의 대북지원 농축산물 수송비²⁰⁾에 대해 111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다.

나. 연도별 집행실적

(1) 2000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젓염소목장 설치사업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해 54억 1,4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여, 그 중 7개 사업에 대해 33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다.

(2) 2001년

국제옥수수재단의 「옥수수 증산 및 종자개량 지원」 등 16개 사업에 대해 75억 7,4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여, 그 중 15개 사

20)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의 굴 지원 수송비 86억 6,300만원('02~'08), 농협중앙회의 사과·배 지원 수송비 24억 1,900만원('01), 우리민족서로돕기 닭고기 지원 수송비에 3,200만원('04년)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였다.

업에 대해 38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다.

(3) 2002년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의 「어린이 건강증진 및 질병퇴치지원」 등 16개 사업에 대해 76억 5,700만원의 기금 지원이 의결되고, 17개 사업에 54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다.

(4) 2003년

유진벨의 「결핵퇴치 지원」 등 16개 사업에 대해 47억 4,000만원의 기금 지원이 의결되고, 20개 사업에 대해 75억 4,7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²¹⁾

(5) 2004년

남북나눔의 「어린이영양식 지원」 등 25개 사업에 대해 98억 6,700만원의 기금 지원이 승인되어, 그 중 23개 사업에 대해 88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다.

(6) 2005년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의 「정수 및 소독 지원」 등 30개 사업에 대해 113억 6,800만원의 기금 지원이 승인되어, 그 중 27개 사업에 77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다.

21) 2003년도에 기금 승인액 보다 기금 집행액이 더 큰 이유는 2002년도에 승인된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중 2003년도로 이월된 사업의 집행실적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7) 2006년

나눔인터내셔널의 「약품 및 의료기자재, 보육용품 지원」 등 47개 사업에 대해 108억 6,100만원의 기금 지원이 승인되어, 그 중 34개 사업에 80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다.

(8) 2007년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어린이 영양식 및 의료지원」 등 44개 사업에 대해 115억 3,800만원의 기금 지원이 승인되고, 48개 사업에 대해 123억 9,900만원이 집행되었다²²⁾.

(9) 2008년

남북나눔의 「어린이 영양식 공급 및 성장발육」 등 40개 사업에 대해 100억 6,400만원의 기금 지원이 승인되고, 9월말 현재 30개 사업에 대해 41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다.

〈개별사업 연도별 기금 승인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승인액 (사업수)	5,414 (8개)	7,574 (16개)	7,657 (16개)	4,740 (16개)	9,867 (25개)	1,1368 (30개)	10,861 (47개)	11,538 (44개)	10,064 (40개)	79,083 (242개)
집행액	3,379	3,843	5,448	7,547	8,828	7,778	8,076	12,399	4,155	61,453

22) 2007년도에 기금 승인액보다 기금 집행액이 더 큰 이유는 2006년도에 승인된 지원사업 중 2007년도로 이월된 사업의 집행실적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개별사업 단체별 기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단체명	사업내용	연도별 집행액									
		'00	'01	'02	'03	'04	'05	'06	'07	'08	소계
경남통일 농업협력회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	0	0	0	0	0	0	0	64	42	106
국제 라이온스 협회	안과병원 건립 및 운영	0	0	0	0	0	207	0	24	0	231
국제옥수수 재단	옥수수 증산, 신품종 개발	862	4	698	710	171	229	137	44	170	3,025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젓소, 닭목장, 육아원, 의료지원	61	421	742	1,575	854	806	599	725	22	5,805
YMCA 그린닥터스	개성병원 의약품, 의료기기 지원	0	0	0	0	0	0	0	37	0	37
니눔 인터내셔널	병원현대화, 의료협력센터 지원	0	0	0	0	0	0	299	907	92	1,298
남북강원도 협력협회	연어부화, 산림방제	0	0	0	701	16	0	0	591	0	1,308
남북니눔 공동체	영유아 이유식 등 지원	0	0	0	0	0	0	0	115	328	443
남북니눔	어린이영양 (국수, 채소)	0	263	361	843	535	1,014	298	630	212	4,156
남북농업발전 민간연대	씨감자 재배	0	189	161	107	335	32	227	70	70	1,191
남북민간교류 협의회	사료공장, 사료 첨가제 등 지원	0	0	0	0	0	0	393	113	141	647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어린이 영양, 의료시설 지원	0	122	372	537	1,296	634	430	528	355	4,274
남북함께 살기운동	산림집 개보수 사업	0	0	0	0	0	0	0	226	62	288

단체명	사업내용	연도별 집행액									소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농협중앙회	콩종자, 양동장 지원	0	0	0	0	0	419	159	0	92	670
대한결핵협회	결핵퇴치약품 등 지원	0	0	0	0	0	36	0	0	34	70
대한의공협회	의료기기	0	0	0	0	0	0	56	86	8	150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의료기기 지원	0	0	0	0	32	59	0	0	0	91
등대복지회	밀가루, 콩우유, 의료품 지원	0	0	0	0	0	0	339	390	199	928
민족사랑나눔	빵, 의료용품 지원	0	0	0	0	0	0	14	44	120	178
북고성군농업협력단	온실지원	0	0	0	0	0	0	24	14	11	49
새마을운동중앙회	농기자재(손수레, 비닐 등)	0	262	396	130	75	30	0	0	0	893
새천년생명운동	보일러 지원	0	0	0	0	0	42	37	104	85	268
샘복지재단	제약공장 건립, 왕진기방 지원	0	0	0	0	0	0	0	238	0	238
굿피플	의약품, 공기름 착유시설	0	0	0	116	0	169	81	0	73	439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0	0	0	142	259	512	515	605	0	2,033
어린이재단	육아원, 의료기자재, 급식(빵)	0	0	0	0	406	431	1	573	199	1,610
연탄나눔운동	연탄, 면장갑	0	0	0	0	0	0	209	354	65	628

단체명	사업내용	연도별 집행액									
		'00	'01	'02	'03	'04	'05	'06	'07	'08	소계
우리거래 하나되기 운동본부	빵, 국수공장 지원	0	0	0	0	0	0	286	729	0	1,015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농기계, 병원, 제약공장 지원	286	539	1,237	60	1,405	390	779	160	491	5,347
원불교	급식(빵) 지원	0	0	0	90	299	348	172	160	163	1,232
월드비전	종자개량 (감자, 채소, 과수 등)	788	434	247	497	342	250	720	421	559	4,258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기자재 지원(인쇄기 등)	0	0	0	0	0	0	0	168	78	246
유진벨재단	결핵퇴치 약품 등	792	1,000	0	1,305	986	585	595	934	0	6,197
장미회	중앙, 간질 등 의료지원	0	0	0	0	0	0	0	226	92	318
조국평화 통일 불교협의회	급식(국수) 지원 등	0	39	94	79	255	296	191	245	0	1,199
참여불교 운동본부	밀가루, 신발, 옷 등 지원	0	0	0	0	0	0	0	119	0	119
천주교서울대 교구민화위	급식(국수), 의류, 풍기름공장 등	0	132	341	286	233	276	179	142	115	1,704
통일준비 네트워크	친환경 순환농업지원 사업	0	0	0	0	0	0	0	0	67	67
통일연합 종교포럼	주택개보수 지원	0	0	0	0	0	0	0	0	12	12
평화3000	콩우유, 왕진가방 지원 등	0	0	0	0	0	0	74	295	0	369

단 체 명	사업내용	연도별 집행액									소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평화문제 연구소	급식 및 구제병원 지원	0	0	0	0	0	0	1	32	20	53
평화의 숲	산림녹화, 양묘장, 밤나무 지원	0	0	0	55	86	89	152	20	0	402
한겨레 영농조합 법인	무균종자 시범농장	0	0	0	0	0	0	0	444	0	444
한겨레 통일문화 재단	교육기자재 (인쇄기, 복사기) 지원	0	0	0	0	0	0	0	344	0	344
한국건강 관리협회	어린이 보건지원	0	0	0	0	0	71	72	77	0	220
한국국제 기아대책 기구	수액제공장, 병원건립 등	0	0	0	0	645	287	40	260	178	1,410
한국대학생 선교회	젓염소 지원	0	0	0	0	301	151	0	140	0	592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아동급식	0	0	167	0	0	0	0	0	0	167
한국JTS	영양식, 농업개발, 의약품 지원	412	311	297	265	170	218	292	499	0	2,464
한국YMCA 전국연맹	통일 자전거	0	0	0	0	0	0	50	34	0	84
한민족 복지재단	급식(빵), 의료, 농업생산 향상	178	127	335	49	127	197	655	293	0	1,961
21세기 통일봉사단	식생활 지원	0	0	0	0	0	0	0	175	0	175
개별사업 합계		3,379	3,843	5,448	7,547	8,828	7,778	8,076	12,399	4,155	61,453

※ 집행액=전년도 사고이월 집행액 + 당해년도 집행액

〈농축산물 수송비 지원 기금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단체명	사업명	연도별 집행액								합계
		'01	'02	'03	'04	'05	'06	'07	'08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 본부	굴 지원 수송비	0	1,035	542	1,381	1,587	1,666	493	1,959	8,663
농협중앙회	사과·배 지원 수송비	2,419	0	0	0	0	0	0	0	2,419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닭고기 지원 수송비	0	0	0	32	0	0	0	0	32
합 계		2,419	1,035	542	1,413	1,587	1,666	493	1,959	11,114

2. 합동사업

가. 추진배경 및 경과

1990년 중반 이후 10여년간의 대북지원 추진과정에서 긴급구호 차원의 일회성 지원 이외에 북한의 자립·자활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9월 정부와 민관이 공동으로 대북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의견을 협의하기 위해 통일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상임운영단체로 구성된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정부는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정부의 재원과 민간단체의 경험을 결합하여 민간단체들이 대북지원사업을 합동으로 추진하는 민간단체 합동사업에 대해 2005년부터 매칭펀드 방식

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이러한 합동사업 지원에 2005년 10억 4,700만원, 2006년 29억 2,300만원, 2007년 47억 3,600만원 등 총 87억 600만원의 남북협력 기금이 집행되었다.

나. 연도별 집행실적²³⁾

(1) 2005년

남북어린이어깨동무(6개단체 컨소시엄 구성)가 주관하는 강남군 보건·복지사업 등 5개 사업에 49억 6,000만원의 기금지원을 승인하였고, 그 중 1개 사업에 10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다.

(2) 2006년

남북나눔(4개단체 컨소시엄 구성)이 주관하는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에 47억 3,000만원을 기금지원을 승인하였고, 그 중 5개 사업에 29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다.

(3) 2007년

나눔인터내셔널(5개단체 컨소시엄 구성)이 주관하는 보건의료체계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37억 6,000만원을 기금지원을 승인하였으며, 5개 사업에 47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다.

23) 집행액=전년도 사고이월분 집행액 + 당해년도 집행액

〈합동사업 기금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주관단체명	사업명	연도별 집행액			
			2005	2006	2007	소계
1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축산사료 지급사업, 종합복지사업	0	1,041	1,204	2,245
2	나눔인터내셔널	보건의료체계 개선사업	1,047	433	1,716	3,196
3	남북나눔운동	주거환경개선사업	0	500	1,043	1,543
4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모자보건 복지사업	0	783	0	783
5	한국국제기아 대책기구	보건·식수환경 개선사업	0	166	273	439
6	한민족복지재단	복토직파 농업협력 증진사업	0	0	500	500
합동사업 합계			1,047	2,923	4,736	8,706

3. 정책사업

가. 추진배경 및 경과

정부는 당국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면서 파급효과가 큰 개발지원성 사업은 민간단체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7년부터 이러한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정하고 사업비 전액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2007년에 북한산림녹화 시범사업, 북한의료인력 교육훈련사업, 제약공장 원료 지원사업, 못자리용 비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선정하고 총 33억 6,000만원의 기금을 지원결정하여 29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08년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결핵관리사업, 의료인력 교육사업, 제약공장 의약품 생산 협력사업과 「겨레의 숲」의 산림녹화 시범사업 등 4개 사업 43억 3,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사업별 집행실적

(1) 못자리용 비닐 지원사업

2007년 북한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를 통해 못자리용 비닐 3,000만²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자율적으로 1,000만²를 자체자금으로 조달하기로 하고 정부에 2,000만²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10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된 기금은 전액 집행되었다.²⁴⁾

(2) 제약공장 원료 지원사업

2006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북한 제약공장 원료 지원의 중요성과 시급성,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주관으로 보건의료 분야 정책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2007년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전액 집행하였다.

(3) 산림녹화 시범사업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산림분야 민간단체의 통합기구인 「겨레의 숲」을 구성하였다. 「겨레의 숲」은 북한 산림녹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기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양묘장 조성, 조림, 병충해 방제, 기술교류 등 산림

24) 못자리용 비닐 지원사업은 정책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는 못하나 북측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에 요청한 점을 고려하여 2005년 15억 9,100만원, 2006년에 6억 8,300만원을 동 단체를 통해 지원

녹화 사업이 북한 황폐산림 복구와 한반도 자연생태환경 보존 등을 위해 중장기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감안하여 산림협력 기반조성 성격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18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3.22)을 개최하여 남북협력기금 13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원 결정된 금액은 전액 집행되었다.

(4) 북한 의료인 교육훈련사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독일 NGO 단체인 독-조의학협회(German - North Korean Medical Association)와 공동으로 독일 현지병원에서 향후 5년간 매년 10명씩 북한 의료인 훈련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정부는 제18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6.28)를 열어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상황 개선과 보건의료 체계 복구 차원에서 소요경비 1억 1,500만원중 북한의사 체류경비 등 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8년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10억 8,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책사업 기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단체명	사업명	연도별 집행액			
			'05	'06	'07	'08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제약공장원료 지원사업	-	-	600	400
2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거래의숲	산림녹화시범사업	0	0	1,300	0
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17개단체컨소시엄)	산림녹화시범사업	0	0	0	375
4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봄철 못자리용 비닐지원사업	1,591	683	1,014	0
총 계			1,591	683	2,914	775

4.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가. 추진배경 및 경과

북한의 식량난은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인도적 지원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05년 3월 「북한 영유아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5개년의 중장기적 사업으로 정부·국제기구·민간단체들을 통해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의 영양개선, 질병관리, 건강관리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이하 UNICEF)를 통하여 추진되었다.

민간단체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006년에 6개 컨소시움이 북한과 협의를 진행하여 이중 5개 컨소시움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2007년에 북한과 합의하여 2008년 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영유아 지원사업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제1차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에서 협의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진행으로는 연결되지 못하였다.

나. 주체별·연도별 집행실적

(1) WHO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정부는 2006년-2007년 2년간의 WHO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

해 WHO와 협약서를 체결('06.3.28)하였다.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제16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6.2.8)에서 1,068만달러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지원내역은 의료설비·자재 및 의료소모품, 역량개발사업, 사업관리 및 행정경비 등이다.

당초 북한에 지원할 물품을 우리 정부가 구매하여 북한으로 수송하기로 하였으나, 지원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외국산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경우도 많아 앰블란스만 국내에서 구매하여 지원하고, 나머지 물품은 WHO에 현금으로 기탁하여 구매하였다.

한편, WHO은 남북한과 함께 WHO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중간점검과 평가를 위한 회의를 2006년 10월 북경에서 개최하였다.

2007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제18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4.30)에서 938만달러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지원내역은 2006년과 마찬가지로 의료설비·자재 및 의료소모품, 역량개발사업, 사업관리 및 행정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WHO는 북한 전역에서 매년 10개 군단위 병원의 수혈과 현대화, 30개 군단위 병원의 수술장·분만실 현대화, 1,200개 리단위 진료소 키트 및 3,000개 호 담당의사 가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보건의료 인력의 교육강화를 위한 아동 질병통합관리프로그램(Integrated Management of Child Illness, IMCI)²⁵⁾을 시범적으로

25) IMCI(Integrated Management of Child Illness) : 5세 미만 아동의 사망, 질병 이환 및 장애 감소와 성장 발달의 향상을 위해 1996년 WHO와 UNICEF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국가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변화(적절한 의뢰 체계 및 적절한 진단 및 치료 기능 확보 등), 1차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의료 기관 및 중증 질환 아동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인력이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실제 임상현장에서 적절한 서비스(진단, 치료, 부모 상담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실시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였다.

2007년 사업의 중간점검 및 평가회의는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인도 델리에서 개최되었다.

정부와 WHO는 2008년~2010년 3년간의 WHO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 대해 협약서를 체결('07.12.17)하였으며, 3년간의 총 지원액은 3,617만달러 규모이다.

2008년 사업에 대해서는 제20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8.5.15)에서 1,027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지원내역은 2007년과 마찬가지로 의료설비·자재 및 의료소모품, 역량개발사업, 사업관리 및 행정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사업의 경우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해 WHO가 사업 시행 전에 북측 현지에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우리측 전문가의 사업참여도 추진해 줄 것을 WHO와 협의하고 있어, 기금집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8년 3월 6일부터 9일까지 WHO와 남북이 함께 참석하는 점검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어, 2007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2008년 사업추진 내용을 협의하였다.

〈2006~2007년 WHO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지원내역〉

연도	승인액 (만달러)	집행액 (백만원)
2006	1,068	9,305
2007	938	9,168
2008	1,027	-
합계	3,033	18,473

훈련 및 표준 교육자료와 임상지침 개발, 적절한 진단, 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의 지원 등을 포함한다.

(2) 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정부는 2006년 UNICEF의 지원사업에 대해 제17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6.6.13)에서 223만달러 상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내역은 영양개선, 번역사업, 산모관리(분만 및 수술장비), 필수약품, 식수공급, 운송비 등이다. UNICEF가 요청한 내용 중에서 UNICEF가 원래 지원해오던 교육비 및 교육기자재 총당비용 등은 WHO의 북한 의료인력 역량강화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배제되었다.

2007년에 사업에 대해서는 제18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4.30)에서 315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지원내역은 번역사업, 필수약품, 복합미량영양제, 치료용 특수분유, 식수공급·위생개선 사업,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등이다.

2008년의 경우 제20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8.5.15)에서 407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지원내역은 번역사업, 필수약품, 복합미량영양제, 치료용 특수분유, 식수공급·위생개선 사업 등이며, 북한의 예방접종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UNICEF 사업계획보다 번역체계 개선사업의 지원비중을 상향조정하였다.

〈2006~2007년 UNICEF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지원내역〉

연도	승인액(만달러)	집행액(백만원)
2006	223	2,164
2007	315	2,938
2008	407	4,662
합 계	538	9,764

(3) 민간단체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민간단체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의 경우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9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7.27)에서 17억원을, 남포시와 대안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4개 민간단체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제1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10.1)에서 88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우리측 전문가의 북측 현장 실사, 북측의 자료제출 등의 문제로 인해 본격적인 사업은 2008년에 집행되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 34억원이 집행되었다.



제4절 |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1. 추진배경 및 경과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증대, 국제기구의 분야별 전문성, 북한 현지 상주사무소 운영과 현지 모니터링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에 현금으로 공여하거나, 물건을 직접 구매하여 북한에 제공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북한내 사업은 국제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1996년부터 2008년 9월까지 8개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총 1,934억원²⁶⁾을 지원하였다.

26)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포함한 금액이다.

2. 연도별 집행실적

가. 1996년

(1) 세계기상기구를 통한 기상장비 지원

북한은 1995년 7~8월 홍수로 인한 수해 복구를 위하여 UN 재해지원국에 긴급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이하 WMO)는 1996년 3월 자체 보유기금으로 북한을 긴급지원하는 한편, 각 회원국에 긴급자금 공여를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제3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96.5.16) 의결을 거쳐 5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2) 유엔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

1996년 6월 유엔은 세계식량기구(World Food Programme, 이하 WFP),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이하 FAO), 유엔인도지원국(U.N. 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 이하 UNDHA),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 UNICEF 등 6개 산하기관의 제2차 대북수해지원 기간을 1996년 7월부터 1997년 3월까지로 정하고, 각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대해 동참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유엔기구의 대북지원에 동참하기로 하고, 제3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6.6.19)에서 3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300만달러 중 200만달러는 WFP에 현금으로 기탁하여 북한의 어린이를 위한 혼합곡물을 지원하고, 100만달러는 국산 분유로 UNICEF에게 현물 지원하였다.

나. 1997년

(1) 유엔기구의 제3차 대북지원 참여

WFP는 1997년 2월 13일 제3차 대북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도 인도적 차원에서 동참하기로 하고, 제3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97.2.21)에서 53억 7,420만원(600백만달러 상당)을 지원하기로 의결하고, WFP는 혼합곡물을 구매하여 북한에 지원하였다.

(2) UNICEF의 탈수방지제 공장 복구사업 지원

북한은 계속된 수해와 경제난으로 상하수도 시설이 마비되어 수인성 질환이 빈번히 발병하였다. 특히, 어린이들이 수인성 질환에 취약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96년 9월 UNICEF가 추진하는 북한의 탈수방지제 공장 복구사업에 35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996년 하반기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발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가 제3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97.3.26)에서 33만 9,500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UNICEF에 기탁하였다.

(3) 유엔기구의 제3차 대북지원 추가 지원 참여

1997년 4월 UNDHA은 「제3차 대북지원계획」을 발표²⁷⁾하였고 우리 정부는 제3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97.6.20)에서 WFP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지원내용은 옥수수 5만톤과

27) 세부지원 계획은 식량지원(WFP), 농업분야 지원(UNDP, FAO), 보건의료분야 지원(WHO, UNICEF), 각 기구에 대한 행정경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산 전지분유 300톤의 물품대금 및 부대비용과 WFP에 대한 직접 지원비 등이다.

WFP는 대북지원에 필요한 직접경비 뿐만 아니라 WFP 본부 소요 운영경비 등 간접경비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WFP 분배모니터링에 우리측의 참여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경비만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²⁸⁾

(4) 유엔기구를 통한 대북 추가지원

1997년 8월 정부는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이 계속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엔기구를 통해 추가로 북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4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97.8.29)에서 유엔기구에 추가로 1,000만달러 내외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WFP를 통한 아동용 혼합곡물 지원

1997년 10월 WFP에게 미화 400만달러를 현금기탁하였고 WFP는 아동용 혼합곡물을 지원하였다.

(나) UNICEF 분유지원

UNICEF를 통해서도 300만 달러 규모의 국내산 분유를 지원하였다.

28) 간접경비는 대북지원 식량의 분배투명성 보장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자 제4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97.8.29)에서 「대북 지원 식량 분배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건으로 총 109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하고, WFP에는 59만달러를 지원하였다(10.2 지급).

(다) UNDP의 수해복구 장비 지원

UNDP를 통해서도 수해피해 농지복구를 위해 120만 달러 상당의 불도저와 장비부품 등을 구매하여 인천항에서 남포항까지 수송하였다.

(라) FAO를 통한 영농자재 지원

FAO를 통해서도 50만달러 상당의 국산 농약, 방제복, 분무기 등의 농자재를 지원하였다.

(마) WHO·UNICEF를 통한 보건의료 경비 지원

UNICEF의 홍역예방사업에 60만달러, WHO의 소아마비 예방사업에 70만달러 등 130만달러를 현금기탁하여 지원하였다.

다. 1998년

1998년에는 1997년에 결정된 일부 지원기금이 계속 집행되고 WFP를 통한 식량지원이 추진되었다.

WFP를 포함한 유엔기구들은 1998년 2월 「제4차 대북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각국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제45차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98.4.30)에서 WFP를 통해 옥수수 기준 5만톤 상당의 식량지원을 결정하고, 국내산 밀가루 1만톤과 중국산 옥수수 3만톤을 지원하였다.

라. 1999년

정부는 인도적 긴급구호 지원은 계속하되 대북지원은 농업개발

지원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과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차원에서 「남북간 직접지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및 당국간 회담을 통해 대북 직접 지원을 추진하여, 1999년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2000년

정부는 북측 지역에서 발생한 말라리아가 우리측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기구가 말라리아 방제사업에 우리정부의 참여를 요청해 온 점을 감안하여 WHO의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제6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0.3.2)를 개최하여 WHO의 북한지역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50만달러 상당 현물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말라리아 약품 및 모기장 등 기자재, 치료약 등을 구매하여 2001년 5월 WHO 북한 사무소에 지원하였다.

바. 2001년

2000년 8월 북한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식량지원을 요청하였고, WFP도 대북 식량지원에 우리 정부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활동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제7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1.2.8)를 개최하여 1,822만달러 범위 내에서 외국산 옥수수 10만톤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정부는 중국산 옥수수를 구매하여 북한으로 해상수송하고 이를 WFP에 인도하였다.

1998년 WFP를 통한 옥수수 3만톤 지원시 「옥수수」 표기는 무산

되었으나, 2001년의 경우 WFP측이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제1항차부터 옥수수 포대에 한글로 「옥수수」 및 「대한민국 지원」을 인쇄하여 지원하였다.

사. 2002년

(1) WFP를 통한 대북 옥수수 10만톤 지원

2001년 11월 WFP는 2002년 대북 지원과 관련하여 각국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을 지원하기로 하고, 제9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2.1.28)에서 257억원(1,898만 달러) 이내를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정부는 중국산 옥수수를 구매하여 북한까지 해상으로 운송하고 북한에서의 분배는 WFP에서 맡았다.

2001년과 마찬가지로 옥수수 포대에 “옥수수, 50kg, 대한민국 지원”을 인쇄하여 지원하였다.

(1) 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 지원

2000년에 의결된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이 2001년 집행됨에 따라 2001년에는 신규 지원이 없었다. 2002년의 경우 제9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2.3.19)에서 WHO의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65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치료·예방약품, 실험기자재, 수송비, 행정경비 등을 지원하였다.

아. 2003년

2003년에는 UNICEF를 통한 지원이 신규로 추진되어 총 203억원의 기금이 지원되었다.

(1) 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 지원

2002년 11월 유엔의 합동 대북지원 계획이 발표된 후 정부는 2003년 1월 WFP의 대북지원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정부는 제11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3.4.15)를 개최하여 1,800만 달러 이내(234억원)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하고, 중국산 옥수수 10만톤을 구매하여 지원하였다.

(2) 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 지원

제11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3.4.15)에서 WHO의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70만달러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말라리아 예방·치료약품 등을 지원하였다.

한편, 2003년 11월에는 중국 상해에서 WHO 및 남북 관계자가 참석하는 한반도 말라리아 문제에 대한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3) UNICEF를 통한 백신 및 면역의약품 지원

UNICEF는 대북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실시와 콜드체인(cold chain)²⁹⁾ 구축, 영양장애 아동과 임산부

29) 콜드체인(cold chain) : 백신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백신의 운송 및 보관의 전 단계에서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체계

에 대한 영양식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우리 정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임을 고려하여 2003년부터 UNICEF를 통해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제11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3.4.15)에서 50만 달러(5억 9,800만원)를 지원하기로 의결하고 UNICEF에 현금으로 기탁하였다.

자. 2004년

(1) 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 지원

제1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4.3.29)에서 북한 말라리아 방역을 위해 WHO에 7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지원내역은 말라리아 약품, 기자재 및 실험실 장비, 수송비, 행정비 등이다.

(2) UNICEF를 통한 어린이등 취약계층 지원

제1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4.3.29)에서 북한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현금을 UNICEF에 기탁하였다. 지원내역은 영양실조 치료성분의 우유, 필수약품 세트, 임산부 복합영양제, 행정비 등이다.

(3) WHO의 용천재해 긴급구호 지원

2004년 4월 2일 북한 용천역에서 열차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4월 24일 북한은 사고 발생 사실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4월 24일 대한적십자사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2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4.4.28)에서 북한 용천재해 긴급구호 사업에 총 25억 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그 중 2억 3,600만원(20만 달러)는 WHO에 현금으로 기탁하였다.

(4) WFP를 통한 대북 옥수수 10만톤 지원

정부는 WFP의 지원 요청 등을 고려하여 제13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4.7.23)에서 2,400만달러(288억원 이내)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중국산 옥수수 10만톤을 구매하여 2004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중국에서 북한 흥남, 남포, 청진항으로 수송하여 WFP에 전달하였다.

차. 2005년

(1) 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 지원

제14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5.4.15)에서 98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지원내역은 말라리아 약품, 기자재 및 실험실 장비, 수송비, 기술지원비, 행정비 등이다.

(2) UNICEF를 통한 어린이등 취약계층 지원

제15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5.7.29)에서 어린이·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보건의료 사업에 100만달러 상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현금으로 기탁하였다. 지원내역은 영양개선, 면역사

업, 필수약품, 안전한 산모관리 장비, 행정비 등이다.

카. 2006년

제17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6.4.27)에서 북한 말라리아 방역을 위해 WHO를 통해 121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지원 내역은 말라리아 약품, 모기장, 살충제, 방제 장비·기자재, 실험시약 및 실험실 장비, 수송비 등이다.

타. 2007년

(1) WHO를 통한 홍역백신 및 말라리아 방역 지원

(가) 홍역백신 지원

2006년 11월 북한 양강도 지역에서 홍역이 발병하여 북한전역 10도 30개 군으로 확산되고 유아부터 어른까지 전염되었다.

WHO와 UNICEF는 홍역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WHO는 우리 정부에 240만달러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제18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3.22)에서 홍역방제사업에 소요되는 백신, 주사기 및 백신 보관박스, 비타민, WHO 행정경비 등으로 105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나) 말라리아 방역 지원

제18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3.22)에서 138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주요 지원내역은 말라리아 예방·치료약품, 기

자재 및 실험실 장비 지원, WHO의 북한인력 교육훈련경비 등이다.

(2)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이하 IVI)³⁰⁾의 백신사업 지원

IVI는 2006년 10월 북한의 의학과학원과 백신연구 및 개발사업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어린이 전염병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 왔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백신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84차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07.4.30)에서 IVI에 5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IVI는 우리 정부의 후원을 받아 뇌수막염 및 일본뇌염 접종, 뇌수막염 및 일본뇌염 실험실 관련 장비구입 및 기술지원, 북측 연구인력 해외현장실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

2005년 8월 북한은 국제기구와 국제 NGO에 대하여 북한 내 모든 인도지원 활동을 종료하면서 개발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WFP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WFP는 2006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구호복구사업(Protracted Relief and Recovery Operation, PRRO)을 추진하였다.

2006년 8월 정부는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이 추진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WFP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임을 WFP에 통보하였다. 이듬해 정부는 제18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6.28)에서 WFP

30) IVI : 1997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의 개발과 축진을 위해 설립된,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최초의 유엔기구

의 대북식량지원사업에 대해 2,000만달러 이내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해 옥수수 2만 4,000톤, 콩 1만 2,000톤, 통밀 5,000톤, 밀가루 2,000톤, 분유 1,000톤 등을 지원하였다.

2001부터 2004년까지의 WFP 지원시 지원품목이 옥수수 단일품목이던 것과는 달리 2007년에는 지원품목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WFP에게 현금을 기탁하여 WFP가 직접 구매, 운송토록 하였다.

(4) 유엔인구활동기금(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이하 UNFPA) 인구조사 지원

북한은 1993년에 인구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 인구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의 식량난으로 북한 인구상황이 변동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북한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로서 인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UNFPA가 실시하는 북한 인구조사를 지원하게 되었다.

제18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6.28)에서 UNFPA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414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 내역은 UNFPA의 북한 인구센서스사업 비용과 우리 정부가 구성 운영하는 전문가자문단 운영비 등이다.

동 조사는 2007년 예비조사, 2008년 10월 본조사, 2009년 분석작업 순으로 진행하게 되며, 우리측 전문가가 조사문항 설계, 조사결과 분석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5) UN 기구를 통한 수해복구 지원

2007년 8월 북한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여 UNOCHA는 1,400만

달리 규모의 북한 긴급구호를 위한 지원 참여를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홍수피해가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인 점을 감안하여, 북한에 수해복구를 위한 자재·장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제19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9.3)에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수해복구 자재장비 지원을 의결하면서, UNOCHA에 2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00만달러는 WHO와 UNICEF에 각각 100만달러씩 현금으로 기탁되었다.

파. 2008년

제20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8.4.30)에서 WHO의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118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주요 지원 내역은 말라리아 예방·치료약품, 기자재 및 실험실 장비 지원, WHO의 북한인력 교육훈련경비 등이다.

WHO와 남북한은 2003년부터 한반도 말라리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우리의 계속된 지원으로 북한의 말라리아 발병수가 2001년 295,570명, 2002년 241,190명, 2003년 60,559명, 2004년 33,677, 2005년 11,507명, 2006년 9,353명, 2007년 7,436명으로 감소하였다고 하면서 우리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UNFPA를 통한 북한인구센서스 추진사업에 2년차로 36억 3,300만원이 집행되었다.

〈연도별 국제기구 지원내역〉

연도	사 업 내 용	승인액 (만달러)	집행액 (백만원)
1996	WMO를 통한 대북 기상장비 제공	5	40
	UN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 - WFP, UNICEF	300	2,434
	소 계 (2건)	305	2,474
1997	UN기구의 제3차 대북지원 지원 - WFP	600	5,374
	UNICEF의 탈수방지제공장 복구사업 지원	34	304
	UN기구의 제3차 대북지원 추가 지원 - WFP(분유·옥수수)	1,059	8,698
	UN기구를 통한 대북 추가지원 - WFP, UNICEF, UNDP, FAO, WHO	1,000	4,743
	소 계 (4건)	2,693	19,119
1998	UN기구의 제3차 대북지원 추가 지원(1997)* - WFP(분유·옥수수)	-	860
	UN기구를 통한 대북 추가 지원(1997) - WFP, UNICEF, UNDP, FAO, WHO	-	4,922
	WFP를 통한 제4차 대북 밀가루·옥수수 지원	1,131	14,109
	소 계 (1건)	1,131	19,891
2000	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 지원	50	-
	소 계 (1건)	50	-
2001	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 지원(2000)	-	600
	WFP를 통한 대북 옥수수(10만톤) 지원	1,822	22,297
	소 계 (1건)	1,822	22,897
2002	WFP를 통한 대북 옥수수(10만톤) 지원	1,898	22,909
	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 지원	65	799
	소 계 (2건)	1,963	23,708
2003	WFP 대북 옥수수(10만톤) 지원	1,800	18,944
	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 지원	70	761
	UNICEF를 통한 백신 및 면역의약품 지원	50	598
	소 계 (3건)	1,920	20,303

연도	사업 내용	승인액 (만달러)	집행액 (백만원)
2004	WFP 대북 옥수수(10만톤) 지원(2003)	-	154
	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 지원	70	786
	UNICEF를 통한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	100	1,194
	북측 용천재해 긴급구호 지원 - WHO	20	236
	WFP 대북 옥수수(10만톤) 지원	2,400	120
	소 계 (4건)	2,590	2,490
2005	WFP 대북 옥수수(10만톤) 지원(2004)	-	23,884
	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 지원	98	850
	UNICEF를 통한 어린이등 취약계층 지원	100	1,039
	소 계 (2건)	198	25,773
2006	WHO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	1,068	9,305
	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 지원	121	1,045
	UNICEF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	223	2,164
	소 계 (3건)	1,412	12,514
2007	WHO를 통한 홍역 방역사업 지원	105	998
	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 지원	138	1,290
	WHO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	938	9,168
	UNICEF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	315	2,938
	IVI를 통한 북한 백신 지원사업	50	466
	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	2,000	18,091
	UNFPA의 북한 인구센서스 추진사업 지원	414	25
	UN 기구를 통한 북한 수해복구 지원 - WHO, UNICEF	200	1,896
	소 계 (8건)	4,160	34,872
2008	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 지원	118	1,030
	UNICEF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	407	4,662
	WHO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	1,027	-
	UNFPA의 북한 인구센서스 추진사업 지원(2007)	-	3,633
	소 계 (4건)	1,553	9,325
	총 계	19,797	193,366

* (연도) 표시는 (연도)에 지원결정이 되고 사고이월되어 집행된 액수임.



제5절 | 평 가

인도적 지원은 1995년부터 당국,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을 통해 추진되어 오면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대남인식 변화, 민족공동체 회복 등에 기여해 왔다.

정부는 당국간 직접지원 방식으로 쌀을 비롯한 식량과 비료를 지원해 왔으며, 북한 지역에 자연재해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재민 구호, 피해복구 물자 지원 등 긴급 구호 지원을 해왔다. 이러한 당국 차원의 대북지원은 모두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의 식량과 비료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2000년대에는 북한지역에서 1990년대 중반과 같은 기아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1995년 수해복구 지원에서부터 시작되어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 피해복구 지원, 2005년 이후의 연이은 수해복구 지원, 2005년 조류인플루엔자 및 2007년 구제역 방역지원 등으로 이어진 긴급 구호 지원은 북한이 자연 재해 등으로 조성된 인도적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방역 지원 등은 우리측 지역으로의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은 우리로부터 식량과 비료, 재해복구물자 등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북한 당국이 남북회담이나 교류협력사업 협의 과정에서 우리의 지원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식량지

원을 차관방식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우리의 분배투명성 보장 요구를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대규모 식량과 비료지원이 연례적으로 계속되면서 북한 당국의 식량난 해결노력과 의지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거나 ‘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였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2000년부터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면서,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저변이 확대되고, 사업의 범위도 당국차원의 지원이 미치지 어려운 분야와 지역 등을 대상으로 다양화되었다. 민간단체는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삼고, 병원, 빵공장, 국수공장 등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펼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1998년의 WFP와 UNICEF 조사에서 62.3%로 집계되었던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의 만성영양장애 비율이 2004년에는 35.9%로 감소하였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긴급구호 뿐 아니라 개발지원 분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2005년에 합동사업, 2007년에 정책사업을 도입하였다. 민간단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장기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의 지원규모와 기간을 늘려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였다. 2001년에는 민간단체와 정부내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발족하였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분야별로 분과위를 구성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여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다시 발족하

였다. 이후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는 『대북지원 10년 백서』 발간, 합동사업 추진, 북한 긴급구호 매뉴얼 발간 등 정부와 민간간의 협조 및 역할분담 등 대북지원의 체계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인도적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민간단체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목적, 관련 법령, 회계 기준 등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7년 3월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북지원사업자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2008년 6월에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대북지원물품 구매에 대한 경쟁 입찰 도입, 사업계획변경 사전 승인제도 실시, 지원자금 증빙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WFP, WHO, UNICEF 등 주요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의 공여를 통해 주요 국제기구들의 대북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접촉하는 기회도 확대되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북한 상주사무소를 통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등 분배투명성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행정비용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지원 과정에서 남북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배투명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대북협의 과정에서 분배투명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분배결과 통보,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지원물품의 전용 우려 등을 해소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대북지원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의 지원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제3장

이산가족교류 지원

제1절 | 개 관

제2절 | 상봉행사 지원

제3절 | 화상상봉 지원

제4절 | 민간차원 이산가족교류 지원

제5절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제6절 |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운영

제7절 | 평 가



제1절 | 개 관

남북분단이 장기화되면서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는 고령 이산가족들이 늘어나는 등 이산가족문제³¹⁾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1992년 발표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에 합의한 이래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 왔다.

2000년부터 진행된 16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3,378가족 16,212명이 상봉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차례의 화상상봉을 통해 557가족 3,748명이 상봉을 하였다. 정부는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활성화하기 위해 1998년부터 2008년 9월말까지 총 2,697명에게 교류경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교류의 제도화 및 정례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하였고, 2005년 8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착공하여 2008년 7월 완공하였다.

31) 이산가족문제의 발생원인 및 그동안 경과, 정부의 해결노력 등에 대해서는 「이산가족찾기 60년」(05.12, 통일부) 참조.

1992년부터 2008년 9월말까지 이산가족 교류를 위해 집행된 남북협력기금은 총 781억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148억원, 화상 상봉 지원 81억원,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30억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공사비 516억원,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구축 및 관리 지원 6억원 등이다.



제2절 | 상봉행사 지원

1. 추진배경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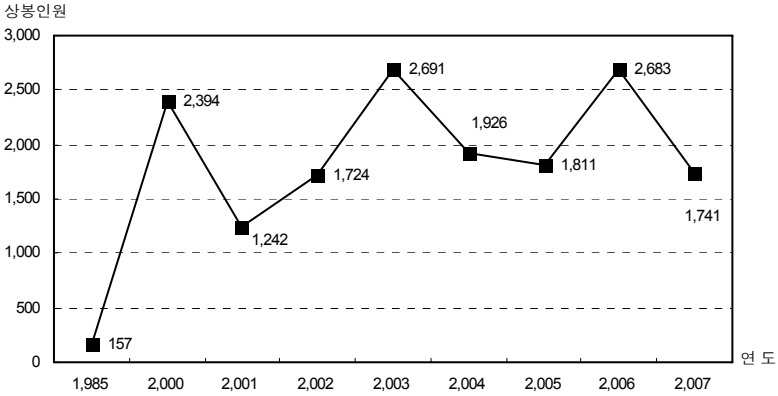
이산가족 문제는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측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가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산가족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그 결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91.12.13)」와 「부속합의서」(‘92.9.17)에 이산가족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었다.

이후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종래 민간차원에서만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산가족교류가 당국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2000년 8월 15일 제1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실시된 이후 2007년 12월까지 총 16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3,378가족 16,212명의 상봉이 이루어졌다.

〈연도별 남북이산가족교류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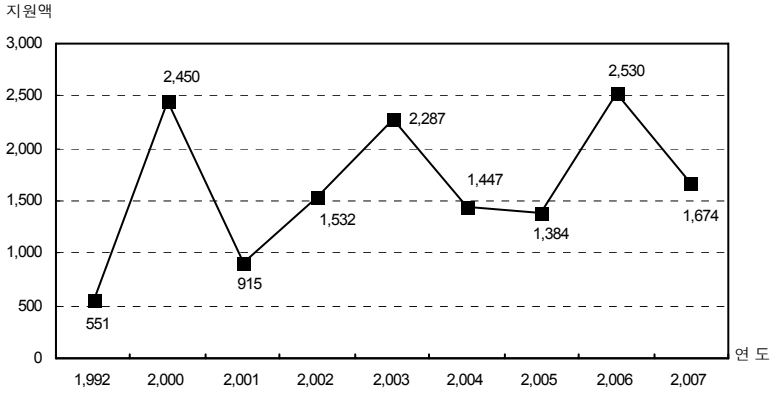


2. 연도별 집행실적

1992년 8.15를 계기로 ‘남북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서로 교환한다’는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남북은 8차례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과 2차례 고위급 회담 대표접촉을 판문점에서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인모 송환문제와 남북어부 송환거부 등으로 결렬되었다. 정부는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5억 5,1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16차례의 이산가족상봉행사 경비 140억 9,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7억 7,0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연도별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금집행 추이〉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금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집행액
1992	8.15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 지원	551
2000	제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1,871
	제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455
	총련 동포 고향방문행사 지원	124
2001	제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169
	제3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646
	제4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100
2002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통신지원	130
	제4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678
	제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724
2003	제6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734
	제7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825
	제8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728
2004	제9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698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749
2005	제1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825
	제1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559
2006	제1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246
	제13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804
	제14차 6.15계기 특별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1,480
2007	제1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821
	제16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853
합 계		14,770

가. 2000년 이산가족 상봉행사(제1·2차)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직후 남북은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문제 등 남북이산가족교류 활성화와 제도화를 위

한 실천방안들을 논의하였다.

한편,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할 대상자 선정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와 사전준비를 진행하였다. 우선 한적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이북5도위원회, 이북도민연합회,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등 이산가족단체와 정부관계자, 언론계·학계·여성계·법조계 전문가 등 12명으로 인선위원회를 구성하였다('00.6.22). 인선위원회는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이라는 원칙을 설정하고 이산가족 정보센터에 이산가족교류를 신청한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연령·가족관계, 과거 이산가족찾기 신청여부 등을 기준으로 1차 후보자 400명을 컴퓨터로 공개 추첨('00.7.5)하였다. 그 결과 사망자 및 건강진단 부적격자 등을 가려내고 북한적십자회에 생사·주소 확인을 의뢰할 후보자 200명을 선정하여 북측과 명단을 교환('00.7.16) 하였다.

한적은 북한적십자회가 남측에 의뢰한 200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여 198명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여 북측에 통보하였으며, 북측도 남측 의뢰자 200명 중 138명의 생사·주소를 확인하여 통보하였다. 한적은 북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생사·주소 확인 결과를 토대로 이산가족의 연령과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최종방문자 100명을 선정하였다. 2000년 8월 8일 남북 쌍방은 최종 방문자 명단을 교환하였다.

정부는 제7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0.8.3)에서 이산가족상봉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32억 1,000만원 규모의 기금지원을 승인하였다.

제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00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서울·평양에서 동시교환방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남측 이산가족 102명(지원인원 2명 포함)이 재북가족 218명을 상봉하고, 북측 이산가족 101명(지원인원 1명 포함)이 재남가족 751명을 상봉함으로써 총 203가족 1,172명이 상봉하였다.

이 행사에는 북측방문단 경비 9억 700만원과 남측방문단 경비 2억

3,300만원, 프레스센터 운영비 2억 5,300만원, 정부합동지원단 경비 3억 6,200만원, 예비비 1억 1,600만원 등 총 18억 7,1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

〈제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승인액	집행액
1. 북측방문단 경비	1,189	907
○ 서울체류 경비	265	128
○ 상봉가족 숙식비 등	417	308
○ 상봉행사 등	507	471
2. 남측방문단 경비	862	233
○ 오·만찬 등 경비	286	51
○ 항공기 임차 및 준비	353	168
○ 평양 상황실 경비	223	14
3. 프레스센터 운영비	253	253
4. 정부합동지원단 경비	487	362
5. 예비비	419	116
계	3,210	1,871

제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북측의 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명단교환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정부는 제1차 상봉행사 후,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을 고려하여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금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제7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0.11.21)에서 9억 5,200만원 규모의 기금지원을 승인하였다.

제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0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2박 3일간 서울·평양에서 동시교환방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재북가족 254명을 상봉하고,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재남가족 768명을 상봉함으로써 총 200가족 1,222명이 상봉하였

다. 이 행사는 단체상봉, 개별상봉 그리고 참관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를 위해 북측방문단 경비 2억 1,700만원과 남측방문단 경비 8,300만원, 프레스센터 운영비 1억 2,400만원, 정부합동지원단 경비 1억 9,900만원 등 총 6억 2,4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

〈제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승인액	집행액
1. 북측방문단 경비	302	218
○ 서울체류 경비	98	77
○ 상봉가족 숙식비 등	35	24
○ 상봉행사 등	169	117
2. 남측방문단 경비	122	83
○ 오·만찬 등 경비	28	21
○ 항공기 임차 및 준비	87	62
○ 평양 상황실 경비	7	-
3. 프레스센터 운영비	237	124
4. 정부합동지원단 경비	246	199
5. 예비비	45	-
계	952	624

또한 2000년에는 이산가족상봉행사 이외에도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00.7.29~31)에서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사업에 합의³²⁾하였다. 정부는 한적을 조총련 동포의 모국방문을 위한 협력창구로 결정하고, 2차례에 걸쳐(1차: '00.9.22~27, 2차: '00.11. 17~22) 남측에 고향을 둔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을 추진하였으며, 총련동포 고향방문행사 지원에 1억 2,4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32) 공동보도문 제4항에서 “남과 북은 총련 동포들이 방문단을 구성하여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의

나. 2001년 이산가족 상봉행사(제3차)

제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01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평양에서 동시교환방문으로 진행하기로 합의³³⁾하였다. 정부는 제7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1.2.8)에서 6억 9,800만원의 기금 지원을 승인하였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재북가족 243명을 상봉하고,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재남가족 799명을 상봉함으로써 총 200가족 1,242명이 상봉하였으며 단체상봉, 개별상봉 그리고 참관 등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제1·2차 상봉 때와는 달리 가족동석 중식을 약 1시간 반 동안 실시하여 가족상봉시간을 확대하였다.

이 행사에는 북측방문단 경비 2억 4,700만원과 남측방문단 경비 8,000만원, 프레스센터 운영비 1억 2,800만원, 정부합동지원단 경비 1억 9,100만원 등 총 6억 4,6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

〈제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승인액	집행액
1. 북측방문단 경비	244	247
○ 서울체류 경비	94	80
○ 상봉준비 경비	28	29
○ 상봉가족 숙식비 등	122	138
2. 남측방문단 경비	100	80
○ 방문단 숙식비	24	22
○ 항공기 입차 및 준비	70	57
○ 평양 상황실 경비	6	1
3. 프레스센터 운영비	142	128
4. 정부합동지원단 경비	179	191
5. 예비비	33	-
계	698	646

33)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00.12.16, 평양) 공동보도문 제5항 “남과 북은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2001년 2월말에 100명씩 한다”고 합의

다. 2002년 이산가족 상봉행사(제4·5차)

제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당초 2001년 10월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³⁴⁾되었으나, 북측의 무기연기 통보로 무산되었다가 2002년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정부는 제9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2.4.18)에서 7억 8,7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제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부터는 종래의 서울·평양 동시 교환방문 방식에서 금강산 순차상봉 방식으로 바뀌어 금강산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남측 이산가족 99명이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재북가족 183명을 상봉하고, 이어서 5월 1일부터 3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101명(동반 1명 포함)이 재남가족 466명을 상봉함으로써 총 199가족 849명이 상봉하였다.

이 행사에는 총 6억 7,8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으며, 2001년 상봉행사 무기연기로 발생한 위약금 3,700만원 및 준비비용 1억원을 포함, 7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다.

〈제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승인액	집행액
방문단 방북 및 상봉행사 경비	170	140
상봉단 방북 및 상봉행사 경비	450	418
지원인력체제비, 상황실, 프레스센터 등	137	120
예비비	30	-
계	787	678

※ '01년 상봉행사 무기연기에 따른 위약금(3,700만원) 및 준비비용 1억원 포함, 총 7억 7,800만원 집행

34) 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9.15~18, 서울) 공동보도문 제2항에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고 합의

또한 이와는 별도로 상봉행사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온정리와 장전항간의 유실된 통신케이블 복구공사비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다.

제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02년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³⁵⁾되었으며, 정부는 제10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2.9.7)에서 7억 9,800만원 규모의 기금지원을 승인하였다.

제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는 먼저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재남가족 455명을 상봉하고, 이어서 남측 이산가족 99명이 재북가족 221명을 상봉함으로써 총 199가족 875명이 상봉하였다.

이 행사에는 상봉단·방문단 방북 및 상봉행사 경비 6억 4,000만원, 지원인력 체재비, 상황실, 프레스센터 등 경비 8,400만원 등 총 7억 2,4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

<제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승인액	집행액
상봉단 및 방문단 방북 및 상봉행사 경비	664	640
지원인력체재비, 상황실, 프레스센터 등	114	84
예비비	20	0
계	798	724

라. 2003년 이산가족 상봉행사(제6·7·8차)

2003년도에는 이산가족상봉이 금강산지역에서 설, 추석 명절과 6·15 남북공동선언일을 계기로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03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

35)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02.9.6-8, 금강산)에서 합의

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³⁶⁾되어 정부는 제10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3.2.14)에서 8억 9,0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는 북측 이산가족 99명이 먼저 재남가족 461명을 상봉하고, 이어서 남측 이산가족 99명이 재북가족 191명을 상봉함으로써 총 198가족 850명이 상봉하였다. 제6차 상봉행사부터는 해로이동 대신 처음으로 육로인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금강산으로 이동함으로써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이산가족들의 편의가 향상되었다. 아울러 육로를 이용한 응급환자의 긴급후송에도 남북이 합의함으로써 비상시 후송체계도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행사에는 기획경비 3억 4,600만원, 상황 운영 4,100만원, 숙소·오만찬 경비 2억 8,800만원 등 총 7억 3,4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세부 집행내역	승인액	집행액
행사준비	기획	447	346
	교육	4	3
상봉행사	상황운영	55	41
	숙소·오만찬	281	288
	안전보안	7	6
	수송	49	29
	통신	10	6
	보도홍보	17	15
예비비		20	0
계		890	734

36) 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03.1. 22, 금강산)에서 합의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03년 4월에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3주년을 계기로 2003년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제1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3.6.21)에서 8억 9,400만원의 기금 지원을 승인하였다.

이산가족 상봉은 먼저 남측 이산가족 100명과 동반가족 10명이 재북가족 217명을 상봉하고, 이어서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재남가족 472명을 상봉함으로써 총 200가족 899명이 상봉하였다.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는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을 돌보기 위해 남측 가족 10명이 동반 방문하는 '비동수 방식 상봉'이 성사되었다.

이 행사에는 기획경비 4억 5,800만원, 상황운영 4,000만원, 숙소·오만찬 경비 2억 6,900만원 등 총 8억 2,5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세부 집행내역	승인액	집행액
행사준비	기획	364	458
	교육	4	2
상봉행사	상황운영	51	42
	숙소·오만찬	292	269
	안전보안	7	6
	수송	33	28
	통신	10	7
	보도홍보	17	13
예비비		116	0
계		894	825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03년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³⁷⁾되었다. 정부는 제1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3.9.18)에서 8억 8,600만원의 기금지원을 승인하였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측 이산가족 100명과 동반가족 43명이 재북가족 246명을 먼저 상봉하고, 이어서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재남가족 453명을 만남으로써 총 200가족 942명이 상봉하였으며, 동반가족의 참가가 43명으로 확대되었다.

이 행사에는 기획경비 3억 5,200만원, 상황운영 4,500만원, 숙소·오만찬 경비 2억 7,000만원 등 총 7억 2,8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세부 집행내역	승인액	집행액
행사준비	기획	402	352
	교육	4	2
상봉행사	상황운영	52	45
	숙소·오만찬	312	270
	안전보안	7	5
	수송	35	30
	통신	15	9
	보도홍보	17	15
예비비		42	0
계		886	728

37) 2003년 7월에 개최된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

마. 2004년 이산가족 상봉행사(제9·10차)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04년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됨³⁸⁾에 따라 정부는 제124차 남북교류 협력추진협의회('04.3.23)에서 8억 2,100만원의 기금지원을 승인하였다.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먼저 재남가족 486명을 상봉하고, 이어서 4월 1일부터 3일까지 남측 이산가족 100명과 동반가족 47명이 재북가족 235명을 상봉함으로써 총 200가족 968명이 상봉하였다.

이 행사에는 기획경비 3억 2,700만원, 상황운영 4,500만원, 숙소·오만찬 경비 2억 7,100만원 등 총 6억 9,8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세부 집행내역	승인액	집행액
행사준비	기획	367	327
	교육	4	0
상봉행사	상황운영	50	45
	숙소·오만찬	300	271
	안전보안	7	6
	수송	35	32
	통신	12	5
	보도홍보	16	12
	예비비		30
계		821	698

38)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04.2.3~6)에서 합의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04.5.4~7, 평양)에서 6월에 실시하기로 합의되었으나, 북측의 요구로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정부는 제13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4.7.2)에서 8억 1,500만원 규모의 기금지원을 승인하였다.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남측 이산가족 100명과 동반가족 49명이 먼저 재북가족 237명을 상봉하고, 이어서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재남가족 471명을 상봉함으로써 총 200가족 957명이 상봉하였다.

이 행사에는 기획경비 3억 8,300만원, 상황운영 4,500만원, 숙소·오만찬 경비 2억 6,300만원 등 총 7억 4,9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세부 집행내역	승인액	집행액
행사준비	기획	369	383
	교육	2	0
상봉행사	상황운영	49	45
	숙소·오만찬	299	263
	안전보안	7	6
	수송	33	36
	통신	11	5
	보도홍보	15	11
	예비비		30
계		815	749

바. 2005년 이산가족 상봉행사(제11·12차)

2004년 하반기부터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5년 6월 개최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됨에 따라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이후 13개월 만에 상봉행사가 재개되었다. 정부는 제15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5.8.12)에서 11억 9,200만원의 기금지원을 승인하였다.

제 1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남측 이산가족 98명과 동반가족 47명이 재북가족 229명을 상봉하고, 8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재남가족 434명을 만남으로써 총 198가족 908명이 상봉하였다.

이 행사에는 기획경비 4억 6,400만원, 상황운영 4,400만원, 숙소·오만찬 경비 2억 6,300만원 등 총 8억 2,5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

〈제1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금지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세부 집행내역	승인액	집행액
행사준비	기획	719	464
	교육	2	0
상봉행사	상황운영	49	44
	숙소·오만찬	326	263
	안전보안	7	5
	수송	33	37
	통신	11	4
	보도홍보	15	8
	예비비	30	0
계		1,192	825

남북은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2005.9.13-16, 평양)에서 제1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11월초에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제15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5.10.28)를 개최하여 10억 4,100만원의 기금지원을 결정하였다.

제1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북측가족 100명이 먼저 재남가족 441명을 상봉하고,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남측 이산가족 99명과 동반가족 44명이 재북가족 219명을 상봉하여 총 199가족 903명이 상봉하였다.

이 행사에는 행사준비경비 8,500만원, 이동 및 체재경비 4억 900만원, 상봉행사·가족공동식사 경비 2억 7,300만원 등 총 8억 5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

〈제1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세부 집행내역	승인액	집행액
행사준비	기획	45	24
	국내집결지	67	61
상봉행사	이동 및 체재경비	495	409
	상봉행사·가족공동식사	360	273
	상황실·프레스센터설치·지원인력체재비	44	38
예비비		30	0
계		1,041	805

사. 2006년 이산가족 상봉행사(제13·14차)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³⁹⁾는 2006년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

39)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05.12.13-16)에서 합의

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제16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6.2.17)에서 8억 6,500만원의 기금지원을 승인하였다.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남측 99명과 동반가족 49명이 재북가족 239명을,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재남가족 420명을 만나 총 199가족 907명이 상봉하였다.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는 북측이 우리측 기자의 취재를 제한함에 따라 공동취재단이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행사에는 행사준비경비 1억 1,000만원, 이동 및 체재경비 3억 7,800만원, 상봉행사·가족공동식사 경비 2억 8,000만원 등 총 8억 4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세부 집행내역	승인액	집행액
행사준비	기획	42	33
	국내집결지	67	77
상봉행사	이동 및 체재경비	409	378
	상봉행사·가족공동식사	295	280
	상황실·프레스센터설치·지원인력체재비	42	36
예비비		10	0
계		865	804

제1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⁴⁰⁾는 2006년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6.15 계기 특별상봉 형식으로 금강산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제17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6.5.26)에서 16억 1,900만원의 기금지원을 승인하였다.

40)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06.2.21~23) 합의

제1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남측 가족 195명과 동반가족 96명이 재북가족 468명을 상봉하고, 북측 가족 198명이 재남가족 819명을 상봉함으로써 총 393가족 1,776명이 상봉하였다. 특히 이 상봉행사는 상봉대상자가 2배로 확대되었다.

이 행사에는 행사준비경비 1억 8,800만원, 이동 및 체재경비 6억 5,300만원, 상봉행사·가족공동식사 경비 5억 6,400만원 등 총 14억 8,0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

〈제1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세부 집행내역	승인액	집행액
행사준비	기획	77	57
	국내집결지	123	131
상봉행사	이동 및 체재경비	760	653
	상봉행사·가족공동식사	560	564
	상황실·프레스센터설치·지원인력체재비	79	75
예비비		20	0
계		1,619	1,480

아. 2007년 이산가족 상봉행사(제15·16차)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07년 5월 9일부터 14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정부는 제18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4.30)에서 9억 1,700만원 규모의 기금지원을 승인하였다.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남측 이산가족 98명과 동반가족 48명이 재북가족 226명을 상봉하고,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재남가족 438명을 상봉함으로써 총 198가족 910명이 상봉하였다.

이 행사에는 행사준비경비 1억 1,100만원, 이동 및 체재경비 4억 600만원, 상봉행사·가족공동식사 경비 2억 7,300만원 등 총 8억 2,1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세부 집행내역	승인액	집행액
행사준비	기획	52	37
	국내집결지	79	74
상봉행사	이동 및 체재경비	410	406
	상봉행사·가족공동식사	315	273
	상황실·프레스센터설치·지원인력체재비	41	31
예비비		20	0
계		917	821

제1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07년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되었으며, 정부는 제1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10.1)에서 8억 8,200만원 규모의 기금지원을 승인하였다.

제1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97명이 재남가족 396명을 상봉하고, 이어서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남측 93가족 122명이 재북가족 216명을 상봉함으로써 총 190가족 831명이 상봉하였다. 그리고 이 상봉행사부터 상봉후보자 선정시 인선기준을 조정하여 90대 이상 고령자 및 직계가족의 선정 비율을 확대·반영하였다.

이 행사에는 행사준비경비 1억 300만원, 이동 및 체재경비 4억 7,100만원, 상봉행사·가족공동식사 경비 2억 4,600만원 등 총 8억 5,3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

〈제1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세부 집행내역	승인액	집행액
행사준비	기획	49	36
	국내집결지	78	67
상봉행사	이동 및 체재경비	447	471
	상봉행사 · 가족공동식사	260	246
	상황실 · 프레스센터설치 · 지원인력체재비	38	33
예비비		10	0
계		882	853

제3절 | 화상상봉 지원

1. 추진배경 및 경과

정부는 기존의 대면상봉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화상상봉 방식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2005년 6월 정동영 특사 방북시 이산가족 교류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화상상봉 방식 도입을 제안하고 2005년 6월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광복 60주년을 계기로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북측과 합의하였다.

화상상봉은 남북의 특정장소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광통신망으로 연결하여 남북의 이산가족이 영상과 음성으로 만나는 새로운 상봉방식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여 대면상봉이 어려운 고령 이산가족들에게 화상으로나마 상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적 상봉방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2005년 8월 15일 제1차 화상상봉이 이루어진 이후, 2007년 11월 15일까지 7차례에 걸쳐 557가족 총 3,748명이 상봉하였다.

2. 연도별 집행실적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정부는 제152차 남북교류협

력추진협의회('05.7.22)에서 26억 4,700만원의 기금지원을 승인하였다. 2005년 8월 15일 최초로 남북 각 40가족씩 화상상봉을 진행하였다.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연내 2차례의 화상상봉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정부는 제15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5.10.28)에서 2·3차 화상상봉 비용으로 13억 5,500만원 규모의 기금지원을 승인하였다.

제2차 화상상봉 행사('05.11.24~25)부터는 상봉참가 가족수를 확대(남북 각 가족당 2~5명 참가)하고, 가족 대 가족 상봉방식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남북간 전용망을 통한 가족사진을 사전교환하여 상봉전 가족관계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등 상봉방식을 개선하였다. 제3차 화상상봉은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었다.

2005년에 총 3차례의 화상상봉을 통해 남측 100가족 380명이 재북가족 249명을 상봉하였으며 북측 99가족 272명이 재남가족 422명을 상봉하였다. 2005년에는 제1차 화상상봉을 위해 23억 1,700만원, 제2·3차 화상상봉행사에 11억 5,400만원 등 총 34억 7,1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

〈2005년 화상상봉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승인액	집행액	
2005	제1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 관련 기금지원 (2,317)	화상상봉시스템 구축	2,308	2,027
		화상상봉장 운영	90	88
		부대경비	250	202
"	제2, 3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지원 (1,154)	화상상봉시스템 구축	755	658
		화상상봉장 운영	340	302
		부대경비	260	194
계		4,003	3,471	

2006년 제4차 화상상봉을 위해 정부는 제16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6.2.17)에서 2억 8,400만원 규모의 기금지원을 승인하였고, 2억 7,1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 2006년에는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4차 화상상봉 1차례만 실시되어 남측 153명이 재북가족 100명을 상봉하였고, 북측 119명이 재남가족 181명을 상봉하여 총 553명이 상봉하였다.

2006년 2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6·15 및 8·15계기 특별화상상봉 실시에 합의하였으나, 북측의 일방적 중단조치로 무산되었다.

〈2006년 화상상봉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승인액	집행액
2006	화상상봉시스템 구축	2	3
	화상상봉장 운영	31	27
	통신비	161	161
	부대경비	90	80
계		284	271

이후 2006년 8월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5·6차 특별화상상봉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측이 쌀과 비료지원을 유보하자 2006년 7월 북한적십자회 위원장이 한적 총재에게 화상상봉 중단을 통보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중단되었다. 2007년 「2.13 합의」 이후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07.3.27~29)을 통해 화상상봉이 재개되었다.

제5차 화상상봉을 위해 정부는 제18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3.22)에서 3억 3,900만원 규모의 기금지원을 승인하였다. 남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남북 각기 60가족씩 120가족 남북 총 819명(남측 495명, 북측 324명)이 상봉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3,242명의 생사확인파와 남북가족의 사진파일 1,088매를 교

환하였다. 제5차 화상상봉은 상봉후보자 인선시 상봉자 60명 전원을 90대로 선정하여 거동이 불편한 고령이산가족에게 더 많은 상봉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어 제6차 화상상봉을 위해 정부는 제1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8.10)에서 2억 7,100만원 규모의 기금지원을 승인하였다. 2007년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실시된 제6차 화상상봉을 통해 남북 각각 40가족씩 80가족 총 550명(남측 335명, 북측 215명)이 상봉하였으며, 총 869매의 가족사진 파일을 교환하였다. 제6차 화상상봉에서는 남측의 8개 도시 12개 상봉실(제주 제외)과 북측 평양 고려호텔 10개 상봉실을 연결하여 1일 4회 매회 10가족씩 2시간 가량의 상봉이 이루어졌다.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07.4.10~12)에서 화상상봉 행사개최에 합의하여 제7차 화상상봉이 진행되었다. 제7차 화상상봉을 위해 정부는 제19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10.15)에서 2억 9,000만원 규모의 기금지원을 승인하였다. 2007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실시된 제7차 화상상봉을 통해 남북 각각 39가족씩 총 78가족 503명(남 291명, 북 212명)이 상봉하였으며, 총 576매의 가족사진 파일을 교환하였다. 2007년에는 제5차 화상상봉행사에 3억 1,500만원, 제6차 화상상봉행사에 2억 6,200만원, 제7차 화상상봉행사에 2억 7,600만원 등 총 8억 5,3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

그리고 남북적십자 실무접촉(06.6.21)에서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데 따라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적극 이행하기로 하고, 화상상봉사업 추진에 필요한 차량과 일부 물품의 구입비용을 북측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18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3.22)에서 37억 7,400만원의 기금지원을 승인하였으며, 이중 34억 7,8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

〈2007년 화상상봉 기금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승인액	집행액	
2007	제5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지원(315)	화상상봉시스템 구축	3	3
		화상상봉장 운영	46	37
		통신비	161	161
		부대경비	129	114
		소 계	339	315
	제6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지원(262)	화상상봉시스템 구축	4	4
		화상상봉장 운영	48	41
		통신비	140	140
		부대경비	79	77
		소 계	271	262
	제7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지원(276)	화상상봉시스템 구축	4	1
		화상상봉장 운영	49	40
		통신비	161	161
		부대경비	77	74
		소 계	290	276
계		899	853	

한편,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07.11.28~30)을 통해 남북은 분기별 영상편지 교환에 합의하고, 2008년 2월 5일 남북 각 20가족씩 영상편지 시범교환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제19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12.6)에서 영상편지 제작경비 3억 1,7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이중 5,0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



제4절 | 민간차원 이산가족교류 지원

1. 추진배경 및 경과

제3국을 통한 교류를 위해서는 이산가족들이 해외에 연고가 있거나 상당한 경비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교류당사자들의 신변안전 등 여러 문제점이 수반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이산가족들이 비교적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신교환과 상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993년부터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교류 주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인 또는 단체들에게 북한주민접촉을 승인하고 있다.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 등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정부가 '7·7 선언'(88.7.7)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89.6.12)과 1990년 8월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작되었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남북고위급회담('90~'92)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됨으로써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한 때 주춤하는 현상을 보였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1998년 2월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로 선정하고, 이산가족 교류와 관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8년부터 제3국을 통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에 정부가 교류경비를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 조치 이후 제3국 상봉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극소수나마 방북 상봉도 이루어졌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현황〉

(단위: 건)

연도별 구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9	합계
생사 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388	209	276	69	74	34	3,775
서신 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961	776	843	449	413	174	11,267
제3국 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165	203	280	187	94	50	54	25	1,639
방북 상봉									1	5	4	5	5	3	1	1	4	1	2	32

2000년대 들어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의 발표('00.3.2) 및 시행이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북한주민 접촉 승인 유효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신고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이산가족 1세대 전체로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이산가족 교류의 행정절차상 부담을 완화시켰다. 또한 이산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8년부터 실시해 오던 교류경비지원도 증액하여 생사확인경비를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봉경비를 8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40만원의 교류지속경비도 신설하였다. 그리고 경비지원 횟수도 종전의 1회에서 각각 1회, 총 3회까지로 확대하였다.

2. 연도별 집행실적

1998년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경비 3,600만원을 집행한 이래 2008년 9월말 현재까지 총 30억 2,200만원의 기금이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경비로 집행되었다. 구체적인 연도별 집행 실적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이산가족 교류경비 기금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집행액	비고
2000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228	
2001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358	
2002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484	
2003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695	
"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13	
2004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322	
"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73	
2005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279	
2006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	271	
2007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	6	
"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	181	
2008.9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	112	
합 계		3,022	

〈이산가족 교류형태별 경비집행 현황〉

(단위 : 만원)

연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9	합계
생사 확인	건수	41	89	119	83	67	120	112	131	73	61	32	928
	지원금	1,720	4,030	7,490	7,645	7,138	11,086	9,499	9,670	6,860	5,410	2,700	73,248
상봉	건수	55	142	91	120	152	242	125	84	70	50	24	1,155
	지원금	5,024	12,240	15,740	24,000	33,440	52,741	23,922	12,487	720	9,980	4,626	194,920
교류 지속	건수	0	0	104	76	68	104	66	74	58	40	24	614
	지원금	0	0	4,655	3,260	3,410	5,387	2,940	3,022	2,533	1,790	1,200	28,197
합계	건수	96	231	314	279	287	466	303	289	201	151	80	2,697
	지원금	6,744	16,270	27,885	34,905	43,988	69,214	36,361	25,179	10,113	17,180	8,526	296,365

※ 집행의뢰일 기준, 위탁비용 등 5,800만원 미포함



제5절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1. 추진배경 및 경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사업은 1990년대 초 남북고위급회담에서부터 우리측이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사업이다. 이 사업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00.6.27~30)에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에 대해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부터였다. 우리 정부는 기존 이산가족 교류방식으로는 단기간 내에 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기회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00년 제2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상설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를 북측에 제의하였으며, 결국 남북은 2002년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공동 설치·운영에 합의하였다.

2003년 11월 제5차 적십자회담('03.11.3~5)에서 면회소를 남측이 전담하여 건설·운영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면회소 건설과 관련한 제반 실무사항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4년부터 설계 등 사전 준비작업을 추진해 온 남북은 2005년 8월 31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착공식을 가졌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악화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약 8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다.

2007년에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07.2.27~3.2)에서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더불어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을 재개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말부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공사가 재개되어, 2007년 12월 7일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면회사무소 준공식을 진행하였고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2008년 7월 완공되었다.⁴¹⁾

2. 연도별 집행실적

2002년 9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에 면회소를 건설하기로 합의한 후 남북은 기술협의를 통해 설계('04.12.30)와 측량 및 지질조사('05.7.18~7.30)를 완료하였으며,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05.6)에서 제1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05.8.26~31) 기간 중에 면회소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부지 50,000m²(1만5천평)에 건평 19,835m²(6천평), 지하 1층 지상 12층 건물로 지어졌으며, 1천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서 앞으로 보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수시로 상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는 설계비를 포함 총 550억원 규모의 기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면회소 건설에 따른 설계비로 13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5년 면회소 착공식 경비, 시설공사비 등에 81억 5,6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으며, 2006년에는

41) 제20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8.7.3)에서 면회소 비품 구입·설치를 위한 42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하였으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08.7.11) 및 관광중단에 따라 면회소 비품 구입·설치와 개소·운영이 보류되었다.

시설공사비 68억 3,700만원이 집행되었다. 또 2007년에는 시설비와 감리비 등 207억 3,000만원의 기금을 집행하였고, 2008년도에는 9월 까지 145억 5,300만원을 집행하여 총 515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약 34억원도 정산이 완료 되는대로 집행할 예정이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기금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집행액
2004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따른 설계 및 착공 지원(2003)	설계비 1,316
2005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따른 설계 및 착공 지원	측량 및 지질조사 235
		착공식 경비 292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시설공사비 7,629
		소 계 8,156
2006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시설공사비 6,837
2007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시설공사비 19,852
		감리비 734
		컨설팅 용역비 29
		면회사무소 준공식 행사비 115
		소 계 20,730
2008.9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시설공사비 14,553
합 계		51,592

※ 미집행 약 34억원은 정산 중으로 2008년도 집행 예정



제6절 |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운영

1. 추진배경 및 경과

정부는 이산가족 관련 자료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남북이산가족교류를 지원하고 이산가족자료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였다.

1998년 9월 25일 이북5도위원회에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사무소를 개소하고, 12월 18일에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관련 장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통일부에는 이산가족 관리, 이북5도 위원회에는 도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통일부-이북5도 위원회-대한적십자사'를 연결한 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대민 편의제공을 위해 문자, 사진, 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 제공 서비스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1999년 6월 18일부터 인터넷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찾기 신청접수 서비스를 개통하였다.

2005년 4월부터 12월에는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출연금 9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이산가족 동영상 DB구축사업」을 통하여 영상편지 4,013편을 제작하였으며, 그 해 8월부터 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07년 5월부터 11월에는 「이산가족찾기 등록갱신 및 재신청사업」을 실시하여 이산가족찾기를 신청한 본인 및 가족에게 신청

서를 접수받아 연락처, 주소 등을 현행화하였고,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는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료를 토대로 당국간 이산가족교류 대상자 선정, 이산가족 찾기 지원, 적실성있는 교류현황 관리 및 통계산출, 이산가족대상 서비스 제공, 이산가족관련 정책 수립 지원 등 이산가족업무 수행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 연도별 집행실적

2007년 말까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는 총 126,787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고령·노환 등으로 33,300명이 사망하고 93,487명이 생존하고 있다.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16회, 화상상봉 7회,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3회 등 이산가족교류행사 지원, 당국간 이산가족 교류대상자 선정 등 이산가족 정책수립 지원, 적실성 있는 통계 산출로 이산가족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구축 및 관리를 위해 1998년부터 2003년말까지 총 6억 2,800만원의 기금이 집행되었다. 구체적인 기금집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기금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집행액
1998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설치공사	13
1999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인트라넷 구축	373
		인터넷서비스 구축	49
		소 계	422
2000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DB 자료입력	103
		인터넷서비스 개선	50
		소 계	153
2001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DB 자료입력	26
2002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DB 자료입력	13
2003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DB 자료입력	1
합 계			628



제7절 | 평 가

정부는 이산가족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2000년 이래 상봉 및 교류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화상상봉 등을 도입함으로써 상봉방식을 다양화하였다. 또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의 정례화·제도화 기반도 마련하였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총 16차례 대면상봉으로 3,378가족 16,212명이 상봉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차례의 화상상봉을 통해 557가족 3,748명이 상봉을 하는 등 19,960명이 가족을 만났고 4만 8천여명에 대한 생사확인을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는 9만 2천여명의 이산가족들이 가족 상봉을 위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여전히 미흡하다.

화상상봉방식 도입은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들이 편리하게 가족을 상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통해 상봉인원 및 규모 확대, 상봉비용 절감, 재상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면회소가 개소·운영되면 보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나아가 북측 가족과의 서신교환, 재상봉 및 고향방문 등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화상상봉센터 건립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물품을 지원한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는 하나, 대북지원의 원칙을 제대로 견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기시마다 지원 물자의 사용내역 확인을 북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그리고 2년여에 걸친 공사를 통해 2008년 7월 완공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보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동시에 상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하나의 진전이라고 평가된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과 관련해 우리측이 부담한 경제적 비용에 비해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금강산면회소를 단순히 비용 대비 효과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본 것으로서,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의 이중성 속에서도 이산가족면회소가 건립되었다는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그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운영으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료의 통합관리, 교류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인터넷 대민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이산가족정보의 실시간 업데이트, 교류현황 자료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이산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확대를 위해 상봉, 생사주소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1992년부터 2008년 9월까지 781억여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되어,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이처럼 남북협력기금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기금집행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기금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산가족문제는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감안해 볼 때, 경제 논리로 단순히 평가할 수 없는 인도적 사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향후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물자 및 비용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해 나갈 것이다.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교류가 정례화·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개소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시상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를 확대하고 정례화·제도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최근 고령 이산가족의 사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선 고령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고향방문과 자유왕래도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구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징표이며, 남북사이의 사회·문화 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부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제4장

남북경제협력 지원

제1절 | 개 관

제2절 |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3절 | 개성공단 조성

제4절 | 분야별 협력사업

제5절 | 민간기업 대출 및 교역·경협 보험

제6절 | 평 가



제1절 | 개 관

남북경제협력사업은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에 의해 공식적으로 허용된 이래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과 1994년,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등을 통해 제도화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설치된 이후 1999년까지는 주로 인도적 지원에 사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남북간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9년 10월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제정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을 시행하였다. 또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당국 차원에서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에 합의한 이후에는 당국간 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오고 있다. 이로부터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은 사업 성격 등을 기준으로 크게 ①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② 개성공단 조성사업 ③ 관광·경공업·농업 등 분야별 경제협력사업 ④ 민간기업 대출 및 교역·경협 보험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부는 2008년 9월말까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위해 무상지원 8,907억원, 자금대출 5,472억원 및 교역·경협보험 13억원 등 총 1조 4,392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제2절 | 남북 철도·도로 연결

1. 추진배경 및 경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육로 통행을 통한 물류비 절감과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 토대를 마련하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등을 위하여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추진되었다.

2000년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00.7.31)에서 남북은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기로 하였고,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00.9.1)에서는 서울에서 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함과 동시에 문산에서 개성사이의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7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0.9.9)를 개최하여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에 639억원, 통일대교-장단간 도로 개설 사업에 873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하였다. 2001년에도 제7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1.2.8)를 개최하여 경의선 철도 및 통일대교-장단간 도로 연결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804억원 지원을 의결하였다.

2002년 4월 5일 대통령 특사의 평양 방문시에는 한반도의 서쪽에서 뿐만 아니라 동쪽에서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구간〉

구 분		남측구간	북측구간	총 거리
경의선	철도	문산-임진강-도라산- 군사분계선(12km)	개성-손하-판문- 군사분계선(15.3km)	27.3km
	도로	통일대교 복단- 군사분계선(5.1km)	개성-군사분계선(7km)	12.1km
동해선	철도	제진-군사분계선(7km)	금강산-삼일포-감호- 군사분계선(18.5km)	25.5km
	도로	송현리-군사분계선(4.2km)	북고성-군사분계선(20km)	24.2km

이어서 서울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02.8.30)에서는 북측구간의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남측이 제공하기로 하고,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2002년 9월 18일 남북이 동시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해 개성에서 열린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02.9.17)에서는 「철도·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북측구간의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자재·장비를 차관으로 지원하되 1차분 자재와 장비 등은 2002년 9월안에, 나머지 전량은 공사 일정에 맞추어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10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2.9.17)를 열어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1,668억원 지원, 대북 자재·장비 차관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597억원 이내 지원을 의결하고, 9월 18일 예정대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동시 착공식을 실시하였다.

2003년 개성에서 열린 제4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03.3.12)에서 남북 양측은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공사를 3월말에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동시에 착수하여 각자 자기측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남측은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공사 착수에 필요한 자재·장비

를 공사착수 5일전까지 북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2003년 6월 14일 남북 양측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지점에서 궤도연결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제11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3.10.9)를 개최하여 대북 자재·장비 차관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899억원 이내 지원을 추가로 의결하였다.

2003년 개성에서 열린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03.7.4)에서는 철도운영에 필요한 신호, 통신, 전력계통 분야의 자재·장비와 기술지원에 합의하였으며, 2004년 개성에서 열린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04.4.10)에서는 북측 철도구간의 관문역, 손하역, 개성역 등 경의선 3개역과 감호역, 삼일포역, 금강산역 등 동해선 3개역의 역사 건설을 위한 자재·장비 제공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철도 신호분야와 통신 및 전력계통 분야 공사를 2003년 7월부터, 북측구간 6개 역사건설 공사를 2004년 4월부터 각각 착수하였다.

2004년 서울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04.3.5)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 분계역사 등을 위한 설계 및 기자재 제공 협력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남과 북은 2005년 4월 18일 경의선·동해선 철도 분계역사 등 설계 및 기자재 제공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14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5.5.10)를 개최하여 대북 역사건축 기자재 차관제공을 위한 추가지원분으로 268억원의 증액을 의결하였다.

2005년 서울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05.7.12)에서는 경의선·동해선 분계역사 건설 등 공사를 끝내고 10월경 열차 시험운행 및 도로 개통식을 갖고 연말까지 철도 개통식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개성에서 열린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05.7.30)에서는 북측에 역사 신축에 필요한 추가 자재·장비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열차, 차량 운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합의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 2005년 열차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식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2006년에도 제12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06.5.12)을 통해 그동안 지연되었던 경의선·동해선의 열차시험운행을 5월 25일 진행하기로 재차 합의하였으나, 북한이 시험운행 하루 전인 5월 24일 군사적 보장조치 미비를 이유로 열차시험운행을 예정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옴에 따라 행사가 무산되었다.

계속 지연되던 남북간 열차시험운행 및 철도개통은 평양에서 열린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07.3.2)을 계기로 그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07.4.22)에서 남북 열차시험운행을 2007년 5월 17일에 실시하기로 하고, 개성에서 열린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07.5.14)에서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를 채택함에 따라 5월 17일 비로소 남북 열차시험운행이 실시되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0년 9월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에 639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한 이래 2007년 12월까지 총 12차례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총 15건 8,239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승인하였다. 이중 남측구간 지원 승인액은 6,378억원이고 북측구간은 1,860억원이며, 북측구간 지원 승인액 중 차관은 1,558억원이고 수송비 등 부대비용은 302억원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관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현황〉

차수(일자)	안 건	지원액
제73차 (00.9.9)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639억원
	통일대교-장단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873억원
제76차 (01.2.8)	2001년 경의선 철도 및 통일대교-장단간 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804억원
제102차 (02.9.17)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668억원
	대북 자재·장비 차관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597억원 이내 * 차관 : 4,500만불 (500억원)
제119차 (03.10.9)	대북 자재·장비 차관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추가지원	899억원 이내 * 차관 : 6,000만불 (720억원)
제125차 (04.4.6)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총사업비 변경	518억원 증액
제146차 (05.5.10)	대북 역사건축 기자재 차관제공을 위한 자재·장비 차관 추가지원 의결	268억원 증액 * 차관 : 2,500만불 (223억원)
제160차 (05.11.9)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총사업비 변경	335억원 증액
제172차 (06.5.30)	동해선 남북도로연결 총사업비 변경 및 소요자금 지원	7억원 증액
제177차 (06.10.30)	경의선 철도(열차시험운행) 행사비 정산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1억원 증액
제178차 (06.12.22)	대북 자재·장비 차관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추가분 지원	45억원 증액
제185차 (07.5.11)	남북열차시험운행 행사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8억원
제196차 (07.12.6)	문산-봉동간 남북화물열차 개통 행사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5억원
	남북철도 연결구간 마무리 공사용 자재·장비 차관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52억원 증액 * 차관: 350만불 (12,623억원)

2. 연도별 집행실적

가. 남측구간 연도별 집행실적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남측구간 공사는 2000년 9월 시작되어 2007년 12월말 현재 대부분 마무리되었으나, 동해선 공용야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비무장지대내 지뢰제거 공사는 2000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경의선 남측구간 철도·도로 연결공사는 2000년 9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진행되었다. 동해선 남측구간 철도·도로 연결공사는 2002년 9월 시작되어 도로구간은 2004년 10월까지, 철도구간은 2005년 12월까지 진행되었다.

〈남측구간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승인액	집행액										
		'00	'01	'02	'03	'04	'05	'06	'07	'08.9	계	
경의선	소계	183,290	14,578	89,850	26,047	31,919	2,782	219	814	1,489		167,698
	철도	93,191	8,518	49,988	17,866	6,478	1,855	109	678	1,489		86,981
	도로	90,099	6,060	39,862	8,181	25,441	927	110	136			80,717
동해선	소계	253,340			8,586	32,846	57,652	113,614	26,014	4,705		243,417
	철도	114,900			4,532	9,705	23,759	49,924	17,379	4,705		110,004
	도로	138,440			4,054	23,141	33,893	63,690	8,635			133,413
경의선 CIQ 공용야드	소계	154,063					3,427	61,703	44,672	35,642		145,444
	철도 CIQ	25,989					1,503	15,215	7,870			24,588
	도로 CIQ	42,463					733	33,533	7,442			41,708
	공용야드	85,611					1,191	12,955	29,360	35,642		79,148
동해선 공용야드	48,977						624	1,727	9,992	6,257	18,600	
합계	639,670	14,578	89,850	34,633	64,765	63,861	176,160	73,227	51,829	6,257	575,160	

* 동해선 철도 CIQ 및 도로 CIQ 예산은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예산에 포함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에는 총 7,493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남측구간에 76.8%인 5,752억원이 집행되었다. 남측구간 중 경의선 도로연결공사에 807억원, 철도연결공사에 870억원이 집행되었고 동해선 도로연결공사에 1,334억원, 철도연결공사에 1,100억원이 집행되었다. 남북간 왕래를 위한 경의선 철도 CIQ 건설에 246억원, 도로 CIQ 건설에 417억원, 공용야드 건설에 791억원이 집행되었고 동해선 공용야드 건설에는 186억원이 집행되었다.

나. 북측구간 연도별 집행실적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북측구간 공사는 2002년 9월부터 시작되어 도로는 2004년 10월까지 실시되었고, 철도는 2005년 12월에 궤도부설공사가 완료되었다. 남북철도 연결공사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공사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한 끝에 현재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나 철도연결구간의 신호·통신·전력계통의 마무리공사 및 북측 역사건축 마무리 공사가 남아있다.

북측구간 공사는 우리측이 차관으로 제공한 자재·장비를 활용하여 북측이 시공하였다.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02.9.17) 합의에 따라 2002년 10월 19일 처음으로 굴착기, 트럭, 시멘트 철근 등 자재·장비를 북측 장전항으로 전달한 이후 2007년까지 총 788회에 걸쳐 북측구간 연결에 필요한 도로건설 자재·장비, 철도건설 자재·장비, 역사건축 자재·장비가 제공되었다.

북측구간 연결공사 초기에는 자재·장비만을 제공하였으나, 북측이 잦은 장비 고장과 기술력 부족 등으로 연결공사와 관련된 기술 지원을 요청하여 자재·장비 제공과 함께 기술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북측구간에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집행된 총 7,493억원 중 23.2%인 1,741억원이 집행되었다. 이중 대북 차관은 1,494억원이며, 수송비 등 부대비용은 247억원이다. 대북 자재·장비 차관은 연결 공사 완료 후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이율은 연 1%이다.

〈연도별 대북 자재·장비 제공 현황〉

구 분		경의선	동해선	합 계
연도	전달방법			
2002	해로	11회	11회	22회
2003	해로	11회	11회	22회
	도로	34회	34회	68회
2004	해로		1회	1회
	도로	159회	172회	331회
2005	도로	120회	106회	226회
2006	도로	51회	47회	98회
2007	도로	10회	9회	19회
	철도	1회		1회
합 계		397회	391회	788회

〈북측구간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승인액	집 행 액							계
			'02	'03	'04	'05	'06	'07	'08.9	
철도 도로	소 계	59,700	32,275	21,777	3,855	550				58,457
	차 관	52,754	30,582	17,701	3,620	473				52,376
연결 자재 (1차)	수송비 등	7,246	1,693	4,076	235	77				6,081
철도 도로	소 계	96,947		25,603	42,714	11,129	6,564	2,831	2,372	91,213
	차 관	78,735		18,264	36,054	9,744	6,418	2,679	2,325	75,484
연결 자재 (2차)	수송비 등	18,212		7,339	6,660	1,385	146	152	47	15,729
역사 건설 기자재 (3차)	소 계	29,399				9,991	9,679	4,389	443	24,502
	차 관	24,661				8,378	8,862	3,901	416	21,557
	수송비 등	4,738				1,613	817	488	27	2,945
대북자재·장비 제공(합계)		186,046	32,275	47,380	46,569	21,670	16,243	7,220	2,815	174,172



제3절 | 개성공단 조성

1. 추진배경 및 경과

개성공단 개발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측간에 개성을 중심으로 한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이 계기가 되어, 여러 차례 당국간 협의를 거쳐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 현대아산과 북측간 합의 이후, 현대아산·한국토지공사와 북측간에 공단 개발을 위한 실무접촉이 5차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2002년 12월 23일 현대아산에 개성공업지구 전체에 대하여 50년간 토지사용을 보장하는 토지이용증을 발급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아산·한국토지공사는 공장구역 조성사업 중 우선 1단계 330만m²를 개발하는 사업시행협약서를 체결하고 한국토지공사는 분양·임대업무를, 현대는 공사시공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02년 12월 27일 통일부는 이들 기관을 개성공단 공장구역 1단계 조성공사에 대한 협력사업자로 승인하였다.

남북 당국은 2002년 8월 12일부터 개최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개성공단 개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개성공단 전력·통신공급, 법제도 구축, 통행·통신·통관·검역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2002년 10월 제1차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와 12월 현대아산·한국토지공사와 북측간 「개발업자 지정 합의서」 체결을 바탕으로, 남북은 2003년 6월 30일 개성공단 착공식을 거행하였다.

개성공단 분양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범단지(11만 6천㎡), 본단지 1차(13만 9천㎡), 본단지 2차(162만 4천㎡)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범단지는 2004년 6월 봉제, 신발, 전자부품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여 15개 필지를 분양하였으며, 협력업체 동반입주를 포함하여 (주)로만손, (주)신원 등 26개 기업이 입주하였다.

본단지 1차 분양은 입주 수요가 가장 많은 섬유·봉제·의복 및 가죽·가방·신발 업종의 총 24개 기업 및 기관에 이루어졌고, 2차 분양에서는 183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개성공단 분양가는 1㎡당 4만 5천원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2005년부터 2008년 9월까지 개성공단 개발사업에 투입된 남북협력기금은 승인액 기준으로 총 4,623억 7,000만원이고, 이중 무상지원이 2,508억 300만원, 대출이 2,115억 6,700만원이다.⁴²⁾ 2008년 9월까지 총 3,347억 3,9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중 무상으로 1,734억 6,200만원, 대출로 1,612억 7,700만원이 집행되었다.

42) 무상지원 항목은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기술교육센터 건설, 종합지원센터 건설, 아파트형공장 건설, 개성공단 북측 관계자 세무·회계 연수 지원 등 5개 부문이고, 기금대출은 개성공단 전력·통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운영, 입주기업 경제협력자금 대출, 대북연탄지원 대출 등 4개 부문에 이루어졌다.

〈개성공단 남북협력기금 승인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안 건	승인일	승인액
2004년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남북협력 기금 지원	2004.9.8	109,500
	개성공단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2004.9.8	22,500
	시범단지 입주기업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2004년	49,170
	소 계		181,170
2005년	대북 연탄지원용 남북협력기금 대출	2005.6.4	897
	북한주민 중국공단 견학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005.6.4	47
	북측 세무, 회계인력 연수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005.10.28	62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 건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005.12.16	19,256
	소 계		20,262
2006년	개성공단 전력·통신 시설건설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2006.2.27	78,700 (전력 : 41,000, 통신 : 37,700)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006.4.27	3,400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운영대출금 변경	2006.5.30	3,600 증액 (총액 : 26,100)
	본단지 입주기업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2006년	30,400
	소 계		116,100
2007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2007.1.25	10,400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총사업비 변경	2007.2.26	41,500 증액 (총액 : 151,000)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 건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007.4.27	23,400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총사업비 의결	2007.4.27	53,600 증액 (총액 : 57,000)
	개성공단 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남북 보험관계자 합동해외시찰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007.4.30	38
	소 계		128,938
2008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2008.1.28	9,900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2008.1.28	3,100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2008.5.16	2,900
	소 계		15,900
총 계			462,370

2. 사업별 집행실적

가. 기반시설 건설 지원

(1) 추진배경 및 경과

개성공단은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인 만큼, 공단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을 국내산업단지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 내부기반시설⁴³⁾ 건설비용을 국내산업단지에 준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을 개최한 후, 정부는 제133차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04.9.8)에서 기반시설 건설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 1,095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6년 8월 현지조사 및 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공단 녹지비율 상향,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결과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제18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2.26) 의결을 거쳐 당초보다 415억원을 증액한 1,510억원으로 조정 결정하였다. 총사업비 1,510억원은 기반시설 단계별 설치계획에 따라 1차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300억원을, 2차분은 2008년 이후에 210억원을 지원하여 건설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2) 연도별 집행실적

기반시설은 총사업비 1,510억원 중 용수시설 487억원, 폐수처리

43) 개성공단 기반시설은 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단지내 시설 등 내부기반시설과 전력·통신 등의 외부기반시설로 구분된다.

시설 36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246억원, 단지내 시설 417억원을 투입하여 건설을 추진 중이다.

(가) 용수시설

개성공단에 용수공급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되었으나, 남북은 경제성 및 신속성을 고려하여 개성공단 북쪽으로 약 17.8km 지점에 위치한 월고저수지를 확대 건설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남북은 2005년 3월 24일 '개성공업지구(1단계) 용수시설 건설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남측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북측에 지원하였고 북측은 월고저수지 제방 축조, 물길굴(도수터널), 도수관로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을 맡아 용수공급시설을 건설하였다.

월고저수지 건설지원을 위해 통일부, 한국토지공사, 현대아산, 관련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개성공단(1단계) 용수시설 자재장비 지원 심의회」를 구성하였다. 심의회에서는 북측이 요청한 품목에 대하여 지원여부를 심의·결정함으로써 남북협력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기간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일정 및 입주기업의 용수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정배수장을 단계별로 건설하도록 계획하였다. 용수공급시설 1차분 건설은 2005년 12월 19일에 시작하여 2007년 10월에 완공하였다. 현재는 전체 1일 6만톤 시설용량 중 1일 3만톤의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용수시설 건설비 487억원 중 2005년부터 2008년 9월까지 1차분 건설비용으로 총 470억 100만원을 집행하였다. 향후 기업 입주 추이를 보아가며 2차분(1일 3만톤 규모) 정·배수처리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나) 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개성공단 1단계에 입주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를 1일 3만톤까지 정화할 수 있는 시설로서 26,446m² 부지에 2005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건설하였다.

폐수처리시설은 친환경 공단 조성을 위해 악취와 색도까지 제거할 수 있고 남측의 환경기준 이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첨단 처리공법으로 설계하였다. 이 시설은 정배수장과 마찬가지로 단계별 설치 계획에 따라 현재는 전체 시설용량 중 1일 1만 5천톤의 폐수처리설비를 갖추어 가동중이며, 추후 기업입주 추이에 따라 나머지 1일 1만 5천톤의 처리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2007년까지 건설비는 총 360억원 중 1차분으로 299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08년도에는 폐수처리시설 주변 조경공사비로 3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하였다. 폐수처리시설 공사비로 '08.9월까지 총 299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다.

(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은 공단내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함으로써 환경에 무해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하였다. 매립시설은 61,000m³ 규모로 설계하였고, 2005년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 6월에 건설을 완료하였다. 1일 12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은 2007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건설비용은 총 공사비 246억원 중 2008년 9월까지 1차분으로 86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다. 추후 기업 입주 추이를 고려하여 143,000m³ 규모의 매립시설과 1일 50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라) 단지내 시설

단지내 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조경과 특수시설물 등이 있다. 개성공단 단지내 시설공사는 2004년 8월부터 시작하여 2007년 6월에 완료하였다. 상·하수도 관로 약 106km를 건설하고, 도로 약 541,000m²를 포장하는 등 공단내 조경공사를 2005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실시하였다. 단지내 시설 공사비 총 417억원 중 2008년 9월까지 408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여 예산은 이후 조경 관리사업에 집행할 계획이다.

〈연도별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세부사항	총사업비	집행액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	
계	151,000	2,565	16,274	63,608	38,425	5,600	126,472
용수시설	48,700	-	1,789	23,684	19,331	2,197	47,001
폐수처리시설	36,000	470	5,628	19,432	4,463	3	29,996
폐기물처리시설	24,600	-	-	724	4,858	3,049	8,631
단지내시설	41,700	2,095	8,857	19,768	9,773	351	40,844

나. 기술교육센터 건설 지원

(1) 추진배경 및 경과

개성공단사업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된 경제협력사업이나 현재 북측 인력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에 적합한 기술과 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북측 근로자를 입주기업별 특성에 맞는 기능 인력으로 양성

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에 정부는 제16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5.12.16)를 개최하여 기술교육센터 건설비 192억 5,6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05년 12월 27일에는 한국토지공사와 토지이용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건설을 완료하였고, 2007년 12월에는 교육장비를 완비하였다.

기술교육센터는 대지 23,142m², 건물 3,498m² 규모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22개의 강의·실습실, 대강당, 회의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서는 하루에 약 700여명의 동시 교육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4,000명의 기능인력에 대해 이론 및 실습교육이 가능하다. 현재는 센터의 조직, 교육과정, 강사 및 교육생 선발 등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북측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2) 연도별 집행실적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술교육센터 건설에 소요된 남북협력기금은 총 177억 8,800만원이다. 이중 부지매입 비용으로 10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설비용으로 121억 6,700만원, 2007년 시설장비비 45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다.

<연도별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집행연도	승인액		집행액	공정율
2005년	1,374	부지매입비	1,037	5.8%
2006년	12,157	시설비	3,598	20.2%
2007년	5,725	시설비	8,569	74.0%
		장비비	4,584	
합계	19,256		17,788	100%

다. 종합지원센터 건설 지원

(1) 추진배경 및 경과

정부는 향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확대에 따른 입주기업의 공공 서비스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개성공단내 행정서비스 기능과 전시·판매 기능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종합지원센터 건설을 결정하였다.

2006년 제17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6.4.27)에서 종합지원센터 건설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부지매입비 18억원과 설계비 16억원 등 총 34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종합지원센터 건립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2006년 5월에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와 '종합지원센터 건립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종합지원센터의 설계는 2006년 10월부터 희림종합건설 등 3개사 컨소시엄으로 진행되어 2007년 5월에 완료되었다. 정부는 제18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4.27)에서 종합지원센터 건설 총사업비를 570억원으로 결정하였다. 시공사 선정은 조달청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2007년 8월 (주)금호산업, (주)남광토건, (주)씨엔씨종합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2007년 10월에 착공되었다.

종합지원센터는 부지 39,669m², 연면적 30,911m² 지상 15층, 지하 1층 규모로 건설 중이며 완공 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비롯한 20여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세미나실, 국제회의장, 민원실, 홍보관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2) 연도별 집행실적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지원센터 건설 총사업비는 570억원

인 바, 이중 2006년에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로 21억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에는 설계비 잔여분과 공사비 및 감리비 일부를 합한 74억원을 집행하였다. 2008년에는 70억 9,900만원을 집행하여 2006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총 166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다. 종합지원센터 건설비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는 시공사가 북한지역 건설이 처음인 관계로, 초기 장비·인력 투입 등 준비기간에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초기공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9월 현재 공정율이 40%로, 내부공사가 시작되는 2009년부터는 공정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당초 목표대로 2009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승인액		집행액	
2006년	3,400	▪부지매입비 1,800 ▪설 계 비 1,600	2,117	▪부지매입비 1,777 ▪설 계 비 340
2007년	22,000	▪공 사 비 20,908 ▪설계, 감리 1,092	7,445	▪설 계 비 1,455 ▪공 사 비 5,094 ▪감 리 비 896
2008년 (9월)	21,600	▪공 사 비 20,669 ▪감 리 931	7,099	▪공 사 비 7,022 ▪감 리 비 77
2009년	10,000	▪공 사 비 9,622 ▪감 리 비 378	-	-
합 계	57,000		16,661	

라. 아파트형공장 건설 지원

(1) 추진배경 및 경과

2004년도에 경제민생점검회의('04.8.13)에서 한계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후 2006년 소규모 의류업체 등이 통일

부에 아파트형공장 건설지원을 요청해옴으로써 아파트형공장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은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을 특정 사업조합에 직접 지원하여 건설하기보다는 정부가 건축하여 임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제18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4.27)에서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위해 234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2007년 6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였고, 2007년 10월 31일에 현대아산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2007년 11월 2일에 착공하였다. 아파트형공장은 부지 22,922.4m², 연건축면적 26,694.3m² 규모로 1개동을 건설 중이며 2008년 12월말에 완공할 계획이다. 완공 후에는 약 30여개 중소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연도별 집행실적

아파트형공장 건설의 총사업비는 234억원으로서 2007년도에 60억 8,900만원을 투입하였고 나머지 173억원 1,100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다. 2008년에는 9월까지 이월액 중 64억 5,200만원을 집행하여 6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집행연도	승인액	승인내역	집행액	공정율
2007년	23,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 1,033 ▪ 설계감리 1,803 ▪ 공사비 20,000 ▪ 자산구입등 564 	6,089	26%
2008년 (9월)	-	-	6,452 (이월액)	61%
합 계		23,400		12,541

마. 전력·통신 시설투자 대출

(1) 전력

(가) 추진배경 및 경과

전력시설은 공장가동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나 북측 지역의 전력사정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남북은 2004년 12월 ‘개성공업지구 전력공급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남북은 시공·운영 등의 문제와 개성공단을 위한 발전소 건설 등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으나, 결국 남측 사업자가 시공 및 운영을 담당하고 개성공단에만 전력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함으로써 정상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2004년 5월 한국전력을 개성공단 전기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시범단지는 배전방식으로 우선 공급하고 추후로 1단계 전체를 송전방식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개성공단 전력시설 공사를 위해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한국전력은 정부에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전력시설을 빠른 시일내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여 제16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6.2.27) 의결을 거쳐 410억원을 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출한도는 한국전력의 총 투자비 512억원의 80%로서 기성고에 따라 자기자금 투입이 확인된 후 대출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대출조건은 이자율이 2%이며, 상환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20년(거치기간 7년 포함)으로 거치기간 종료 후 매년 2회, 총 26회 정기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하였다.

(나) 연도별 집행실적

2005년 1월 남측 문산변전소에서 개성공단까지 약200개의 전주를 이용하는 배전시설(1만5천kW) 공사에 착수하여 2005년 3월 16일부터 우선 시범단계에 전력을 공급하였다. 2006년 4월부터는 10만kW 용량의 송변전시설(평화변전소) 공사를 추진하였고, 2007년 5월 26일부터는 1단계 지역 전체에 송전방식으로 전력공급을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전력이 개성공단 전력시설 건설에 투자한 총액은 464억 2,200만원이다. 이중 남북협력기금은 총투자비의 80%인 370억 5,000만원이 대출되었고, 나머지 미입주기업에 대한 배전설비비 39억 5,000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다.

〈연도별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남북협력기금 대출			전력시설 투자액	세부내역
	대출 승인액	집행액	이월액		
2005년	-	-	-	6,6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 전 설 비 5,079 · 송 변 전 설 비 1,053 · 기 타 540
2006년	11,500	11,500	-	29,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 전 설 비 1,565 · 송 변 전 설 비 26,518 · 기 타 1,744
2007년	29,500	25,550	3,950	9,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 전 설 비 3,187 · 송 변 전 설 비 6,639 · 기 타 97
합 계	41,000	37,050	3,950	46,422	

(2) 통신

(가) 추진배경 및 경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공단의 필수 기반

시설인 첨단 통신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통신사업자인 KT와 북측 조선체신회사는 2004년 12월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KT는 1단계 지역의 통신시설 구축을 위해 총 471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KT는 기본합의에 이어 2005년 3월 ‘통신공급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05년 7월 18일 남북간 광케이블을 처음으로 연결하였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입주하는 공단이라는 점과 중국·베트남 등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저렴한 요금의 통신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168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06.2.27)에서 KT에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결정하였다.

통신공급과 관련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액은 KT가 1단계지역에 투자할 471억원의 80%인 377억원이었다. 대출조건은 이자율이 2%이고, 7년 거치 후 13년 동안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연도별 집행실적

KT는 현재까지 개성공단 내에 700회선 규모의 통신시설을 구축하였고, 공단내 입주기업과 남측기관에 유선전화 및 FAX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통신요금은 북측에서 제공할 당시 1분당 2.3\$이었으나, KT 제공이후 1분당 0.4\$로 기존의 1/6수준으로 결정되어 입주기업들의 편익을 도모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KT의 총 투자액은 70억 9,700만원이고, 남북협력기금 대출은 56억 6,500만원이 집행되었다.

당초 1단계 협력기금 대출 승인액(377억원)은 2007년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북측과 통신센터 건설 문제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대출 승인액 377억원 중 이미 지출한 56억 6,500만원을 제외한 320억 3,500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다.

〈연도별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남북협력기금 대출			통신시설 투자액
	대출 승인액	집행액	이월액	
2005년	-	-	-	2,400
2006년	5,000	3,767	1,233	2,309
2007년	32,700	1,898	32,035	2,388
합 계	37,700	5,665	32,035	7,097

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운영비 등 대출

(1) 추진배경 및 경과

남북은 2003년 11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제7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관리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제13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4.9.8)에서 개성공단관리기관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 225억원을 3년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성공단관리기관은 우리측 개발업자가 설립·운영하지만 북측법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었다. 따라서 개성공단관리기관의 남측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를 차주로 하여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2004년 10월 개성공단 현지에 입주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1월에는 관리위원회를 관리·감독하는 남측법인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이하 지원협회)가 설립되었다.

관리위원회는 2005년 시범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 기업창설 승인 및 등록, 영업허가,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토지이용권 및 건물 등록, 기업 경영활동 지원, 기반시설 관리, 출입증명서 발급, 환경보호, 소방대책 등 개성공단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13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4.11.24)에서는 기금대출의 차주를 한국토지공사에서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로 변경하도록 의결하였다. 또한 지원협회는 관리위원회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부약정을 체결하였다. 대출조건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이자율은 1%였다.

정부는 2006년 개성공단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관리위원회 업무가 급증하자, 제17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6.5.30)에서 36억원(인건비 5억 6,000만원, 관리비 30억 4,0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제17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1.25)에서는 2007년 관리위원회 운영비 104억원의 대출을 승인하였다.

2008년에는 총 159억원의 대출을 승인하였다. 제20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8.1.28)에서 관리위원회 운영비 99억원 외에도 기술교육센터 운영비 31억원 대출을 승인하였다. 또한 제20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8.5.16)에서는 관리위원회가 운행하는 북측 근로자 통근버스 100대 추가 구입비 29억원에 대한 대출을 승인하였다.

한편 2007년 12월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이 설립되었다. 지원재단은 기존의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를 대체한 것으로 관리위원회의 남측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로 지원재단 이사장이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상근이사가 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관리위원회와 지원재단은 사실상 동일한 기구라고 볼 수 있다.

(2) 연도별 집행실적

개성공단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위한 관리위원회 운영 대출은 2004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총 524억원 대출이 승인되었으며, 그 중 416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다. 세부 내역은 인건비 95억 8,700만원, 관리운영비 215억 3,300만원, 숙소 및 사무소 등 신축·설치비 75억 6,300만원, 예비비 등 기타비용 7억 4,900만원, 기술교육센터 운영비 22억 1,800만원, 통근버스 구입비 600만원이다.

<연도별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집행연도	승인액	집행액	세부내역
2004년	22,500	4,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500 ▪ 관리운영비 2,050 ▪ 임시사무소설치비 1,750
2005년	-	8,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1,466 ▪ 관리운영비 4,652 ▪ 본사무소신축비 150 ▪ 임시사무소설치비 1,855
2006년	3,600	7,7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1,939 ▪ 관리운영비 3,976 ▪ 본사무소신축비 1,153 ▪ 숙소신축비 485 ▪ 예비비 232
2007년	10,400	11,8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3,132 ▪ 관리운영비 6,149 ▪ 본사무소신축비 596 ▪ 숙소신축비 1,574 ▪ 예비비 428
2008년 (9월)	15,900	9,5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2,550 ▪ 관리운영비 4,706 ▪ 예비비 89 ▪ 기술교육센터 운영비 2,218 ▪ 통근버스 구입비 6
합계	52,400	41,656	

사. 입주기업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 초기의 열악한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입주 기업에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하여 초기 시설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795억 7,000만원을 대출하기로 승인하였고, 대출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하였다. 이자율은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의 '대출이자율 결정기준'에 따라 기준금리에 신용위험조정율을 더한 이자율로 정하였는데 대출시기에 따라 평균 3.3~4.3%로 결정되었다.

시범단지의 경우 입주기업 15개사 중 14개사에 대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에 걸쳐 총 47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원금 상환기일 도래 등으로 16억원을 회수하였고 현재 대출잔액은 462억원이다. 본단지의 경우 14개사에 대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에 걸쳐 총 282억원을 집행하였다.

한편 정부는 1단계 2차 입주기업부터는 상업적 방식의 자금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통해 시중금융기관이 소요자금을 대출하도록 하였다.

〈연도별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대출 승인액	대출집행액					불용액	대출잔액 ('07년말)
		'04년	'05년	'06년	'07년	소 계		
시범단지 입주기업 (14개)	49,170	18,100	20,252	8,758	664	47,774	1,396	46,194
본단지 입주기업 (14개)	30,400	-	-	13,201	15,034	28,235	2,165	28,235
총계(28개)	79,570	18,100	20,252	21,959	15,698	76,009	3,561	74,429

아. 대북 연탄지원용 남북협력기금 대출

2005년초 북측은 우리측 관리위원회와 개발사업자 등에 개성공단 의 북측 근로자와 개성주민들이 사용할 연탄지원을 수차례 요청해 왔다. 관리위원회는 인도적 차원에서 개성주민을 돕고 개성공단사 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5월 정부에 대북 연탄지원 경비 대출을 신청하였다.

정부는 대북 연탄지원이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민족공 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14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 의회('05.6.4) 의결을 거쳐 소요경비 8억 9,700만원 대출을 승인하였 다. 대출조건은 거치기간 5년을 포함하여 15년간 상환, 이자율 1% 로 하였다.

관리위원회는 북측에 연탄 277만 7천장을 2005년 5월 30일부터 6월 17일 동안 8차례에 걸쳐 지원하였다. 대출승인액 8억 9,700만 원 중 총 8억 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세부내역은 연탄구입비 5억 1,100만원, 수송비 2억 8,400만원, 부대비 600만원이다.

〈연도별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승인액	대출액(집행액)
연탄구입비	연탄 184원×277만7천장	511	511
수송비	66만원×428대	283	284
부대비용	통관수수료, 연탄야적장 자재비 등	103	6
합 계		897	801

자. 개성공단 북측 관계자 세무, 회계연수 지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세무·회계 제도가 구축되어야 하나, 남북간에 이러한 제도가 상이하어 제도 정비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개성공단의 북측 관리인력에게 보험·세무·회계 제도를 교육시키고 중국·베트남의 경제특구와 유사공단 현장 견학을 통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었다.

남북 개성공단 개발 관계자들의 중국 공단 견학 및 세무·회계 연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4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5.6.4), 제15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5.10.28) 및 제18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4.30)에서 총 1억 4,700만원을 지원결정하였고, 총 9,600만원을 집행하였다.

〈연도별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내 용	승인액	집행액
2005년	북한주민 중국공단 견학 소요경비 지원	47	26
	개성공단 북측 관계자 세무, 회계 연수 지원	62	31
2006년	개성공단 북측 관계자 세무, 회계 연수 지원	('05년도 이월: 13)	12
2007년	개성공단 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남북 보험관계자 합동해외시찰	38	27
총 계		147	96

제4절 | 분야별 협력사업

1. 남북 관광협력

가. 금강산 관광지구 도로 포장공사 지원

(1) 추진배경 및 경과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금강산 관광지구의 도로들이 너무 노후되고 일부구간이 비포장 상태여서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다. 이에 사업자인 현대아산은 2004년 7월 도로포장 및 보수비용 31억 2,000만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였다.⁴⁴⁾

정부는 금강산 관광도로의 사용자가 우리 국민이라는 점과 국내 관광지구의 경우에도 도로 등 기반시설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보수·관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포장사업 지원을 결정하였다.

통일부는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총공사비를 27억 2,000만원 범위내로 조정하였다.

44) 금강산 관광지구도로는 포장구간이 31.1km, 비포장구간 13.4km 등 총 44.5km로서, 공사비용은 비포장도로에 대한 포장비용 27억원, 포장도로에 대한 보수공사비용 4억원을 예상하였다.

제13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4.9.8)에서 27억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도로포장사업을 무상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 연도별 집행실적

2004년도에는 공사구간 총 20.9km중 삼일포-해금강 구역 및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를 제외한 12.3km 구간 공사가 완료되어 제1차 기성금 14억 4,200만원이 지급되었다.

2005년에는 삼일포-해금강 구간 신규도로 건설문제에 대한 북측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2005년 8월 18일 북측과 삼일포-해금강 구간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05년 9월 15일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12월 5일에 완료되었다.

2005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조달청은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현대아산이 공사잔여 기성금을 수출입은행에 청구하고('05.12.28) 수출입은행이 공사잔여 기성금 12억 1,700만원을 현대아산에 지급완료('06.1)함으로써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2004	2005	2006	합계
집행금액	1,442	6	1,217	2,665
공사규모	총 20.9km(포장공사 13.4km, 덧씌우기 7.5km)			
공사기간	'04.11.1~'05.12.31			

나. 금강산 관광지구내 소방설비 등 지원

(1) 추진배경 및 경과

2006년에 들어 금강산 관광지역내 관광객 및 체류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금강산 호텔, 외금강호텔, 이산가족면회소 등 숙박시설 증가에 대비하여 금강산 관광지구내 소방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금강산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이 금강산자율소방대를 구성하여 소방안전 활동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소방장비와 시설이 미비하여 소방안전 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소방서와 소방설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부는 제17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6.4.10)에서 소방서 건설 및 소방설비 지원을 위해 22억 3,400만원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조달청과 업무위수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조달청은 현대아산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06년도 지원의결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06.7.5), 핵 실험('06.10.9) 등 남북관계 상황이 악화되어 금강산 소방서 건설사업이 지연되다가 2007년 5월에 소방서 부지가 확정되어 설계작업이 시작되었고 2007년 9월에 착공되었다.

소방서는 2008년 7월 8일 완공되었으며, 통일부와 조달청·현대아산 등 관계기관이 소방서 완공과 관련하여 업무종결회의를 개최하였다.

소방서 건설과 함께 지원하기로 한 소방차 3대중 펌프차, 물탱크차는 2007년 11월 17일에 북측에 전달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공기

호흡기, 공기충전기 등 부대장비도 지원하였다. 소방차 3대 중 고가 사다리차는 제작업체의 사정으로 제작이 지연되어 소방방재청, 통일부, 조달청이 합동으로 2008년 6월 23일 납품검사를 실시하였다.

2006년도 승인액을 2007년으로 이월하여 일부 집행하였으나 2008년 재이월이 불가하여 제20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8.7.3)에서 소방서 완공시 건설비용 및 고가사다리차 지원을 위해 17억 7,800만 원을 재의결하였다.

(2) 연도별 집행실적

2006년 총 22억 3,400만원을 의결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2007년으로 이월처리하여 2006년 900만원, 2007년 4억 6,700만원 등 총 4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다.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2006	2007	합계
내역	지반조사 용역비	소방차 2대 및 소방기기	
집행액	9	467	476

다. 금강산 관련 기업대출

(1) 한국관광공사 대출(금강산 관광사업 참여)

2000년 2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1년에 이르러 심각한 중단위기에 직면하였다. 초기의 무리한 투자로 사업자가 자금난을 겪게 되고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그 원인이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은 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 참여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고('01.6.20),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사업자에 관광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남북협력사업자 변경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았다.('01.6.23) 관광공사는 통일부에 사업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9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신청하였다('01.6.26).

정부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금강산 관광 공동사업자인 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일부는 제8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01.6.29) 하여 이자율 4%, 3년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900억원 대출을 의결하였다.

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대출집행은 2001년 7월 5일 시작하여 총 9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승인액	대출 및 지급현황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금액	90,000	45,000	6,200	6,500	6,500	5,000	9,200	6,000	4,000	1,600
일자	년	'01	'01	'02	'02	'02	'02	'02	'03	'04
	월일	6.29	7.5	3.2	3.26	4.30	8.27	9.19	2.25	2.9

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 대출과 관련하여 수익구조상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출조건 변경을 신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제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02.1.31) 이자율 4%(거치기간중 1%), 4년거치 4년간 균등분할 상환(연간 225억원)으로 대출조건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대출조건은 제16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6.2.27)에

서 다시 변경되었다. 변경후 대출조건은 이자율 연 2%(거치기간 중 1%), 1년 거치 10년간 균등 분할상환을 내용으로 하였다.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대출조건 변경 현황〉

구 분	최초 승인	1차 변경	2차 변경
승 인 일	2001.6.29 (최초집행일 : '01.7.9)	2002.1.31 (적용시점 : '02.1.4)	2006.2.27 (적용시점 : '05.9.1)
이 자 율	연 4%	연 4% (거치기간 중 1%)	연 2% (거치기간 중 1%)
상환방법	3년 거치 5년간 균등상환분할 (연간 180억원)	4년 거치 4년간 균등분할상환 (연간 225억원)	1년 거치 10년간 균등분할상환 (2년간 30억원씩/이후 연 33억원씩/최종년도 잔여금 일시상환)
대출기간	8년('01.7.5일부터)	8년('01.7.5일부터)	15년('01.7.5일부터)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현황〉

구 분	투자금액	지 분 율	비 고
총 계	900억원		
온 천 장	355억원	100%	소 유
문화회관	300억원	100%	소 유
온 정 각	245억원	60.0%	지분참여

〈한국관광공사의 대출액 상환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02 (9~12월)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3)}	계
상환이자	907	*1)	*2)	2,956	900	1,795	868	7,426
상환원금						3,000	1,500	4,500

※ 1), 2) 대출조건상 육로관광('03.9) 개시 2년 후 이자 상환

※ 3) 2008년도 9월 1일 상환예정분은 금강산관광 재개 3월 후 상환

(2) (주)에머슨퍼시픽 대출

(주)에머슨퍼시픽은 2005년도 남북협력사업자 승인('05.12.19)에 이어 「금강산내 골프장 & 스파 리조트 건설」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취득하였다.('05.12.30)

(주)에머슨퍼시픽은 총사업비 342억원의 11.1%에 해당하는 38억 원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정부는 검토결과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의 제 규정에 부합하고 채권보전에도 문제가 없으며 3대 경협사업의 하나인 금강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주)에머슨퍼시픽에 대한 대출은 50억미만의 금액에 해당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없이 정부와 수출입은행의 검토를 거쳐 결정되었다.

대출자금의 주요 사용내역은 발전기 투자비 20억원, 도로건설비 7억원, 토목공사비 5억원, 조경공사비 6억원 등 총 38억원이었다.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2006	2007	합계
금액	2,100	1,700	3,800

라. 백두산 도로·활주로 포장 지원

(1) 추진배경 및 경과

한국관광공사는 2004년 7월부터 북측 KOSTAR Coporation(이하 KOSTAR)와 백두산 종합관광개발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삼지연공항 활주로 보수공사와 백두산 시범관광을 실시하는 문제를 3차에 걸쳐 협의하고('04.7~'04.9, 중국 심양), 6차에 걸쳐 의견서를 교환하였다.⁴⁵⁾

그러나 북측의 KOSTAR가 공사비 380만달러 중 190만달러를 먼저 현금으로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고, 백두산 사업권 보장 문제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협의를 중단되었다.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은 북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와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05.7.14), 현지답사 및 시범관광을 2회 이상 실시하고 남측이 도로보수용 피치 8,000톤과 부자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국관광공사는 백두산 관광도로 포장 및 보수자재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통일부에 요청('05.7.21)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백두산 관광사업이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15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5.7.29)에서 49억 8,000만원 이내의 기금지원을 결정하였다.

2005년 12월 4일 관광도로 포장상태 점검을 위해 도로기술 전문가와 정부관계자들이 백두산 현지를 방문한 결과, 북측의 기술력

45) KOSTAR Coporation은 2002년 2월 조선능라 888무역회사의 첨단과학기술부문이 독립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IT·임가공분야와 종합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부족으로 인해 공사 진행과정상 하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한국관광공사와 아태는 2006년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개최된 백두산관광 실무접촉에서 백두산 도로 포장 및 삼지연공항 활주로 보수 공사의 기술적 보원을 위해 제2차 보수용 피치 등 관련된 자재 제공에 합의하였다.(’06.1.13)

2006년 1월 19일 한국관광공사는 삼지연 공항의 보수공사를 위해 정부에 추가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제 16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6.1.26)에서 46억 9,000만원 이내의 기금지원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정부는 1차 지원 49억 8,000만원, 2차 지원 46억 9,000만원 등 총 96억 7,000만원에 대한 기금지원을 승인하였다.

이후 한국관광공사와 아태는 세차례의 실무접촉을 개최하여(’06. 3.8, 5.11, 5.19) 백두산 관광을 위한 삼지연공항 활주로·주변도로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2) 연도별 집행실적

정부는 백두산 도로포장 1차 지원분으로 아스팔트 피치 8천톤, 부자재 3천톤을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북측에 전달하였다.(’05.8.2~9.16)

2006년 1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2차 지원분 아스팔트 피치 8,000톤과 부자재를 3차례에 걸쳐 북측에 전달하였다.⁴⁶⁾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백두산관광 실시에 합의하고 현대아산이 백두산관광에 대한 합의를 체결함에 따라(’07.11.3) 정부 합동조사단이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백두산 삼지연 공항

46) 지원과정에서 아스팔트 유제(RSC-4)는 보존기간이 생산 후 2개월인데 백두산 삼지연 공항의 공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지원을 유보하였다.

을 방문하여 2차 지원 이후 아스팔트 포장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이때 협력기금으로 아스팔트 샘플 채취를 위한 코어채취기가 지원되었다.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2005	2006	2007
내역	도로포장용 피치 8천톤/ 기타 부자재	도로포장용 피치 8천톤/ 기타 부자재	코어채취기 (활주로 포장 확인용) 등 기타 기자재
금액	4,913	4,373	25

2.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가. 추진배경 및 경과

남북은 2005년 서울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7.9~12)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 후 2006년 제주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6.3~6)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 실시 등 여건이 조성되는 때에 합의서를 발효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 합의내용은 2006년부터 우리측이 북측에 미화 8,000만달러 상당의 의복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북측은 지하자원 생산물,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그 대가를 상환(당해년도 3% 상환, 잔여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이자율 1%, 연체이자율 4%)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열차시험운행이 무산되는데 이어 북한이 핵 실험('06.10.9)을 강행함에 따라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지 못하고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은 담보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집중되면서 2007년 2월 6차회담에서 「2.13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재개되면서 2007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4.18~22, 평양)를 통해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수정 합의서」를 채택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남북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의 구체적 협의·이행을 위해 각각 이행기구(우리측: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측: 명지총회사)를 지정하고, 세부합의서 채택을 위해 이행기구간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개성에서 열린 제2차 이행기구간 실무협의(7.5~7)에서 우리측은 미화 8,000만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섬유 39품목, 신발 48품목, 비누 7품목)를 2007년 11월말까지 북측에 제공하고 4회에 걸쳐 경공업공장 현장을 방문, 기술지원을 하며 북한 단천 지역의 검덕 연·아연광산, 대흥 및 룡양 마그네사이트광산 등 3개 광산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를 3차례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1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5.15)를 개최하여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840억 7,800만원을 의결하고, 추가로 제18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7.20)를 개최하여 경공업 원자재 대북 수송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 40억원을 의결하였다.

나. 연도별 집행실적

정부는 2007년 7월 25일 제1항차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한 이래 12월말까지 섬유,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전체 8,000만달러 중 87%(6,993만달러)의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하였으며, 나머지 13%(1,007만달러)는 2008년 3월말까지 제공을 완료하였다.⁴⁷⁾ 이를 위해 경공업 원자재 구입비, 조달청 수수료, 해상운임료, 남북 이행기구간 실무접촉비, 이행기구 위탁수수료 등으로 남북협력기금 823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다.

〈분야별 경공업 원자재 제공현황〉

- ① 섬유 원자재 : 단섬유 등 39개 품목(2,583만달러, 32%)
- ② 신발 원자재 : 고무혼합물 등 48개 품목(4,293만달러, 54%)
- ③ 비누 원자재 : Soap chip 등 7개 품목(1,124만달러, 14%)

또한 우리측은 4차례(1차: '07.8.7~11, 2차: 10.23~27, 3차: 12.3~8, 4차: '08.1.21~1.26)의 기술지원과 현장점검을 위해 10여명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생산공장(평양방직공장, 평양편직공장, 평양화장품공장, 보통강·강서·류원 신발공장 등)을 방문하여 우리측이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겪는 문제점 등을 협의하였으며, 북한 경공업 전문가의 견문확대를 위해 1차례 남북전문가 해외공동방문('08.1.29~2.4,

47) 당초 2007년 11월 말까지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규격수정 협의와 조달청 공개입찰에 따른 입찰차액(약 224만 달러)분 추가제공 문제 등으로 다소 일정이 지연되었다.

중국, 베트남)을 실시하였다.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남북은 북한 단천 지역의 검덕 연·아연 광산, 대흥 및 룡양 마그네사이트광산 등 3개 광산에 대해 2007년도에 3차례 현지 공동조사(1차: 7.28~8.18, 2차: 10.20~11.7, 3차: 12.20~12.26)를 실시하였다. 우리측은 15~17명의 전문가로 현지 조사단을 구성하여 북한 단천지역 3개 광산에 대한 현장조사와 주변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였고 남북 전문가 간 분야별 협의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지조사비, 사업타당성 평가 등에 남북협력기금 17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다.

한편 북한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07.7.7)에 따라 2007년도 상환분(8,000만 달러의 3%, 240만달러)을 2차례에 걸쳐('07.12.24, '08.1.4) 아연괴 약 1,005톤으로 상환하였다. 북한이 상환한 아연괴 1,005톤은 조달청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국내 업체에 낙찰 매각되었으며, 매각대금 240만달러는 북한에 제공된 경공업 원자재 차관 상환분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으로 환입되었다.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항목	승인액	집행액
2007	경공업 원자재 제공사업	원자재 구매비용(94개 품목)	80,000	74,743
		수송비 등 부대비용	5,000	3,759
		소 계	85,000	78,502
	지하자원 개발사업	단천광산 현지 공동조사 등	778	778
		기본설계용역(사업타당성평가)	1,000	1,000
		소 계	1,778	1,778
	위탁수수료	이행기구 운영경비	1,300	995
			소 계	88,078
2008.9	위탁수수료	이행기구 운영경비	1,475	1,078
합 계			89,553	82,353

3. 남북 농업협력

가. 추진배경 및 경과

북한의 식량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자생력 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일회성 지원 사업을 인적·물적 교류가 수반되는 개발협력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2005년 초 협동농장 단위의 농업개발협력을 통해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남북 농업협력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남북 공동영농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남북 당국간 농업협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단체를 통해 시범적 공동영농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 여건 조성시 당국간 농업협력으로 발전시키는 단계적 접근법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민간단체를 통한 공동영농사업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사)통일농수산사업단⁴⁸⁾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시범적 차원의 남북 공동영농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14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5.5.10)를 개최하여 (사)통일농수산사업단의 금강산지역 남북 공동영농사업에 19억 9,864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제176차('06.9.28) 및 제185차('07.4.18)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각각 21억 5,887만원, 14억 1,044만원의 기금지원을 의결하였다. 이러한 기금지원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금강산지역 삼일포·금천리협동농장을 중심으로 공동영농단지를 조성하고 벼·밭작물의 생산성 증대사업, 농기계 수리센터 신축 등 영농기반 강화사업, 기술개선·인력양성 및 지역소득원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금강산지역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는 공동영농사업 대상지역을 개성지역 송도리협동농장으로 확대하였고, 이에 대해 제18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4.18)를 통해 15억 4,299만원의 기금지원을 의결하였다. 2008년 들어서는 제20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8.6.10)를 통해 금강산지역 공동영농사업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5억 3,322만원, 개성지역 2년차 사업 추진을 위하여

48) (사)통일농수산사업단은 남북 당국간 농업협력 유도를 위해 남북 농업협력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농림부 소관법인 (사)통일농수산포럼 관계자를 중심으로 '05.3 설립된 통일부 등록단체이다.

23억 4,966만원 등 총 28억 8,288만원의 기금지원을 의결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금강산·개성지역에서의 남북 공동영농사업을 위해 총 99억 9,382만원의 기금지원이 승인되었다.

나. 연도별 집행실적

2005년에는 금강산지역 삼일포협동농장 및 인근 협동농장 등 총 500ha 농경지를 대상으로 농업기계화 수준 향상을 위해 경운기와 트랙터 등 필수 농기계를 공급하고, 시설채소 및 온실육묘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강화사업을 실시하였다. 한편 벼·밭작물의 생산성 증대, 시설채소 재배 등 농업기술 개선 계획에 따라 우량종자,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공급하고 농자재 사용법 시연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 2005년도에 18억 8,542만원의 기금을 집행하였다.

2006년에는 삼일포협동농장 공동영농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근 금천리협동농장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였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농작물 생산성 증대사업, 영농기반 강화사업, 기술개선·인력양성사업 등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남북 공동영농의 경험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19억 7,769만원의 기금을 집행하였다.

2007년에는 금강산지역의 경우 2개년 사업성과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농기계,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영농단지의 자립을 위해 상업적 양돈기반 조성, 노지·시설채소 기반 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7년 들어 새롭게 시작된 개성지역 공동영농사업의 경우에는 350ha 기계화를 목표로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였고, 농산물 창고 및 공정육묘장 등을 설치하는

등 영농기반 강화사업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개성지역의 특성을 살려 양잠, 인삼 시험재배 등의 분야에서 기술개선 사업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금강산·개성지역에서의 공동영농사업을 위해 29억 3,335만원의 기금을 집행하였다.

2008년에 들어서는 금강산 공동영농단지의 경우 지난 3년간 구축된 협력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종자·비료·사료 등의 농자재를 지원하였다. 개성지역 공동영농단지의 경우에는 영농기계화율 제고 및 두벌농사 확대, 상업적 양돈기반 조성, 시설채소 기반 확대 등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금강산·개성지역 공동영농사업 추진을 위해 9월말까지 14억 3,667만원의 기금을 집행하였다.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지역	항목	승인액	집행액
2005	금강산지역 삼일포 협동농장	경운기, 트랙터, 부속작업기 등 농기계·농기구 구입비	770	710
		농약, 비료, 종자·모종 등 농자재 구입비	986	961
		물류 비용 및 기타	243	214
	합 계	1,999	1,885	
2006	금강산지역 삼일포· 금천리 협동농장	농기계·농기구 구입비	604	596
		농자재 구입비	1,159	1,086
		농기계 정비·수리소 건축자재 및 공구	140	140
		물류비용 및 기타	256	156
	합 계	2,159	1,978	

연도	사업지역	항목	승인액	집행액
2007	금강산지역 삼일포· 금천리 협동농장	농기계 구입비	113	113
		농자재 구입비	1,044	1,041
		공정육묘장, 농산물 창고 등 영농 기반시설	83	81
		물류비용 및 기타	170	169
		소 계	1,410	1,404
	개성지역 송도리 협동농장	농기계 구입비	403	403
		농자재 구입비	791	791
		영농 기반시설 및 양돈장	234	230
		물류비용 및 기타	115	105
	소 계	1,543	1,529	
합 계			2,953	2,933
2008 (9월말 현재)	금강산지역 삼일포· 금천리 협동농장	농자재 구입비	450	225
		물류비용 및 기타	83	39
		소 계	533	264
	개성지역 송도리 협동농장	농기계 구입비	738	369
		농자재 구입비	1,451	726
		물류비용 및 기타	160	78
		소 계	2,349	1,173
합 계			2,882	1,437
총 계			9,993	8,233

4.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가. 추진배경 및 경과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은 '90년대 후반 홍수로 인해 임진강 하류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임진강은 남북공유하천으로 상류지역의 2/3가 북측 지역에 위치해 있어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측과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측의 제의에 따라 2000년 9월 1일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4년 서울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04.3.5)에서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4월부터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어 개성에서 열린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04.4.10)에서는 단독조사 항목 및 조사용 기자재⁴⁹⁾ 대북 제공, 북측의 기상·수문 등 사전 자료제공 항목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 이행을 위해 제12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4.5.10)를 개최하여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소요 비용 36억 4,051만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 북측 현지조사용 기자재 제공비용으로 9억원, 현지조사 및 수해방지 대책수립 용역 등 관련비용으로 27억 4,051만원이 승인되었다. 이후 현지 조사용 기자재를 북측에 전달하였으나, 단독조사는 곧바로 착수되지 못하였다.

2005년 서울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05.7.12)에서 단독조사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5년 8월 10일에 우리측이 먼저 우리측 지역 조사 결과를 북측에 전달하였고 북측은 12월 23일 합의한 자료의 일부를 전달해 왔다. 하지만 이후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남북공동조사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49) 북측 현지조사용 기자재는 업무용 승용차 3대, 중형버스 3대, 소형버스 2대, 소형 화물버스 1대, 5t 화물자동차 1대, 5인용 고무보트 3대, 유속계 5대, 수심측정기 5대, 유사량 측정기 3대 등 총 43개 품목으로 구성되었다.

남북은 2006년 6월 26일에서 27일까지 제1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현지조사 등 기존 합의사항 이행문제를 논의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07.4.22)에서도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서 발효절차 등과 관련한 남북간 입장차이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나. 연도별 집행실적

남북간 합의에 따라 2004년 5월 18일 북측에 평판기, 우량계 등 현지조사용 기자재 33개 품목(1차분)을 경의선 육로를 통해 제공하였다. 하지만 2차분으로 제공하려고 구입한 유숙계, 수심측정기, 유사량 측정기 등 3개 품목은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인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대북 기자재 제공과 관련해서 남북협력기금 7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다. 이와 별도로 산림복구계획 수립과 임진강 유역조사 용역을 위해 각각 4,600만원과 3억 5,1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05년도에는 임진강 유역조사 용역비 등으로 8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06년도에 용역사업이 완료(9.18)됨에 따라 제17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06.9.26)을 거쳐 산림복구계획 수립과 임진강 유역조사 용역비로 각각 4,700만원과 3억 7,400만원이 집행되었다.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항목	세부내역	승인액	집행액
2004	기자재 제공	기자재 구입비 및 운송비	900	795
		기술자문단 운영	149	2
	유역조사·대책수립 용역	유역조사 등 용역비	2,176	351
		산림조성계획 수립	100	46
		홍수예보설치계획수립·설계	216	-
		예비비	100	-
합 계		3,641	1,194	
2005	기자재 제공	기자재 보험료	2	2
		기술자문단 운영	5	5
	유역조사·대책수립 용역	유역조사 등 용역비	1,403	872
		산림조성계획 수립	47	-
		합 계	1,457	879
2006	기자재 제공	기자재 보험료	2	2
		기술자문단 운영	13	11
	유역조사·대책수립 용역	유역조사 등 용역비	531	374
		산림조성계획 수립	47	47
		합 계	593	434

* 2005년 승인액은 사고이월액임.

5. 통행·통신체계 구축지원

가. 남북간 육로통행체계 개선사업

(1) 추진배경 및 경과

2005년을 기점으로 남북간 1일 평균인원 1,139명, 차량 182대 등이 도로를 통해 방북하여 초기 형태의 남북간 통행체계가 한계에

도달함으로써 남북간 복잡한 육로통행체계가 남북경협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개성공단 시범단지 본격생산 및 1단계 개발 등에 따른 남북간 육로 통행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한 통행 통관절차 개선조치의 일환으로 2006년 10월부터 남북간 육로통행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17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6.4.27)를 개최하여 남북간 육로통행체계 개선을 위한 소요경비 55억 3,5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부담하기로 의결하였다.

〈세부 의결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세부내역
육로통행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비	3,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개발비: 540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확대 구축비: 1,236 ▪ 남한 철도 도로 전산시스템 구축비: 1,046 ▪ 북한 도로 철도 전산시스템 구축비: 797 ▪ 감리·진단 및 최종 시험비: 241 ▪ 예비비: 200
남북관리구역 및 민통선 이북 안전·경비장치 설치비	1,5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 816 ▪ 동해선: 659 ▪ 예비비: 100
합 계	5,535	

(2) 연도별 집행실적

남북간 육로통행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사업은 조달청이 일괄하여 담당하였다. 2006년 10월 27일 조달청은 SK C&C와 남북교류협력체계시스템 개선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7월 25일 사업이 완료되어 2008년 1월 28일부터 새로운 남북교류 협력시스템이 개통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비로 2006년 9,000만원, 2007년 34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다.

이외에 정부는 남북간 출입통행시간 연장 등에 따라 경의선 및 동해선 지역 남북관리구역 가운데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CCTV, 모니터, 비상전화를 교체·신설하는 경비·안전장치 보강 설치작업을 2007년 12월까지 완료하였는데 여기에 남북협력기금 10억 2,400만원이 집행되었다. 이러한 남북간 육로통행체계 개선사업에 총 45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다.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집행액	사용내역
2006	90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비
	67	감리비
	23	예비비
2007	3,417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비 - 시스템 구축비: 3,320 · 하드웨어(DB서버, 송수신연계서버, 차량용 RFID, 통합스토리지 및 백업장치, 모니터 및 스캐너): 1336 · 소프트웨어(DBMS, 백업소프트웨어, EDMS, SMS, DRM, 바이러스 백신): 760 · 네트워크(스위치, 라우터, 광케이블, 방화벽): 412 · 소프트웨어개발(보안시스템, 연결시스템): 812 - 감리비: 79 - 최종시험비: 7 - 예비비: 11
	1,024	남북관리구역 및 이북지역 안전장치설치 - 경의선: 469 - 동해선: 555
합계	4,530	

나. 북한 통신연락소 수요 통신자재 제공

남북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02.9.17)에 따라 쌍방간 통신연락소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이후 통행·통신체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실무협의를 추진해 왔다.

2006년 2월 10일 북측은 통신연락소 소모자재 및 장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열차·차량 정상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 마련 등 군사당국간 접촉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통신 자재 미제공으로 인해 통신이 중단될 경우, 우리측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측의 통신 연락소 유지를 위한 통신 자재·장비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제17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6.4.27)에서 통신자재·장비 7종 등 총 1,700만원을 의결하고, 북측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북한 통신연락소 제공 자재·장비 내역〉

(단위: 천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케이블 접속자재	60개	0.2	12	
거리측정기	2대	5,500	11,000	통신선 고장여부 점검용
도치램프	4대	50	200	간이 용접기
팩스	2대	1,000	2,000	노후화 교체
무정전기(UPS)	2대	1,600	3,200	”
승압기	2대	100	200	”
자동전압조절기	1대	500	500	”
계	7종		17,112	

6. 중재사무처리기관 운영

가. 추진배경 및 경과

남북은 남북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상사분쟁 해결절차 합의서」(03.8.20 발효) 및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05.8.1 발효)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북은 쌍방 위원 명단을 상호교환(06.7.4)하였다. 이후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07.12.6)에서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를 2008년 4월 중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협의를 기대하였으나, 제도분과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대한 논의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나. 연도별 집행실적

정부는 중재인 명부 보존 및 중재·조정 관련 각종 서류 비치 등 우리측 상사중재위원회의 행정적 운영을 위해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을 남북합의서에 의한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제18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4.18)에서는 2007년도 중재사무처리기관 운영비용으로 4억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본격 가동에 앞서 2007년에 국제중재동향 및 분쟁해결사례 수집 등 사전조사 작업을 추진하였다. 동북아 교역활성화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북한과의 교역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중국 등 대북 교역국가의 교역실태 및 분쟁 해결사례 조사·연구 등에 2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다.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승인액	집행액
2007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444	260

7.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현지조사

가. 추진배경 및 경과

남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남북정상선언’)(07.10.4) 및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07.11.16)를 통해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면서 각종 경제협력 사업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북측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여 사업추진 여건을 파악하기로 하고, 제19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12.6)를 통해 서해 공동어로구역 현지조사 8,500만원, 해주특구·해주항 현지조사 4,300만원,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현지조사(1·2차) 4,700만원,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현지조사 1,300만원,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현지조사 1,900만원 등 총 2억 700만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하였다.

나. 연도별 집행실적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현지조사는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07.11.29)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제1차 현지조사(07.12.11~13)는 남측에서 7명, 북측에서 5명이 참여하여 포장분야와 구조물분야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2차 현지조사('07.12.21~27)는 남측 26명, 북측 30명이 구간별(개성-사리원, 사리원-평양), 분야별(포장, 구조물, 배수시설)로 남북공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차량 및 검사 기계를 활용한 점검과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였다. 두 차례의 현지조사 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 2,668만원이 집행되었다.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현지조사는 2007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412km 전 구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남과 북의 철도전문가들이 함께 열차로 이동하면서 선로 전반과 터널, 교량 등의 구조물을 조사하였다. 철도 개보수를 위한 현지조사 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 1,228만원이 집행되었다.

조선협력단지 건설 관련 제1차 현지조사는 2007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안변과 남포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07.12.6)에 따라 이루어진 제2차 현지조사는 2007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안변과 남포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단은 인원을 나누어 안변 지역의 월랑리, 상음리 부지와 남포 지역의 영남배수리공장 및 주변 부지를 각각 답사하고 전력, 용수 등 인프라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현지 체재비 등 제2차 현지조사 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 1,233만원이 집행되었다.


반면, 서해 공동어로구역 현지조사와 해주특구 및 해주항 현지조사는 2007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하였으나, 현지조사가 성사되지 못하였다.

〈현지조사 관련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승인액	집행액(07.12)
① 서해 공동어로구역 현지조사	85	-
② 해주특구, 해주항 현지조사	43	-
③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현지조사	47	27
④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현지조사	13	12
⑤ 조선협력단지 건설 현지조사	19	12
합 계	207	51

* 제1차 조선협력단지 현지조사는 일반예산 활용



제5절 | 민간기업 대출 및 교역·경협 보험

1. 교역업체 자금대출

가. 추진배경 및 경과

남북간 교역이 처음 이루어진 1989년도의 교역액은 1,872만달러에 불과하였다. 이후 1994년 11월 및 1998년 두 차례에 걸친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와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에 관한 고시」의 개정, 1999년 10월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정·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입·반출 승인품목 정비 및 절차 간소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북투자 및 교역·위탁가공업체에 대한 기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05년도 남북교역 규모는 10억달러를 돌파하고 2007년도에는 사상 최고액인 약 18억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남북교역은 초기에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어 오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농수산물, 광산물, 위탁가공교역의 섬유류 품목을 중심으로 남북교역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직접 교역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아직까지 통행·통신의 제약과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개교역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2005년 10월 남북교역기업 지원을 위해 남북경제협력협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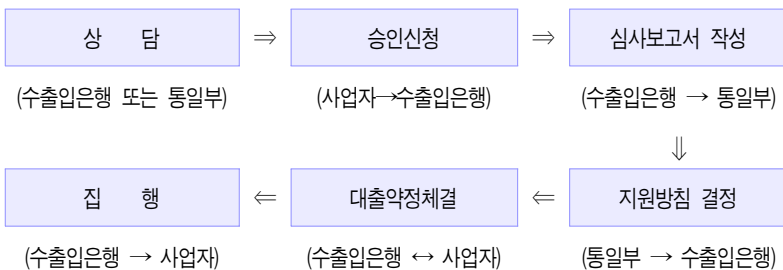
무소가 개성에 개소되어 본격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남북간 직교역의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1999년 10월에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오면서, 사업타당성은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대북 투자 및 교역·위탁가공업체들에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함으로써 남북교역의 양적·질적 성장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이윤창출 기회와 성장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나. 집행 실적

교역업체에 대한 대출자금은 일반교역업체의 경우 주로 북한물품의 반입 대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위탁가공업체의 경우는 설비구입 및 원부자재 반출 물품 대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출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남북교역업체에 대한 대출금액은 160개업체에 490억 8,300만원이며 이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387억 6,700만원, 상환 예정중인 잔액은 103억 1,600만원이다.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일반교역 업체 수	위탁기공교역 업체 수	대출액	회수액	대출 잔액
2000년	1	-	500	500	-
2001년	-	9	1,072	-	1,072
2002년	3	1	390	419	1,043
2003년	16	10	7,933	2,490	6,486
2004년	24	20	13,677	7,567	12,596
2005년	16	12	8,259	11,254	9,601
2006년	14	9	7,327	8,221	8,707
2007년	9	10	8,288	7,122	9,873
2008년 4월	2	4	1,637	1,194	10,316
계	85	75	49,083	38,767	10,316

2. 경제협력 기업 자금대출

가. 추진배경 및 경과

평양 등 내륙지역의 민간경협사업은 1995년 대우의 남포 합영사업 승인으로 시작된 이후, 남북관계의 양적·질적 성장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8년 8월말 현재 정부가 승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 건수는 81건에 달하고, 투자액도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 12월 512만달러에서 2007년 12월 3억 7,742만달러에 이르고 있다⁵⁰⁾

정부는 이러한 남북경협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완해왔다. 1990년 8월 「남북교

50) 개성공단은 제외

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남북간 경제교류에 민족내부거래로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였고, 1994년 11월 남북 경제인 상호방문 허용 및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를 발표하였다. 2000년 11월에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체에 관한 합의서 등 4대 경험합의서를 채택하여 우리 투자기업의 원활한 활동여건을 마련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1991년 「남북협력기금법」과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경제분야 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하였고 1999년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의 제정·시행으로 본격적인 자금대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제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게 투자자금 대출, 운전자금 대출,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 대출, 산업용지분양자금 대출 등을 통해 대북 투자자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다.

나. 집행 실적

경제협력 기업에 대한 대출은 교역자금 대출과 같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한국관광공사에 금강산 관광사업에 필요한 자금 900억원이 남북 경협자금으로 처음 대출된 이후, 2008년 7월말 현재 개성공단을 제외한 평양 등 내륙진출기업의 대출 총액은 6개 기업에 총 1,082억 6,000만원이 대출 되었다. 이중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상환한 금액은 하나비즈닷컴의 전액 상환을 포함하여 현재 62억 9,400만원이다.

대출시에는 보증서나 부동산 담보, 신용담보 등이 이루어지는 바, 2008년 7월 현재 한국관광공사와 에머스퍼시픽, 국양해운은 보증서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순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에는 상환유예 기간, 상환일정 및 이자율 등이 적절히 설정되어 있다.

〈기업별 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기업명	대출승인일	대출액	회수액
한국관광공사	'01.06.29	90,000	4,500
하나비즈닷컴	'02.05.27	456	456
에머스퍼시픽	'06.08.01	3,800	-
대한광업진흥공사	'03.12.16	6,034	-
국양해운	'02.01.22	3,470	1,338
	'07.12.24	1,000	-
안동대마방직	'05.04.04	800	-
	'07.05.23	1,090	-
	'07.07.25	1,610	-
합계		108,260	6,294

하나비즈닷컴은 2001년 중국 단둥에 남북합영회사인 '하나프로그램센터'를 설립하고 북한인력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오고 있는 기업이다. 하나비즈닷컴은 2002년 사업 확대를 위해 소요자금

12억원 중 부족분 4억 7,900만원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이 사업이 남북간 정보통신협력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한 정부는 제9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2.4.29) 의결로 대출을 승인하였다.

하나비즈닷컴은 대출받은 자금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장비를 확충하였고, 다산네트웍스 등 국내 IT 업체들로부터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수주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켰다. 하나비즈닷컴은 매출을 지속 증가시켜 2006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황해남도 정춘흑연광산 개발사업을 북한 삼천리총회사와 합작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03년 정부로부터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정춘흑연광산 개발 소요자금 60억원 전액에 대해 대출을 신청하였고 정부는 정춘흑연광산 개발사업이 우리나라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상흑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북한의 인력을 고용하여 주민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등 여러모로 이점이 많다고 판단하여 제12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3.12.16) 의결로 대출을 승인하였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대출받은 금액을 채광장비, 파쇄공정 설비, 마광공정설비, 선별 및 탈수공정설비 등 주로 흑연광산 개발 장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고, 이를 통해 2007년 시범생산을 거쳐 당해연도에 750톤의 인상흑연을 생산하여 이중 550톤을 인천-남포간 해상 운송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였다.

국양해운은 2001년 8월 북측 개선무역총회사와 남포항 하역시설 개선사업 합의를 체결하고 11월 「해상운송사업 및 하역시설 개선사업」으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다. 국양해운은 인천-남포간 해상 운송용 선박 및 컨테이너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2년 2월 총 사업금액의 일부인 43억 3,1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정부는 남북의 안정적인 물자 수송과 중국 경유에 따른 물류비 증가를 남북 직접 운행으로 절감시켜 줄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8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2.1.22) 의결을 거쳐 34억 7,0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후 국양해운은 대출액 중 13억 3,000만원은 상환하였고, 2007년 12월에는 추가적인 시설투자를 위해 10억원의 경험자금을 추가로 대출 받았다.

국양해운은 대출받은 자금으로 선박구입과 컨테이너 제작, 지게차, 트랙트 구입 등에 사용하여 남포-인천간 정기선 「TRADE FORTUNE」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20피트 컨테이너 100대와 20피트 냉동컨테이너 50대 및 40피트 냉동컨테이너 20대를 추가 제작하여 운송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안동대마방직은 2003년 북측 새별총회사와 합영회사 설립 의향서를 체결하고 2004년 정부로부터 삼베섬유 제조사업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안동대마방직은 2005년 4월 평양대마방직합영회사 준공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여 8억원을 대출받았으며, 2007년 2월 안동대마방직은 북측의 설계변경, 염색 등 사후공정 시설 증설, 투자비 부족 등으로 공사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여 남북협력기금 32억원 추가대출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안동대마방직의 추가대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한 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가 양호하였고 개성이의 지역의 대북투자사업 성공모델 창출 가능성과 남북경제협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과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2차례에 걸쳐 총액 27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추가 대출하였다. 대출된 자금은 공장건설과 타올제작기, 변전설비, 타올건조기 등 섬유설비 설치에 사용되었다.

3. 교역·경협 보험(손실보조)⁵¹⁾

가. 추진배경 및 경과

손실보조('08.10.10 교역·경협보험으로 명칭 변경)는 민간기업의 남북간 교역 및 경협 추진과정에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이나 북측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3호에 근거하여 1991년 기금 설치시부터 운영되었다.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위험발생 이전에 체결된 보험약정 범위내에서 실제 피해규모를 산정하여 결정되며 현재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총 12억 6,800만원이다.

나. 집행실적

1991년 3월 (주)천지무역과 북한 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간에 국내산 쌀 5,000톤과 북한산 대응물자와의 물물교환 거래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정부는 제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91.4.10) 의결을 통해 이를 승인하고, 보험약정 신청시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후 제1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91.7.23) 의결로 (주)천지무역에 대한 보험 약정체결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쌀 5,000톤이 반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상환일정표 제출 거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주)천지무역은 10월 16일 보험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51)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손실보조」라는 명칭이 주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역·경협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하였고, 10월 21일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23일 보험금 12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다.

이후 2003년까지 보험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약정체결 및 집행실적이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2003년 8월 4대 경협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거쳐 정식 발효되고 교역 및 경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 기대됨에 따라 2004년 1월 기금운용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립하였고 2004년 5월 교역보험, 9월 경협보험을 각각 재개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8년 9월말 현재 68건, 2,151억원의 약정이 체결되었으나, 아직까지 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사례가 없어 기금집행 실적은 없다.

〈연도별 약정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건수)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9
교역보험	69 (1)	66 (1)	54 (1)	685 (5)	80 (1)
경협보험	-	6,016 (10)	15,586 (11)	93,559 (30)	215,014 (67)
합 계	69 (1)	6,082 (11)	15,640 (12)	94,244 (35)	215,094 (68)



제6절 | 평 가

1988년 '7.7 선언'에 의해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이래 남북 경협사업은 양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남북 교역은 1989년 시작 당시 1,872만달러에 불과하였으나 그동안 연 30% 내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인 결과 2007년도에는 약 18억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주로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 왔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당국차원의 경협사업과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남북 경협사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협사업의 영역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2000년대 초반 남북 경협사업의 영역이 주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조성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 소위 '3대 경협사업'이었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 농수산협력사업, 개성관광사업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남북협력기금이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분단으로 인해 반세기 이상 단절되었던 길이 다시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제한적이거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을 위한 인원과 물자의 육로 수송을 가능하게 하여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열차시험운행 행사가 북한의 일방적 연기통보로 무산되면서 행사준비에 들어간 비용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해선 철도의 경우, 강릉에서 제진역까지 우리측 철도가 끊겨 있어 남북간에 동해선을 연결하더라도 이용 가능성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2007년 12월부터 시작된 문산-봉동간 남북 화물열차 운행과 관련해서는 화물량이 적어 빈 열차가 오고가는 등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개성공단에는 2008년 9월말 현재 시범단지에 27개, 본단지에 27개, 아파트형공장에 29개 등 총 83개 기업이 입주하여 가동중이며,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는 총 33,688명이다. 또한 2004년 12월에 첫 제품 생산을 시작한 이래, 연간 생산액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9월말 현재 총생산 누계액이 4억 5,990만달러에 이르렀다. 수출액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4월부터 2008년 9월말까지 총수출 누계액이 8,933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개성공단은 2004년 가동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대표적 모델로 성장하였지만, 국제경쟁력을 갖추기까지는 통행·통신·통관 개선문제, 북측 근로자의 원활한 공급문제, 개성공단 운영에 필요한 법률 및 제도 정비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1998년 11월 유람선 관광으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1년 들어 관광객 감소와 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육로관광·내금강 관광 실시 등으로 지속 성장하여 2008년 7월말 기준 누적 관광객이 193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금강산 지역 관광도로, 소방서 건설 등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의, 기업 활동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05년에 관광협력 지역

을 백두산 지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정부는 삼지연공항 및 주변 도로의 포장사업을 2차례에 걸쳐 지원하였으나, 1차 지원분이 부실공사로 확인되고 2차 지원분 사용내역도 아직까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2008년 감사원의 감사 등에서 분배확인 및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남북협력기금 지원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남북간 합의에 따라 2007년에 시작된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은 남북간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남북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상거래적 성격의 협력사업이다. 우리측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시점과 북한의 상환시점상 차이 등으로 인해 대북지원성 사업과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자원 공급처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도 임진강 유역 현지조사용 기자재를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조사자료를 전달받고, 이를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수립에 반영하는 등의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수년간의 사업협약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사업초기부터 북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 및 교역·경협보험은 남북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남북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상당수가 자금여력이 풍부하지 않은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민간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는 투자 가치와 사업타당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금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교역·경협보험 제도 역시 국제교역·투자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대북거래의 위험을 분산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들이 안심하고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일조하였다. 하지만 북한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여전히 투자활동에 많은 제약요인과 불안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단순한 자금지원을 넘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와 진행단계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남북 경협사업의 확대 발전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내부적으로 보면 남북 경협 사업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과 투자처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남북 경협사업은 1990년대 들어 대외경제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 경협사업은 남북간 상호 의존도를 증대시키고, 접경지역에서의 군사분야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경협 확대 발전의 이면에는 남북협력기금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었다. 남북경제협력분야에 대한 기금 지원은 2000년 164억 9,400만원에서 2007년에는 2,291억 7,100만원으로 불과 7년 만에 14배가 증가하였다.

그동안 남북경협의 확대 발전 과정에서 과제도 대두되었다. 남북 경협사업은 상호 호혜적인 협력보다는 지원성 사업위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며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정 진입 및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우리의 기대수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관

계 진전에 있어 의미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남북간 합의 이행 지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군사적 보장문제가 중요한 원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철도·도로 연결사업,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 많은 남북 경협사업은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군사적 보장이 필요하나, 군사적 보장이 지연됨으로 인해 본 사업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합의 이행 지연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이밖에 남북 경협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도 과제로 대두되었다. 남북간 복잡한 육로통행체계와 육로운송 제한은 물류비 상승의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남북간 통신망 부족은 대북투자에 대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남북간 체결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03.8 발효) 등에서 남북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현재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향후 안정적인 대북투자를 위한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사회문화교류 지원

제1절 | 개 관

제2절 | 인적왕래 지원

제3절 | 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지원

제4절 | 평 가



제1절 | 개 관

사회문화교류는 남북간의 내적 통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합과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정치·군사적 상황변화 속에서도 교류를 이어나감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이 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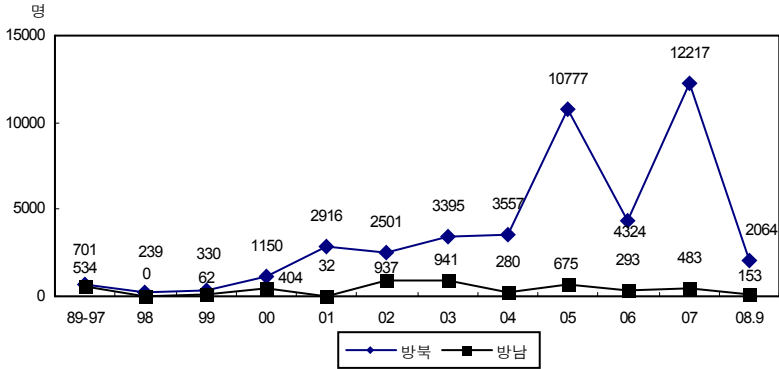
정부는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남북간의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왕래 지원자금」과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해왔다.⁵²⁾

남북협력기금 지원분야는 체육, 종교, 문화예술, 학술, 교육, 언론, 출판, 노동, 여성,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문화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남북 사회문화분야의 인적왕래는 연도마다 다소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분야별로도 체육, 종교, 문화예술, 학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접촉 및 교류가 이루어졌다. 남북간 왕래는 특히 방남의 경우에 체육 및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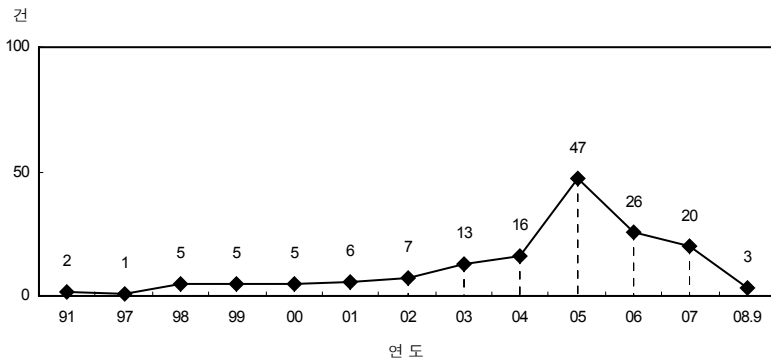
52) 「주민왕래지원자금」은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며,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은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연도별 사회문화분야 인적교류 현황〉



남북 사회문화 협력사업은 1991년 체육분야의 2건⁵³⁾을 시작으로 매년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에는 10건을 넘어섰다. 북한문화재 보존사업 등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과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학술, 체육, 종교 등 분야별 교류협력사업들이 꾸준히 추진되었다.

〈연도별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승인현황〉



53)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1991.4.24~5.6, 일본),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1991.5.22~6.26, 포르투갈)

사회문화분야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총 69억 5,700만원이 지원되었다. 그 중 인적왕래자금이 66건에 399억 800만원, 협력자금이 80건에 312억 2,700만원 지원되었다.

교류 초기에는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체육·공연 등 이른바 ‘이벤트’ 중심의 단기적인 교류행사가 주류를 이루면서 기금지원도 주민왕래자금 위주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남북간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문화협력자금의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왔다.

〈연도별 인적왕래 및 협력자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인적왕래 자금		사회문화협력자금	
	지원건수	집행액	지원건수	집행액
1991	-	-	2	950
1998	-	-	1	30
2000	1	277	3	2,053
2001	1	253	1	102
2002	9	23,686 ⁵⁴⁾	-	-
2003	3	1,142	2	654
2004	7	1,056	11	3,161
2005	13	3,786	18	7,468
2006	12	5,289	19	7,375
2007	17	1,698	17	6,908
2008	3	2,721	6	2,527
합계	66	39,908	80	31,227

54) 다른 해에 비해 지원 규모가 큰 것은 이산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른 통일교육강사 및 통일교육요원과 각급 학교 교원 및 학생 대상 금강산 관광 보조비 지급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2절 | 인적왕래 지원

1. 추진배경 및 경과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1호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9조~제17조를 근거 법규로 하고 있는 인적왕래에 대한 기금지원은 1991년 기금운용계획에 인적왕래지원을 위한 주민왕래자금을 반영하면서 신설되었다. 그러나 1999년까지는 기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인적왕래가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인적왕래기금 지원대상은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 및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한도는 숙식비·교통비 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의 범위 이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적왕래에 대한 지원은 남북한 주민의 접촉 및 왕래를 활성화하고 남북간 이질성 극복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여 왔다. 특히 남북간 인적왕래는 남북관계가 정치·군사적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남북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이바지하여 왔다.

2008년 9월말 현재 기금지원은 방북지원 42건에 352억 6,800만원, 방남지원 24건에 46억 4,000만원에 이른다.

2. 6.15 / 8.15 남북공동행사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은 2001년부터 해마다 6.15 및 8.15를 계기로 남북을 오가며 민간공동행사를 개최하여 왔다.

2001년 이후 2008년까지 6.15공동행사는 7회(2003년에는 ‘사스’로 인해 지역별 개최), 8.15공동행사는 4회(2004년은 조문파동 등으로, 2006년은 북측 수해로, 2007년은 을지연습 등으로, 2008년은 지역별 개최로 공동행사 무산) 개최되었다.

공동행사 추진은 2001년부터 2004년 기간중에는 「남북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2005년 이후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주관하였으며 행사내용은 통상 개막식, 민족통일대회, 축하공연, 체육오락경기, 참관, 폐막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정부는 공동행사와 관련하여 2001년과 2003년 8.15행사를 제외하고 총 8회에 걸쳐 53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항목별로는 인적왕래자금으로 6회 17억 900만원, 사회문화교류지원자금으로 2회⁵⁵⁾ 35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다.

공동행사가 남측에서 개최될 경우에는 행사운영비와 북측인원의 교통비 및 체재비를, 북측에서 개최될 경우에는 남측인원의 교통비와 체재비를 지원해 왔으며 자금집행은 「6.15남측위원회」의 기간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55) 2005년 8.15행사(서울) 및 2006년 6.15행사(광주)

〈역대 6.15공동행사 개최 현황〉

연도	장소 기간	행사개요	참석(명)
2001	금강산 6.1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 부문별간담, 공연, 공동산행 등 진행 ○ ‘공동보도문’ 및 ‘일본당국의 역사왜곡 책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채택 ○ 기금 253백만원 지원(교통비, 숙박비, 식비) 	남측 450 북측 200 해외 20
2002	금강산 6.1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단합대회, 남·북·해외공동사진전, 단오통일민속축전 등 진행 ○ ‘7천만 동포에게 드리는 호소문’ 채택 ○ 기금 47백만원 지원(교통비, 식비) 	남측 217 북측 350
2004	인천 6.1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민족대회, 통일대행진, 통일마라톤 등 진행 ○ ‘민족대단합선언’ 발표 ○ 기금 135백만원 지원(교통비, 숙박비, 식비) 	남측 1200 북측 126 해외 39
2005	평양 6.1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통일대행진, 민족통일대회, 체육유희경기 등 진행 ○ ‘민족통일선언’ 채택 ○ 기금 659백만원 지원(교통비, 숙박비, 식비) 	남측 300 북측 200 해외 100 *당국참여
2006	광주 6.1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통일대회, 합동예술공연, 부문상봉행사, 체육유희경기 등 진행 ○ ‘해·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 기금 1,313백만원 지원(교통비, 숙박비, 식비) 	남측 483 북측 147 해외 145 *당국참여
2007	평양 6.1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단합대회 겸 폐막식, 참관, 예술단 공연 진행 ○ ‘민족대단합 선언’ 발표 ○ 기금 313백만원 지원(교통비, 숙박비, 식비) 	남측 284 북측 300 해외 132
2008	금강산 6.1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대회 겸 공동사진전, 공동위원장 회의, 폐막식 등 진행 ○ ‘공동결의문’ 발표 	남측 249 북측 100 해외 77

「6.15 공동선언발표 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는 2001년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최초 남북공동행사로 기록되는 이 행사에 남측 450명, 북측 200명, 해외측 20명이 참가

하였다.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재확인하고 민간공동행사를 정례화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었으며, 행사를 주관한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본부」는 향후 「6.15 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의 모태가 되었다. 본 행사에는 남측 참가자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2억 5,300만원이 지원되었다.

〈역대 8.15공동행사 개최 현황〉

연도	장소 기간	행사개요	참석(명)
2001	금강산 8.1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통일대회, 일본역사왜곡 공동사진전, 부문별 대화, 참관행사 등 진행 ○ ‘공동보도문’ 및 ‘일본의 만행 및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공동결의문’ 발표 ○ 기금 미지원 	남측 337 북측 223
2002	서울 8.1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단합대회, 공동사진미술전시회, 학술토론회 등 진행 ○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 기금 302백만원 지원(교통비93, 숙박비 68, 식비 141) 	남측 530 북측 116
2003	평양 8.1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민족대회, 합동예술공연, 체육오락경기, 종교별 예식 등 진행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칠천만의 결의’ 채택 ○ 기금 미지원 	남측 339 북측 400
2005	서울 8.1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대행진, 개막식, 통일축구대회, 민족대회, 체육오락경기 등 진행 ○ ‘7천만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 기금 3,521백만원 지원(8.15행사 2,282, 통일축구대회 경비 1,239) 	남측 400 북측 200 해외 150 *당국참여

‘2002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주관으로 2002년 2월 27일부터 2월 28일 양일간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는 통일연대 소속 참가자 46명에 대한 방북이 불허된 것과

관련하여 북측이 갑작스럽게 행사의 무산을 통보해왔다. 행사자체는 무산되었지만 종단 및 민화협 대표단 등 222명이 미리 금강산에 도착한 관계로 참가자 교통비 등에 4,3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2년 6.15 행사는 2001년에 이어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이 행사에 남측에서 217명, 북측에서 350명이 참가하였다. 동 행사는 민간차원의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를 재확인 하는 수준에서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남측참가자의 교통비, 식비 등 4,7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2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는 「8.15민족통일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최초로 남측지역에서 열린 민간 공동행사에 북측에서는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 116명이 참여하였다. 남북 합동공연과 민족단합대회, 부문상봉 모임 등 행사가 진행되었다. 동 행사는 민간통일운동차원에서 북측 대표단의 남측방문의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북측 대표단의 방남경비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3억 2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4년 6.15행사는 「6.15공동선언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의 명칭으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었다. 지방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이 공동행사에 남측 1,200명, 북측 126명, 해외측 39명이 참가하였다. 북측 대표단은 행사종료 후 출발성명에서 범민련·범청학련 등의 참가불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보안법 철폐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북측 참석자의 방남경비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1억 3,5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4년 6.15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서울에서는 「6.15공동선언 4돌 기념 국제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북측에서는 리종혁 아·태부위원장 등 7명이 참석하였으며 6.15일 개막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대통령이 참석하여 연설하였다. 토론회는 6.15공동선언의

의의와 평가, 이행과제,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북측 참가인원 방남경비로 교통비, 숙박비 등 5,9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5년 6.15 행사는 김일성 주석 조문 파동 등으로 1여년간 남북 당국간 관계가 단절된 이후 평양에서 개최된 첫 대규모행사로서 당국이 처음 참여하는 등 여러 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남측 300명, 북측 200명, 해외측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었으며, 6월 17일에는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대회경비로 남측참가자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6억 5,9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7년 6.15 행사는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남측 284명, 북측 300명, 해외측 132명이 참가하였다. 이 행사에서 북측이 한나라당 의원의 주석단 배치를 반대하였고, 이에 대해 남측이 강하게 항의함으로써 본 대회가 일부 파행을 겪기도 하였다. 이 문제는 2006년 광주 6.15 행사시 북측대표의 내정간섭 발언 등과 함께 북측이 민간공동행사에 정치적 접근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반면 남북이 행사를 일부 진행하지 못하면서까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였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는 좋은 계기도 되었다. 이 행사와 관련하여 우리측 참가자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3억 1,3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8년 6.15 행사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으며 남측 249명, 북측 100명, 해외측 77명이 참가하였다. 동 행사는 '6.15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었고, 6월 15일 민족대회, 공동사진전과 6월 16일 공동위원장 회의, 폐막식 등이 진행되었다.

이밖에 「6.15 민족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2005년 3월 4일

부터 5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6.15 민족공동위원회」 결성식에 7,100만원, 2006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6.15 남북공동위원장회의」에 900만원이 지원되었다.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 업 내 용	승인액	집행액
2001	금강산 민족통일 대토론회 경비 지원	253	253
2002	6·15선언 2주년기념 민족통일대축전행사 지원(민화협)	47	47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지원(민화협)	43	43
	8.15 민족통일대회 북측 참가단 지원(민화협)	302	302
2004	6.15 공동선언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 지원	135	135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지원	59	59
2005	남북공동행사 준비위 결성식 남북협력기금 지원	75	71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 지원	659	659
2007	6.15 민족통일대축전	396	313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남북공동위원장 회의 지원	9	9

3. 부문별 교류

가. 「6.15」 산하 부문별 교류

「6.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산하 부문에는 노동·농민·청년학생·여성·교육본부 등이 있다.⁵⁶⁾ 이러한 부문별 교류에 총

56) 「6.15민족공동위」 출범(’05.3)을 전후하여 노동, 농민, 청년학생, 여성, 교육, 언론, 학술, 체육, 문학예술 등 9개 부분별 조직 결성

14건 10억 9,6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되었으며, 부문별로는 노동 3건 3억 1,200만원, 농민 1건 1억 1,600만원, 청년학생 6건 4억 6,200만원, 여성 3건 1억 500만원, 교육 1건 1억 100만원이 지원되었다.

노동부문의 교류에서는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5.1절(노동절)」 기념행사가 두드러진다. 1999년 남북노동자간 최초의 연합모임을 가진 이후, 2004년에는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를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남측인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개최하였다. 2004년 행사에서 양대 노총과 「조선직업총동맹」은 ‘6.15 선언 이행에 노동자가 앞장서자’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본 행사 이외에 만경대·모란봉·국제친선전람관·평양지하철·대동강 맥주공장 등을 참관하였다. 이 행사에 1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다.

2005년에는 북측 내부사정으로 행사가 무산되었으나, 2006년 평양에서 남측인원 150명이 참석하여 「5.1절」 행사를 진행하여 남북노동자간 교류를 이어나갔다. 2006년 행사는 종전과 유사한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나 대표단이 혁명열사능을 방문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행사종료 후 행정·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하였고,⁵⁷⁾ 이에 따라 기금지원도 방북조건 위반을 감안, 당초 승인액 1억 400만원 중 3,500만원을 감액하여 항공료, 숙박비 등 6,900만원을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북측 노동자 60명⁵⁸⁾이 참가한 가운데 창원에서 「5.1절 남북노동자 통일대회」가 열렸다. 북측 노동자 대표단이 최초로 방남한 행사로써, 마산 3.15묘역 참배·

57) 참관단 지도부 등 방북 제한, 기금지원액 삭감 조치

58) 북측 대표단은 조선직업총동맹 관계자 등 41명, 평양철도노동자 축구단 19명으로 구성되었다.

통일축구·단합대회 개최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관례에서 벗어나 지방에서 남북간 교류행사를 개최, 분야별 교류의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의의도 지닌다. 정부는 이 행사에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1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다.

〈노동부문 연도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 업 내 용	승인액	집행액
2004	남북노동자 5.1절 공동행사지원	131	131
2006	한국노총의 5.1절기념 평양행사	104	69
2007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	116	112

농민부문은 2001년 이후 금강산과 개성지역에서 초보적 연대모임을 가졌으며, 2007년에는 「남북농민연대모임(9.3~7, 평양·백두산)」을 개최(9.4)하고 만수대·백두산·국제친선전람관·만경대학생소년궁전·동명왕릉 등을 참관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에 남측 농민 93명이 방북하여 행사를 무난하게 진행함으로써, 남북 농민간 교류를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행사에 정부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1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다.

〈농민부문 연도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 업 내 용	승인액	집행액
2007	6.15남측위 농민본부의 남북농민연대모임	120	116

청년학생 부문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금강산 청년학생 상봉’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2005년부터 매년 행사를 치르고 규모도 확대하였다. 2005년 남북대학생 상봉행사는 총 2회 개최(5.22~24 및 7.16~18, 금강산)되어 남북의 청년학생이 통일문제를 직접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행사에는 총 2억 7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6년 1월 1일에는 금강산에서 남북 청년학생들이 「우리겨레 청년 새해맞이 통일행사」를 개최하여 해맞이, 공동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2006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에서는 남북 청년학생들이 평양 시내 주요대학 참관, 토론회 개최, 연대모임 등을 가졌다. 또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총 3회의 청년학생 간 교류행사에 총 2억 1,0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7년에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남북청년학생 연대모임」이 금강산에서 개최되었으나, 과거에 비해 소규모 인원이 참석하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 정부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4,500만원을 지원하였다.

〈청년학생부문 연도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 업 내 용	승인액	집행액
2005	남북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청년학생운동본부의 남북대학생상봉모임	140	125
	남북 대학생 상봉모임 지원	144	82
2006	6.15 청년학생본부의 남북대학생대표자 회의	78	73
	6.15청년학생운동본부의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	95	91
	우리겨레 청년 새해맞이 통일행사 지원	49	46
2007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청년학생 연대모임	68	45

여성부문에서는 2002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남북여성통일대회」가 금강산에서 처음 개최되어 남북여성교류의 초석을 다졌다. 남측 357명, 북측 300명, 해외 20명이 참가하여 토론회, 합동예술공연 및 수예·미술전시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정부는 이 행사 남측 참가자 335명에 대한 교통비 및 숙식비로 8,300만원을 지원하였다.

2006년에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금강산에서 「남북여성대표자회의」가 열렸다. 남북여성대표자 각 30여명이 참가하여 '2006년 통일운동의 방향과 여성들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하였으며,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 등에 관한 '남북여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이 행사에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1,2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7년에는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남북여성대표자모임」이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남북여성대표자 각 10여명이 참가한 이 행사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 연대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평양산원·탁아소·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수예연구소 등을 참관하였다.

이 행사에 정부는 남측 대표단에 대해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1,000만원을 지원하였다.

〈여성부문 연도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 업 내 용	승인액	집행액
2002	2002 남북여성통일대회 지원	89	83
2006	6.15민족공동위원회 여성본부의 남북여성대표자회의 개최 지원	13	12
2007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의 남북여성대표자모임	11	10

교육부문에서는 2007년 8월 6일부터 9일까지 남측 6.15공동위원회 교육본부(한국교총·전교조)가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교육자 상봉모임」을 가졌다. 북측은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관계자가 참석하여 모란봉제1중학교에서 남북공동행사를 가졌고, 남측은 평양의 명소와 백두산을 참관하였다.

이 행사는 남측의 대표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행사에 정부는 남측대표단 100명에 대해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1억 1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교육부문 연도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 업 내 용	승인액	집행액
2007	6.15 남측위 교육본부의 남북교육자 상봉모임	104	101

나. 체육분야

인적왕래 지원 중 체육분야에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 것은 15건, 38억 1,7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02년 3건, 2003년 1건, 2005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7건, 2008년 1건 등이며, 성격별로는 국내개최 국제 경기대회 참가 6건, 공동 체육행사 1건, 회의참가 지원 1건, 상호 교환경기 지원 7건 등이었다.

2002년 8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태권도시범단 교환」이 이루어졌다. 우선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우리측 태권도시범단 50명이 북측의 조선태권도위원회 초청으로 서해직항로를 통하여 평양을 방문하여 시범공연을 가졌다. 이어 10월 23일

부터 10월 26일까지는 북측 태권도선수단 41명이 서해직항로를 통해 서울을 방문하여 한국체육대학 참관과 2차례의 시범공연을 갖고 돌아갔다. 남북태권도 선수단 교환경기는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를 남북이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남북 태권도 선수단의 상호 교환방문 행사를 위해 북측선수단의 서울방문시 체재비, 차량비, 공항이용료 등 총 1억 7,2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2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제14회 부산아시아안게임」이 개최되었을 때에는 북한 선수단 312명(9.23 1진 159명, 9.27 2진 153명)이 평양에서 고려항공을 통해 김해공항으로, 응원단 288명은 원산에서 만경봉-92호에 승선하여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정부는 선수단 체류경비, 응원단 숙식비, 공동입장 물품비 등 13억 5,500만원의 주민왕래 자금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였다. 이 대회는 국내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이 직접 참가하여 공동입장과 공동응원을 함으로써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선수단의 참가는 뉴욕타임즈 등 해외언론에서 “북한의 선수와 응원단의 활동이 반세기간 고착된 한반도 냉전의 적대감을 해소시키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2003년 8월 21일부터 8월 31까지 진행된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북한선수단이 참가하여 더욱 관심을 불러일으킨 대회였다. 이 대회에 북한은 선수 197명, 응원단 303명, 기자단 24명 등 총 527명을 파견하였다. 북한 응원단은 북한 주요경기와 우리 배구 등을 응원하고, 총 2회의 공연을 실시하였다. 북한 대표단 방한을 위해 정부는 선수단 체류경비, 응원단 숙식비, 공동입장 물품비 등 주민왕래 자금 8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다. 북한은 부산아시아안게임에 이어 우리측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대규모 참가단을 파견하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남북한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북한 핵문제 등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반도 평화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북한 응원단에 대한 지나친 관심표명으로 ‘세계대학생의 축제’라는 의미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었고, 대회기간 동안 북측이 일부 무리한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문제점도 있었다.⁵⁹⁾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된 「동아시아 축구대회」에는 한국, 일본, 중국, 북한의 남녀 대표팀이 참가하여 대전, 전주, 대구에서 경기를 개최하였다. 북한은 남자선수단 24명, 여자선수단 22명, 지원인원 21명 등 67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정부는 북한 대표단의 체재비, 교통비, 항공료 등 2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 대회는 역사적·지정학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동북아 4개국의 남녀 축구대표팀이 동시에 참여한 경기로써 동북아 화해무드에 일조하였다.

2005년 9월 1일부터 9월 4까지 인천에서 개최된 「제16회 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는 북한 선수단 20명(8.28 입국)과 응원단 124명(8.31 입국) 등 총 144명이 참가하였다. 정부는 북한 선수단 참가와 관련하여 총 행사비용 4억 6,500만원 중 숙식비, 항공료 등 1억 9,600만원의 주민왕래 자금을 지원하였다. 동 대회에서는 북한 선수단과 함께 북한 응원단의 공연도 인천시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북한 응원단은 경기응원 4회와 공연 3회 등을 통해 남북 주민간의 거리감을 좁히는데 기여하였으나, 북측의 지나친 통제로 일반시민과의 접촉기회가 적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2006년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서울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

59) 2003.8.28 북한응원단은 경북 예천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상봉 장면이 삽입된 환영 플래카드(14개)가 비에 젖는 것을 보고, 그 중 5개를 철거해 김정일 위원장 사진부분을 가지고 간 사례가 있다.

총연합회」가 열렸다. 북한은 손광호 단장 등 4명의 대표단이 참가(체류기간 3.31~4.5)하였으며, 정부는 북한 올림픽 대표단의 참가경비 900만원(항공료, 숙박료, 식비, 차량임차비 등)을 지원하였다.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스포츠회의 행사에 북한대표단이 참가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남북 체육계의 상호협력 분위기 조성과 2008 북경 올림픽 단일팀 구성 등 남북간 스포츠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되었다.

「2007 FIFA 세계청소년월드컵 축구대회」('07.8.18~9.9, 서울) 참가를 위한 사전 현지적응 훈련의 일환으로 17세 이하 북한 청소년 축구선수단 32명이 2007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달간 제주, 수원, 광양, 서울을 순회하며 국내 전지훈련을 가졌다. 우리측 민간단체인 남북체육교류협회가 북한의 청소년축구팀을 초청하여 성사된 전지훈련을 위해 정부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차량이용료 등 2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다. 남북교류협력이 시작된 이래 북측 인원이 한달의 기간동안 남측에 체류한 사례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동 전지훈련을 통해 남북의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장을 마련하였고, 북한 청소년들에게 남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2007년 4월 6일부터 4월 9일 기간에는 북한 「태권도시범단」 48명이 서해 직항로를 통하여 방한하였다. 시범단은 서울, 춘천에서 2차례 시범공연을 실시하고, 국제태권도연맹 서울지부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 태권도시범단과 함께 방남했던 장웅 국제태권도연맹 총재는 김정길 한국올림픽위원회위원장 등을 면담하였다. 정부는 총 사업비 4억 4,000만원 중 항공료, 숙박비, 식비, 차량이용료 등 1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다.

2007년 8월 14일부터 9월 9일까지 울산, 수원, 천안, 광양, 제주

등에서 개최된 「2007 FIFA 세계청소년월드컵 축구대회」에는 북한 선수단 31명이 방한하여 참가하였다. 정부는 FIFA에서 공식 지원하는 대회참가 경비를 제외한 북한선수단의 체류경비 8,000만원을 지원하였다. 북한 청소년 대표팀은 대회기간 전 방남하여 현지 적응 훈련(8.7~8.14 오전)을 거치는 등 우리측의 문화를 직접 접하는 기회를 가졌다.

2007년 4월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북측의 「4.25체육단」은 50명 규모로 「남북 유소년축구단 상호교환경기」를 향후 5년간 매년 상·하반기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6월1일부터 6월 14일까지 북한 유소년 축구팀 34명이 방남하여 제1차 교환 경기를 가진데 이어,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남한축구팀 30명이 평양을 방문하여 제2차 교환 경기, 10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북한축구팀 26명이 방한하여 제3차 교환 경기, 11월 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남한축구팀 26명이 방북하여 제4차 교환 경기를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남북 유소년들이 상호 방문하여 상대측의 문화를 직접 접하며 친선경기를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부는 1차 경기에 1억 1,300만원, 2차 경기에 7,500만원, 3차 경기에 7,700만원, 4차 경기에 9,300만원을 지원하였다.

2008년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2008 아시아 시니어 레슬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 15명이 참가하였다. 동 대회에는 우리나라, 중국, 이란, 몽골 등 20개국이 참가하여 14체급의 경기를 진행하였다. 정부는 새정부 들어 최초의 북한선수단 방한행사에 대해 체류경비 1,279만원(숙박비 739백만원, 식비 54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사 업 내 용	승인액	집행액
2002	남북 태권도 시범단 교환에 따른 북한선수단 방남 지원	189	172
	2002 남북통일축구대회 지원	153	153
	제14회 부산아시아인게임 북한선수단 참가 지원	2,126	1,355
2003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 대구 U대회 참가 지원	1,356	899
2005	동아시아축구대회 북한 남녀대표팀 참가지원	259	219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응원단 참가지원	196	196
2006	제15차 국제올림픽위원회연합회 서울총회 북측 대표단 참가 지원	10	9
2007	북한 청소년축구팀 방남 지원	252	252
	북한 태권도 시범단 방남 지원	111	111
	북한대표팀 FIFA 청소년월드컵대회 방남 지원	91	80
	제1차 남북 유소년축구팀 상호교환 경기	113	113
	제2차 남북 유소년축구팀 상호교환 경기	75	75
	제3차 남북 유소년축구팀 상호교환 경기	85	77
	제4차 남북 유소년축구팀 상호교환경기	143	93
2008	아시아 레슬링 선수권대회 북한대표팀 방한	13	13

다. 종교 등 분야

2000년 5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서울을 방문하여 음악과 무용,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예술단 일행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 최휘 비서를 단장으로 한 지휘자 및 지원단 24명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예술단을 비롯한 평양 소재 5개 예술단에서 선발한 8~17세 단원 78명 등 모두 102명이다. 이 공연을 위해 항공료, 교통비, 숙식비

등 2억 7,7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였다.

2002년 5월 3일부터 4일까지 북측의 「중군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일본의 과거청산을 촉구하는 아시아 지역 심포지엄」이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남측인원 12명이 방북하였으며, 이에 숙식비, 교통비 등 남북협력기금 3,8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행사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로 평양에서 열린 세 번째 행사로 남북·필리핀·인도네시아·대만·중국의 피해자, 활동가들 및 재미·재일 동포활동가 등 150여명이 참가하여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더불어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역사왜곡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3년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북한종교인 45명을 포함하여 105명의 북한대표단과 700여명의 남쪽 대표단이 참가하여, ‘학술토론회’, ‘평화통일 기원의 밤’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특히 3.1 민족대회를 위해 서울에 온 북측 종교인들은 최초로 명동성당과 소망교회, 봉은사와 천도교 대교당을 방문하여 종교예식에 참여하는 등의 행사를 가짐으로써 남측의 종교실상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정부는 이 행사가 남북 종교교류 활성화와 화해협력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2억 600만원의 남북주민왕래자금을 지원하였다.

2004년 1월 16일부터 1월 19일까지 사단법인 「통일맞이」가 주최한 「문익환 목사 10주기 기념행사」에 총 7명으로 구성된 북한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하였다. 북측대표단은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평화통일 기원의 밤’ 추모행사에 참가하는 한편, 경복궁 및 행주산성 등도 방문하였다. 정부는 이 행사에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1,800만원의 왕래기금을 지원하였다.

2004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우리측 「한국중앙학연구원」

과 북측 「사회과학자협회」 주최의 남북공동학술회의가 ‘근현대사 향 일민족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일본의 우경화’를 주제로 남측에서 개최되었다. 동 학술회의는 주로 중국이나 북측에서 열리던 기존 남북 학술회의와는 달리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내어 우리측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학술행사에 초청인사의 체류경비 등으로 1,200만원이 지원되었다.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는 2003년 발족하였는데, 제3차 대회를 2005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 참가한 남측대표단 19명에 대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2,100만원을 지원하였다. 남·북·해외 참가자 일동은 일본의 과거청산을 위한 국제운동 강화를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2006년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금강산에서 ‘겨레얼 살리기’ 행사를 북측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전통종교 차원에서의 남북 종교인들간의 만남이 성사된 최초의 행사로서, 남측 103명, 북측 40여명이 참가하여 공동토론 등 기념행사를 가졌다. 정부는 이 행사에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4,4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이 행사에 기금을 지원하게 된 것은 민족의 겨레얼을 재인식함으로써 이념적 대립으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여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민주노동당은 북측 조선사회민주당과의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2005년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김혜경 대표 등 20명(국회의원 4명 포함)으로 구성된 민주노동당대표단이 방북하여 양당간 교류 정례화와 국회회담 개최를 위한 환경조성 등에 합의하였다. 정부는 이에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남북협력기금 3,900만원을 지원하였다. 2006년에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문성현 대표 등 13명(국

회의원 2명 포함)의 대표단이 핵실험(10.9) 직후 방북하여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며⁶⁰⁾ 정치분야 교류의 끈을 이어갔다.

2007년 5월 19일에서 21일까지 「제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남북, 일본 및 필리핀·대만·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피해국 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미국·독일 등 10개국 18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 행사를 위해 북측에서 「조선일본군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 5명이 남측을 방문하였다. 회의 기간 동안 피해자 증언, 종합토론, 문화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북측대표자에 대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8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7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북측 「조선종교인협의회」 간에 지난 10년간의 교류협력의 성과 및 의미,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렸다. 최근덕 대표회장을 비롯한 7대 종단 대표 41명으로 이루어진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방북단은 10주년 기념대회와 장충성당, 봉수교회, 광법사 등 북한 내 각종교시설을 둘러보았다. 정부는 이 행사가 각 종단 지도급 인사로 구성된 첫 공식 대표단 방북으로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조선종교인협의회간의 교류성과를 확인하고 상호 교차방문 정례화 등 남북종교교류 활성화의 계기가 된 것을 인정하여 숙박비, 식비, 항공료, 차량 이용료 등 체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4,900만원을 지원하였다.

60) 민주노동당 방북 대표단은 귀국 기자회견('06.11.4)을 통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시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우려를 전달하고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승인액	집행액
2000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 지원	277	277
2002	평양국제심포지엄 참석 지원	40	38
2003	한국종교인평화회의 3.1민족대회 지원	206	206
2004	통일맞이 문익환목사 10주기 행사지원	18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남북공동학술회의 지원	12	12
2005	민주노동당 대표단 평양방문 지원	40	39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제3차 대회 참가지원	21	21
	제15차 국제적십자사 연맹총회	34	29
2006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의 6.15공동선언실천 우리겨레단합대회 지원	53	44
	민주노동당 대표단 평양방문 지원	25	24
2007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8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참가 지원	8	8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단 방북 기념행사 지원	52	49

4. 북한 체험학습

가. 금강산 관광 및 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지침을 수립하였다. 제94차 남북교류 협력추진협의회(02.3.21)에서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지침」을 정하고 21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금강산 관광객의 금강산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금강산 관광객 경비 지원대상은 이산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른 통일교육강사 및 통일교육요원과 각급 학교 교원 및 학생이며, 관광요금과 식비를 합산한 금액 가운데 초·중·고등학생은 70%, 기타 대상자는 6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4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57,218명에게 215억 2,950만원의 관광경비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되었다.

〈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간	지원인원	기금 집행액
2002.4~2002.12	57,218명	21,530

나. 북한현지 체험학습

북한현지 체험학습은 2004년에 논의되기 시작하여 그 해 12월 통일부는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참가학생과 인솔교사 등을 선발하는 한편, 북한현지 체험학습 실시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하였다. 이는 청소년과 교사들이 북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하면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참가대상자는 우선 교사반과 학생반으로 구분하여 시·도 교육청 단위 지역별로 선발하였다. 특히, 장애학생과 기초생활수급대상, 낙도·오지학생 등에 대해 배려하였다.

체험학습의 경비는 일부 경비를 제외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3차에 걸쳐 총 104억 6,100만원이 지원되었다.⁶¹⁾

61) 1차(2004.12~2005.2)와 2차(2005.12~2006.3)시에는 교육부도 일반예산으로 관련 경비 일부를 지원하였다

〈북한현지 체험학습 실시 결과〉

(단위 : 백만원)

차수	기 간	횟수	참가인원(명)	기금 집행액
1차	2004.12~2005.2	45회	19,369	2,970
2차	2005.12~2006.3	40회	16,398	4,790
3차	2008.1~2	24회	8,711	2,701

(1) 1차(2004년~2005년)

2004년 9월 23일 교원단체가 정부에 학생 및 교직원의 금강산 현장 체험학습 경비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제138차 남북교류 협력추진협의회(04.11.24)에서 체험학습 경비 지원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 3일부터 2005년 2월 27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19,369명이 금강산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전체 19,369명 중 학생이 18,028명으로 전체 참가자의 93%를 차지하였는데 중학생이 5,161명, 고등학생이 12,867명이었고 남학생은 9,356명, 여학생은 8,672명이었다.

또한 이 가운데는 장애우(5개교 21명), 통일교육 시범학교 학생(20개교 800명), 실향민 2~3세(580명), 기초생활 수급대상자(2,032명), '도전 통일벨'에 응모했던 학생(986명), 대안학교 학생(9개교 36명) 등 특별 참가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교사도 1,329명(전체의 7%)이 참가하였는데, 인솔교사 856명, 교장·교감 319명, 16개 시·도 장학사 154명으로 구성되었다.

체험학습의 내용으로는 먼저 출발 당일 안보교육관(강원도 고성)에서 예비교육을 실시하고 금강산 현지에 도착하여 금강산 체험 외에 전문가 특강, 소감문 작성, 체험학습, 놀이마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었다.

체험학습 경비로 1인당 16만 8000원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되어 총 28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다. 1인당 경비는 관광경비 중 숙박비와 아침 식사비 등 기본경비만 지원되었고 교통비, 공연관람비, 현지식비 등은 참가자 개인이 부담하였다.

(2) 2차(2005년~2006년)

1차 체험학습 후 교사와 학생들은 체험학습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와 함께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차 체험학습의 긍정적인 효과를 토대로 2차 체험학습이 추진되어 2005년 12월 22일부터 2006년 3월 8일까지 총 40회에 걸쳐 16,398명의 교사와 학생 등이 참여하였다.

16,398명 가운데 교사는 13,986명으로 대부분 통일교육 이수 교사, 통일교육 시범학교 교사, 중등학교 통일교과 담당교사 등이었다.

1차와는 달리 교사가 많이 선발된 것은 학생들보다 비용 대비 교육효과 측면에서 통일교육 담당자들이 먼저 체험하고 교육을 통해 전파하는 것이 체험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학생은 1,815명으로 통일교육 시범학교 학생, ‘도전 통일벨’ 등 통일행사 참가학생 등이었다.

이 외에 통일교육위원, 통일교육협의회 등 통일교육 관계자도 493명이 참가하였으며, 강사, 학생인솔단 등 지원인원 104명이 체험학습의 순조로운 진행을 도왔다. 이 가운데는 ‘통일서포터즈’ 32명이 활용되었다.

프로그램은 1차와 유사하게 금강산 산행, 통일교육 특강, 교예공연 관람 등으로 구성되었다.

체험학습 경비로 학생은 1인당 27만 5000원, 교사와 통일교육 관계자는 1인당 29만원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되어 총 47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다. 1차와 비교하여 참가학생에 대한 지원 경비가 증가한 것은 관광경비 중 기본경비만 지원되던 1차와 달리 교통비, 공연관람비, 현지식비 등의 비용도 기금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교사와 통일교육 관계자는 1차와 같이 기본경비만 지원되었다.

(3) 3차(2008년)

3차 체험학습은 2008년 1월 13일부터 시작하여 2월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되어 총 24회에 걸쳐 총 8,711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의 구성은 중·고등학생 4,106명, 대학생 47명 등 학생 4,153명, 교사 4,517명, 지원인원 41명이었다.

학생들 가운데는 통일교육 시범학교 학생,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도서벽지거주 학생 등이 포함되었다.

프로그램은 1, 2차와 유사하게 진행되었고 체험학습 경비로 중등학생 1인당 27만 1,500원, 교사 1인당 36만 1,580원, 인솔교사 1인당 33만 5,480원, 대학생 1인당 29만 7,200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여 총 27억 1백만원이 집행되었다.

제3절 | 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지원

1. 문화·학술 교류분야

가. 추진배경 및 경과

1998년 금강산관광 시작을 계기로 남북간 교류의 물꼬가 트이면서 문화·학술분야에서도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민족적 동질성에 기초한 문화교류는 남북간 화해협력을 증진하고 오랜 분단체제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며, 민족동질성과 공동체의식을 복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조선향토대백과 공동편찬, 남북공동사진전, 가극 및 오페라 평양공연, 민족작가대회, 금강산 윤이상음악회, 안성 남사당 북측공연 등 다양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

학술분야에서는 남북간 상호 다름을 이해하고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남북한 학자들의 만남이 꾸준히 전개되었다. 각종 공동학술회의와 연구 및 조사사업을 통해 서로의 학문성과를 교환하고 공동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기 위한 교류행사들이 추진되었다. 북관대첩비 반환사업, 고구려고분군 조사사업, 개성만월대 공동발굴조사 등 역사문화재 교류사업과 북한 IT인력교육사업, 김일성대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 등의 교육분야 교류사업도 이루어졌다.

특히,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이 공동으로 남과 북, 해외의 우리 말을 집대성하여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 「겨레말큰사전」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 사업은 심화된 남북의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고 어휘를 통합정비하여 우리말의 통일을 대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2004년 12월 13일 남측의 사단법인 「통일맞이 늦봄 문익환목사 기념사업회」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가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고 2005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위원회」를 결성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2007년 4월 27일에는 여야 합의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제정되어 남북협력사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특별법에 의거한 사업이 되었다. 2004년 사업승인 이후 2008년 9월 현재까지 총 14차례의 남북공동편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사전편찬을 진행하였고 총 30만 어휘 규모의 사전으로 2013년 발간될 예정이다.

2008년 9월까지 문화·학술 등 교류분야에는 총 34건에 176억 7,1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되었다.

나. 연도별 집행실적

(1) 문화예술교류 지원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1998년 1건, 2000년 3건, 2001년 1건, 2003년 1건, 2004년 2건, 2005년 5건, 2006년 2건, 2007년 2건 등 총 17건으로 모두 46억 8,100여만원이 지원되었다.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단체	사업내용	승인액	집행액
1998	한국사진학회	남북공동사진전	30	30
	(주)평화자동차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	42	42
2000	NS21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637	637
	한국방송공사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1,883	1,373
2001	동해대학교 남북교육문화교류연구소	6.15남북공동선언기념 남북공동사진전	102	102
2003	(사)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공동편찬	765	157
	(사)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공동편찬	765	559
2004	동북아시아문화교류협회,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남북공동 꽃사진전 지원	163	163
	(사)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공동편찬	765	49
	(주)통일맞이	6.15통일대축전 가극 「금강」 평양공연	497	497
2005	예맥출판사	남북전통공예교류전 개최	193	188
	(사)민족작가회의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 개최	357	357
	뉴서울시립오페라단	고구려-광개토호태왕 평양공연 개최	295	295
2006	윤이상평화재단	금강산 윤이상음악회 개최	104	102
	월간 민족21	남북공동사진전 개최	50	50
	(주)PMG networks	「금강산가극단」 무용공연	18	17
2007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안성시	안성남사당 북측 공연	63	63

1985년 평양과 서울에서 제1차 예술단 상호 방문공연 이후, 1990년 들어 ‘범민족통일음악회’ 평양공연과 ‘송년통일전통음악회’ 서울공연이 있기까지 문화예술분야 남북간 교류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98년 5월에는 「한국사진학회」와 「조선사진가동맹」 공동으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한반도의 자연풍광을 담은 「남북공동사진전」이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동 행사와 관련하여 남북공동사진집(2,000부)이 발간되었으며, 3,0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되었다.

남북문화예술교류의 물꼬를 튼 것은 리틀엔젤스 공연단의 1998년 평양공연이었다. 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서울공연⁶²⁾(5.24~5.30)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성사되었는데 이 공연에서 78명의 예술단원들은 음악과 무용, 연주 등 다채로운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기량을 선보이며 남북 화합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공연은 북한 학생예술단으로서는 분단 후 처음으로, 문화예술 공연으로서는 지난 90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이를 통해 민간차원의 남북문화교류의 문호를 개척했다는 점과 순수한 어린이들의 교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공연에 남북협력기금 4,200만원이 지원되었다.

1998년부터 추진되던 평양교예단 서울공연이 2000년에 성사되어 공연단 102명이 5월 29일부터 6월 11까지 서울을 방문, 남측 국민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서커스를 보여주었다. 남측 사업자를 통해 항공료, 교통비, 숙식비 등 6억 3,700만원 상당의 기금을 지원하였다.⁶³⁾

2000년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조선국립교향악단」은 분단후 처음으로 「KBS

62) 평양학생예술단의 공연은 5.26부터 5.28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펼쳐졌으며 1만 2천여명의 관객이 관람하였다.

63) 동 공연과 관련, 북측은 평양교예단 서울공연을 최초로 추진했던 남측 사업자와 당초 계약을 부인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시도하여 남한의 사업자들간 보상금 지급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교향악단」과 합동연주를 비롯하여 모두 4차례 공연을 가졌다. 특히 피날레 무대에서는 남북 합동연주단 70여명이 민족정서가 흠뻑 담긴 ‘아리랑’을 연주, 음악을 통한 남북화합의 전주곡을 올렸다. 이 공연에 13억 7,3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되었다.

2001년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제목으로 남북이 50점씩 총 100점의 사진을 평양(6.14~24)과 서울(8.14~23)에서 각각 전시했고, 이 전시회에 남북협력기금 1억 2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4년에는 남북공동사진전 「꽃으로 보는 내나라」가 평양(6.14~6.20)과 서울(04.9.22~10.5)에서 개최되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의 꽃을 소재로 한 사진 전시는 사진을 매개로 문화교류의 장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총사업비 5억 4,300만원 중 1억 6,3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되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남측의 사단법인 「평화문제연구소」와 북측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공동으로 「조선헌토대백과사전」⁶⁴⁾을 편찬하였다. 「조선헌토대백과사전」은 북측의 자연·인문지리, 지명, 민속, 인물 등의 정보를 총 20권으로 집대성한 백과사전으로 북측에서 자료조사 및 원고를 작성하고 남측은 편집·교열작업을 담당했다. 「조선헌토대백과사전」은 북한지역정보의 총서로서 북한연구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되어 총 사업비 15억 5,000만원 중 7억 6,5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었다.

2005년 6.15 통일대축전 기간 동안 남측의 문화행사로 가극 「금

64) 조선헌토대백과는 북측의 사회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외국문출판사, 국가자연식물연구소 등 20여개 기관에서 1천여 명의 연인원이 참여해 원고를 집필하였다.

강」 공연이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이루어졌다. 공연 총 사업비 17억 5,000만원 중 장비구입비, 무대장치비 등 4억 9,7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었다.

2005년 7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남북전통공예교류전」이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되었다. 이때 남북공예품 600여점이 공동으로 전시되었는데 관람객이 5만5천명을 넘어 남북전통공예품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총사업비 3억 5,000만원 중 1억 8,8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5년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평양, 백두산, 묘향산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가 개최되었다. 남측의 작가 113명과 북측의 「조선작가동맹」 소속 작가 100여명, 해외작가 50명이 모여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민족작가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 및 통일문학상 제정, 「통일문학」 발행 등에 합의하였다.⁶⁵⁾ 민족작가대회에는 총사업비 12억 7,000만원 중 교통비, 숙식비, 대회 진행경비 등의 항목으로 남북협력기금 3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다.

2005년에는 남측의 「뉴서울시립오페라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봉화예술극장에서 민족오페라 「아, 고구려 고구려-광개토태왕」을 공연하였다. 이 공연을 위해 남측에서 공연단, 정관계, 문화계 인사 등 150명이 서해 직항로를 이용하여 방북하였다. 이 사업에 공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명제작비, 무대제작비 등 2억 9,500만원이 지원되었다.

65) 동 대회를 계기로 다음해 6.15민족문학인협회가 결성되었고 2008년 1월에는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식에서 논의되었던 협회기관지 「통일문학」을 발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6년 4월 29일에는 금강산에서 「윤이상음악회」가 개최되었다. 세계 음악계에 명성이 높은 음악가 윤이상을 기리기 위해 남측의 「윤이상평화재단」과 북측의 「윤이상음악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했고 남측 230명, 북측 50명 등 280명 참석했다. 총 사업비 3억 6,000만원 중 남북협력기금으로 공연비, 체류경비, 만찬비 등 1억 2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6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남북공동사진전 「평양 사람들의 서울 나들이」가 부산 등 지방도시에서 순회 전시되었다. 월간 「민족21」과 북한의 「통일신보사」, 「조선신보사」가 보유한 북한주민 사진 127점을 전시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총사업비 1억 1,400만 중 5,000만원을 기금에서 지원하였다.

2007년에 주식회사 「PMG networks」가 추진한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금강산가극단」 방남공연은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써 단순 일회성 교류의 차원을 넘어 지속적인 남북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에 기여했다. 2000년, 2002년,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금강산가극단」의 공연 ‘조선무용50년-북녘의 명무’가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공연되었다.⁶⁶⁾ 총 사업비 9,500만원 중 공연단 일행 26명의 항공료, 숙박비, 식비, 차량이용비 등의 항목으로 남북협력기금 1,7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7년에 안성시와 사단법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안성 남사당’ 북측 공연을 추진하여 11월 21일 황해도 정방산

66) 이 무용공연은 「금강산가극단」 단원 입국시 행정절차로 인해 조총련과 우리 외교당국과 갈등을 빚어 우역곡절 끝에 당초 일정이 연기되어 12월에 성사되었다.

에서 이루어졌다. 남사당놀이 는 안성지역을 중심으로 계승 발전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예술로써 북한에서 이루어진 이번 공연으로 남북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반세기동안 단절된 남과 북의 전통문화를 비교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이 공연은 서울-평양 중심이 아니라 경기도 안성-황해도 정방산이라는 중소 도시에서 진행된 문화예술분야 교류로써 남북교류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 공연은 총사업비 8,900만원 중 공연단 항공료, 숙박비, 식비, 차량이용료 등의 항목으로 6,3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었다.

(2) 학술교류 지원

2007년 12월 31일 현재 교육·학술분야 교류에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 것은 17건에 129억 9,0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04년 1건, 2005년 2건, 2006년 8건, 2007년 5건, 2008년 1건 이며, 성격별로는 교육 분야 사업 6건, 역사 및 문화재 등 학술분야 사업이 11건이었다.

2004년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공동주최로 「고구려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공동 사진전시회 및 학술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평양 일대의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남북이 힘을 합쳐 중국의 고구려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단독 등재를 막아내고 이룬 성과였다. 행사 관련 이 사업에 4억 2,5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되었다.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단 체	사 업 내 용	승인액	집행액
2004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고구려고분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사진전 및 학술토론회 지원	425	425
2005	하나비즈닷컴	북한 IT 인력양성사업 지원	185	41
	통일맞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681	672
2006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반환사업	1,254	915
	우리민족하나되기 운동본부	대북 교육기자재 지원	75	72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지원	1,000	1,000
	하나비즈닷컴	북한 IT 인력양성사업 지원	84	83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북한주민건강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남북학술회의	54	17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고구려 고분군 실태조사 지원	466	452
	광복회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사업 지원	50	46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3,614	3,082
2007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김일성대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 지원	924	859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295	294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지원	580	574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고구려 고분군 보존사업 지원	237	234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2,978	2,855
2008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3,222	1,369

2006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북측 의학협회 간에 「북한주민건강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남북학술회의」가 중국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남북학술교류가 주로 역사와 민족문화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데로부터 북측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기획한 행사였다.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내분비계 치료제 생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지원된 1,700만원의 협력기금은 참석자 왕래비, 회의경비로 집행되었다.

2006년 3월 1일, 2005년에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은 「북관대첩비」를 북한에 인도·인수하는 행사가 남북문화재 당국자 및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은 반환받은 북관대첩비를 원소재지인 함북 길주에 안치하고 이를 우리측에 통보하였다. 북관대첩비 반환은 남북 당국 및 민간이 합심하여 문화재를 되찾은 첫 번째 사례였다. 북관대첩비는 일본, 남측, 북측을 차례로 거치며 일반에 그 모습을 공개하였고, 가는 곳 마다에서 반환을 축하하며 함께 그 뜻을 크게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이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원활한 환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제15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5.7.19) 결의에 기초하여 남북협력기금 9억 1,500만원이 지원되었다. 환수협의를 위한 관계인사의 일본방문 및 일본내 행사경비로 4,500만원, 국내환국 기념행사 관련 제경비에 4억 6,200만원, 북관대첩비 해체운송 등에 1억 3,600만원, 개성에서 열린 남북공동행사 경비에 2억 7,2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4년 평양일대 고구려 고분군이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⁶⁷⁾ UNESCO는 등재와 함께 고분의 보존상태 개선을 요구

67) 북한은 2004년에 평양 일대에 소재하는 고구려고분 63기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다.

하였고, 이를 계기로 2006년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남측 「남북 역사학자협의회」와 북측 「문화보존지도국」 관계자 등이 공동으로 평양일대 9기의 고구려 고분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태조사로 고구려사 관련 남북공동연구를 발전시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남북 공조대응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민족문화유산의 공동보존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하였다. 특히 진과리 4호분·호남리 사신총·용강대총·쌍영총 등 4기의 고분이 남측 학자들에게 최초로 공개되었다. 총 사업비 약 7억 2,000만원 중 교통비 및 평양체류비, 유물분석 및 실험측정 등 실태조사비, 고구려유적 보존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자재 지원경비 등 4억 5,200만원의 협력기금이 지원되었다.

2006년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 보존조치가 시급한 고구려고분에 대하여 2007년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남북공동보존사업이 실시되었다. 평안남도 중화군에 위치한 진과리 1·4호분 벽화에 대한 보존처리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종합환경측정장비를 고분 안팎에 설치하였고, 향후 기온·습도 등 고분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데이터를 수집한 후 공동으로 분석·연구할 계획이다. 고구려고분의 보존상태 개선으로 고분의 영구적 보존과 세계문화유산 지정 유지에 기여하였다. 동 사업 관련 총사업비 3억 4,000만원 중 2억 3,400만원의 협력기금이 지원되었다.

남측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5월 18일에서 7월 13일까지 만월대 서북지구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어 9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시굴조사결과 파악된 주요 건물지에 대한 전면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9동의 주요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수백여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발굴조사에는 남측의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북측의 「조선중앙력사박물관」 등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남측 인력이 북측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공동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 9억 2,700만원 중 교통비 및 개성체류비, 발굴 장비 구입 및 발굴조사경비, 개성역사유적 보수용 건축물자 지원경비 등 5억 7,4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되었다.

중국 여순에 문헌 것으로 알려진 「안중근의사의 유해발굴사업」이 남북 당국간 합의로 2006년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되었다. 중국 대련시 여순구 여순감옥 뒷산 공동묘지를 공동으로 조사하였고, 향후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사업은 남북당국간 사업임을 감안 전액 협력기금이 지원되었다. 4,600만원이 관계자들의 왕래비 및 회의경비로 집행되었다. 그러나 이후 유해 발굴사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비협조로 실시하지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2008년 초에야 현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남측의 주식회사 「하나비즈닷컴」과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합의하여 「북한 IT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중국 단둥 하나프로그램센터에서 추진하였다. 북측의 조선컴퓨터센터, 김일성대학 등의 IT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남측의 전문가들이 북측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IT분야의 최신 지식을 교육하였다. 이 사업은 남측 강사가 북측 교육생에게 최신 IT정보와 기술을 직접 전달하며 남북간 실질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후 2006년부터 남측 사업자가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우리민족인재양성센터로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북측 교육생 총 159명을 교육하였고 2005년에 협력기금 4,100만원, 2006년 8,3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7년의 경우 '3D그래픽스', '인베디드' 2개 과정에 각

30명씩 총 60명의 북한 전문 인력을 교육하였고 총사업비 5억 4,000만원 중 협력기금 2억 9,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강사인건비 및 체류비, 교재구입 및 교육경비, 중국내 IT산업현장 참관비 등 이었다.

2006년 남측 「우리민족하나되기운동본부」는 북한 금성학원에 북한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통학용 버스 1대를 지원하였으며 총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7,200만원이 기금으로 지원되었다.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은 북측 교육성의 승인을 얻어 2001년부터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1단계로 정보과학 등 3개 분야 대학원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학부과정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남·북·해외 교수진이 함께 북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 중이며, 실현될 경우 우리 교수진이 장기간 평양에 체류하면서 교육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사업비는 1단계로 동 사업의 의의를 감안하여 2006년 협력기금 10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원된 기금은 모두 학생기숙사 건축자재구입비로 집행되었다.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국내 여러 대학들과 함께 2006년부터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측은 도서관리 현대화 및 소장자료 디지털화를 위한 설비와 기술을 지원하고, 북측의 디지털화한 소장자료를 남측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제17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1.25) 결의에 의거하여 총사업비 22억 8,800만원 중 8억 5,900만원을 기금으로 지원하였다.

2005년 시작된 「겨레말큰사전」 사업은 사전 편찬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추진되었다. 먼저 남북은 공동편찬위원회를 결성하고, '남북공동편찬요강'과 '단일어문규범 작성요강'을 마련하여 사전편찬

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제15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6억 8,2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중 편찬회의비 1,400만원 및 복측 자료조사비 6억 5,900만원 등 6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06년 1월에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출범하여 편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제5차에서 제8차까지 남북공동편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사전에 수록할 어휘선별과 새 어휘 조사 등을 실시하고 단일어문규범 작성을 위한 남북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17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6.4.10) 승인에 따라 복측 자료조사비 7억 8,000만원, 남측편찬사업회의 인건비 7억 7,000만원 및 편찬사업비 6억 7,000만원 등이 집행되었다.

2007년에도 4차례 남북공동편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2006년 41만개에 이어 어휘 39만개를 추가 선별하였고, 지역의 방언 현장 조사 및 문헌자료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DB검색기와 용례 색인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편찬을 위한 전산화 작업도 추진하였다. 제17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1.25) 승인에 따라 복측 자료조사비 5억 6,000만원, 남측 편찬사업회의 인건비 9억 8,000만원 및 편찬사업비 5억 8,000만원 등이 집행되었다. 2008년 9월까지 제13, 14차 남북공동편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현재 1차 올림말 선정 작업을 완료하고 뜻풀이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제20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8.1.25) 승인에 따라 총 32억 2,200만원의 기금지원이 확정되었으며, 2008년 9월말 현재, 편찬사업비 5억 5,900만원, 인건비 5억 1,900만원 등이 집행되었다.

2. 체육·종교 등 교류분야

가. 추진배경 및 경과

체육 및 종교분야 교류협력은 북한을 자극하거나 정치적 대응을 야기함이 없이 북한의 사회변화 및 개혁개방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 정치 이념적 논리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하지만 교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와 빈약한 추진능력은 사회문화교류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의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적절한 지원은 민간교류 활성화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체육·종교 등 교류분야에는 총 30건에 73억 8,6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었다.

나. 연도별 집행실적

(1) 체육교류

1990년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체육교류에 협력지원자금이 지원된 것은 10건 22억 3,9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1991년 2건, 2003년 1건, 2005년 3건, 2006년 1건, 2007년 3건 등이며, 성격별로는 국내외 경기대회 참가 지원 8건, 학술대회 지원 1건, 북한 체육시설 지원 1건 등이었다. 연도별 집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단 체	사 업 내 용	승인액	집행액
1991	대한탁구협회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164	164
	대한올림픽위원회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786	786
2003	민족평화축전남측조직위원회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542	497
2005	한국권투위원회	평양 권투대회	89	89
	민족통일체육연구원	코리아 남북체육학술대회	25	20
	오마이뉴스	평양 마라톤 대회	81	81
2006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남북강원도 겨울철 체육경기	121	74
2007	민족21	평양-남포 자전거대회	76	76
	남북체육교류협회	남북 유소년축구팀 상호교환	45	45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삼지연빙상장 아이스링크 설치지원	434	407

남북체육교류와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 첫 사례는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의 남북단일팀 출전이었다.

두 대회 모두 남북단일팀 구성 출전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단합과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대회성적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였다.

1991년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남과 북 각각 28명씩 모두 56명이 단일팀으로 출전하였다. 남북단일팀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여 중국, 스웨덴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특히 여자 단체 결승전에서 9연패에 도전하는 중국을 접전

끝에 3대 2로 꺾고 우승한 것은 1973년 사라예보 대회 이후 18년만의 일이었다. 이 대회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일본 나가노, 나가오카, 지바에서의 남북 합동훈련 비용과 행사비 등 총 1억 6,400만 원 지원되었다. 1990년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된 이후 남북 체육교류에 최초로 정부 기금이 지원된 사업이었다.

당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최초의 남북단일팀이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스포츠 교류를 통해 냉전의 장벽을 뚫어 보자는 목적에서였다. 그 결과 경기성적 못지않게 민단과 조총련, 남과 북이 화합하고 하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합동훈련을 국내에서 실시하지 못하고 일본에서만 실시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1991년 6월 14일부터 보름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도 남북단일팀이 출전하였다. 남북한 선수 18명을 포함한 62명의 선수단은 단일팀으로 출전하기 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두 차례 평가전과 합숙훈련을 통해 전력을 다졌으며, 그 결과 1승 1무 1패로 8강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단일팀 합동훈련 비용과 선수단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7억 8,600만 원 지원하였다. 탁구단일팀과는 달리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강화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 참가는 더 이상 남북체육교류로 연결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훗날 국제대회 남북공동입장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논의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되었다.

2003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민족통일평화체육축전」은 남북의 민간단체가 발의하여 개최한 종합축전이였다. 이 행사에는 남측 150여명, 북측 184명이 참가하여 마라톤,

축구, 탁구, 태권도 등 체육경기와 그네, 널뛰기, 씨름 등 민속경기가 열렸다. 축전행사는 북한이 이라크 파병문제 등을 이유로 예술단과 취주악단을 파견하지 않는 등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행사는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 축전에는 총 사업비 23억 8,000만원 중 4억 9,7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었다.

2005년 6월 28일에는 「세계여자권투협회(WBCF)」 주최로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평양권투대회」가 열렸다. 2004년도에 이어 개최된 이 대회는 남북한은 물론 미국, 브라질, 중국, 멕시코 선수들이 참가하는 등 국제대회로 치러졌다. 남측은 선수, 권투협회 관계자, 경기진행요원 등 76명이 방북하였다. 이 대회에 정부는 북한 권투선수 육성 명목으로 글러브, 권투화, 운동복 등 8,900만원 상당의 권투용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였다. 협력기금을 대회 행사비가 아닌 북한 권투용품에 지원하게 된 것은 열악한 북한 권투 인프라 개선을 통해 남북 체육교류를 보다 활성화해보자는 취지에서였다. 이 대회에는 최초로 미국 성조기와 미국 국가가 연주되었고, 북한 조선중앙TV에서도 중계를 하는 등 국내외에 상당한 관심과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200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코리아 체육학술대회」는 남한과 북한, 중국의 체육학자 및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가하였다. 사단법인 「민족통일체육연구원」 등이 주최한 동 학술대회에서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대비 남북 스포츠경기력 강화방안, 체육선수 육성 및 훈련방법, 남북 체육교류 정례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우리측 관계자들을 위해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 2,0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었다. 동 학술대회는 체육이라는 단일주제에 남북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

덴 자리였다는 점과 단순 일회성 체육행사를 벗어나 남북의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첫 체육학술대회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2005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남북이 공동 개최하는 마라톤 대회가 최초로 평양에서 열렸다. 남측의 「오마이뉴스」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가 공동주최한 「평양마라톤 대회」는 평양-남포 구간을 달리는 21km 하프 마라톤대회였다. 남측에서 마라톤 동호회원 등 147명, 북측에서 50여명이 참가한 동 대회에는 MBC 등 남측 언론사에서도 동행취재 하는 등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총사업비 12억 9,600만원 중 숙박비, 식비, 항공료 등 8,1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강원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북측 동계 스포츠선수단을 초청하여 남북 스포츠 교류행사를 가졌다. 북측 아이스하키팀 36명이 2006년 3월2일부터 3월5일까지 강원도 춘천 빙상경기장에서 남측 선수들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동 대회의 성사배경에는 남북 강원도 간 연어 방류사업 등 5년간 축적된 교류협력 성과가 바탕이 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남북강원도협력협회에 대해 총사업비 3억 7,000만원 중 7,4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남북강원도 겨울철 체육경기는 국제대회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단일 종목으로 개최된 최초의 체육교류행사로서 남북화해 협력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 지방간 체육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07년도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7주년을 앞두고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사단법인 「민족21」이 개최한 「평양-남포 자전거대회」가 평양에서 열렸다. 남측의 자전거 동호인 150여명과 북측의 동호인들이 함께 참가한 동 대회에는 자전거 대회 이외에도 동명왕릉 및 묘향산 관광 등 행사가 진행되었다.

동 대회 의의를 고려하여 총사업비 3억 9,800만원 중 교통비 7,6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였다.

이 대회는 남한과 북한 주민 모두에게 가장 대중적이고 친숙한 자전거를 통한 스포츠분야의 교류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행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열악한 스포츠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지원사업도 추진되었다.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는 15세 미만의 남북 유소년축구팀 상호 교환경기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북측과 합의하고, 북한 경기장에 인조잔디를 지원하였다. 총사업비 4억 9,400만원 중 인조잔디 설비비로 4,5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었다.

2007년 남북강원도교류협회에서는 2006년도에 성사된 남북 겨울철 아이스하키 경기 교류경험을 살려 북한의 낙후된 동계 체육시설을 개선하고자 삼지연빙상장 아이스링크 시설 확충에 4억 7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2) 종교교류

종교분야의 교류협력은 주로 각 종단 대표단의 방북, 종교시설 복원, 종교행사 공동개최, 대북지원, 종교 관련 회의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종교분야에는 주로 북한 종교시설 복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었다. 그 동안 협력기금 지원은 2004년 3건, 2005년 3건, 2006년 1건, 2007년 3건 등 총 10건 40억 1,100만원이었다.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단 체	사 업 내 용	승인액	지원액
2004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북한사찰 단청불사 지원	70	35
	대한불교 천태종	개성 영통사 복원사업	492	492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	498	498
2005	(사)동북아한민족협의회	평양 봉수 땡공장 지원	307	307
	한민족남북한선교회	왜성사과 과수원 조성사업	160	138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	494	494
2006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	600	594
2007	(사)기쁜소식	평양 봉수교회 재건축사업	1,071	1,040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평양 장충성당 주일학교 건립지원	53	51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	364	362

2004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는 불교계 최초로 「북한 사찰에 대한 단청 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동 사업은 북한 전역에 흩어진 사찰 중 복원이 시급한 문화재급 사찰을 중심으로 단청안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남북 불교교류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에는 남북협력기금에서 3,500만원 상당의 단청안료가 지원되었다. 단청안료 지원은 북측과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당초 합의대로 단청안료가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이 일부 미흡했던 점은 기금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평양 「법운암」 시범단청 실시, 남북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단청문화 전시회 등 의미 있는 교류행사가 이루어졌으며, 금강산 신계사 남북 공동복원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2004년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 복원사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남북 불교교류 차원에서 진행된 새로운 형태의 협력사업이었다. 단순 일회성 교류차원을 넘어 사찰 복원이라는 공동 공간을 통해 남북 종교인들이 정례적인 만남과 교류행사를 가짐으로써 종교를 통한 남북화해협력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영통사 복원사업을 위해 천태종은 3년간 16차례 방북을 통해 기와 40만장 등을 북측에 지원하였으며, 남북협력기금에서도 4억 9,200여만원이 지원되었다.

영통사 복원사업은 이후 2005년 낙성식, 2007년 불교신자들을 중심으로 한 성지순례사업 등으로 이어져 남북 불교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04년도에는 조계종에서도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공동으로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진행된 복원사업에는 54억원의 총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그 중 남북협력기금에서 2004년 4억 9,800만원, 2005년 4억 9,400만원, 2006년 5억 9,400만원, 2007년 3억 6,200만원 등 총 19억 4,800만원이 지원되었다. 이 사업은 사회문화협력사업 중 다년간에 걸쳐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 최초의 사업이었다.

신계사는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와 함께 금강산 4대 사찰의 하나로 여길 만큼 큰 사찰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로서도 가치가 높은 건물이었다. 6.25 전쟁 때 소실된 전각을 발굴에서 설계, 건축에 이르기까지 남북공동으로 복원해냄으로써 종교교류의 새로운 전형을 열었다. 복원과정에서 수시로 학술토론회, 종교행사, 문화재 관련 연구 및 자료교환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교류협력사업의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계사 복원 이후 관리운영 및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북측과 좀더 논의해야할 미결과제로 남아

있다.

2005년에는 「평양 봉수 빵공장 건립사업」에 3억 700만원의 협력 기금이 지원되었다. 동 사업은 사업 상대자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었고, 궁극적으로 선교목적에서 비롯된 사업이었다.

2005년도 「한민족남북한선교회」에서 추진했던 「왜성사과 과수원 조성사업」도 「평양 봉수 빵공장 건립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평양 인근에 사과나무 단지를 조성하여 북측의 부족한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사업으로 묘목 구입 등에 남북협력 기금 1억 3,800만원 상당이 지원되었다.

한편 기독교 예장통합 남선교회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기쁜소식」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한 「봉수교회 재건축사업」은 종교의 불모지인 평양에 대형교회를 건축함으로써 남북 기독교 교류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북측의 인력과 장비, 남측의 자재공급 및 기술지도 등을 통해 2007년말 완공된 봉수교회는 지상 3층, 연건평 600여평 규모로 건축되었으며, 1,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교회 건축과정에서 남측 기술자의 기술지도, 남북 합동 기념예배 등 빈번한 인적·물적 교류가 동반됨으로써 남북 종교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봉수교회 재건축에는 단일사업으로는 비교적 큰 규모인 10억 4,000만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었다. 기금지원 후 여러 차례 현장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으며, 북측 당국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열악한 종교현실과 남측 종교인들의 이용마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큰 규모의 대형교회를 건립해주었다는 비판이 제기⁶⁸⁾되기도 하였다.

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도 불교, 기독교계

의 종교시설 복원 움직임에 힘입어 2007년도에 평양 장충성당 주일 학교 건립사업을 추진하였다.

장충성당 주일학교 건립사업에는 총사업비 8,000만원 중 5,1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었다. 협력기금은 대부분 페인트, 공사비품 등 건축자재 구입비로 사용되었다.

(3) 방송 등 교류

문화·학술, 체육·종교 교류 이외 기타로 분류되는 사업으로써 2004년 아테네올림픽과 2006년 독일월드컵 대북위성중계, 2005년 통일여성대회, 지자체 사회문화교류, 남북 공동나무심기행사, 재북 임시정부요인 성묘사업, 6.15 공동위원장회의 지원 등 10개 사업에 11억 3,6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4년 8월 13일부터 8월 29일까지 아테네에서 개최된 올림픽 경기 방송을 위성중계를 통하여 개·폐막식, 북측선수 참가경기, 남측선수 참가경기, 주요 관심대상 경기 등을 북측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사업에 정부는 총 사업비 2억 6,0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어 2006년 독일월드컵 경기 위성중계를 지원하였다. 월드컵 기간중 개·폐회식 및 전체 64개 경기가 독일현지 → 한국방송사 → 타이콤위성 → 평양(조선중앙방송위원회) 경로를 통하여 중계되었다.

68) 건축과정에서 기독교계 일부 인사들이 북한 기독교가 ‘사이비’라고 하면서 교회 건설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단체	사업내용	승인액	집행액
2004	방송위원회	아테네올림픽방송 대북 위성중계	150	130
	제천시	제천시 영농문화협력사업	60	60
	강원도	원산농민기술강습소 개·보수	447	447
2005	(사)한국여성단체연합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평양)	147	147
2006	방송위원회	2006 독일월드컵 대북위성중계	116	116
	6.15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2006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대표자회의	11	11
	민화협	남북공동나무심기행사	33	32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재북 임시정부요인 묘소 성묘사업	68	68
2007	6.15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6.15 공동위원장회의	33	25
	제천시	제천시 영농문화협력사업	100	100

이 사업에 정부는 총 사업비 2억 6,200만원 중 중계권료 4,900만원, 위성송출료 6,700만원 등 1억 1,600만원(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50%)을 기금에서 지원하였다. 우리측의 지원에 의해 올림픽 경기 및 월드컵 경기가 북한에서 방영되어 서방세계의 모습을 북한 주민이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자체의 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하여 기금이 지원된 사례는 강원도와 충북 제천시의 2개 지자체이다.

강원도는 2004년 사회문화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고 북측 강원도와 다양한 교류를 이루어 왔다. 그 중 2004년에는 원산 농민기술강습소 보수를 위해 건축자재 등 총사업비 9억 900만원중 4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다.

제천시는 2004년부터 북고성군과 과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영농문

화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금강산지역 삼일포 농장 등지에 과수원을 조성하고 과수기술을 전수해 왔으며 2006년부터는 금강산 현지에서 사과수확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교류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2004년에는 삼일포 농장 관리사 신축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 농자재 지원 등에 1억원을 지원하였다.

2005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가 개최되었다. 남측 100명, 북측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6.15 공동선언실천과 반전평화를 위한 남북여성통일연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으며 묘향산, 여성 관련 시설 등을 참관하였다. 정부는 남북여성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이 행사를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으로 승인하고, 1억 4,700만원(교통비, 숙박비, 식비)의 기금을 지원 하였다. 이 행사는 2002년 처음 '남북여성통일대회'가 금강산에서 개최된 이래 두 번째 열린 것으로서, 이후 2007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남북여성행사가 개최되는 등 남북여성교류 정례화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남측 사단법인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2006년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북한 개성과 황해도 일원에서 남측 배기선 의원 등 150명,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정덕기 부회장 등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북공동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와 관련하여 잣나무 등 18만 1천그루의 묘목과 산림용 비료 10톤 등을 전달하였다. 본 사업에 총 7,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이중 교통비, 식비, 묘목구입비 등 3,200만원을 지원하였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는 2006년 9월 30일부터 10월 4까지 평양을 방북하여 「애국열사릉」⁶⁹⁾과 「재북인사묘」⁷⁰⁾

69) 애국열사릉은 1989년 조성된 북한의 국립묘지로서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고위관료와 항일투쟁가들이 묻혀 있으며, 한국전쟁과정에서

에 안장되어 있는 김규식 등 임시정부요인 9기의 묘소에 대한 성묘를 실시하였다. 임정요인의 추모와 후손의 성묘 등 인도적 의미를 감안하여 방북이 승인되었으며 성묘단의 교통비 및 체재비 등으로 6,800만원이 지원되었다.

한편 2005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대표자회의」에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1,1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7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에 교통비, 숙박비, 연회비 및 식비 등 2,500만원을 지원하였다.

복으로 가게된 임시정부 요인들 중 김규식, 엄항섭, 조소앙 등 8명의 유해가 함께 안치되어 있다.

- 70) 재북인사묘는 2003년에 조성되었으며 북한 곳곳에 산재하던 춘원 이광수, 위당 정인보 등 납북 및 월북한 남한 출신 주요인사 62명이 묻혀져 있다.



제4절 | 평 가

남북간 사회문화교류는 2000년 이후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고,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어옴으로써 남북간 접촉과 교류확대, 그리고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해 오고 있다.

우선 사회문화 분야 남북왕래 인원이 크게 늘었다. 1999년 330명이었던 연간 방북인원은 2000년을 계기로 1,000명을 넘어섰고, 5년 만인 2005년에 10,000명을 돌파하여 2007년에는 12,217명에 이르렀다. 왕래 분야 또한 체육·문화예술·종교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이는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시켰다.

이 가운데 2004년에 시작된 북한현지 체험학습은 통일교육 담당 교사와 학생들에게 남북관계 현실을 이해하고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현장학습의 장을 제공하였다. 그 효과는 3차례에 걸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는데, 교사와 학생 평균 95% 이상이 통일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사회문화협력사업도 이념과 분단의 벽을 넘어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해 오고 있다. 1990년대 연간 5건 이하이던 협력사업 승인 건수가 2000년대 들어 크게 늘어, 연간 10여건 많게는 47건에 이른 해도 있다.

양적 성장 못지않게 사업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졌다. 특히 거래 말큰사전 편찬사업은 서로의 작업 결과물을 상호교환, 검토한 뒤

합의를 통해 완성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중요한 과정 모두를 남북이 함께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남북 편찬위원들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졌고, ‘남북공동편찬요강’, ‘단일어문규범작성요강’ 등을 공동으로 마련함으로써 남북간 언어 이질화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체육교류는 종목의 다변화와 함께 남북공동입장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장기적인 협력사업 형태로 변모해 나가면서 상시적인 만남과 교류사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종교교류도 종교인들의 단순 만남이나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부터 북측 종교시설 복원 등 인적·물적 교류사업으로 연결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그 밖에 문화·학술·방송·언론 분야 등의 교류 역시 전에 없던 규모와 방식으로 진행되어 옴으로써 남북간 상호 이해와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왔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는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없었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었다. 방북인원이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데에는 그 이전까지는 없었던 인적왕래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이루어진데 힘입은 바 크다. 아울러 우리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복원·보존하는 사업과 같이 사업의 의의가 높고 남북간에 합의도 이루어졌으나, 추진단체 혼자 힘으로는 계속해 나가기가 벅찬 경우에 기금의 지원은 사업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사회문화분야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2000년 23억 3,000만원에서 2007년에는 86억 600만원으로 7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는 남북왕래 증가와 협력사업 활성화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교류가 남북간 화해협력 증진 및 민족공동체의식 회복에 기여한 바는 적지 않다. 다방면에 걸친 접촉과 교류는 북한 주민들

의 우리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나아가 이들의 인식변화에도 영향을 미쳐, 개혁 개방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북측과의 접촉, 교류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는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문화교류에는 남북의 당국간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북 관계를 이어나가는 안전판으로서의 기능도 있다. 북한 핵문제, 서해 교전 등 남북간에는 정치군사적 요인에 의한 관계단절의 시기가 없지 않았는데 이때에도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는 계속되었고, 이는 당국관계를 복원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문화분야 기금지원에 있어 일부 개선해야할 과제도 있다. 왕래 지원의 경우 방남에 비해 방북에 치우친 면이 있었고, 공동행사 지원은 행사 자체가 일부 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로 균형성을 상실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통상 수입에 걸쳐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일회성 행사가 비교적 많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앞으로 사회문화교류분야의 다변화 및 질적 발전을 병행 추진하기 위해 방남 행사, 정례화·제도화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제6장

북한 핵문제 해결 지원

제1절 | 경수로 사업 추진

제2절 | 「2.13 합의」 이행 지원

제3절 | 평 가



제1절 | 경수로 사업 추진

1. 사업 추진경과

가. 경수로 사업의 개시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야기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미간 협상이 진행된 결과, 북한 핵시설의 동결·해체와 100만 킬로와트 경수로 2기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가 1994년 10월 21일 서명되었다.

이후 경수로 제공을 위해 1995년 3월 한국, 미국, 일본은 KEDO를 설립하였고, 1995년 12월 KEDO는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KEDO는 경수로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을 위해 1996년 1월 한국전력과 사업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1997년 8월 한전과 초기현장공사계약을 맺어 경수로 부지 정지 등 기초공사에 착수하여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

나. 경수로 건설 과정

1998년 11월 KEDO 집행이사국들이 재원분담결의에 합의하여 경수로사업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KEDO와 한국전력은 1999년 12월 일괄도급 방식으로 100만 킬로와트 경수로 2기를 건설토록 하는 주계약을 체결하였다. 2000년 2월 주계약이 발효되고 북한이 2001년 9월 1일 건설허가증을 발급함에 따라 본 공사의 최초 주요공정인 본관기초굴착공사를 2001년 9월 3일 착공하였다.

다. 경수로 사업 중지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연계되어 추진되던 KEDO 경수로사업은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 방북시 북한의 농축우라늄 개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제2차 북핵위기가 대두되면서 추진환경이 악화되었다.

KEDO 집행이사회는 2003년 2월 3일 북핵문제의 진전을 기대하며 당분간 공사의 속도를 늦추어(slow-down)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해 11월 21일 북한 핵문제로 인해 경수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12월 1일부터 1년간 사업을 ‘일시중단’(suspension)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04년 11월 26일 KEDO 집행이사회는 경수로사업 ‘일시중단’ 조치의 1년간 추가연장을 결정하였다

라. 경수로 사업 종료 및 청산

북한이 핵개발 의혹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KEDO

집행이사회는 2006년 5월 31일 경수로사업의 공식 종료(termination)를 결정하였다.

KEDO 집행이사회는 경수로사업 종료를 결정하면서 경수로사업의 청산비용을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대신 한국전력이 북한밖에 소재하는 KEDO 소유 경수로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하는 일괄청산방식에 대한 집행이사국들의 동의를 재확인하였다.

이후 KEDO와 한국전력은 경수로사업 종결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경수로사업 종료협정(Termination Agreement)에 합의(가서명)하였으며, 내부 절차를 거쳐 2006년 12월 12일 협정이 정식 서명·발효되었다.

한국전력은 경수로사업 종료협정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한 클레임 처리와 함께 현재 국내외에 보관·관리되어 있는 KEDO 기자재에 대한 인수, 매각 및 재활용 작업 등 사업청산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2. 기금 집행실적

가. 경수로 비용 분담 결정

경수로 건설비용 분담과 관련하여 1994년 9월 19일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경수로 건설과 관련된 “소요비용 상당부분”의 기여를 약속하였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취임사에서 대북 경수로 제공 관련 약속이행을 재확인하였다. 이후 정부는 관계국과 경수로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기본입장을 유지하였다.

KEDO 집행이사국간 경수로사업비 조달 협의를 진행한 결과 1998년 11월 예상 사업비를 미화 46억달러로 확정하고 이를 한국·

일본·EU가 분담하는 「재원분담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실제공사비의 70%(32억 2,000만달러, 3조 5,420억원)를 원화로, 일본은 정액인 1,165억엔(10억달러 상당, 공사비의 22%)을 엔화로 기여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은 중유비용과 KEDO의 여타 소요재원을 조달하는데 노력하고 KEDO 집행이사국들의 기여액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 조달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공사비 재원분담 내역〉

(’98.11 KEDO집행이사국 결의)

국 가	국가별 분담액(A)	지원금액(B)	집행비율(B/A)
한 국 (70%)	32.2억달러	11.47억달러	35.6%
	(3조 5,420억원)	(1조 3,744억원)	(38.8%)
일 본 (22%)	10.0억달러	4.11억달러	41.1%
기 타 (8%)	3.8억달러	0.18억달러	4.7%
합 계 (100%)	46.0억달러	15.75억달러	34.2%

또한 투입된 자원은 북한이 경수로 완공후 3년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0년간 무이자로 연 2회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며, 상환은 현금이나 현금에 상당하는 기타 수단을 통해 실현하기로 하였다.

나. 차관공여협정 및 용자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에 대한 합의(’98.11) 이후 우리정부와 KEDO 간에 차관공여협정이 1999년 7월 2일 체결되었다. 동 협정에 따라 우리정부가 KEDO에 제공하는 원리금은 경수로 완공 후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환수되며, 차관 상환의 경우 한국 정부가 현물상환에 동의하지 않는 한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하였다.

1999년 8월 12일 차관협정 비준동의안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자 1999년 9월부터 차관공여협정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용자조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용자협상이 시작되어, 1999년 12월 15일 KEDO와 한국수출입은행간에 용자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계약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은 경수로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KEDO에 차관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우리정부가 공여한 차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이 KEDO에 용자하고, KEDO가 이 자금을 북한에 대부하는 형태로 제공된 것이다.

다. 자금 조달 및 경수로 계정 개설

KEDO 집행이사국간 사업비 재원분담협상이 각국간 입장차로 인해 장기화되면서 본공사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KEDO 집행이사회는 우선 부지준비공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소요자금을 한국이 KEDO에 용자해 주는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제4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97.12.22)를 개최하여 경수로 건설사업 초기 현장공사 사업비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승인하고 초기공사비 675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용자하였다.

정부는 안정적인 경수로사업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하였으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당초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98.9), 고위당정협의('99.5)를 거쳐 전기요금에 3%의 납부금을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하되 동 제도 시행전까지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하고, 1999년 6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교섭단체간 이견으로 단일안 합의에 어려움이 있어 논의가 지연되면서 회기

종료로 동 개정안은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재원조달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경수로사업 관련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조성하기로 하고 조성된 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하기 위해 제62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99.12.15)를 개최하여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3조 5,420억원을 총액으로 승인하였다.

이후에도 정부는 경수로 사업비에 대해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방안,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는 방안 등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재정을 통한 재원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아래 2001년 7월 관계부처 장관회의시 우리경제 및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2003년말까지는 국채발행으로 조달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03년 6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북핵사태로 인한 경수로 사업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국채를 1년간 연장발행기로 결정하였다. 2003년 12월 사업이 일시중단됨에 따라 2004년 5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 재개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국채발행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경수로사업비로 KEDO에 대출되는 남북협력기금은 여타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과는 달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별도로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여타 남북협력사업과 경수로 사업을 구별하고, 경수로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내에 별도의 경수로계정을 개설하였다.

이후 2008년 9월까지 경수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수로계정에 계상되어 왔으며, 경수로계정은 1999년 이후 운용수익 322억원을 포함하여 4조 3,694억원 전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조성하였다.

〈경수로계정 연도별 조성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9	계
공 자 예 수	1,498	2,549	3,100	5,050	8,230	3,100	4,100	9,400	5,216	1,130	43,373
운 용 수 익	-	39	40	48	26	30	22	56	39	21	322
합 계	1,498	2,588	3,140	5,098	8,256	3,130	4,122	9,456	5,255	1,151	43,694

라. 경수로 계정 기금 집행실적

경수로계정은 1998년 경수로 초기공사비로 675억원을 집행한 이래 2008년 9월말까지 총 4조 3,405억원을 집행하였으나, 실제 집행된 사업비는 1조 3,744억원(11억 4,700만달러)이며 나머지 2조 9,661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

〈경수로계정 연도별 지출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9	계
사업비	675	-	2,584	3,003	3,009	3,287	870	227	89	-	-	13,744
공 자 기 금 원리금 상 환	-	-	190	391	2,124	3,250	3,895	3,658	8,697	6,314	1,142	29,661
합 계	675	-	2,774	3,394	5,133	6,537	4,765	3,885	9,587	6,314	1,142	43,405

* 경수로계정 개설이후 초기 공사비 용자금 675억원은 KEDO에 대한 대출로 전환하여 경수로계정에 포함

(1) 연도별 집행실적

경수로 사업에는 그동안 경수로계정에서 총 7건, 1조 3,744억원(15억 7,400만달러)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KEDO에 대출되었다.

경수로 사업은 사후정산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속도조절 및 사업중단이 결정된 2003년에도 3,287억원이 대출되었다. 이후 2004년부터는 현장유지에 소요되는 비용만이 대출되었고 2006년말 사업종료에 따라 대출은 중단되었다.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 억원)

연 도	사 업 내 용	지원금액	사 업 구 분
2000	KEDO 대북 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3,259.36	경수로사업 대출
2001	KEDO 대북 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3,002.84	경수로사업 대출
2002	KEDO 대북 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3,008.83	경수로사업 대출
2003	KEDO 대북 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3,287.45	경수로사업 대출
2004	KEDO 대북 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869.84	경수로사업 대출
2005	KEDO 대북 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226.78	경수로사업 대출
2006	KEDO 대북 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88.83	경수로사업 대출
합 계(총 7건)		13,743.93	

(2) 용도별 집행실적

2003년 11월말 사업 중지시점을 기준으로 경수로 건설사업의 공정률은 34.5%이며, 분야별 공정률은 종합설계 62.3%, 기자재 43.2%, 시공 21.6%이다. 기자재 분야에서는 원자로설비 69.5%, 터빈발전기 47.5%, 보조기기 20.6%가 진행되었다.

KEDO는 사업비로 총 15억 7,513만달러를 집행하였으며, 구체적

으로는 설계비 1억 3,000만달러, 기자재 제작비에 약 7억달러, 부지 현장 시공비 약 4억 6,000만달러, 기타간접비 약 2억 8,000만달러 등이 집행되었다.

〈사업비 집행 내역〉

분 야	항 목	내 역	투입비용 (억달러)
기자재비	원자로설비	○ 원자로용기, 원자로냉각재 펌프, 증기발생기 등	5.28
	터빈발전기 설비	○ 고압/저압터빈 케이싱 및 로터, 습분분리재열기 등	1.20
	보조기기 및 핵연료	○ 격납건물철관, 복수기, 열교환기 및 핵연료 등	0.51
	소 계		6.99
시 공 비	부지정지	○ 발전소건설부지 및 생활부지 굴착 및 부지조성	0.89
	발전소공사	○ 원자로건물, 터빈건물, 보조건물 등	1.27
	기반시설 공사	○ 동력, 용수, 도로, 방파제, 각종 공사용 지원시설 등	1.71
	생활주거 단지	○ 숙소, 식당, 병원, 체육시설, 후생관 및 편의동 등	0.71
	소 계		4.58
총 합 설 계 비	발전소 종합설계용역	○ 발전소계통 및 구조물 설계, 안전성보고서, 기술지원 등	1.33
	기타간접비	○ 보험료, 기자재운송비, 객화선 운항비, 현장시설운영비, 통신비, 교육훈련비, 사업관리인력 인건비 및 제경비 등	2.85
합 계			15.75

다만, KEDO는 한국·일본·EU 등으로부터 분담분을 수령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비별 총액은 산출되나, 개별 KEDO 집행이사국이 부담하는 각각의 집행실적은 집계하기 곤란하다.

3. 향후 과제

정부는 경수로사업비를 국채를 발행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KEDO에 차관형태로 공여하였다. 2008년 9월말 현재 정부가 KEDO에 경수로사업비로 대출하여 상환해야 할 금액은 경수로 사업 대출금 1조 3,744억원(11억 4,700만달러)와 이자 4,194억원이다.

경수로사업이 공식종료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KEDO 대출금이 정부의 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앞으로의 과제는 상환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KEDO 대출금을 채무로 인수하기 위해서는 「국가채권관리법」 해석상 KEDO의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KEDO의 대북청구권 및 금호부지 자산 정리, 청산비용 확정 등에 따른 자산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KEDO 소유의 자산이 정리되고, 한국전력의 청산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KEDO와의 채권 면제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분간 공자기금 예수금을 재원으로 국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현행 차환발행 방식을 유지하다가 한전의 청산비용·기자재 처리 작업이 완료되고, 구체적 손익 산정 및 사업비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제2절 | 「2.13 합의」 이행 지원

1. 추진배경 및 경과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악화되던 북핵문제는 2006년 말 북·미 및 6자간 대화가 재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몇 차례의 북·미간 협의 후에 열린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08.2.8~13)에서는 「9.19 공동성명」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일명 「2.13 합의」)에 합의하였다.

「2.13 합의」를 통해 북한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 요원을 복귀시키며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 최초 운송을 60일 이내에 개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참가국들은 상기 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정부는 6자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2.13 합의」 초기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관계국과의 협의를 거쳐 초기 중유 5만톤 지원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2.13 합의」에 따른 중유 5만톤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

및 선적 준비일정 등을 감안하여 제18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2.26)에서 219억원 이내 기금 지원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BDA 자금동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핵시설 폐쇄·봉인 조치를 지연시킴에 따라 이에 대한 상응조치인 중유 지원도 연기되었다.

관계국의 노력으로 BDA 문제가 해결된 이후 정부는 2007년 6월말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남북실무접촉을 갖고 중유 5만톤 제공을 위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후 북한이 5개 핵 시설(5MWe 원자로, 50MWe 원자로, 200MWe 원자로, 핵재처리시설, 핵연료공장)에 대한 폐쇄 조치를 2007년 7월 14일 개시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로부터 8월 2일까지 5차례에 걸쳐 중유 5만톤을 북한에 제공하였다.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07.10.3)에서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일명 「10.3 합의」)가 합의되었다. 이 합의를 통해 북한은 연내 모든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완료키로 하고 핵 비확산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다른 5개국은 북·미관계 정상화 등과 중유 100만톤 상당(초기 중유 5만톤 지원분 포함)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제3차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회의(’07.10.30)에서는 중유 100만톤 상당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중유 50만톤과 중유 50만톤 상당의 에너지 설비·자재로 나누어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상응한 대북에너지 설비·자재 지원을 위한 후속 협의가 이루어졌다. 제1차 한·중·북 3자 협의(’07.11.13)에서 우리측은 북측과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1차분(철강류 18개 품목) 제공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차분 중

우선 제공품목(철강류 5개 품목)에 대해 제19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7.12.6)를 통해 45억원 이내 기금 지원을 의결하였다.

이후 제2차 한·중·북 3자협의('07.12.26)에서 2차분(철강류 10개 품목) 제공에 합의함에 따라 1차 잔여분(철강류 13개 품목) 및 2차분에 대해 제19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8.1.11)를 통해 244억원 이내 기금 지원을 의결하였다. 2008년 들어 개최된 제3차 한·중·북 3자협의 2단계회의('08.4.11)에서 3차분(철강류 12개 품목) 제공에 합의함에 따라 제20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8.5.1)를 통해 172억원 이내 기금 지원을 의결하였다.

〈대북에너지 지원 관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일 자	안 건	승인액
'07. 2.26	대북 중유 5만톤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1,900
'07. 7. 4	대북 중유 5만톤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추가 증액 지원	6,700
'07.12. 6	대북에너지 설비·자재 우선 1차분 및 중유보일러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4,521
'08. 1.11	대북에너지 설비·자재 1차 잔여분 및 2차분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4,406
'08. 5. 1	대북에너지 설비·자재 3차분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7,153

2. 연도별 집행실적

정부는 「2.13 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 5만톤 지원을 위해 2차례에 걸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 총 286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하였다. 이중 중유구입비 222억원, 부대경비(조

달수수료, 위약금 등) 22억 5,800만원 등 총 244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다.

당초 「2.13 합의」는 중유 5만톤 최초 운송을 60일 이내에 개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위한 공급계약을 2007년 3월 7일에 체결하였으나, BDA 문제로 북한의 핵시설 폐쇄·봉인 조치가 지연되면서 이에 상응한 중유 제공도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중유 공급계약이 기간 만료로 해지되면서 약 22억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였다. 「2.13 합의」에는 6개국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위약금은 북한의 비핵화 초기조치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었다.

「10.3 합의」 이후 3차례의 한·중·북 3자협에서 합의한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9월말까지 3차례에 걸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총 746억 8,000만원의 기금 지원을 의결하였다. 이중 자재 구입비 333억 4,900만원, 부대경비(조달수수료 등) 4억 3,300만원 등 총 337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다.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집행연도	사업내역	승인액	집행액
2007	○ 중유 5만톤 제공 사업 - 중유구입비(가공비 포함): 22,200 - 부대경비(조달수수료 · 위약금 등): 2,258	28,600	24,458
	○ 대북 에너지 설비 · 자재 우선 1차분 및 중유보일러 제공 사업 - 자재(5개 품목) 구입비: 3,623 - 부대경비(조달수수료 등): 45	4,521	3,668
2008 (9월말 현재)	○ 대북 에너지 설비 · 자재 우선 1차분 및 중유보일러 제공 사업 - 중유보일러 구입비(수송비 포함): 248 - 중유보일러 부대경비(조달수수료 등): 2	-	250 (이월액)
	○ 대북 에너지 설비 · 자재 1차 잔여분 및 2차분 제공 사업 - 자재 구입비(수송비 포함): 17,204 - 부대경비(조달수수료 등): 239	24,406	17,443
	○ 대북 에너지 설비 · 자재 3차분 제공 사업 - 자재 구입비(수송비 포함): 12,274 - 부대경비(조달수수료 등): 147	17,153	12,421
	합 계	74,680	58,240

※ 중유보일러는 6차회담 진전 촉진 차원에서 「2.13 합의」에 따른 우리측 분담품(중유 20만톤 규모)과는 별도로 제공1. 부문별 평가



제3절 | 평 가

경수로사업은 1994년 북미간 제네바합의에 기초하여, 북핵문제를 다자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국이 경수로사업 총 비용의 70%를 부담하게 된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경수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 초기부터 전기요금 납부금 부과, 일반재정 지원, 세수 증가분 활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결국 별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국채를 발행하여 사업 재원을 조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재원 마련 방식은 이자 부담 등을 추가적으로 야기하였으며 현재(2008년 10월)까지도 국채상환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수로사업은 제2차 북핵위기('02.10)가 대두되면서 북핵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종료되었다. KEDO 집행이사회('06.5)는 경수로사업 공식 종료를 결의하고, KEDO 사업비 채무를 한국과 일본이 인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KEDO 대출금(1조 3,744억원)이 불가피하게 우리 정부 부담으로 전환되었다. 앞으로 경수로 사업을 위해 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조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나라는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봉인 조치에 상응하는 중유 5만톤의 대북 제

공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이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가 완료되었다. 이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인 신고·불능화 단계에서 우리 나라의 대북 에너지 부담분 제공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제 7 장

기금관리 및 여유자금 운용

제1절 | 기금관리비

제2절 |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

제3절 | 여유자금 운용(자산운용)

제4절 | 평 가

제1절 | 기금관리비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위탁사업비)를 「기금관리비」형태로 지급하고 있다.⁷⁰⁾

〈근거조문〉

- ※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 제2항 :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조
 -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기금관리비(기금운영비)는 한국수출입은행 기금업무 위탁에 따른

70)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기금위탁 관계는 제1장 제2절 2.운용관리체계 참조

위탁사업비(인건비), 회계감사 등 기금관리에 따른 관리사업비로 구성⁷¹⁾된다.

〈기금관리비 사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91~03	'04	'05	'06	'07	'08.9	합계
위탁사업비	4,314	1,173	1,577	1,795	1,848	1,514	12,221
관리사업비	19	28	41	54	79	30	251
합 계	4,333	1,201	1,618	1,849	1,927	1,544	12,472

1. 위탁사업비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에는 기금업무 처리를 위하여 남북협력분부를 두고 있으며, 남북협력분부는 3실·4팀으로 구성,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금 자금운용은 수출입은행 자금부 자금운용팀(3명)에서 담당하고 있다.

〈남북협력본부 조직도〉



71) 2008년부터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직접경비의 약 10%(127백만원)를 기타 운영비로 편성하였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기금업무 확대에 위탁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직접 인건비(전산, 법률 등 관련부서 인원 제외)의 80%를 보전하고 있다.

〈위탁수수료(위탁사업비) 보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91~'03	'04	'05	'06	'07	'08(계획)	합계
인 건 비 (A)	7,846	1,704	1,783	2,176	2,416	2,488	18,413
위탁수수료 (B)	4,314	1,173	1,577	1,795	1,848	1,903	12,610
보 전 율 (B/A)	55.0%	70.3%	88.4%	84.5%	76.5%	76.5%	68.5%

2. 관리사업비

관리사업비는 외부 정책자문, 채권회수, 감사수수료 및 보고서 제작 등 회계감사 관련 비용, 사후관리 비용 등 남북협력기금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다.

관리사업비는 남북협력기금 결산 회계감사 수수료,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방향 및 지원사업별 평가지표 개발 용역, 기금지원제도 개선에 따른 법령 개정 및 실행절차 수립(약관제정 등) 관련 법률자문, 채권회수 위한 법무수수료, 투자성과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용역비 등으로 통일부의 사용 결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집행하고 있다.



제2절 |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

1.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 현황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⁷²⁾)으로부터의 예수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에 규정된 남북협력기금의 주요 재원의 하나이다. 남북협력기금은 1999년 대북경수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자기금으로부터 1,498억원을 조달한 이래 2008년 9월말까지 4조 3,373억원을 예수하였다. 한편, 남북협력사업 증가에 따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남북협력계정에서도 2005년 500억원, 2007년 630억원 등 1,130억원을 예수하여 공자기금 예수 총규모는 4조 4,503억원에 달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내역>

(단위 : 억원)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9	누계
예수	1,498	2,549	3,100	5,050	8,230	3,100	4,600	9,400	5,846	1,130	44,503
상환	-	190	391	2,124	3,250	3,895	3,658	8,713	6,337	1,191	29,749
원금	-	-	-	1,498	2,549	3,100	2,820	7,730	5,330	500	23,527
이자	-	190	391	626	701	795	838	983	1,007	691	6,222
잔액	1,498	4,047	7,147	10,699	16,380	16,380	18,160	19,830	20,346	20,976	20,976

* 2008년 9월말 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 잔액 : 2조 976억원
(남북협력계정 1,130억원, 경수로계정 1조 9,846억원)

72) 기획재정부가 국공채 발행, 회계(일반 및 특별) 및 다른 기금에의 예탁 등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분야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공자기금 예수는 남북협력기금 입장에서는 일종의 대출금으로 매 원금상환 시기에 원리금 및 이자⁷³⁾를 상환하고 있다. 2008년 9월말 까지 원금 2조 3,527억원, 이자 6,222억원을 상환하였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일자	금액	이자율	만기
1999	12. 8	149,831	8.66%	상환완료(2002. 12. 6)
2000	4. 12	109,852	8.84%	상환완료(2003. 4. 10)
	7. 12	45,100	8.04%	상환완료(2003. 5. 7)
	11. 15	50,000	7.00%	상환완료(2003. 11. 14)
	12. 13	49,900	6.82%	상환완료(2003. 11. 14)
	소 계	254,852		
2001	2. 7	82,500	5.40%	상환완료(2004. 1. 9)
	5. 9	90,000	6.53%	상환완료(2004. 4. 3)
	8. 8	90,000	5.41%	상환완료(2004. 7. 3)
	11. 7	47,500	4.94%	상환완료(2004. 10. 8)
	소 계	310,000		
2002	1. 16	113,000	6.90%	상환완료(2007. 1. 15)
	4. 10	110,000	7.17%	상환완료(2007. 4. 9)
	7. 4	100,000	5.62%	상환완료(2005. 7. 3)
	12. 4	182,000	5.44%	상환완료(2005. 9. 30)
	소 계	505,000		
2003	1. 8	40,000	5.10%	상환완료(2006. 1. 6)
	3. 5	40,000	4.63%	상환완료(2006. 3. 4)
	4. 2	150,000	4.54%	상환완료(2006. 3. 4)
	4. 9	50,000	4.80%	상환완료(2008. 3. 11)
	5. 7	60,000	4.40%	상환완료(2006. 3. 4)

73) 대체로 1999년~2004년 예수시에는 3년만기, 2005년~2006년 예수분은 5년만기, 2007년 이후 예수분은 7년 만기이며, 이자율은 예수당시의 국공채 발행율이 적용되어왔다.

연도	일자	금액	이자율	만기
2003	7. 2	80,000	4.17%	상환완료(2006. 3. 4)
	9. 3	80,000	4.40%	상환완료(2006. 9. 1)
	11. 5	180,000	4.54%	상환완료(2006. 9. 1)
	12. 3	143,000	5.08%	상환완료(2006. 9. 1)
	소 계	823,000		
2004	3. 3	100,000	4.77%	상환완료(2007. 3. 2)
	6. 8	110,000	4.22%	상환완료(2007. 3. 2)
	9. 8	100,000	3.68%	상환완료(2007. 9. 9)
	소 계	310,000		
2005	2. 23	10,000	3.70%	2009. 12. 9
	5. 10	117,000	4.07%	2010. 3. 9
	8. 2	233,000	4.14%	2010. 6. 9
	12. 20	50,000	4.61%	2010. 9. 9
	12. 20	50,000	4.61%	2010. 9. 9
	소 계	460,000		
2006	2. 21	370,000	5.20%	2010. 12. 9
	6. 13	403,000	5.20%	2013. 3. 9
	8. 23	117,000	5.16%	2013. 6. 9
	11. 14	50,000	4.94%	2013. 9. 9
	소 계	940,000		
2007	2. 13	240,000	4.80%	2013. 12. 9
	3. 6	120,000	4.80%	2013. 12. 9
	5. 23	21,591	5.00%	2014. 3. 9
	8. 8	40,000	5.15%	2014. 6. 9
	8. 23	50,000	5.15%	2014. 6. 9
	8. 28	50,000	5.15%	2014. 6. 9
	12. 11	63,000	5.45%	2014. 9. 9
	소 계	584,591		
2008	2. 26	67,000	5.63%	2014. 12. 9
	5. 27	30,000	5.36%	2015. 3. 9
	8. 26	16,000	5.35%	2015. 6. 9
	소 계	113,000		
합	계	4,450,274		

* 2005년 12월 20일자 500억원, 2007년 12월 11일자 630억원은 남북협력계정의 예수금이며, 나머지는 모두 경수로계정임.



제3절 | 여유자금 운용(자산운용)

1. 여유자금 운용(자산운용)의 목적 및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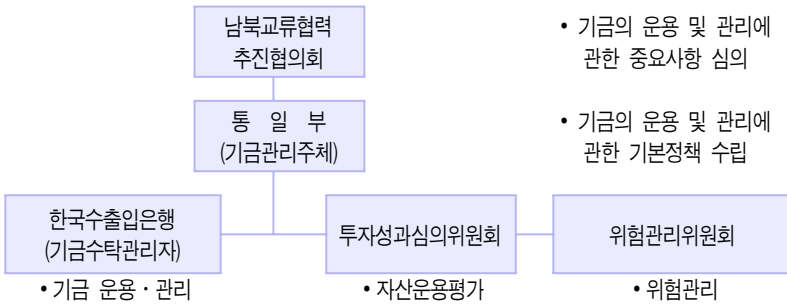
기금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금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산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금의 안정성 및 유동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은 물론 부당한 손실위험 없이 수익률 극대화를 이뤄내도록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해 중요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의거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자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산하에 투자성과심의위원회⁷⁴⁾ 및 위험관리위원회⁷⁵⁾를 설치하고 있으며 매년 초 수출입은행에 자산운용지침을 시달하고 있다.

74) 투자성과심의위원회는 자산운용성과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며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 외부전문가 등 5~7인 이내로 구성된다.

75)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활동의 적정 여부 등 기금의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 외부전문가 등 5~7인 이내로 구성된다.

〈자산운용 의사결정구조〉



2. 여유자금 운용(자산운용) 현황

기금은 사업지원 일정 및 목표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을 하고 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은 자금집행의 불확정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인하여 단기자금(만기 1년 이내)과 수시 입출금이 용이한 정기예금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점차 장기자금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주식 및 채권 등 다소의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수익이 좋은 상품에 대해서도 일부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다.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기금운용평가(자산부분)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은 중형그룹(중장기자산 운용평잔 5,000억원 이하)에서 2005년 대상 평가는 9개 기금중 8위, 2006년 대상 평가는 10개 기금중 3위, 2007년 대상 평가는 11개 기금중 2위로 지속 향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자산운용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	비중	평균	비중	평균	비중
단 기	M M D A	409	7.0	514	7.4	350	4.6
	M M F	116	2.0	24	0.4	255	3.4
	정기예금	3,097	52.5	3,871	55.8	2,053	27.1
	C D	647	11.0	82	1.2	137	1.8
	소 계	4,269	72.5	4,491	64.8	2,795	36.9
중장기	C D	34	0.6	127	1.8	198	2.6
	정기예금	314	5.3	1,408	20.3	3,524	46.6
	금융채	1,197	20.4	791	11.4	312	4.1
	수익증권	72	1.2	116	1.7	743	9.8
	소 계	1,617	27.5	2,442	35.2	4,777	63.1
합 계	5,886	100.0	6,933	100.0	7,572	100.0	



제4절 | 평 가

남북협력기금의 관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남북협력기금관련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연간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기금운영 및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적정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기금전산화 작업도 시급한 상황이다.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 별도재원 확보 및 상환계획을 마련한 후 예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남북협력기금 경수로 계정의 경우, 당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자기금을 예수하였다. 그 결과 원리금 상환을 위해 또 다시 공자기금을 예수하고, 이로 인하여 더 많은 이자부담에 직면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공자기금예수금 상환계획⁷⁶⁾〉

(단위 : 억원)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계
원금	-	100	7,700	-	-	9,300	2,286	800	29,416
이자	482	1,129	1,324	1,154	1,299	1,503	1,371	1,392	9,654
계	482	1,229	9,024	1,154	1,299	10,803	3,657	2,352	39,070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 남북관계가 활성화되어 사업비 집행실적이 높으면 여유자금 보유는 줄어들고, 남북관계가 나빠질 경우 여유자금 보유는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외부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한계로 인해 자금수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중장기 상품에 대한 투자가 곤란하다. 정부는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 강화 및 위험관리 고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76) 2008년 9월말까지의 공자기금 예수금 잔액에 대한 상환 계획으로 '08년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를 지속할 경우,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 8 장

향후 발전방향

1991년 250억원으로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은 2008년 10월말까지 총 9조 3,225억원(남북협력계정 4조 9,531억원, 경수로계정 4조 3,694억원)을 조성하여 총 8조 2,267억원(남북협력계정 3조 8,862억원, 경수로계정 4조 3,405억원)을 집행하였다. 이 중 기금관리비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등 정부 내부지출, 그리고 경수로 사업비를 제외하고 남북교류협력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사업비로는 총 3조 8,483억원(대출금 회수제외)이 사용되었다.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은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교류 지원, 남북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금사용 내역을 보면 남북관계 개선에서 차지한 역할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남북관계가 활발하지 못했던 시기에는 인도적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남북관계가 확대되면서 점차 남북경제협력 사업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⁷⁷⁾이다. 이는 기금사용이 일방적인 대북지원을 탈피하여 나뉘대로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고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1년 연간 1억 1,100만달러에 불과하던 남북교역액은 2007년에 17억 9,800만달러로 증가하였고, 인적 교류도 1991년 연간 400명에서 2007년에는 16만명에 이르렀다. 남북간 철도·도로가 연결되었고 개성공단에서는 3만 3,000여명의 북한 근로자와 1,300여명의 남한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는가 하면 2만여 명의 이산가족들이 헤어진 가족들과 상봉하는 등 인도적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77) 전체사업비 대비 경제협력 사업비 비중은 2001년 24.5%, 2004년 32.0%, 2006년 46.3%, 2007년 42.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0월말까지 조성된 총 9조 3,225억원(남북협력계정 4조 9,531억원, 경수로계정 4조 3,694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중 정부출연금인 4조 3,964억원으로 47.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4조 4,503억원으로 47.7%를 차지하여 전체의 94.9%에 이른다. 자체수입은 5.1%인 4,734억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정부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통해 조성되어 집행된 여유자금의 운용수입이다.

이와 같이 남북협력기금은 사실상 별도의 수입원 없이 국가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결과 일반예산과 같이 매년 필요한 자금을 국회 의결을 거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중장기적 비전에 입각한 정책자금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협력기금 계획대비 집행실적(2000년 이후)〉

(단위 :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무상	계 획	4,602	5,162	6,612	2,616	3,462	4,776	8,299	5,333	40,862
	실 적	4,132	1,891	1,851	2,312	2,060	4,157	3,872	4,352	24,627
	(%)	89.8	36.6	28.0	88.4	59.5	87.0	46.7	81.6	60.3
유상	계 획	1,955	4,716	6,383	5,715	3,762	3,359	4,423	3,371	33,684
	실 적	1,169	3,653	4,644	5,391	2,703	2,587	838	2,805	23,790
	(%)	59.8	77.5	72.8	94.4	71.9	77.0	18.9	83.2	70.6
합 계	계 획	6,557	9,878	12,995	8,331	7,224	8,135	12,722	8,704	74,546
	실 적	5,301	5,544	6,494	7,708	4,763	6,744	4,710	7,157	48,421
	(%)	81.0	56.1	50.0	92.5	65.9	82.9	37.0	82.2	65.0

또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구조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 남북관계가 북한 핵문제 등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사업의 진행속도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남북협력기금은 다른 기금에 비해 매년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60~70%대로 저조한 편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다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중장기적 계획 하에 기금조성과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이에 따라 기금지원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역할도 확대되고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기금의 규모 확대 및 역할 다양화에 대비한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중장기 남북관계 비전에 따라 기금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금지원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지원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안정적 재원조달 확보

남북협력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안정적으로 조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재원확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⁷⁸⁾이 거론된 바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는 못하였다.

78) 전문가들은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민간참여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 프로젝트 파이낸스, 남북협력보증보험, 대북 인프라 투자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정부재원이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나, 앞으로 정부는 「비핵·개방·3000 구상」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의 본격적 진행에 대비하여 안정적 재원 조달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

2. 원칙에 입각한 기금지원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기금지원이 이루어 질 때 기금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대북정책의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4대 원칙(① 북핵문제의 진전 ② 경제적 타당성 ③ 우리의 재정부담능력 ④ 국민 합의)을 정립하는 한편 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기금지원이 정치적 요인 등 외부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적재적소에 기금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분야별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원칙과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08.10.10)한데 이어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기금지원지침」 및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지침」 등을 개정('08.11.18)하였다.

3. 기금지원 시스템 개선

새 정부 출범 후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그 동안 기금 결정 및 집행, 평가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운용체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기금지원 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 9월 구성된 ‘기금관리심의위원회’(위원장 : 통일부 차관)의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⁷⁹⁾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수탁관리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내 ‘기금관리심사반’에서 사전 검토의견과 함께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의결 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정비를 통해 심의의 전문성 확보 및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다. 심의과정에서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종전의 4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각 부처 차관급 인사를 그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대표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토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및 해당안건 관련부처의 국장급인사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새롭게 개편('08.5.15)하고 이를 통해 사전심의를 강화하였다.

기금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민간단체의 기금유용·단가조작 등 부정 수급행위 차단을 위해 조달구매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인도적 대북지원 처리규정」을 개정('08.6.12)하였다. 또한 민간단체의 기금집행 및 평가업무 전산화를 통한 관리강화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남북협력기금 종합

79)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10월말까지 6차례 회의를 통해 총 18개 안건을 심의하여 4건은 원안을 승인하였으나 11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며 재검토(불승인)도 3건에 달하였다.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⁸⁰⁾이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매년 정기감사와 함께 수시감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 5월말에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중점 감사대상 및 제도개선 사항을 파악한 바 있으며, 2008년 11월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환류체계도 새롭게 도입하였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사업 평가단’⁸¹⁾을 구성하였으며 2008년 10월 현재 기금사업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있다.⁸²⁾ 기금사업평가단에서 평가한 결과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보고하고 다음년도 기금지원 심의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회계검증 위주로 이루어지던 기금사업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금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적 평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4.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남북협력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기금조성과 지원은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금예산 편성 단계는 물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 및 집

80) 남북협력기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9년 남북협력기금 정부 예산안에 21억원의 기금관리비를 반영하였다.

81) 통일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부처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82) 2008년 11월말까지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2009년초 시범평가 등을 거쳐 2009년 기금지원시부터 평가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평가지표 및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정책용역과제를 진행 중이다.

행단계에서도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지원에 대해서는 사업집행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⁸³⁾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운용체계, 월별통계 및 기금지원 결정·집행 현황 등을 통일부 및 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금제도 및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물자의 분배투명성 강화 및 기금의 정책적 효과 제고 등 기금지원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83) 제17대 국회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금지원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상임위에 보고하여 왔으나, 제18대 국회 결산 상임위에서 상임위 보고대상인 구체적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3억원 이상 인적왕래·사회문화협력, 10억원 이상 이산가족교류 및 인도적 지원, 50억원 이상 남북경제협력지원 및 자금대출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한편, 상임위 보고는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하되 집행 전에 상임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간사에 선보고하고 전체회의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였다.

부 록

1. 남북협력기금 관련법령
2. 남북협력기금 연혁
3. 남북협력기금 제도개선 내용
4. 남북협력기금 관련통계
5. 2007년 기금지원계획 대비 실적
6. 요약 재무제표

1. 남북협력기금 관련법령

가. 남북협력기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5조 (장기차입)

-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 삭제

제10조 (일시차입)

-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및 환수)

-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 1. 국채·공채의 매입
-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13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 (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나.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

- ① 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융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되, 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그 밖에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남한과 북한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가.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소

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지원의 방법)

- ①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같은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증 및 보험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

-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남북협력기금계정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1. 남북협력계정 : 법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가목·나목 및 라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2. 북한비핵화계정 :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다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제1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 ② 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5조 (결산보고서)

- ① 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 (기금의 계리)

-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 ① 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 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기금의 환수)

-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 (기금운용관리규정)

- ① 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중 다음 각목의 용자
 - 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30억원 이상
 -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50억원 이상
4.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5억원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보충
 - 5의2.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다음 각목의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
 - 가. 교역사업에 대한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의 지급 : 5억원 이상
 - 나. 경제분야협력사업에 대한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 : 20억원 이상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7.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3억원 미만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3억원 미만의 지원

- 2의2.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중 다음 각목의 용자
- 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30억원 미만
 -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50억원 미만
3.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0억원 미만의 자금지원, 5천만원 미만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예외의 기금사용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보증
6.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다음 각목의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
- 가. 교역사업에 대한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 : 5억원 미만
 -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 : 20억원 미만

라.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1장 총괄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제2장 기금의 관리

제3조 (기금운용상황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기금수탁관리자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영 제15조제2항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보고서안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수수료)

-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여유자금의 운용등)

-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의 업무

제7조 (업무의 종류)

법 및 영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하 “주민왕래지원자금”이라 한다)
2. 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문화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3. 학술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학술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4.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체육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5.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한주민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조(이하 “손실보조”라 한다)
6.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7.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출자금대출”이라 한다)
8.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입자금대출”이라 한다)
9.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

10.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융자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의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이하 “금융기관손실보전”이라 한다)
1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융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이라 한다)
12.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 한 미결제채권의 인수(이하 “미결제채권인수”라 한다)
13. 금융기관에 대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하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이라 한다)
14. 기타 민족의 신뢰·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이하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이라 한다)

제8조 (채무의 조정)

-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금의 지원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4. 기타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을 제고하거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협의회의 의

결을 거쳐 상각할 수 있다.

1. 회수비용이나 회수에상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2. 법적절차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능성은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는 기금은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제8조의1 (사업심사위원회 설치)

- ①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신청사업 심의, 지원대상 사업 선정, 사업평가 등 지원사업관련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업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담당 국장이 된다.
- ③ 제2항의 위원은 사업담당과장(간사), 기금담당과장, 담당자, 관계부처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6인이내의 자로 한다.
- ④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원분야별로 관련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무 상 지 원

제1절 주민왕래지원자금

제9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주민왕래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하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및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10조 (지원조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한 왕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비에 의한 남북한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2.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4. 기타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지원의 우선순위)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부모·친자 및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를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3. 고향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자가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제12조 (지원한도)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은 숙식비·교통비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의 범위이내에서 지원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따른다.

제13조 (지원절차)

- ① 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14조 (지원통화)

- ① 남한에 오는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로 한다.
- ② 북한에 가는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15조 (지원자금의 관리)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왕래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 ① 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자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기금사용계획서의 제출은 제13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의 제출은 방문증명서의 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주민왕래지원자금을 받은 후 계획의 취소, 축소, 중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왕래의 성격, 긴요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0조의 지원조건, 제11조의 지원의 우선순위, 제12조의 지원한도, 제13조의 지원절차, 제16조의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2절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제18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19조 (지원한도)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20조 (지원절차)

- ①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제21조 (지원자금의 관리)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제23조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 ①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한 자는 관련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받은 후 관련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관련사업의 수익금을 과소 예상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4조 (지원통화)

- ① 남한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로 한다.
- ② 북한 또는 외국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25조 (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성격, 긴급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8조의 지원대상, 제19조의 지원한도, 제20조의 지원절차, 제21조의 지원자금의 관리, 제23조의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5장 손 실 보 조

제26조 (손실보조의 대상)

기금으로부터 손실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손실을 입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반출한 물품대금(대응물자 등 포함)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나. 반출계약 체결후 물품 등의 반출불능 또는 반출지연
 - 다.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 라. 가공임 상계방식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위탁가공용설비 반출후 가공임 상계이전에 그 설비의 이용 불가능 또는 사용권리의 침해
2.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투자원금 또는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나. 시설 및 운용자금을 지원하여 관련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원금 또는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다. 부동산 또는 설비에 관한 권리, 광업권, 기타의 권리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원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라.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마. 배당금인 경우에는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제27조 (약정체결한도)

-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손실보조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체결의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동 범위내에서 약정을 체결토록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기업별 남북 거래실적 및 신용도, 지원 형평성, 사고빈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별, 종목별, 품목별로 약정체결한도(이하 “약정한도”라 한다.)를 설정하거

나 기업별, 종목별, 품목별로 기본적인 약정방침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인 약정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업별 약정한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증액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호의 손실보조 : 10억원
2. 제26조제2호의 손실보조 : 50억원

-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약정한도는 잔액기준으로 관리한다.

제28조 (약정대상거래)

- ① 약정대상거래는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 ② 제26조 제1호의 가목 내지 다목은 결제기간 2년 이내인 거래로 하고 라목은 결제기간 5년 이내인 거래로 한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약정 신청자 등)

- ① 기금에 약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호의 손실보조

가.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14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남북간 거래실적이 있을 것

2. 제26조제2호의 손실보조 : 제1호의 가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할 것
- ② 약정 신청거래의 북한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남한과 거래실적이 있는 자
 2. 기타 거래경험 등에 비추어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약정절차)

- ① 영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약정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손실보조와 관련한 약정상담 및 약정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사무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수탁관리자가 접수한 약정신청서는 통일부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약정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 ⑤ 기금수탁관리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약정

을 체결하고 관련 약정증서를 교부한다.

제31조 (손실보조비율)

손실보조비율은 100분의 90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협의회 의결을 거쳐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손실보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 (약정조건)

담보위험, 약정기간, 손실보조수수료율 등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손실보조금 지급절차)

-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손실보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시점에서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손실액 계산 등을 포함한 지급심사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금의 지급, 면책, 지급거절, 일부지급 등의 지급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침에 따라 피약정자에게 지급결정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제1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제34조 (대출대상)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

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북한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 승인을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대출비율)

기금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6조 (대출조건)

대출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7조 (대출절차)

- ①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과 관련한 상담 및 대출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사무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수탁관리자가 접수한 자금대출신청서는 통일부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해 기금수탁관리자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대출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본다.
-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 관리자에게 통지한다.
- ⑤ 기금수탁관리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자금 집행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금집행신청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 (사업보고)

- ①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간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분취득보고서
 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증명서를 첨부한다)
 5. 청산예정보고서
 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7.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분석한 연보를 익년도 8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삭제)

제40조 (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달리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34조의 대출의 대상, 제35조의 대출비율, 제36조의 대출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2절 반출·반입자금대출등

제41조 (반출·반입자금대출)

- ①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자금대출에 관하여는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39조 내지 제40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협력사업”은 “반출” 또는 “반입”으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은 “반출자금대출” 또는 “반입자금대출”로 본다.

제42조 (결과보고)

-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관련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자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대출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7장 채 무 보 증

제43조 (보증대상)

기금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반출·반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2.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제44조 (보증조건 및 방법)

보증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의뢰인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2. 수혜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3. 보증형식
증서에 의한 보증형식에 의한다.
4.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가.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로 한다.
나. 보증기간은 당해거래의 용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로 한다.
5. 보증 및 대지급 요율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로 한다.
6. 담보
가. 남한 또는 북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 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45조 (보증절차)

- ①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 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보증의 타당성, 조건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 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8장 금융기관 지원업무

제1절 금융기관손실보전

제46조 (손실보전대상)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등과 관련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 가격차에 의한 손실
 - 나.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에 따른 자금의 이자 손실
 - 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취급수수료
 - 라.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 마. 기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
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3.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및 기타 경비

제47조 (손실보전 신청등)

- ① 금융기관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대분 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 13호 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1부를 익월 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제48조 (보전이자율등)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계산 기초가 되는 보전이자율·취급수수료율은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절 금융기관용자자금 지원 및 미결제채권인수

제49조 (지원대상)

기금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미결제채권의 인수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용자취급액 범위내에서의 자금지원

2. 남북한간에 설치된 대금결제구좌의 미결제채권인수

제50조 (지원절차)

- ① 금융기관이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신청서 1부를,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결제채권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미결제채권인수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제51조 (지원조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3.7>

제3절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제52조 (북한원화의 인수신청)**

금융기관은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기금에 매각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매각할 수 있다.

제53조 (인수조건등)

기금이 북한의 원화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의 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3.7>

제54조 (북한원화의 환전)

기획재정부장관은 북한원화를 원화로 환전해 주는 시기,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7>

제9장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제55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제7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8조제5호 및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6조 (지원방법 및 절차)

- ① 기금이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내용에 따라 용자, 손실보조,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업무, 보조금의 지급 기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는 각 지원내용에 부합되는 절차를 준용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 (지원금액·지원조건)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그 지원금액·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장 보 칙

제58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기금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59조 (기금의 출연)

- ① 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외의 자(기관·단체·다른 기금·외국인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④ 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납입필통지서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 (대손충당금)

- ① 이 규정에 의한 대출채권(채무보증 포함)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에 따라 당해채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사업, 국제기구가 차주가 되거나 또는 지급보증하는 사업,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한 채권 및 당해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중 담보 해당금액, 기타 통일부장관이 해당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1. OECD 회원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매년말 자산건전성분류를 재검토하고, 자산건전성 재분류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③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기금수탁관리자의 관련내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61조 (민원사무처리기간)

- ① 제7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지원업무와 관련한 사무처리기간은 관련 기금사용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제7조제5호, 제9호와 제14호중 민간단체의 대복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5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하되, 연장사유와 방침결정 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③ 사무처리기간의 산입시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사후관리)

통일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사용자에게 대한 지도·감독과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63조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영, 시행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영, 시행규칙, 이 규정 및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세부 운용·관리에 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2. 남북협력기금 연혁

- '88. 7 :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 7선언」) 발표
- '88. 10 : 남북간 교역을 허용하는 「대북경제개방조치」 시행
- '89. 6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제정
- '90. 8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4239호)
- '90. 8 : 「남북협력기금법」 제정(법률 제4240호)
- '90. 12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3237호)
- '91. 1 : 통일원, 한국수출입은행에 기금업무 위탁
- '91. 3 : 남북협력기금 업무개시(최초년도 정부출연금 250억원)
- '91. 3 : 남북협력기금 최초 지원(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 '91. 3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정(총리령 제384호)
- '91. 4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정
- '92. 8 :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 최초 지원
- '95. 6 : 대북 식량 최초 무상지원(국내산 쌀 15만톤)
- '97. 6 :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 '98. 11 : 「금강산관광객 등의 북한방문절차에 대한 특례」 제정
- '98. 12 :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지침」 제정
- '99. 6 : 대북 비료 최초 지원(15.5만톤)
- '99. 10 :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정
- '99. 10 :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 '99. 12 : KEDO-한국수출입은행간 용자계약 체결
- '00. 2 : 최초 교역자금 대출(B&C무역 아연피 반입자금 대출)

- '00. 3 :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사업 최초 지원
- '00. 8 : 대북 식량차관 최초 지원(외국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
- '00. 8 : 이산가족 상봉행사 최초 지원
- '01. 7 : 최초 경험자금 대출(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사업 자금 대출)
- '01. 12 :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정
- '02. 3 :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 지침」 제정
- '02. 9 :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자재장비 차관계약 체결
- '03. 9 :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을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
- '04. 4 : 대북 긴급구호 최초 지원(용천역 폭발사고)
- '04. 5 : 「교역손실보조 취급기준」 제정
- '04. 9 :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취급기준」 제정
- '04. 9 :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최초 지원
- '04. 12 :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최초 지원
- '05. 5 : 남북 공동영농사업 최초 지원
- '05. 8 : 이산가족 화상상봉 최초 지원
- '06. 5 : 경수로사업 종료 결의
- '07. 7 : 2·13 합의 이행을 위한 대북 중유 지원(5만톤)
- '07. 7 : 대북 경공업 원자재 차관 최초 지원
- '08. 3 : 공업 원자재 차관 초년도 현물 상환분(북한산 아연괴 1,003톤) 매각대금 기금 납입
- '08. 10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비핵화 계정 설치근거 마련)

3. 남북협력기금 제도개선 내용

❁ 2000. 11. 21

- 대출비율 상향 조정 : 50% → 80%
- 신용대출제도 도입

❁ 2001. 12. 31

- 대출금리체계 개편 : 연 6% →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
- 신용대출한도 확대 : 신용등급별 순자산 한도 증액

❁ 2003. 2. 6

- 실적한도대출 도입 : 기업당 10억원 한도
- 중소기업신용대출 특례대출 도입 : 대출기간 2년 이내 교역자
금 대상, 재무등급 6등급 이상
- 대출이자율 결정체계 변경 : 기준금리(3년물 국고채 유통수익률)
→ 기준금리(기간물 국고채 유통수익률) ± 신용위험가산율
- 대출승인 전결권 조정 : 모든 대출건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
회에서 의결 → 교역 30억원, 경험 50억원 이상 건만 협의회
에서 의결

❁ 2004. 1. 28

- 교역·경험자금 대출비율 상향 : 소요자금의 80% → 90%
- 실적한도 대출금액 총액한도 : 10억원 → 30억원
- 북한소재자산제공기업에 대한 신용대출특례 도입

- 부분보증 신용보증서부 대출 특례 도입
- 손실보조 종목 추가, 담보대상 위험 명시, 손실보조비율 조정, 손실보조수수료 차등화, 약정기준 및 절차 구체화

❁ 2005. 1. 31

- 개성공업지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정규담보 인정
- 투자자금대출 대출기간 확대 : 8년 → 10년
- 협조대출제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지원제도 도입
-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취급방식 신설
- 교역 손실보조 수수료율 개선
- 경협 손실보조의 지급사유 발생요건 완화

❁ 2005. 3. 14

-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 2006. 1. 18

- 손실보조 약정한도 상향조정 : 경협손실보조 20억원 → 50억원, 교역손실보조 5억원 → 10억원
- 경협 손실보조 수수료 계산방법 개선 : 1년미만(초과) 잔여분 계산방법을 분기단위 계산 → 일할계산
- 경협 손실보조 신청요건 완화 : 3년 이상 업력 → 1년이상 업력
- 사업심사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2007. 2. 1

- 경험 손실보조 수수료율 인하 : 연 0.7% → 0.5%
- 약정절차 개선 : 약정신청기한 폐지, 투자실행후 건별약정 → 포괄 약정후 건별 발효
- 신청요건 완화 : 기업신용등급 평가 생략, 업력 요건 삭제
- 담보위험 범위 확대 : 남한당국의 조치를 포함하는 불가항력 위험 추가
- 비상위험 현존여부 판단주체 구체화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 2007. 2. 1

-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해제요건 명확화
-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신청서식 표준화, 주요항목간 전용 한계 구체화
- 민간단체에 대한 선지급 근거 마련
- 기금지원 한도액 50% → 70%로 상향

❁ 2007. 7. 9

- 개성공단 투자자산 담보인정비율 상향 조정 : 44% → 54%~59%
- 개성공단 투자자산 후취담보 대출취급요건 개선 : 취득대상기업 및 대출한도금액 확대
- 대출조건 예외취급 전결권의 하부위임 : 5억원 이상 협의회 의결 → 교역자금 20억원, 경험자금 40억원 이상 협의회 의결
- 채권보전방법에 따른 신용위험가산을 현실화 : 발급기관의 신용도 및 대출기간에 따라 가산을 차등, 예금 및 부동산 담보

- 시 가산을 추가 인하, 신용대출에 따른 가산율의 차등폭 확대
- 경험 투자자금 대출 소요자금 산정방법 현실화 : 신청일 현재
기지출비용은 차감 → 기지출비용도 총 소요자금에 포함
- 부분보증 신용보증서부 신용대출 특례 개선, 교역자금 실적한
도대출의 재대출 조건(상계처리) 탄력적 적용
- 개성공단 이외 북한소재자산 신용대출 특례 및 단기 반출입거
래 신용대출 특례 요건 강화
- 교역자금 실적한도 교역실적 인정범위 강화
- 부분보증 신용보증서부 대출 특례 도입

❁ 2008. 6. 12

- 대북지원 물품구매시 공개경쟁입찰 원칙 명시
- 기금지원 한도액 70% → 50%로 조정
- 기금 선지급시 채권보전 확보조치 근거 마련
-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한 범위를 구체화
- 기금지원자금 사용 증빙책임 명시
- 대북지원 사업자 요건을 “안정적 관계” → “1년이상 안정적
관계”로 구체화

❁ 2008. 10. 10

- 포괄적 기금지원 규정인 “민족공동체회복지원사업” 구체화(△
이산가족교류지원 △인도적 지원 △북한 비핵화 지원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
- “손실보조” 명칭을 “보험”으로 변경
- 북핵문제 진전에 대비, “북한 비핵화계정” 설치 근거 마련

4. 남북협력기금 관련통계

가. 총괄표(조성 및 사용실적)

(1)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도	정부출연금	기타출연금	공공자금관리 기금예수금	운용수익등	총조성액
1991	25,000	-	-	237	25,237
1992	40,000	0	-	5,118	45,118
1993	40,000	3	-	4,778	44,781
1994	40,000	1	-	9,387	49,388
1995	240,000	119	-	14,589	254,708
1996	100,000	132	-	18,410	118,542
1997	50,000	288	-	27,874	78,161
1998	-	-	-	40,280	40,280
1999	-	3	149,831	23,013	172,847
2000	100,000	542	254,852	30,393	385,786
2001	500,000	1,080	310,000	29,406	840,486
2002	490,000	78	505,000	42,036	1,037,114
2003	300,000	1	823,000	46,515	1,169,516
2004	171,400	1	310,000	38,371	519,772
2005	500,000	33	460,000	31,178	991,211
2006	650,000	15	940,000	36,619	1,626,634
2007	500,000	75	584,591	38,860	1,123,526
2008,9	600,000	1	113,000	34,072	747,074
합 계	4,346,400	2,372	4,450,274	471,135	9,270,179

(2) 사용실적

(단위 : 억원)

사업명		'91	'92	'93	'94	'95	'96	'97	'98	'99
인도적 지원	식량지원	-	-	-	-	1,824	30	-	-	-
	비료지원	-	-	-	-	-	-	-	-	339
	국제기구	-	-	-	-	-	25	191	199	-
	민간단체	-	-	-	-	-	-	-	-	-
	이산가족 교류지원	-	6	-	-	-	-	-	0.13	4
	기타	-	-	-	-	-	-	-	-	-
남북 경제 협력	철도도로	-	-	-	-	-	-	-	-	-
	개성공단	-	-	-	-	-	-	-	-	-
	관광협력	-	-	-	-	-	-	-	-	-
	경공업협력	-	-	-	-	-	-	-	-	-
	기타	13	-	-	-	-	49	-	-	-
사회 문화 교류	사회문화 교류지원	10	-	-	-	-	-	-	0.3	-
	인적왕래 지원	-	-	-	-	-	-	-	-	-
경수로사업		-	-	-	-	-	-	-	-	-
공자기금예수 원리금상환		-	-	-	-	-	-	-	-	-
기금관리비		3	3	3	3	2	2	2	2	2
총합계		25	8	3	3	1,826	106	193	201	346

(단위 : 억원)

사 업 명		'00	'01	'02	'03	'04	'05	'06	'07	'08.9	합계
인도적 지원	식량지원	867	190	1,058	1,898	1,124	1,985	496	1,462	43	10,976
	비료지원	944	639	833	836	966	1,264	1,200	962	-	7,982
	국제기구	-	229	237	203	26	258	125	349	93	1,934
	민간단체	34	63	65	81	102	120	133	216	92	906
	이산가족 교류지원	28	13	20	30	32	133	99	269	147	781
	기 타	-	45	1	44	27	32	211	688	104	1,153
남북 경제 협력	철도도로	146	898	669	1,121	1,104	1,978	895	590	91	7,493
	개성공단	-	-	-	-	250	465	1,143	1,202	287	3,347
	관광협력	-	450	334	60	70	48	77	22	17	1,078
	경 공 업 협 력	-	-	-	-	-	-	-	694	130	824
	기 타	-	11	28	104	74	-	26	503	246	1,054
사회 문화 교류	사회문화 교류지원	21	1	-	6	32	75	74	69	25	312
	인적왕래 지 원	3	3	237	11	11	38	53	17	27	399
경 수 로 사 업		3,259	3,003	3,009	3,287	870	227	89	-	-	13,744
공 자 기 금 예 수 원 리 금 상 환		190	391	2,124	3,250	3,895	3,658	8,713	6,337	1,191	29,749
기 금 관 리 비		169	5	6	8	12	16	18	19	15	291
총 합 계		5,661	5,940	8,621	10,940	8,594	10,296	13,351	13,400	2,509	82,023

나.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91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참가 남북단일팀 지원	164	사회문화협력지원 (2건, 950)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참가 남북단일팀 지원	786	
	(주)천지무역 대북한 쌀 반출 관련 손실보조	1,268	손실보조
	소 계 (3건)	2,218	
'92	8·15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 지원	551	이산가족교류지원
	소 계 (1건)	551	
'93	“해당사항 없음”	-	
'94	“해당사항 없음”	-	
'95	대북 쌀 15만톤 지원	182,404	인도적 지원
	소 계 (1건)	182,404	
'96	대북 쌀 15만톤 지원('95)	3,031	인도적 지원 (3건, 5,505)
	세계기상기구(WMO) 분담금 지원	40	
	UN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	2,434	
	대북 경수로 사전용역비 지원	4,882	교류협력기반조성
	소 계 (4건)	10,388	
'97	WFP의 제3차 대북 식량지원 분담금 지원	5,374	인도적 지원 (4건, 19,119)
	UNICEF의 탈수방지제(ORS)공장 복구사업지원	304	
	WFP를 통한 제3차 대북 식량(분유·옥수수) 지원	8,698	
	UN기구를 통한 대북 추가지원	4,743	
	소 계 (4건)	19,119	
'98	남북공동사진전 및 사진집 발간사업 지원	30	사회문화협력지원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13	이산가족교류지원
	UN기구를 통한 대북 추가지원('97)	4,922	인도적 지원 (3건, 19,891)
	WFP를 통한 제3차 대북 식량(분유·옥수수) 지원('97)	860	
	WFP를 통한 제4차 대북 밀가루·옥수수 지원	14,109	
'98	대북 경수로 초기 현장공사비 대출	67,523	경수로사업
	소 계 (6건)	87,456	
'99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비 지원('98)	422	이산가족교류지원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99	한적을 통한 대북 비료 5만톤 지원	15,991	인도적 지원 (2건, 33,908)
	한적을 통한 대북 비료 10만톤 지원	17,917	
	소 계 (3건)	34,330	
'00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 지원	277	인적왕래지원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지원	637	사회문화협력지원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228	이산가족교류지원 (5건, 2,830)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비 지원('98)	153	
	제1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지원	1,871	
	제2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지원	455	
	총련 동포 고향방문행사 지원	12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젓염소목장 설치사업 지원	286	인도적 지원 (9건, 97,737)
	국제옥수수재단 남북농업협력사업 지원	862	
	한민족복지재단 제약공장 설립사업 지원	178	
	월드비전 채소생산지원사업 지원	788	
	유진벨재단 결핵퇴치사업 지원	792	
	한국이웃사랑회 우유생산지원사업 지원	60	
	한국JTS 농업기술지원사업 지원	412	
	한적을 통한 대북 비료 20만톤 지원	63,572	
	한적을 통한 대북 비료 10만톤 추가 지원	30,785	
	경의선 철도 및 국도 1호선 연결사업 지원	14,578	교류협력기반조성 (3건, 15,994)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 지원	42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지원	1,373	
	㈜B&C무역 아연과 반입자금대출	500	교역경험자금융자 (교역)
	대북 식량차관(50만톤) 대출	86,740	민족공동체회복대출
대북 경수로 본공사비 대출('99)	325,936	경수로사업	
소 계 (21건)	530,650		
'01	금강산 민족통일 대토론회 경비 지원	253	인적왕래지원
	6.15 남북공동선언기념 남북 공동 사진전 경비 지원	102	사회문화협력지원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1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00)	358	이산가족교류지원 (5건, 1,299)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비 지원('98)	26	
	제2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지원('00)	169	
	제3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지원	646	인도적 지원 (25건, 97,615)
	제4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지원	100	
	국제옥수수재단 남북농업협력사업 지원('00)	4	
	남북나눔 국수공장 운영 및 어린이 영양식 공급사업 지원('00)	263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씨감자재배사업 지원	189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 영양식 지원	122	
	대북 농수산물(감자, 사과, 배) 지원 관련 수송비 지원	2,419	
	대북 이동용 동내의 지원	4,594	
	새마을운동중앙회 농촌 현대화사업 지원	26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북 농자재지원사업 지원	34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젖염소목장 설치사업 지원('00)	15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젖염소목장 설치사업 지원	40	
	월드비전 종자개량사업 지원	424	
	월드비전 채소생산지원사업 지원('00)	10	
	유진벨재단 질병퇴치사업 지원	1,000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금강국수공장 및 필품지원사업	39	
	한국이웃사랑회 우유생산지원사업 지원('00)	268	
	한국이웃사랑회 육아원 지원	135	
	한국이웃사랑회 쫄면 및 우유급식지원	18	
	한국JTS 농업기술 및 어린이 영양사업 지원	196	
	한국JTS 농업기술지원사업 지원('00)	115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수공장운영사업 지원	132	
	한민족복지재단 어린이 급식사업지원	22	
	한민족복지재단 어린이 의료지원사업 지원	105	
	한적을 통한 대북 비료 20만톤 지원	63,863	
	WFP를 통한 대북 옥수수(10만톤) 지원	22,297	
	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00)	600	교류협력기반조성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1	경의선 철도 및 국도 1호선 연결사업 지원('00)	89,850	교역경협자 금융자(교역) (9건, 1,072)	
	㈜제일모직 의류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388		
	㈜SK글로벌 의류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 대출	205		
	아이에스월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대출	122		
	㈜나미인터내셔널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대출	30		
	㈜델타인터내셔널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대출	100		
	㈜반도트레이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대출	76		
	㈜삼스코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대출	31		
	㈜쌍삼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대출	100		
	㈜제이엠모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대출	20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사업 자금 대출	45,000	교역경협 자금용자(경협)	
	대북 식량차관(50만톤) 대출('01)	18,955	민족공동체 회복대출	
	대북 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99)	300,284	경수로사업	
	소 계 (44건)	554,428		
'02	2002 남북여성통일대회 지원	83	인적왕래지원 (9건, 23,686)	
	2002 남북통일축구경기대회 지원	153		
	6·15선언 2주년기념 민족통일대축전행사 지원	46		
	8.15 민족통일대회 북측 참가단 지원	302		
	금강산 관광객 관광경비 지원	21,493		
	남북태권도시범단교환 지원	17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지원	43		
	제14회 부산AG 북한참가 지원	1,355		
	평양국제심포지엄 참석 지원	38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통신지원	130		이산가족교류지원 (6건, 2,029)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00)	484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비 지원('98)	13		
	제4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추가지원	678		
	제5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지원	724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2	국제옥수수재단 옥수수증산사업 지원('01)	698	인도적 지원 (30건, 122,585)
	굿네이버스 어린이 건강증진, 질병퇴치 지원	154	
	굿네이버스 어린이영양 지원	30	
	남북나눔 국수공장 운영 및 어린이 영양식 공급사업 지원('00)	361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씨감자재배사업 지원('01)	92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씨감자재배사업 지원	69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 영양식 지원('01)	329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 영양, 의료 지원	43	
	새마을운동중앙회 농촌 현대화사업 지원('01)	131	
	새마을운동중앙회 농촌 현대화사업 지원	26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기초의약품, 제약공장 지원	7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농업기술협력사업 지원	678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북 농자재지원사업 지원('01)	28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젓염소목장 설치사업 지원('01)	206	
	월드비전 종자개량사업 지원('01)	247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금강국수공장 및 필품지원사업('01)	94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북한지역어린이 급식 및 월동 지원('01)	167	
	한국이웃사랑회 육아원 지원('01)	340	
	한국이웃사랑회 젓소 및 우유급식지원('01)	219	
	한국JTS 농업기술 및 어린이 영양사업 지원('01)	269	
	한국JTS 농업기술 및 어린이 영양사업 지원	28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수공장운영사업 지원('01)	341	
	한민족복지재단 어린이 급식사업 지원('01)	128	
	한민족복지재단 어린이 의료지원사업 지원('01)	207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농산물지원관련 수송비 지원('01)	1,035	
	대북 식량차관 제공을 위한 수송비 등 소요경비	9,102	
	대북 비료 10만톤 추가지원	26,856	
	대북 비료 20만톤 지원	56,436	
	WFP를 통한 대북 옥수수(10만톤) 지원	22,909	
	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	799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2	경의선 철도 및 국도 1호선 연결사업 지원('00)	26,047	교류협력기반조성 (5건, 36,789)
	대북 자재·장비차관 제공	1,693	
	남북자원개발사업 지원	28	
	동해선 철도 및 국도 7호선 연결사업 지원	8,587	
	북한 경제시찰단 방문 지원	435	
	(주)대동무역 북한산 건강식품 반입자금 대출	105	교역경험자 금융자(교역) (5건, 390)
	(주)대동무역 북한산 녹두 반입자금 대출	75	
	(주)동경종합상사 북한산 한약재 반입자금 대출	73	
	(주)동경종합상사 북한산 한약재 반입자금 대출(추가)	27	
	(주)계원물산 대북 의류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대출	110	
	(주)국양해운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1,911	교역경험자 금융자(경협) (3건, 35,767)
	(주)하나비즈닷컴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456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사업 자금 대출('01)	33,400	
	대북 식량차관 대출	96,743	민족공동체회복대출 (2건, 127,325)
	대북 자재·장비차관 대출	30,582	
	대북 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99)	300,883	경수로사업
	소 계 (60건)	649,454	
'03	금강산 관광객 관광경비 지원('02)	37	인적왕래지원 (3건, 1,142)
	한국종교인평화회의 3.1민족대회 지원	206	
	북한선수단,응원단 대구U대회 참가경비 지원	899	
	조선향토대백과 공동편찬사업 지원	157	사회문화협력지원 (2건, 654)
	통일민족평화축전조직위 제주평화축전 지원	497	
	제6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지원	734	이산가족교류지원 (6건, 2,996)
	제7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지원	825	
	제8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지원	728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02)	695	
	이산가족 교류주선 지원('02)	13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비 지원('98)	1	
	국제옥수수재단 옥수수증산사업 지원('02)	550	인도적 지원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연어부화장 건설 지원('02)	701	(36건, 150,134)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3	남북농업발전협력기간연대 씨감자재배 지원('02)	107	인도적 지원 (36건, 150,134)
	남북나눔 어린이영양 및 육아용품 지원('02)	526	
	새마을운동중앙회 농촌 현대화사업 지원('02)	35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 영양, 의료 지원('02)	452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제약설비, 의약품원료 지원('02)	142	
	월드비전 증자개량사업 지원('02)	49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기초의약품, 제약공장 지원('02)	5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농업기술 협력 지원('02)	10	
	유진벨재단 질병퇴치사업 지원('02)	855	
	굿네이버스 어린이영양 지원(축산)('02)	209	
	굿네이버스어린이 건강증진, 질병퇴치 지원('02)	956	
	한국JTS 농업기술 및 어린이 영양사업 지원('02)	265	
	한미음한몸운동본부 국수공장운영사업 지원('02)	286	
	한민족복지재단 병원 현대화사업 지원('02)	49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농산물 지원관련 수송비 지원('02)	542	
	대북 식량차관 제공을 위한 수송비 등 소요경비('02)	15,281	
	대한적십자사 대북 동내의 지원('02)	4,380	
	대북 식량차관 제공을 위한 수송비 등 소요경비	18,385	
	비료(20만톤) 지원	54,232	
	비료(10만톤) 추가지원	29,351	
	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	761	
	WFP 대북옥수수(10만톤) 지원	18,944	
	UNICEF를 통한 백신 및 면역의약품 지원	598	
	국제옥수수재단 옥수수증산사업 지원	160	
	새마을운동중앙회 농자재 지원	95	
	평화의 숲 양묘장 조성 지원	55	
	유진벨재단 결핵퇴치사업 지원	450	
	선한사람들 의료 지원	116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 영양, 의료 지원	85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취약계층 급식 지원	79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3	굿네이버스 어린이영양 지원	410	인도적 지원 (36건, 150,134)
	원불교 어린이급식, 생필품 지원	90	
	남북나눔 어린이영양 및 육아용품 지원	318	
	북측 유류바지선 구조승환지원	113	
	경의선 철도 및 국도1호선 연결사업 지원('00)	31,919	교류협력기반조성 (6건, 76,318)
	대북 자재·장비 차관제공('02)	4,075	
	대북 자재·장비 차관제공	7,339	
	남북자원개발 지원('02)	127	
	남북자원개발 지원	12	
	동해선 철도 및 국도 7호선 연결사업 지원('02)	32,846	
	㈜신흥윌드 실적한도 반출입자금 대출	600	교역경협 자금융자(교역) (29건, 7,933)
	㈜대동무역 실적한도 반출입자금 대출('03.3)	180	
	㈜델타인터내셔널 실적한도 반출입자금 대출('03.4)	100	
	㈜서진어패럴 실적한도 반출입자금 대출	840	
	㈜삼스코 실적한도 반출입자금 대출	150	
	㈜태평양물산 실적한도 반출입자금 대출	1,000	
	㈜서원 실적한도 반출입자금 대출	984	
	㈜남애전자 실적한도 반출입자금 대출	130	
	이원유통상사 실적한도 반출입자금 대출	80	
	㈜LG상사 실적한도 반출입자금 대출	1,000	
	㈜대동무역 실적한도 반출입자금 대출('03.9)	180	
	㈜나미인터내셔널 실적한도 반출입자금 대출	320	
	㈜델타인터내셔널 실적한도 반출입자금 대출('03.10)	100	
	㈜오경상사 실적한도 대출	200	
	㈜서진어패럴 실적한도 대출	840	
	㈜동경종합상사 실적한도 대출	90	
	㈜고든통상 실적한도 대출	30	
	㈜신대동 녹두 반입자금 대출	100	
	㈜동경종합상사 한약재 반입자금 대출	90	
	대명트레이딩 북한산 고사리 반입자금 대출	124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3	㈜유지상사 아연괴 반입자금 대출	200	교역경협 자금용자(교역) (29건, 7,933)	
	동진무역상사 한약재 반입자금 대출	100		
	동우기획 의류 반입자금 대출	200		
	㈜크라운 냉동꽃게 반입자금 대출	55		
	㈜제이엠모드 대북 위탁가공 의류 반입자금 대출	70		
	㈜대안무역 라이더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대출	50		
	㈜노스피플모드 반출자금 대출	40		
	㈜보광약업 반입자금 대출	30		
	㈜분홍 반입자금 대출	50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사업 자금 대출('01)	6,000	교역경협 자금용자(경협) (2건, 10,777)	
	대한광업진흥공사 흑연산개발사업 자금 대출	4,777		
	대북 식량차관 대출('02)	29,884	민족공동체 회복대출 (4건, 192,053)	
	대북 식량차관 대출	126,204		
	대북 자재·장비차관 대출('02)	17,701		
	대북 자재·장비차관 대출	18,264		
	대북 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99)	328,745	경수로사업	
	소 계 (89건)	770,751		
	'04	통일맞이 문익환목사 10주기 행사지원	18	인적왕래지원 (7건, 1,056)
		철의 실크로드 국제심포지엄 북측 대표단 참가경비 지원	5	
6.15 공동선언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 지원		135	사회문화협력지원 (10건, 3,098)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지원		5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남북공동학술회의 지원		12		
남북노동자 5.1절 공동행사지원		131		
금강산 방문경비 지원사업		697		
조선향토대백과 공동편찬사업 지원('03)		559		
조계종 북한사찰 단청불사 사업		35		
유럽-코리아재단 북한경제인 장학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290		
고구려문화유산 사진전 및 학술토론회 지원		425		
아테네올림픽방송 대북 위성중계 지원		130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4	천태종 개성 영통사 복원사업 지원	492	사회문화협력지원 (10건, 3,098)	
	남북공동 꽃사진전 기금지원	163		
	제천시 영농문화협력사업	60		
	원산농민기술 강습소 개·보수 지원	447		
	조계종 신계사 복원 지원	498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따른 설계 및 착공 지원('03)	1,316		이산가족교류지원 (5건, 3,158)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00)	322		
	제9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698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749		
	이산가족 교류지원 경비(2차)	7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농기계수리공장 건설 지원('03)	423	인도적 지원 (46건, 122,54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농수산물 수송비 지원('03)	32		
	남북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 영양, 의료 지원('03)	325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취약계층 급식 지원('03)	28		
	한국대학생선교회 쫓임소 축산 지원('03)	209		
	WFP 대북옥수수(10만톤) 지원('03)	154		
	남북나눔 어린이영양 및 육아용품 지원('03)	71		
	국제기아대책기구(컨소시엄) 제약공장 복구 지원('03)	645		
	비료(10만톤) 추가지원('03)	5		
	월드비전 증자개량사업 지원('03)	149		
	비료(20만톤) 지원('03)	10		
	원불교 어린이급식, 생필품 지원('03)	71		
	대북 식량차관 제공('03)	6,400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농산물지원관련 수송비 지원('03)	1,381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씨감자 배양 기술지원('03)	144		
	한국복지재단 육아원 및 어린이 급식 지원('03)	197		
	남북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 영양, 의료, 환경개선 지원	971		
	남북나눔 어린이 영양식 지원	464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국수공장운영 및 신품중앙파재배지원	226		
	굿네이버스 어린이 건강증진 및 질병퇴치	694		

연도	사업내용	금액	사업구분
'04	굿네이버스 축산개발을 통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160	인도적 지원 (46건, 122,547)
	원불교 어린이급식 및 유아용품 지원	228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농자재 농기계수리공장 지원	488	
	유진벨 결핵퇴치 지원	986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구역병원 현대화 지원	259	
	월드비전 증자개량 사업지원	193	
	한국대학생선교회 젓염소목장 운영지원	92	
	새마을운동중앙회 손수레 및 농업용자재 지원	75	
	천주교서울대교구 민화위 국수공장 운영 협동농장 지원	233	
	평화의 숲 양묘단지 조성 및 조림사업 지원	86	
	한국JTS 어린이 영양개선 및 농업개발 지원	170	
	한민족복지재단 병원현대화 및 어린이 급식지원	127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씨감자 원종장 지원	191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및 의료기기지원	3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의약품 생산 및 병원현대화 지원	495	
	국제옥수수재단 옥수수 증산 및 증자개량	171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연어자원보호증식	16	
	한국복지재단 어린이건강증진사업 지원	209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제사업	786	
	UNICEF를 통한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	1,194	
	WFP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	120	
	대북 비료지원	60,040	
	용천재해 긴급구호 지원	1,611	
	대북식량차관 제공	3,991	
	대북비료 10만톤 지원	36,544	
	용천재해 복구 관련 자재·장비 지원	1,453	
	경의선 철도 및 국도1호선 연결사업 지원('00)	2,782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출입시설 신축사업 지원	3,426	
	대북 자재·장비 제공('02)	235	
	대북 자재·장비 제공('03)	6,660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4	동해선 철도 및 국도7호선 연결사업 지원('02)	57,652	교류협력기반 조성 (10건, 76,095)
	남북자원개발 지원('03)	25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지원	1,194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지원사업	2,565	
	금강산 관광지구 내 도로포장 지원사업	1,492	
	아테네올림픽 남북선수단 공동입장 지원사업	62	
	㈜대동무역 북한산 단천오석 반입자금대출	210	교역경협 자금용자(교역) (64건, 13,677)
	동진무역상사 북한산 한약재 반입자금대출	100	
	㈜한국체인 북한산 농산물 반입자금대출	50	
	㈜꼬레아무역 북한산 목질 진흙버섯 반입자금대출	100	
	㈜보광약업 북한산 한약재 수산물 반입 실적한도대출	30	
	SM트레이딩 대북의류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200	
	㈜나우 의류 위탁가공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60	
	㈜하나코리아헤미리 의류 위탁가공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100	
	㈜영산어패럴 의류 위탁가공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600	
	㈜무한섬유 의류 위탁가공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70	
	㈜안동대마방직 대북 의류 위탁가공 반출자금대출	300	
	㈜이코 휴대용 부탄가스 용기 반출자금대출	200	
	㈜유성산업 휴대용 가스렌지 반출자금대출	300	
	㈜노스피플모드 대북의류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04.2)	100	
	㈜경맥 대북 수산물 교역 실적한도대출('04.2)	180	
	고려영무역 대북 수산물교역 실적한도대출	60	
	이원유통상사 대북농수산물교역 실적한도대출	230	
	㈜경맥 대북 수산물 교역 실적한도대출('04.3)	50	
	㈜안동대마방직 대북 의류 위탁가공사업 실적한도대출('04.3)	200	
	㈜대동무역 주류 및 농산물 반입 실적한도대출	180	
	㈜유지상사 아연괴 반입 실적한도대출('04.3)	200	
	㈜금수강산무역 대북의류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04.4)	100	
	㈜신홍월드 북한산 수산물 반입을 위한 실적한도대출('04.4)	200	
	㈜금수강산무역 대북의류 위탁가공 반출입 실적한도대출	50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4	㈜비에스무역 수산물 반입 실적한도대출	70	교역경협 자금용자(교역) (64건, 13,677)
	㈜델타인터내셔널 의류 위탁가공 원부자재반출 실적한도대출('04.4)	90	
	㈜제이엠모드 의류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04.4)	100	
	경양물산 대북 수산물 반입 실적한도대출	100	
	㈜크라온 대북 수산물 반입 실적한도대출	100	
	㈜강림인터내셔널 의류 위탁가공실적한도대출('04.5)	100	
	㈜신흥월드 수산물 반입 실적한도대출('04.5)	200	
	㈜대안무역 라이타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04.5)	100	
	㈜풍전비철 아연괴 반입 실적한도대출('04.5)	300	
	㈜노스피플모드 의류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04.5)	100	
	㈜유지상사 아연괴 반입 실적한도대출('04.5)	200	
	㈜엠에스클럽 의류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	200	
	㈜삼스코 의류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	150	
	㈜신택상사 의류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	150	
	우영수산 북한산 수산물 반입 실적한도대출	700	
	㈜동경종합상사 한약재 반입 실적한도대출('04.6)	90	
	㈜분흥 북한산 수산물 반입 실적한도대출('04.6)	50	
	㈜뉴거림 북한산 수산물 반입 실적한도대출	35	
	㈜태평양물산 위탁가공 반출입 실적한도대출('04.7)	1,000	
	㈜서원 북한산 아연괴 반입을 위한 실적한도대출	984	
	㈜고든통상 대북 수산물 위탁가공 설비반출 실적한도대출	360	
	㈜대동무역 북한산 농산물 및 건강식품 반입 실적한도대출	170	
	아이에스월드 의류 위탁가공 반출 실적한도대출	200	
	무해실업 농수산물 반입 실적한도대출	130	
	㈜안동대마방직 대북의류위탁가공 반출 실적한도대출 재대출('04.9)	200	
	㈜유지상사 북한산 아연괴 반입 실적한도대출('04.9)	180	
	㈜금수강산무역 대북의류위탁가공 반출입 실적한도대출('04.10)	40	
	㈜태평양물산 위탁가공 반출입 실적한도대출('04.10)	1,950	
	㈜델타인터내셔널 의류위탁가공 반출입 실적한도대출('04.10)	80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4	(주)제이엠모드 대북의류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04.10)	100	교역경협 자금용자(교역) (64건, 13,677)
	무해실업 농수산물 반입 실적한도대출	500	
	(주)강림인터내셔널 의류 위탁가공실적한도대출('04.11)	100	
	(주)대안무역 라이터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대출('04.11)	100	
	(주)풍전비철 아연괴 반입 실적한도대출('04.11)	300	
	(주)노스피플모드 의류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04.11)	100	
	오경상사 의류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	200	
	신택상사 대북 의류 위탁가공 원단 반출 실적한도대출	150	
	(주)동경종합상사 한약재 반입 실적한도대출('04.12)	70	
	(주)분홍 수산물 반입 실적한도대출('04.12)	40	
	(주)보광약업 한약재 반입 실적한도대출	18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사업 자금 대출('01)	5,600	교역경협 자금용자(경협) (12건, 23,700)
	(주)신원 개성 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3,000	
	(주)에스제이테크 개성 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2,196	
	(주)리빙아트 개성 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3,000	
	(주)삼덕통상 개성 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2,947	
	(주)호산에이스 개성 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800	
	(주)매직마이크로 개성 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970	
	(주)대화연료펌프 개성 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139	
	(주)부천공업 개성 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000	
	(주)태성산업 개성 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3,000	
	(주)문창기업 개성 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33	
	(주)티에스정밀 개성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5	
	대북 자재·장비차관 대출('02)	3,620	민족공동체회복 대출 (4건, 145,957)
	대북 자재·장비차관 대출('03)	36,054	
대북 식량차관 제공	101,982		
개성공단 관리기관 소요경비 대출	4,300		
대북 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99)	86,984	경수로사업	
소 계 (159건)		476,273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5	금강산 방문경비 지원사업('04)	2,274	인적왕래지원 (13건, 3,786)
	이산가족 금강산 합동차레를 위한 주민왕래 지원자금 지원	10	
	남북공동행사 준비위 결성식 남북협력기금 지원	71	
	남북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청년학생운동본부의 남북대학생상봉모임	125	
	동아시아 축구대회 북한 남녀대표팀 참가 지원	219	
	남북 대학생 상봉모임 지원	82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 지원	659	
	민주노동당 대표단 평양방문 지원	39	
	분단 60년 추석맞이 이산가족 금강산 합동차레 지원	15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제3차 대회 참가지원	21	
	제15차 국제적십자사 연맹총회	29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기금지원	196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 지원	45	사회문화협력지원 (18건, 7,468)
	조선향토대백과 공동편찬 사업지원('03)	49	
	(주)하나비즈닷컴 북측 IT인력 연수프로그램 지원('04)	41	
	(사)통일맞이 문화행사 평양공연 개최 지원	497	
	예맥출판사 남북전통공예교류전 개최 지원	188	
	겨레말 큰사전	267	
	평양권투대회 개최 지원	89	
	(사)민족문학작가회의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 개최지원	357	
	북관대첩비 반환사업비 기금지원	627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	362	
	(사)뉴서울오페라단 아 고구려 고구려 - 광개토태왕 평양공연 개최지원	295	
	(사)한국여성단체연합 05 남북여성통일행사의 평양개최 지원	147	
	(사)동북아한민족협의회 평양봉수 땃공장 지원	307	
	한민족남북한선교회 왜성사과 과수원 조성사업 지원	127	
	(사)민족통일체육연구원 코리아체육학술대회 개최 지원	20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회의	2,282	
	대한축구협회 8.15 남북통일축구대회	1,239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5	(주)오마이뉴스 평양마라톤대회 지원	81	사회문화협력지원 (18건, 7,468)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	494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따른 설계 및 착공 지원('03)	235	
	이산가족 교류지원 경비(2차)('04)	279	이산가족교류지원 (7건, 13,289)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 관련 기금지원	2,317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7,921	
	제1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825	인도적 지원 (52건, 186,621)
	제1,2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지원	1,154	
	제1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559	
	대한결핵협회 결핵퇴치사업('04)	36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수자원 개발 및 정수·소독 지원('04)	287	
	한민족복지재단 병원현대화 및 어린이 급식지원('04)	70	
	굿네이버스 어린이 건강증진 및 질병퇴치('04)	146	
	월드비전 종자개량사업지원('04)	250	
	평화의숲 양묘단지 조성 및 조림사업지원('04)	4	
	한국대학생선교회 젓염소목장 운영지원('04)	11	
	남북나눔 어린이 영양식 지원('04)	450	
	원불교 어린이 급식 및 유아용품 지원('04)	60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국수공장 운영 및 신품종 양파재배지원('04)	3	
	한국복지재단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지원('04)	154	
	한국JTS 어린이 영양개선 및 농업개발 지원('04)	30	
	선한사람들 착유설비 및 결핵약품 지원('04)	169	
	대북 식량차관 제공('04)	2,017	
	WFP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04)	23,884	
	대북 비료 10만톤 지원('04)	617	
	용천재해 복구 관련 자재, 장비 지원('04)	113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농산물 수송비 지원('04)	1,587	
	대북 월동용품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519	
	비닐박막 대북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591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5	국제옥수수재단 북한 옥수수 심기	229	인도적 지원 (52건, 186,621)
	굿네이버스 농축산개발을 통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118	
	남북농발협 씨감자 원종장 및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32	
	유진벨 결핵퇴치 지원	585	
	농협중앙회 양돈장 지원사업, 특수 콩증자 지원사업	419	
	새마을운동중앙회 종계장 및 통일순수레 지원	3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농기계 조립공장 건설 및 협동농장 지원	390	
	한국건강관리협회 어린이 보건지원	71	
	평화외솔 양묘단지 조성 및 조림사업 지원	85	
	한국대학생선교회 젓염소 보내기 및 축산지원 개발사업	140	
	한민족복지재단 병원현대화 및 어린이 급식 지원	127	
	국제라이온스협회한국연합회 안과병원 건립 및 운영	207	
	굿네이버스 어린이 건강증진 및 교육지원 사업	542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원	59	
	남북나눔 어린이 영양식 공급 및 성장발육 지원	565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구역병원 의료장비 현대화 지원	512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 영양·의료·환경개선 지원	634	
	새천년생명운동 아궁이 개량사업	42	
	원불교 북한 취약계층 지원	289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식량 및 생필품 지원, 농업개발 지원	293	
	천주교 서울대교구 국수공장 운영 및 씨감자 조직배양 시설 지원	276	
	한국복지재단 어린이 영양·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 지원	277	
	한국JTS 어린이 영양개선 및 농업개발 지원	188	
	대한적십자사 북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	1,232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역 사업	850	
	대북 비료지원사업	69,158	
	대북 비료 추가지원 사업	56,640	
	대북 식량차관 제공	17,191	
	북한 수해 이재민 응급구호품 지원	193	
	UNICEF를 통한 대북지원	1,039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5	민간단체 합동 대북지원 사업	1,047	인도적 지원 (52건, 186,621)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북 연료 지원	166	
	㈜하나코리아훼미리 위탁가공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05.2)	50	교역경협 자금용자(교역) (37건, 8,259)
	㈜하나코리아훼미리 위탁가공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05.9)	45	
	경양물산 북한산 수산물 반입 반입자금대출	100	
	씨클무역 북한산 수산물 반입 실적한도대출	240	
	㈜나우 의류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	60	
	㈜노스피플모드 의류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05.2)	100	
	아이에스월드 의류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	50	
	고려영무역 북한산 수산물 반입 실적한도대출	60	
	㈜경맥 북한산 수산물 반입 실적한도대출	230	
	무해실업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 실적한도대출	630	
	㈜안동대마방직 의류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 재대출	130	
	㈜대동무역 북한산 꿀재배산삼 반입을 위한 실적한도대출	350	
	동진무역상사 북한산 명태반입 실적한도대출	40	
	㈜신흥월드 북한산 수산물 반입 실적한도대출	400	
	㈜델타인터내셔널 대북 의류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05.4)	80	
	㈜영산어패럴 의류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	600	
	㈜제이엠모드 의류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	100	
	㈜크라운 대북 수산물 반입 실적한도대출	200	
	㈜대안무역 라이타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05.5)	100	
	㈜노스피플모드 의류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05.5)	100	
	㈜풍전비철 아연괴 반입 실적한도대출 재대출('05.5)	300	
	㈜유지상사 북한산 아연괴 반입 실적한도대출('05.5)	200	
	㈜삼스코 의류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	150	
	우영수산 북한산 수산물반입실적한도대출	700	
	㈜분흥 북한산 수산물 반입 실적한도대출	20	
	㈜보광약업 북한산 한약재 반입 실적한도대출	15	
	아이에스월드 대북의류 위탁가공사업 실적한도대출	295	
	㈜태평양물산 대북의류위탁가공 실적한도 대출	700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5	㈜서원 북한산 아연과 반입 실적한도대출	984	교역경협 자금용자(교역) (37건, 8,259)
	㈜삼화 북한산 수산물 반입 실적한도대출	100	
	㈜유지상사 북한산 아연과 반입 실적한도대출('05,9)	170	
	㈜델타인터내셔널 의류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05,10)	60	
	㈜노스피플모드 의류위탁가공 실적한도	100	
	㈜풍전비철 아연과 반입 실적한도('05,11)	300	
	㈜대안무역 대북 라이타 위탁가공 실적자금('05,11)	100	
	오경상사 의류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05,11)	200	
	오경상사 의류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05,12)	200	
	㈜부천공업 개성 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4)	2,000	교역경협 자금용자(경협) (14건, 21,052)
	㈜삼덕통상 개성 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4)	953	
	㈜대화연료펌프 개성 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4)	2,861	
	㈜매직마이크로 개성 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4)	692	
	㈜용인전자 개성 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4)	912	
	㈜문창기업 개성 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4)	2,967	
	㈜에스제이테크 개성 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4)	804	
	㈜호산에이스 개성 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4)	1,150	
	㈜티에스정밀 개성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4)	1,710	
	㈜안동대마방직 삼베의류 제조 평양 합영공장 설립 투자자금대출	800	
	㈜재영솔루텍 개성 현지법인 설립 투자자금대출	2,953	
	㈜문창기업 개성공단 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700	
	㈜삼덕통상 개성현지법인 설립사업	1,050	
	㈜태성산업 개성 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500	
	경의선 철도 및 국도1호선 연결사업 지원('00)	219	교류협력기반 조성(18건, 204,475)
	동해선 철도 및 국도7호선 연결사업 지원('02)	113,614	
	대북 자재, 장비차관 제공('02)	77	
	남북자원개발사업 지원('03)	5	
	대북 자재, 장비차관 제공('03)	1,385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지원('04)	880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출입시설 신축사업 지원('04)	61,704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지원사업('04)	16,274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5	금강산 관광지구 내 도로포장 지원사업('04)	6	교류협력기반 조성(18건, 204,475)	
	UNESCO 대북 기술지원사업('04)	145		
	삼일포합동농장 공동영농사업 지원	1,589		
	대북 역사건축 기자재 차관제공 지원	1,613		
	북한 주민 중국공단 견학 소요경비 지원	26		
	백두산 관광도로 포장 및 보수자재 지원	4,913		
	동해선 남북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	624		
	북한 경제인력 양성을 위한 기금 지원	334		
	개성공단 북측 관계자 세무, 회계 연수 지원	31		
	개성공단내 직업훈련센터 설립 지원	1,037		
	대북 자재, 장비차관 제공('02)	473	민족공동체회복대출 (7건, 206,781)	
	대북 자재, 장비차관 제공('03)	9,744		
	대북 식량차관 제공('04)	27,885		
	대북 식량차관 제공	151,377		
	개성공단 관리기관 소요경비 대출('04)	8,123		
	대북 역사건축 기자재 차관제공 지원	8,378		
	대북 연탄지원 소요경비 대출	801		
	대북경수로 분공사비 지원('99)	22,678		
	소 계 (167건)		674,409	
	'06	거레알살리기국민운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우리겨레단합대회 지원	44	인적왕래지원 (12건, 5,289)
6.15민족공동위원회 여성본부 남북여성대표자회의 개최 지원		12		
6.15청년학생본부 남북대학생대표자 회의		73		
6.15청년학생운동본부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		91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 지원('05)		4,746		
서울청년단체협의회회의우리겨레 청년 새해맞이 통일행사 지원		46		
제15차 국제올림픽위원회연합회 서울총회 북측 대표단 경비 지원		9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금강산 합동망향제 지원		13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참관 관련 기금지원		110		
민주노동당 대표단 평양방문 지원		24		
하나원 인근주민 북한현지 체험연수 관련 기금 지원		51		
한국노총 5.1절기념 평양행사		69		

4. 남북협력기금 관련통계 379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6	6.15민족통일대축전 남북협력기금 지원	1,313	사회문화협력지원 (20건, 7,375)
	6.15공동선언 실천 남북해외대표자 회의 지원	11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05)	652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	2,314	
	광복회 인종근의사 유해발굴사업	46	
	금강산 윤이상음악회 남북공연	102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남북강원도 겨울철 체육경기 개최	74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	594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평양과기대 건립 지원	1,000	
	민화협 주관 2006 남북공동나무심기행사	32	
	북관대첩비 반환사업비 기금지원('05)	288	
	북한 IT인력 양성사업	83	
	세계문화유산 등재 고구려고분군 실태조사 사업 지원	452	
	왜성사과 과수원 조성사업 지원('05)	33	
	월간 민족21 남북공동사진전 개최 지원	50	
	재북 임시정부요인 묘소 성묘사업	68	
	독일월드컵 대북 위성중계 관련 기금지원	116	
	태국 국제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지원	59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교육기자재 지원사업('05)	72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남북학술회의 지원	17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05)	6,837	이산가족교류지원 (6건, 9,908)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	271	
	제1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05)	246	
	제13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804	
	제14차 6.15계기 특별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1,480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행사 지원	271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북 연료 지원('05)	5,198	
	국제옥수수재단 북한 옥수수 심기	137	
	굿네이버스 어린이 건강증진 및 교육지원 사업	264	
	굿네이버스 농축산 개발을 통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207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6	굿네이버스 어린이 건강증진 및 교육지원 사업(05)	128	인도적 지원 (60건, 212,536)
	나눔인턴내셔널 의약품, 의료기자재 제공, 보육용품 지원	298	
	남북나눔 어린이 영양식 공급 및 성장발육 지원(05)	165	
	남북나눔운동 어린이 영양식 공급 지원	133	
	남북농발협 씨감자 원종장 및 저온저장고 지원사업(05)	171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씨감자 채종사업 및 협동농장 지원	56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유기농업지원을 위한 사료공장 지원(05)	248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유기농업지원을 위한 사료공장 건립	145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민간단체 합동 대북지원 사업	2,911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 영양.의료.환경개선 지원(05)	216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를 위한 보건의료사업	214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농산물 대북지원 수송비(05)	1,666	
	농수산물유통공사 대북 50만톤 식량차관 제공	6,233	
	농협중앙회 양돈장 지원사업, 특수 콩종자 지원사업(05)	159	
	대한의공협회 의료기기 지원	56	
	대북 비료지원(06.2)	51,741	
	대북 비료지원(06.4)	68,277	
	대북 수해복구 지원 사업	45,183	
	북민협 대북 수해복구 지원 사업	10,000	
	등대복지회 북한 취약계층 종합지원	339	
	뫓자리용 비닐 지원	683	
	민족사랑나눔 의료기 및 의료용품 지원	14	
	북고성군농업협력단 남새온실농장 영농지원	24	
	새천년생명운동의 아궁이 개량사업(05)	13	
	새천년생명운동의 아궁이 개량사업	24	
	선한사람들 공기름공장 운영지원(05)	14	
	선한사람들 공기름공장 운영지원	68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구역병원 등 지원	393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구역병원 의료장비 현대화 지원(05)	12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기초의약품 생산 및 병원현대화 지원(05)	41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농기계 조립공장 건설 및 협동농장 지원(05)	10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농기자재 지원 및 농기계 조립공장	209	인도적 지원 (60건, 212,536)
	원불교 어린이급식 및 유아용품 지원	172	
	월드비전 식량증산을 위한 종자개량('05)	720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어린이빵 공장 건립	28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약공장 지원	146	
	유진벨 결핵퇴치지원('05)	245	
	유진벨 결핵퇴치지원	350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식량 및 생필품 지원	191	
	평화외교 양모단지 조성 및 조림사업 지원	152	
	평화3000 자가발전 손전등, 공우유 공장 건립	74	
	평화문제연구소의급식지원 및 구역병원 지원	1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수자원개발 및 정수·소독지원('05)	40	
	한국복지재단 어린이 영양.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 지원('05)	1	
	한국JTS 어린이영양, 환경개선 및 건강증진 사업	262	
	천주교서울대교구민족화해위원회 어린이 영양제 생산공장 지원	179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	1,045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어린이 보건지원	72	
	한국JTS 어린이 영양개선 및 농업개발 지원('05)	30	
	한국YMCA전국연맹의 통일자전거	50	
	한민족복지재단 병원현대화 및 어린이 급식 지원('05)	594	
	한민족복지재단 빵 급식 및 평의대 현대화	61	
	2006년 민간단체합동사업	52	
	UNICEF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	2,164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난방, 취사용 연탄지원	209	
	WHO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	9,305	교역경험 자금융자(교역) (27건, 7,327)
	(주)경맥 수산물 반입 실적한도대출	207	
	경양물산 대북 수산물 반입사업 실적한도대출('06.3)	95	
	(주)노스피플모드 대북의류위탁 실적한도대출('06.2)	100	
	(주)노스피플모드 대북의류위탁 실적한도대출('06.3.12)	100	
	(주)삼화 북한산 수산물 반입사업 실적한도대출	80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6	(주)삼스코 대북 의류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	400	교역경협 자금용자(교역) (27건, 7,327)
	(주)세람통상 대북 의류 위탁가공 사업 실적한도 대출	80	
	(주)소이 대북 의류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	800	
	(주)신흥월드 북한산 수산물 반입 실적한도대출	370	
	(주)영산어패럴 대북 의류 위탁가공 실적한도 대출	600	
	오경상사 대북 의류위탁가공사업 실적한도대출	200	
	(주)유지상사 대북 아연괴 반입 실적한도대출('06.3)	200	
	(주)유지상사 대북 아연괴 반입 실적한도대출('06.9)	170	
	(주)제이엠모드 대북의류위탁가공 사업 실적한도대출	25	
	(주)크라운 북한산 수산물 반입 실적한도 대출	200	
	(주)풍전비철 북한산 아연괴 반입사업	300	
	경양물산 대북 수산물 반입사업 실적한도대출('06.11)	100	
	(주)고든통상 대북 수산물 반입사업을 위한 실적한도	300	
	고려영무역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을 위한 실적한도대출	60	
	(주)대동무역 북한산 꿀재배산삼 실적한도대출	350	
	(주)대안무역 라이터 위탁가공 실적한도 대출('06.3.14)	100	
	(주)대안무역 라이터 위탁가공사업 실적한도대출('06.3.24)	80	
	(주)노스피플모드 대북의류위탁 실적한도대출('06.3.25)	100	
	(주)서원 대북 아연괴 반입 실적한도대출	1,500	
	삼원코퍼레이션 대북 의류 위탁가공사업 실적한도대출	150	
	(주)동경종합상사 북한산 한약재 반입자금대출	30	
	무해실업 농수산물 반입 실적한도 대출	630	
	(주)신원 개성현지법인 증설 경제협력자금 추가대출	1,400	교역경협 자금용자(경협) (23건, 40,583)
	(주)아트람 개성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2,000	
	(주)제씨콤 개성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016	
	(주)만선 개성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173	
	(주)매직마이크로 개성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4)	1,000	
	(주)좋은사람들 개성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2,200	
	(주)진글라이더 개성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883	
	(주)티에스정밀 개성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4)	349	

연도	사업내용	금액	사업구분
'06	㈜평안 개성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2,200	교역경협 자금용자(경협) (23건, 40,583)
	㈜평화유통 개성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900	
	㈜한국마이크로힐터 개성현지법인 설립 투자자금	500	
	㈜호산에이스 개성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4)	500	
	㈜KT 개성공단 통신공급시설 투자관련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3,767	
	대한광업진흥공사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3)	1,257	
	㈜문창기업 개성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5)	546	
	㈜부천공업 개성현지법인인증설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500	
	㈜성화물산 개성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1,050	
	㈜에머슨퍼시픽 금강산골프리조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2,100	
	㈜용인전자 개성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4)	1,500	
	㈜재영솔루텍 개성현지법인설립 투자자금대출('05)	947	
	㈜제일상품 개성 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595	
	㈜코트클럽 개성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700	
	한국전력공사 개성공단전력공급사업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1,500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지원사업('04)	63,608	
	개성공단 북측 관계자 세무, 회계 연수 지원('05)	12	
	개성공단내 직업훈련센터 설립 지원('05)	3,598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설립 지원	2,117	
	경의선 열차시험운행 행사비 정산	678	
	경의선 철도 및 국도1호선 연결사업 지원('00)	136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출입시설 신축사업 지원('04)	44,672	
	금강산 관광지구 내 도로포장 지원사업('04)	1,216	
	금강산 관광지역 소방설비 등 지원	9	
	남북간 육로통행체계 개선	90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본청사 및 숙소 신축 지원	671	
	대북 2차 자재, 장비차관 지원('03)	146	
	대북 역사건축 기자재 차관제공 지원('05)	817	
	동해선 철도 및 국도7호선 연결사업 지원('02)	26,014	
	동해선 남북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05)	1,727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6	백두산지구 관광인프라 지원	4,373	교류협력기반 조성(23건, 152,091)
	북한 IT인력 개발	53	
	삼일포협동농장 공동영농사업	1,079	
	북측 통신연락소 수요 통신자재 제공	15	
	임진강수해방지사업 용역재착수 지원	432	
	통합상황실(경의선) 설치	242	
	2006년도 포항공대의 북한 경제인력 양성사업 지원	89	
	삼일포협동농장 공동영농사업 지원('05)	297	
	개성공단 관리기관 소요경비 대출('04)	7,785	민족공동체회복 대출 (4건, 27,004)
	대북 식량차관 제공('05)	3,939	
	대북 역사건축 기자재 차관제공 지원('05)	8,862	
	대북 자재·장비차관 대출('03)	6,418	경수로사업
	대북경수로 본공사비 지원('99)	8,883	
	소 계 (176건)	470,995	
'07	6.15 민족통일대추전	313	인적왕래지원 (17건, 1,698)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남북여성대표자모임	10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남북공동위원장 회의 지원('06)	9	
	6.15 남측위 교육본부 남북교육자 상봉모임	101	
	6.15 남측위 농민본부 남북농민연대모임	116	
	남북체육교류협회 북한청소년축구대표팀 방한	252	
	민화협 주관 경제인대표단 평양방문행사 지원	139	
	북한 태권도시범단 방한 지원	111	
	남북체육교류협회 FIFA 청소년 월드컵대회 북한대표팀 사전 방한 지원	73	
	제1차 남북 유소년 축구팀 상호교환 경기	113	
	제2차 남북유소년축구팀 상호교환 경기	7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	1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참가 지원	8	
	제3차 남북유소년축구팀 상호교환경기	77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단 방북 기념행사 지원	49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7	제4차 남북유소년축구팀 상호교환경기	93	인적왕래지원 (17건, 1,698)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청년학생 연대모임	45	
	(사)기쁜소식 평양 봉수교회 재건축사업('06)	1,040	사회문화협력지원 (17건, 6,908)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 사업	717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 관련 기금지원	25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지원	2,911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지원('06)	159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삼지연빙상장 아이스링크 시설물 제공 및 설치 사업	407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 고구려벽화무덤 남북공동보존사업	189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474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52	
	남북유소년축구팀상호교환경기관련 인조잔디지원	45	
	민족21 평양남포 통일자전거 경기대회	76	
	우리거래하나되기운동본부 남북공동학술토론회('06)	8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교육 사업	230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평양 장충성당 주일학교 건립 지원사업	51	
	전통 서민연희단 안성남사당 복측 공연	63	
	제천시와 북고성군간 영농문화기술협력사업	100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	362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06)	6	이산가족교류지원 (9건, 26,918)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81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협력사업 지원	3,472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05)	20,730	
	제1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821	
	제16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853	
	제5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지원	315	
	제6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지원	262	
	제7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지원	276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7	민간단체합동사업((사)남북나눔)'(06)	648	인도적 지원 (96건, 227,193)
	민간단체합동사업(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06)	987	
	민간단체합동사업(나눔 인터내셔널)'(06)	1,200	
	민간단체합동사업(통일부)'(06)	200	
	민간단체합동사업(한민족복지재단)'(06)	500	
	민간단체합동사업(국제기아대책기구)'(06)	273	
	민간단체합동사업((사)나눔남북)	395	
	민간단체합동사업(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217	
	민간단체합동사업(나눔 인터내셔널)	516	
	대북지원 민간단체 정책사업(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1,300	
	대북지원 민간단체 정책사업(북민협)	1,000	
	대북지원 민간단체 정책사업(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60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의료인 교육훈련사업	60	
	IVI를 통한 북한 백신 지원사업	466	
	UNICEF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2,938	
	WHO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8,432	
	대북지원 민간단체 개별사업 운영관리비	162	
	21세기통일봉사단 양파고추장 지원사업	175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농업 협동농장 지원사업	64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의 안과병원 지원'(06)	24	
	국제옥수수재단 옥수수심기 협력사업	44	
	굿네이버스 건강증진 및 질병퇴치사업 지원	414	
	굿네이버스 농축산개발 영양식 지원	311	
	나눔인터내셔널 의약품, 의료기자재 제공, 보육용품 지원'(06)	188	
	민족사랑나눔 의료가 및 의료용품지원'(06)	44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안변연어부화장 사료공장 건립	460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염전판지원 및 연어사료공장 건립'(06)	131	
	남북나눔공동체 영유아 이유식 생산지원	115	
	남북나눔운동 어린이 영양식 공급 지원'(06)	295	
	남북나눔운동 어린이 영양식 공급 지원	335	

연도	사업내용	금액	사업구분
'07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씨감자 원종장 지원사업	70	인도적 지원 (96건, 227,193)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유기농업지원을 위한 6.15사료공장 및 가족항생제 대체제 지원사업	113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 종합복지사업	280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를 위한 보건의료사업('06)	248	
	남북함께살기운동 주민 살림집 개보수 사업	226	
	대북 비료지원 사업	96,160	
	대북 수해복구 지원 사업('06)	18,010	
	북민협 대북 수해피해지원	3,000	
	대북 수해피해지원	13,382	
	대북 식량차관 제공	5,711	
	대한의공협회 의료기기 지원('06)	5	
	등대복지회 취약계층 종합지원	390	
	못자리용 비닐 지원('06)	14	
	북고성군농업협력단 남새온실농장 영농지원('06)	14	
	북한 구제역 방역지원사업	2,641	
	북한 산림병충해 방제지원사업	1,788	
	북한 전염병 치료제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99	
	새천년생명운동 아궁이 개량사업	104	
	삼복지재단 제약공장 건립, 왕진가방 보충, 병원 현대화('06)	77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구역병원 등 지원('06)	46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병원 현대화 사업	559	
	연탄나눔운동 난방용,취사용 연탄 지원	354	
	우리겨레하나되기 항생제공장, 어린이지원, 농장 및 사료지원	559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어린이빵 공장 건립('06)	17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농기자재 지원 및 농기계 조립공장('06)	2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약공장 지원('06)	76	
	우리민족서로돕기 기초의약품 및 제약공장	63	
	원불교 어린이 급식 및 유아용 급식 지원	160	
	월드비전 식량증산 증자개량('06)	421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7	UNFPA 북한인구센서스 추진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5	인도적 지원 (96건, 227,19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교육기자재 지원 사업('06)	168	
	유진벨 결핵퇴치 사업('06)	214	
	유진벨 결핵퇴치 사업	720	
	장미회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226	
	제주도농산물 대북지원 수송비 보조	493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식량 및 생필품 지원('06)	4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취약계층 지원사업	241	
	참여불교운동본부 통일신발 및 아나바다 운동('06)	120	
	천주교서울대교구민족화해위원회 어린이영양제 생산공장 지원('06)	5	
	천주교서울대교구민족화해위원회 공기름 공장 설립 운영 및 왕진기방 지원	138	
	평화3000 어린이 영양증진, 생활환경 개선, 농업지원	295	
	평화문제연구소 급식지원 및 구역병원 지원('06)	3	
	평화의숲 양묘단지 조성 및 조림사업 지원('06)	20	
	한겨레영농조합법인 무균종서 시범농장('06)	135	
	한겨레영농조합법인 북한 식량지원사업	309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공책공장 건립('06)	345	
	한국건강관리협회 어린이 보건지원 사업	77	
	한국대학생선교회 목장지원 사업('06)	140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영양, 환경개선 사업('06)	205	
	한국JTS 농업, 의료, 주택건설사업	421	
	한국JTS 어린이영양, 환경개선 및 건강증진 사업('06)	78	
	한민족복지재단 빵 급식 및 평의대 현대화('06)	293	
	나눔 인터내셔널 질병퇴치 및 아동 성장환경 개선사업	720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역량심김인민병원 설립	260	
	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	1,290	
	WHO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06)	736	
	WHO를 통한 홍역 방역사업	998	
	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	18,091	
	YMCA 그린닥터스 개성병원 지원('06)	37	

연도	사업내용	금액	사업구분	
'07	통일부 북한영유아 지원사업	20	인도적 지원 (96건, 227,193)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북한영유아 지원사업	1,080		
	평화문제연구소 급식지원 및 구역병원 지원	30		
	한국복지재단 영양개선 건강증진 사업	367		
	YMCA 전국연맹 통일잔전거 보내기	34		
	대북 수해복구 및 긴급구호를 위한 남북협력기금지원	31,062		
	대한의공협회 의료기자재 현대화	81		교류협력기반 조성(경제) (28건, 172,540)
	삼일포협동농장 공동영농사업('06)	898		
	통일농수산물사업단 공동영농사업	2,363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위한 기금 지원	6,089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지원사업('04)	38,426		
	개성공단 보험제도 구축 남북 보험관계자 합동해외시찰	27		
	개성공단내 직업훈련센터 설립 지원('06)	13,153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설립 지원('06)	7,445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출입시설 신축사업 지원('04)	35,642		
	금강산 개성지역 기상관측장비 설치 사업('06)	188		
	금강산 관광지역 소방설비 등 지원('06)	467		
	남북 경협관계자 공동 해외 산업 시찰	26		
	남북 열차시험운행 행사비 지원	1,553		
	남북간 육로통행체계 개선('06)	4,441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본청사 및 숙소 신축 지원('06)	11,494		
	대북 2차 자재,장비차관 지원('03)	152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지원	4,484		
	대북 역사건축 기자재 차관 지원('05)	488		
	대북 중유 5만톤 제공	24,458		
	동해선 남북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05)	9,992		
	포항공단 『북한경제인력양성사업』 지원사업	86		
	동해선 철도 및 국도7호선 연결사업 지원('02)	4,246		
	중재사무처리기관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51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7	UNESCO 제2차 대북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06)	1,888	교류협력기반 조성(경제) (28건, 172,540)
	문산-봉동간 남북 화물열차 개통행사비 지원	396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농업협력 현지조사단 비용지원	27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현지조사단 비용 지원	69	
	백두산지구 관광인프라 지원('06)	25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1차분 및 중유보일러 제공	3,668	
	(주)고든통상 대북수산물 위탁가공및반입사업에 대한 실적한도대출('07.3.8)	300	교역경협 자금용자(교역) (21건, 8,288)
	(주)고든통상 대북수산물 위탁가공및반입사업에 대한 실적한도대출('07.3.13)	300	
	(주)삼스코 대북 의류 위탁가공 사업 실적한도대출	400	
	(주)세람통상 대북 의류 위탁가공사업 실적한도대출	80	
	(주)소이 대북 의류위탁가공 사업을 위한 실적한도대출	800	
	씨클무역 농수산물 반입사업 지원을 위한 실적한도대출	130	
	(주)안동대마방직 대북 의류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	150	
	연우통상 대북 농수산물 반입사업에 대한 실적한도대출	80	
	(주)영산어패럴 대북 의류 위탁가공 사업 지원을 위한 실적한도대출	585	
	(주)경맥 대북 수산물 반입사업 실적한도대출	207	
	(주)더베이직하우스 대북의류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	2,800	
	(주)써프엔터프 대북의류위탁가공사업 실적한도대출	200	
	(주)케이에치인터내셔널 대북의류위탁가공사업 적한도대출('06)	300	
	(주)케이에치인터내셔널 대북의류위탁가공사업 실적한도대출	300	
	(주)에스앤티스포츠 대북의류위탁가공사업 실적한도대출	200	
	(주)우영수산 대북 수산물 반입사업 지원을 위한 실적한도대출	470	
	무해실업 대북 수산물 반입사업 지원을 위한 실적한도대출	56	
	(주)대동무역 농수산물 반입사업 지원을 위한 실적한도대출	310	
	(주)유지상사 아연과 반입사업 지원을 위한 실적한도대출	170	
	(주)크라온 대북 수산물 반입사업 지원을 위한 실적한도대출	300	
	삼원코퍼레이션 대북의류 위탁가공사업 실적한도대출	150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7	㈜서도산업 개성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6)	1,140	교역경협 자금용자(경협) (22건, 48,343)
	㈜에머슨퍼시픽 개성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700	
	㈜만선 개성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6)	287	
	㈜밀리온스개성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6)	935	
	㈜아트랑 개성현지법인 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06)	1,000	
	㈜안동대마방직 평양대마방직 합영사업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7.5)	1,090	
	㈜안동대마방직 평양대마방직 합영사업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07.7)	1,535	
	㈜제일상품 개성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6)	2,405	
	㈜좋은사람들 개성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06)	1,300	
	한국전력공사 개성공단전력공급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25,550	
	㈜진글라이더 개성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6)	817	
	㈜평안 개성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6)	1,300	
	㈜평화유통 개성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6)	400	
	㈜한국마이크로홀터 개성현지법인 설립 투자자금('06)	500	
	㈜녹색섬유 개성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800	
	㈜KT 개성공단 통신공급시설 투자자금	1,898	
	㈜코트클럽 개성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6)	700	
	㈜국양해운 해상운송 및 남포하역시설개선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872	
	㈜제씨콤 개성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374	
	㈜에스엔지 개성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2,500	
	㈜성화물산 개성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06)	950	
	㈜티에스정밀 개성현지법인설립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290	
	대북 식량차관 제공	140,479	
	개성공단 관리기관 소요경비 대출('04)	2,712	민족공동체회복대출 (5건, 83,369)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소요경비 대출	9,167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지원	64,909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7	대북 2차 자재,장비차관 대출('03)	2,679	민족공동체회복대출 (5건, 83,369)
	대북 역사건축 기자재 차관 대출('05)	3,901	
	소 계 (217건)	715,734	
'08,9	FIFA 청소년 월드컵대회 북한대표팀 사전 방한 지원	7	인적왕래지원 (3건,2,721)
	아시아 레슬링 선수권대회 북한대표팀 방한	13	
	북한현지 체험학습	2,701	
	2008년 겨울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대한 지원	1,369	사회문화협력지원 (6건, 2,527)
	금강산가극단 무용공연 조선무용 50년-북녘의 명무('07)	17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사업('07)	14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교육('07)	64	이산가족교류지원 (4건, 14,720)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07)	49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고구려벽화무덤 남북공동보존사업('07)	44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14,553	인도적 지원 (51건, 33,131)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12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교환 지원	50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단체 협력사업지원	6	인도적 지원 (51건, 33,131)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농업 협동농장 지원사업('07)	42	
	남북나눔공동체 영유아 이유식 생산지원('07)	268	
	남북나눔공동체 영유아 이유식 생산지원	61	인도적 지원 (51건, 33,131)
	우리민족서로돕기 기초의약품 및 제약공장('07)	147	
	원불교 급식 및 구역병원 지원('07)	20	
	2007년 민간단체 합동사업	2,634	인도적 지원 (51건, 33,131)
	대한의공협회 의료기자재 현대화('07)	8	
	우리민족서로돕기 북한협동농장 지원 사업('07)	282	
	민족사랑나눔 급식지원 및 복지관 건립('07)	44	인도적 지원 (51건, 33,13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기자재 후속 지원('07)	78	
	UNFPA 북한 인구센서스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07)	3,633	
	남북농업발전협력기간연대 씨감자 원종장 지원사업('07)	70	인도적 지원 (51건, 33,131)
	남북나눔운동 어린이 영양식 공급('07)	212	
	국제옥수수재단 옥수수심기 협력사업('07)	101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8.9	국제옥수수재단 옥수수심기 협력사업	69	인도적 지원 (51건, 33,131)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유기농업지원을 위한 6.15사료공장 및 가족항생제 대체제 지원사업('07)	70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유기농업지원을 위한 6.15사료공장 및 가족항생제 대체제 지원사업	66	
	4개 민간단체 컨소시움 - 북한영유아 지원사업	2,322	
	등대복지회 취약계층 종합지원('07)	31	
	등대복지회 취약계층 종합지원	168	
	2007 대복지원 민간단체 정책사업	400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 종합복지사업('07)	187	
	농협중앙회 협동농장, 농업개발 사업('07)	92	
	2008 대복지원 민간단체 정책사업	375	
	굿피플 콩기름공장 운영지원('07)	73	
	나눔인터내셔널 북한주민 질병퇴치 및 아동성장환경 개선	92	
	남북함께살기운동 학교 및 주택 개보수사업	62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 보건의료 및 영양개선사업	168	
	북고성농업협력단 채소농장 지원사업	11	
	새천년생명운동 산림녹화를 위한 아궁이개량사업	85	
	굿네이버스 어린이 건강증진 및 질병퇴치 사업	22	
	대한결핵협회 결핵퇴치사업	34	
	UNICEF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4,662	
	연탄나눔운동 난방용, 취사용 연탄지원	65	
	한국대학생선교회 염소목장 지원사업('07)	178	
	장미회 대북 보건의료 지원	92	
	급식지원 및 보건의료 복지관건립	77	
	어린이재단 어린이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	199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약공장 지원 및 병원현대화사업	63	
	원불교 어린이 급식 및 유아용품 지원	71	
	천주교서울대교구 어린이 영양제 및 콩기름 원료지원	115	
	08년 정책사업 운영관리비	90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8.9	통일연합종교포럼 주택 개보수 지원	12	인도적 지원 (51건, 33,131)	
	통일준비네트워크 친환경 순환농법 지원	67		
	2008 민간단체 개별사업 운영관리비	210		
	WHO 대북 말라리아 방역사업	1,030		
	대북 식량차관 부대경비('07)	4,310		
	북한 산림병충해 방제지원사업('07)	8		
	어린이 급식 및 유아용 급식 지원('07)	92		
	식량증산 농업개발 사업('07)	559		
	제주도농산물 대북지원 수송비 보조('07)	1,959		
	대북 수해복구 및 긴급구호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07)	7,348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1차분 및 중유보일러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50		교류협력기반조성 (16건, 63,136)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지원	1,078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지원('07)	2,048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1차 잔여분 및 2차 제공 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7,443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위한 기금 지원('07)	6,452		
	동해선 남북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	6,257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운영경비 지원	243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지원사업	5,599		
	금강산 소방서 건설비용	1,651		
	대북 2차 자재, 장비차관 지원('03)	47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3차분 제공사업 경비 지원	12,395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설립 지원	7,099		
	대북 역사건축 기자재 차관 지원('05)	27		
	공동영농사업('07)	570		
	공동영농사업	1,437		
	남북교류협력체계 개선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514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08.9	(주)경맥 대북 수산물 반입사업 실적한도대출	207	교역경협 자금용자(교역) (16건, 7,783)
	고든통상(주) 대북 수산물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08.3.8)	660	
	고든통상(주) 대북 수산물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08.3.13)	300	
	(주)에스앤티스포츠 대북 의류위탁가공사업 실적한도대출	200	
	(주)케이에치인터내셔널 대북 의류위탁가공사업 실적한도대출	300	
	(주)소이 대북 의류 위탁가공 사업 실적한도대출	800	
	삼화통상(주) 대북 수산물 반입사업 실적한도대출	80	
	(주)에스앤티스포츠 대북 의류 위탁가공사업 실적한도대출	200	
	(주)케이에치인터내셔널 대북 의류 위탁가공사업 지원 실적한도대출	300	
	(주)크라운 대북 수산물 반입사업 지원을 위한 실적한도대출	300	
	우영수산(주) 대북 수산물 반입사업 지원 실적한도대출	470	
	(주)유지상사 대북 아연피 반입사업 지원을 위한 실적한도대출	136	
	(주)영산어패럴 대북 의류 위탁가공 사업 지원 실적한도대출	550	
	세람통상(주) 대북 의류 위탁가공사업 실적한도대출	80	
	(주)삼스코 대북 의류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	400	
	(주)더베이직하우스 대북의류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	2,800	
	인천-남포간 해상운송 및 남포항 하역시설 개선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28	
	평양대마방직 합영사업 추가대출('07)	75	
	대북 2차 자재, 장비차관('03)	2,324	민족공동체 회복대출 (7건, 22,143)
	대북 역사건축 기자재 차관('05)	416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 운영경비	2,218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소요경비 대출('07)	89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요경비	7,256	
	대북 경공업 원재자제공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지원('07)	9,834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출퇴근지원	6	
	소 계 (105건)	146,364	
	합 계	5,325,524	

다. 기금대출현황

(1) 민간기업

(단위 : 억원)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9	합계
교역대출	5	11	4	79	137	83	73	83	78	552
경협대출 (개성공단)	-	-	-	-	181	203	220	157		760
경협대출 (기타지역)	-	450	358	108	56	8	34	701	2	1,716
경협대출 (전력통신)	-	-	-	-	-	-	153	274		427
합 계	5	461	362	187	374	293	480	1,215	80	3,456

(2) 대북차관

(단위 : 억원)

구 분	'98	'00	'01	'02	'03	'04	'05	'06	'07	'08.9	합계
식량차관	-	867	190	967	1,561	1,020	1,793	39	1,405	-	7,842
자재장비	-	-	-	306	360	397	186	153	66	27	1,494
개성공업 지구관리위	-	-	-	-	-	43	89	78	119	96	425
경 수 로	675	3,259	3,003	3,009	3,287	870	227	89	-	-	14,419
합 계	675	4,127	3,192	4,282	5,208	2,329	2,295	359	1,589	123	24,180

라. 공자기금

(1) 총괄

(단위 : 억원)

연 도	조 성			사 용			
	공자기금 예수금	운용수익	소 계	대출	공자기금예수금		소 계
					원금	이자	
1999	1,498	-	1,498	-	-	-	-
2000	2,549	39	2,587	3,259	-	190	3,450
2001	3,100	40	3,140	3,003	-	391	3,394
2002	5,050	48	5,098	3,009	1,498	626	5,133
2003	8,230	27	8,257	3,287	2,549	701	6,537
2004	3,100	30	3,130	870	3,100	795	4,765
2005	4,600	22	4,622	227	2,820	838	3,884
2006	9,400	56	9,456	89	7,730	983	8,802
2007	5,846	39	5,885	-	5,330	1,007	6,337
2008,9	1,130	21	1,151	-	500	691	1,191
누 계	44,503	322	44,824	13,744	23,527	6,222	43,493

(2) 차입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일자	금액	이자율	만기
1999	12. 8	149,831	8.66%	상환완료(2002. 12. 6)
2000	4.12	109,852	8.84%	상환완료(2003. 4. 10)
	7.12	45,100	8.04%	상환완료(2003. 5. 7)
	11.15	50,000	7.00%	상환완료(2003. 11. 14)
	12.13	49,900	6.82%	상환완료(2003. 11. 14)
	소 계	254,852	-	-
2001	2. 7	82,500	5.40%	상환완료(2004. 1. 9)
	5. 9	90,000	6.53%	상환완료(2004. 4. 3)
	8. 8	90,000	5.41%	상환완료(2004. 7. 3)
	11. 7	47,500	4.94%	상환완료(2004. 10. 8)
	소 계	310,000	-	-
2002	1.16	113,000	6.90%	상환완료(2007. 1. 15)
	4.10	110,000	7.17%	상환완료(2007. 4. 9)
	7. 4	100,000	5.62%	상환완료(2005. 7. 3)
	12. 4	182,000	5.44%	상환완료(2005. 9. 30)
	소 계	505,000	-	-
2003	1. 8	40,000	5.10%	상환완료(2006. 1. 6)
	3. 5	40,000	4.63%	상환완료(2006. 3. 4)
	4. 2	150,000	4.54%	상환완료(2006. 3. 4)
	4. 9	50,000	4.80%	상환완료(2008. 3. 11)
	5. 7	60,000	4.40%	상환완료(2006. 3. 4)
	7. 2	80,000	4.17%	상환완료(2006. 3. 4)
	9. 3	80,000	4.40%	상환완료(2006. 9. 1)
	11. 5	180,000	4.54%	상환완료(2006. 9. 1)
	12. 3	143,000	5.08%	상환완료(2006. 9. 1)
	소 계	823,000	-	-

연도	일자	금액	이자율	만기
2004	3. 3	100,000	4.77%	상환완료(2007. 3. 2)
	6. 8	110,000	4.22%	상환완료(2007. 3. 2)
	9. 8	100,000	3.68%	상환완료(2007. 9. 9)
	소 계	310,000	-	-
2005	2.23	10,000	3.70%	2009. 12. 9
	5.10	117,000	4.07%	2010. 3. 9
	8. 2	233,000	4.14%	2010. 6. 9
	12.20	50,000	4.61%	2010. 9. 9
	12.20	50,000	4.61%	2010. 9. 9
	소 계	460,000	-	-
2006	2.21	370,000	5.20%	2010. 12. 9
	6.13	403,000	5.20%	2013. 3. 9
	8.23	117,000	5.16%	2013. 6. 9
	11.14	50,000	4.94%	2013. 9. 9
	소 계	940,000	-	-
2007	2.13	240,000	4.80%	2013. 12. 9
	3. 6	120,000	4.80%	2013. 12. 9
	5.23	21,591	5.00%	2014. 3. 9
	8. 8	40,000	5.15%	2014. 6. 9
	8.23	50,000	5.15%	2014. 6. 9
	8.28	50,000	5.15%	2014. 6. 9
	12.11	63,000	5.45%	2014. 9. 9
	소 계	584,591	-	-
2008,9	2.26	67,000	5.63%	2014. 12. 9
	5.27	30,000	5.36%	2015. 3. 9
	8.26	16,000	5.35%	2015. 6. 9
	소 계	113,000	-	-
합	계	4,337,274	-	-

마. 여유자금 운용현황

(1) 여유자금 운용상황

(가) 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예치비율
예탁금	공 공 자 금 관 리 기 금	-	-
예치금	정 기 예 금	9,365	88%
	양 도 성 예 금 증 서	70	1%
	M M D A	68	1%
	소 계	9,503	89%
유가증권	채권형 수익증권(투자폴)	840	8%
	주식형 수익증권(투자폴)	336	3%
	소 계	1,176	11%
합 계		10,678	100%

(나) 남북협력기금 계정

(단위 : 억원)

구분		금액	예치비율
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	-
예치금	정기예금	9,130	88%
	양도성예금증서	70	1%
	M M D A	68	1%
	소계	9,268	89%
유가증권	채권형 수익증권 (투자풀)	840	8%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풀)	281	3%
	소계	1,120	11%
합계		10,389	100%

(다) 경수로 계정

(단위 : 억원)

구분		금액	예치비율
예치금	정기예금	235	81%
	양도성예금증서	-	-
	M M D A	-	-
	주식형 수익증권(투자풀)	54	19%
합계		289	100%

(2) 기금 자산운용 평가결과

(가) 평가결과(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구분	2008년	2007년
평가 점수	88.4	77.0
평가 순위	중형사업 11개중 2위	중형사업 10개중 3위

(나)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등급	평점
1. 자산운용정책의 적정성(40)		36.6
(1) 단기자산 운용정책의 적정성	A	8.6
(2) 중장기자산 운용정책의 적정성	A	14.7
(3) 자산운용 의사결정체계의 적정성	B+	13.0
2. 자산운용관리의 효율성(30)		27.3
(1) 자산운용관리활동의 효율성	A	9.3
(2)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효율성	A	9.3
(3) 자산운용 성과관리의 효율성	B+	8.7
3. 자산운용실적(성과)(30)		20.8
(1) 단기자산 운용수익률		4.0
① 절대수익률	C	1.2
② 상대수익률	B	2.9
(2) 적정유동성		2.8
① 현금성자금 보유비용	B	1.4
② 현금성자금 보유비율	B	1.4
(3) 운용기관 집중예치정도	B	3.9
(4) 중장기자산 운용수익률과 성과지표		10.0
① 상대수익률	C+	6.6
② 과거 3년간 누적운용수익률	D+	1.0
③ 과거 3년간 샤프비율	D+	2.4
합 계		84.4

5. 2007년 기금지원계획 대비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누계실적
유 상 지 원	3,371	2,805	25,585
- 인도적사업(식량차관)	1,565	1,405	6,563
- 교역·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822	566	2,581
〈교역자금대출〉	〈150〉	〈83〉	〈468〉
〈경협자금대출〉	〈672〉	〈483〉	〈2,113〉
- 민족공동체회복지원	984	834	2,697
〈자재장비차관〉	-	〈66〉	〈1,449〉
〈개성공업지구관리위대출〉	〈104〉	〈119〉	〈303〉
〈기타〉	〈880〉	〈649〉	〈944〉
- 경수로사업대출	-	-	13,744
무 상 지 원	5,783	4,352	23,033
- 인적왕래지원	30	17	370
- 사회문화협력사업지원	85	69	262
- 교역·경제협력사업지원(손실보조)	100	-	13
- 금융기관지원	14	-	-
- 민족공동체회복지원	5,554	4,267	22,388
〈이산가족교류지원〉	〈371〉	〈269〉	〈420〉
〈인도적지원〉	〈2,639〉	〈2,272〉	〈14,324〉
〈경제분야협력기반조성 등〉	〈2,544〉	〈1,725〉	〈7,644〉
기 금 지 원 계	9,154	7,157	48,618

6. 요약 재무제표

가.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I. 자 산						
가. 유동자산	6,209	7,871	4,911	4,493	8,052	5,990
나. 고정자산	14,293	18,726	20,257	22,577	22,275	25,089
자 산 총 계	20,502	26,597	25,168	27,070	30,327	31,079
II. 부채 및 자본						
가. 부 채	10,823	16,558	16,593	18,382	20,037	20,501
1. 유동부채	2,673	3,278	3,033	7,952	5,537	655
2. 고정부채	8,150	13,280	13,560	10,430	14,500	19,846
나. 자 본	9,679	10,039	8,574	8,688	10,290	10,578
1. 이익잉여금	9,679	10,039	8,574	8,688	10,287	10,556
이익적립금	6,953	9,679	10,039	8,573	8,688	10,287
(당기순이익)	(2,726)	(360)	(△1,466)	(115)	(1,599)	(26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0,502	26,597	25,168	27,070	30,327	31,079

나.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 사업수익	4,919	3,031	1,759	5,072	6,573	5,112
2. 사업비용	1,859	2,321	2,082	4,180	3,895	4,374
3. 사업이익	3,060	710	△323	891	2,679	738
4. 사업외수익	456	430	356	282	396	486
5. 사업외비용	790	780	1,499	1,058	1,476	954
6. 당기순이익	2,726	360	△1,466	115	1,599	269

2008 남북협력기금 백서

인 쇄 2008년 11월

발 행 2008년 11월

발행처 **통 일 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37

Tel: 02) 2100-5817

편집·인쇄 웃고문화사(Tel: 2267-9795)